2008년도 국가인권위원회 주요업무계획

2008. 1.



<2008~2009년 중점사업영역>

- 1. 정신장애인 등 장애인 인권 보호
- 2. 다문화 사회구조 속의 이주민 인권보호
- 3. 아동·청소년·노인 등 소외계층 인권보호
- 4. 양극화사회에서의 빈곤계층 인권보호
- 5. 프라이버시 침해·정보격차 등 정보인권 보호
- 6. 한반도 평화와 공존을 위한 북한 인권

독립성과 효과성 제고를 위한 2008-2009년 국가인권위원회 업무지침

1. 권리구제효과성 강화

- 1.1. 진정접수전 해결(IR) 활성화
- 1.2. 권리구제 다워화 및 현장화
- 1.3. 방문조사 등 기획조사 강화

- 2. 인권친화적 정책 기반 강화
- 2.1. 입법.정책 모니터링 강화
- 2.2. 인권관련 사법 개입 활성화 (헌법재판소/대법
- 2.3. 국제인권규범의 국내이행 활성화
- 2.4. 차별영역에서의 법제 개선 강화
- 2.5. 주요 인권정책에 대한 대국민 커뮤니케이션 강화

3. 인권교육의 효과성 제고

- 3.1. 위원회 인권교육의 콘텐츠 개발 및 표준화
- 3.2. 우수한 인권교육강사 확보 및 유지
- 3.3. 인권교육 평가시스템 확보

4. 인권공동체의 외연 환대

- 4.1. 기업의 사회적 책임, 글로벌컴팩 등 기업대상 인권사업 활성화
- 4.2. NGO, 언론 및 종교계 등 시민사회와의 다각적 협력 체계 구축
- 4.3. 인권정책관계자 협의회 내실화

국제인권사회에 대한 역할 및 기여 강화

- 5.1. 아시아지역 내 현안에 대한 NI 및 NGO와의 공동 사업 및 인적교류 추진
- 5.2. 국제 인권 매커니즘 변화에 대한 적극적 대응방안 마련
- 5.3. 국제인권 전문가 양성
- 5.4. 외교통상부 등 관계부처와의 상시적 협의 체제 확보

6. 조직 역량강화

- 6.1. 건강하고 실력있는 인권전문가 양성
- 6.2. 업무지침 수행을 위한 조직구조 및 업무체제 정립
- 6.3. 지역사무소 확대 및 역할 강화

2008년도 인권정책본부 업무계획

2008. 1.

인권정책본부

1. 일반 현황

□ 조직 및 업무

구 분	정원(현원)	업 무
정책충괄팀	10(12)	 ○ 위원회의 중장기 정책 및 전략의 수립.종합 ○ 인권정책의 추진에 대한 분석.평가 ○ 인권관련 법령.제도.정책.관행의 조사.연구 및 그 개선에 관한 사항의 총괄 ○ 대통령 및 국회에 대한 인권상황 개선대책 보고 ※ 북한인권연구,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 관련업무
국제인권팀	6(5)	 ○ 국제인권조약.기준 및 국제인권기구 권고사항의 조사.분석과 국 내이행에 관한 사항 ○ 국제인권조약에의 가입 및 그 이행에 관한 연구와 의견 표명 ○ 인권관련 국제기구 및 외국의 인권기구.단체 등과의 교류.협력
인권연구팀	7(7)	 ○ 사회적 기본권 분야와 중장기 인권현안관련 법령.제도.정책 및 관행의 조사와 연구.개선 ○ 정부출연기관 또는 각종 연구단체 등에 대한 연구요청 및 공동연구에 관한 사항 ○ 인권관련 연구기관.전문가 등과의 교류.협력

[※] 인권정책본부장은 정책총괄팀 인원에 포함

□ 예산 현황

(단위: 백만원)

구분	합계	기본경비	주요사업비	비고(비율)
인권정책본부	1,434	241	1,193	12.0%
위원회 전체	11,980	7,136	4,844	100.0%

[※] 인건비를 포함한 위원회 전체예산은 219억 9백만원

[※] 직제개정(안)에 의하면, 인권정책본부는 인권정책1팀, 인권정책2팀, 국제협력팀 으로 구성될 예정이며, 각 팀의 신규 업무는 팀별 계획을 참조

[※] 위 예산은 2007년 기준이며, 2008년 예산 확정시 수정할 예정임.

2. 중점사업

가. "다문화사회에서 인권 보호 및 증진" 국제심포지엄 개최 및 '서울선언문' 공표

□ 배경 및 목적

- 한국이 다문화사회로 변화과정에서 다문화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 형성과 인종, 소수민족 차별금지, 인권침해의 사각지대인 이주노동자 및 국제결 혼가정 인권보호에 대한 논의
- O 이들에 대한 인권보호와 경제발전 수준에 부응하는 인권 보호 및 증진 체계 마련

□ 사업 내용

- O 국제회의의 실무팀 구성을 통한 의제 개발 예정
- O 국제인권규범의 형성에 실질적으로 기여할 수 있는 결과 산출
 - 각국의 경험과 전문가 논의에 기초한 '서울선언문' 작성 공표
- ※ 위원회 중점사업영역 : 2. 다문화 사회구조 속의 이주민 인권보호
 - 담당팀 : 국제인권팀

나. 아동, 청소년 인권 보호 및 증진

- O 아동.청소년 관련 인권정책 업무의 유기적, 체계적 추진을 통해 국제인권 기준에 부합하는 아동인권 보장 도모
- O 아동.청소년 인권 개념의 발전에 부응하는 참여와 자율 중심의 학생인권 보호 및 증진 체계 마련

□ 사업내용

- O 아동.청소년 인권 보호 프로젝트팀의 구성 및 운영
- O 초중등학생 인권 보호 및 증진을 위한 정책검토 추진
 - 학생인권법안(초중등교육법 개정안)에 대한 의견표명 검토
 - 체벌, 두발단속, 학생자치 등에 관한 개선 방안 검토
 - 교육부 및 각 시도 교육청과의 인권정책관계자협의회 실시
- O 아동권리협약의 국내 이행 및 모니터링 강화
 - 아동권리협약 정부보고서 의견표명
 - 아동권리협약 선택의정서 심의 참가
 - 아동권리위원회의 최종견해에 대한 지속적인 모니터링
- O 피학대.방임 아동에 대한 권리 보호
 - 아동학대.방임에 대한 아동의 보호
 - 아동학대 방지를 위한 법령 및 정책의 정비
- O 입양. 양육 등에서 아동의 이익 우선을 위한 법제 개선
 - 입양특례법 개정 검토
 - 입양시 아동의 의사표명권 확대
 - 해외입양시 국적상실에 대한 검토
 - 이혼시 친권, 양육권, 면접교섭권 처분과 변경시 아동의 참여권 확대

※ 위원회 중점사업영역 : 3. 아동, 청소년, 노인 등 소외계층 인권보호

- 담당팀 : 정책총괄팀, 인권연구팀

다. 학생선수 인권 증진

- 학생선수 인권 관련 주요 정책 과제에 대하여 지속적으로 실태를 파악하고, 효과적인 정책 대안을 모색하고자 함.
- O 해외 선진국의 학원스포츠 정책 및 인권 가이드라인 등을 국내 소개하는 한편, 주요 정책 과제들에 대한 사회적 관심과 인식을 제고

□ 사업 내용

- 중도 탈락 학생선수의 인권 개선 방안 검토(실태조사)
 - 부상, 질병, 대회 성적 부진 등으로 인해 중도 탈락한 학생선수가 학습 재진입 및 진학, 사회진출 과정에서 겪는 소외와 배제 실태 연구
- 전국(소년)체전 개선 방안 검토(해외 선진사례 연수)
 - 전국(소년)체전 및 학교운동부 시스템 등의 개선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미국, 캐나다, 일본 등 선진국의 정책 및 사례 연수프로그램 기획
- O 학생선수 인권 증진을 위한 연속 기획 토론회 개최
 - "학생선수 성폭력 실태 및 개선 과제" 등 학생선수 인권 관련 주요 의 제를 선정하여 연속 기획 토론회를 실시(연3회)
- 학생선수 인권 증진을 위한 국제심포지엄 개최
 - 해외 선진국의 정책 사례 및 국제 가이드라인 등의 인식 제고를 위한 국제심포지엄 개최
 - 주제 : "스포츠와 인권-학생선수 인권을 중심으로"(가안)
- O 학생선수 인권 증진을 위한 사회적 캠페인 추진
 - 사회 일반의 인식을 제고하기 위하여 대중적인 스포츠 스타 등이 참여 하는 사회적 캠페인 기획, 추진
- ※ 위원회 중점사업영역 : 3. 아동, 청소년, 노인 등 소외계층 인권보호
 - 담당팀 : 정책총괄팀

라. 노동권 및 주거권 분야 빈곤계층 인권 보호

- 사회보장의 점진적 확대 노력에도 불구하고 고용의 불안정 및 사회적 양 극화 심화로 인해 빈곤계층의 인권 상황 악순환이 발생하고 있음.
- O 근로빈곤층 및 노숙인 등의 인권 상황을 개선하고, 빈곤계층의 주거권 개선 방안을 마련하여 삶의 질 향상의 실질적 계기 마련

□ 사업내용

- O 5인 미만 사업장 근로조건 개선
 - 5인 미만 사업장의 근로조건 현황 파악 및 개선방안 검토
 - 근로기준법 적용범위에 대한 외국 사례 검토 및 비교연구
 - 상시근로자수 기준의 적용범위 문제점 및 개선방안 검토
- O 사내하도급근로자 보호
 - 비정규직법 시행 1년 평가 및 노사정참여 토론회 개최
 - 비정규직법의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사내하도급근로자에 대한 보호입법 방안 권고
- O 노동사건의 과도한 형벌적용 제도 개선
 - 관련 실태조사 결과 발표 및 정책토론회를 통한 학계.전문가.정부.NGO 등 의견수렴, 주요 쟁점의 구체화
 - 실태조사 및 정책토론회 논의내용을 기초로 제도개선 방안 권고
 - ILO 주요협약 비준의 당위성 공유 위한 관련부처 정책협의 실시
- O 빈곤계층 최저주거기준 실현을 위한 제도 보완
 - 주택법상 최저주거기준 내용의 적정성 및 적용의 실질화 방안 검토
- O 강제철거과정의 거주민 권리 보호
 - 도시지역의 재개발 과정에서 빈번히 발생하는 거주민의 권리침해와 관 련한 행정대집행법 등의 절차 개선과 철거민 이주정책의 합리화 방안 검토
- O 노숙인 인권 개선
 - 노숙인의 적절한 주거 부재, 부실한 건강상태, 노동기회 확보 어려움 등 상호 연계된 영역에서의 관련 정책 검토
 - 노숙인의 급식, 보건의료 등의 건강문제와 강제노동, 임금체불과 착취 등 노동문제 개선 방안 검토
- ※ 위원회 중점사업영역 : 4. 양극화사회에서의 빈곤계층 인권보호
 - 담당팀 : 인권연구팀

마. 정보인권 보호

□ 배경 및 목적

- 과학기술의 발달로 정보화가 급속도로 진전되고 있는 반면 개인정보 보호 체계는 이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어 개인정보 침해가 우려됨.
- 국제적 수준에 걸맞는 개인정보보호 체계 확립과 공공부문 및 민간부문 을 아우르는 통합적 정보 보호 체계 확립에 기여하고자 함.

□ 사업 내용

- 우리나라 개인정보 보호체계의 점검 및 세계적 동향 파악
 - 위원회 접수되고 있는 정보인권 관련 사건 분석
 - 정보인권 관련 침해우려 분야 발굴.구제 및 실태파악
 - . 건강보험정보, 금융신용정보, 행정정보 등의 이용 및 유출 실태 파악
 - . 인터넷상의 프라이버시 침해 개선 방안 검토 등
- O 국내 정보인권 담당부서와 긴밀한 협조
 - 정보통신부, 행정자치부, 한국정보보호진흥원, 경찰청 등
- 공공부문 및 민간부문의 통합 개인정보 보호 법안 제안(장기 과제)
- O 독일, 프랑스, 영국, 미국, 일본 등 주요 선진국의 정보보호법령 번역 및 해외 실태파악
- O 위 사업의 효과적 추진을 위한 '정보인권 프로젝트팀' 구성 및 운영

※ 위원회 중점사업영역 : 5. 프라이버시 침해.정보격차 등 정보인권 보호

- 담당팀 : 인권연구팀

바. 북한 인권

- 2006년 12월 북한인권에 대한 위원회의 입장 표명을 토대로 차기 정부 출범에 따른 대북정책 및 북한인권정책 변화에 대비
- 북한인권 관련 사항, 즉 재외 탈북자 인권, 새터민, 국군포로.납북자.이산 가족 문제 등에 대한 중장기 사업방향 설정

□ 사업 내용

- O 재외 탈북자 인권 보호 방안 검토
 - 재외 탈북자의 현황 파악(몽골, 중국, 라오스, 캄보디아, 베트남, 태국, 미얀마 등)
 - 탈북자 지위문제, 강제송환 문제 등에 대한 검토
 - 탈북자의 국내 입국 과정의 인권침해 문제 해결방안 모색
- O 새터민 인권 증진
 - 입국, 교육, 정착과정에 대한 실태조사
 - 새터민 직업실태 파악 및 정책권고 검토
 - 새터민 자녀의 교육실태 파악 및 정책권고 검토
 - 새터민 지원대책 검토, 중앙 및 지방자치단체의 지원 현황 파악
 - 새터민 정착실태, 한국사회 정착과정에 대한 심리 및 의식 조사
- O 납북자, 국군포로, 이산가족 문제 검토
 - 현황 파악 및 국외 비교사례 검토를 통한 해결방안 모색
 - 정부에 대한 정책권고 검토
- 보편적 국제인권규범에 근거한 북한인권 연구활동
- O 국제협력 네트워크 강화
 - 국내외 NGO에 대한 북한인권 동향 모니터링
 - 관련 기구 및 전문가의 의견 수렴
 - 국제네트워크를 활용한 직.간접적 활동
- ※ 위원회 중점사업영역 : 6. 한반도 평화와 공존을 위한 북한 인권
 - 담당팀 : 정책총괄팀
- ※ 본부 업무평가와 동향분석은 각 팀의 업무평가 및 동향분석으로 대신함.

2008년 정책총괄팀 업무계획(초안)

- 1. 일반 현황
- 2. 업무 평가
 - 가. 중점사업 평가
 - 나. 일반사업 평가
- 3. 외부환경 동향 분석
 - 가. 새정부 출범에 즈음한 국내외 인권 동향
 - 나. 아동, 청소년 인권 동향
 - 다. 정보인권 관련 동향
- 4. 주요업무
 - 가. 중점사업
 - 1) 아동, 청소년 인권 보호
 - 2) 학생선수 인권 증진
 - 3) 정보인권 보호
 - 4) 북한인권
 - 나. 일반사업
 - 1) 법령.정책 검토 강화 및 모니터링 체계화
 - 2) 법원, 헌재에 대한 의견 제출 활성화
 - 3) 자유권 분야 국제인권규범의 국내 이행 강화
 - 4) 인권 포럼 기능 강화 및 유기적 정책 네트워크 구축
 - 5) 권고사후관리시스템 강화
 - 6) 기타 주요 주관 업무
 - 실태조사 기획, 조정
 - 대통령 보고
 - 위원회 T/F 운영 총괄
 - 정책자문위원회 운영
 - 인권위원 워크숍
- 5. 연간 추진 일정

2008년 정책총괄팀 업무계획(안)

1. 일반 현황

구 분	정원(현원)	업 무
정책 총 괄팀	10(11)	 ○ 위원회의 중장기 정책 및 전략의 수립.종합 ○ 인권정책의 추진에 대한 분석.평가 ○ 인권관련 법령.제도.정책.관행의 조사.연구 및 그 개선에 관한 사항의 총괄 ○ 대통령 및 국회에 대한 인권상황 개선대책 보고 ※ 북한인권연구,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 관련업무

- 신규 직제령(안)의 인권정책1팀 업무분장 사항
 - 자유권과 관련한 다음 각목의 사항
 - 가, 법령,제도,정책,관행의 조사,연구 및 그 개선에 관한 사항
 - 나. 국제인권조약.기준 및 국제인권기구 권고사항의 조사.분석과 국내이 행에 관한 사항
 - 다. 국제인권조약에의 가입 및 그 이행에 관한 연구와 의견 표명
 - 라. 정부출연기관 또는 각종 연구단체 등에 대한 연구요청 및 공동연구에 관한 사항
 - 마. 인권 관련 연구기관.전문가 등과의 교류.협력
- ※ 신규 직제령(안)의 기획조정팀 업무분장 사항
 - 1. 위원회의 중장기 정책 및 전략의 수립.종합
 - 2. 주요업무계획의 수립.종합 및 조정.점검.평가
 - 3. 대통령 및 국회에 대한 인권상황 개선대책 보고
 - 4. 그 밖에 위원장이 지시하는 위원회 전략과제의 점검·확인 등에 관한 사항

2. 업무 평가

가. 중점사업 평가

1) 법령, 정책 권고 및 의견표명

O 성과

- 2007년도에 정책법령에 대한 의견표명(권고포함) 건수가 총 17건이고, 미결 또는 재심의예정인 건수는 총6건으로 23건이 법령정책의안으로 제출되었으며, 모니터링 단계에서의 내부 예비검토 강화 등 인권관련 법령에 대한 부단한 검토와 의제화는 팀의 최우선적 과제로 인식되고 정착됨.

○ 평가

- 2006년에 비하여 상정건수가 증가하였고, 외부 역량을 적절히 이용하는 등 전반적으로 검토역량이 개선되고 있는 것으로 보이나, 입법이 봄, 가을 등 시기적으로 몰리는 경향이 있었고, 시기적으로 17대 국회임기 종료전이어서 많은 의원입법안이 나와 정부 및 국회의 주요한전체입법에 대응하기는 역부족이었음.
- 2007년도에 내부적으로 부처 담당제를 초기부터 시행하고 있으며, 금 년에도 이를 보완할 예정

2) 아동, 청소년 인권 증진

O 성과

- 아동인권 기획조정회의를 구성하고 "아동인권보호증진을 위한 정책검 토 기본계획"을 마련하여 체계적 유기적 아동인권 보호 업무 추진의 기반을 마련함

-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전부개정안에 대한 의견표명, 학생선수 인 권 보호 및 증진을 위한 정책 권고 등 아동인권 보호를 위한 정책과 제 수행
- 학생선수 인권개선 방안 검토, 중고등학생 인권개선 방안 검토 등 실 태조사를 기반으로 한 정책과제 발굴 및 수행

O 평가

- 아동인권 기획조정회의의 구성 지체와 분절적 정책업무 수행으로 종합적.유기적 정책추진 목표 실현에 미흡하였으며, 아동인권 보호 증진을 위한 구체적 정책과제 발굴에도 소홀한 부분이 있음

3) 법원, 헌재 의견 제출

O 성과

- 2007년 들어 인권의 보호와 향상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재판에 대해서 지속적 모니터링
- 변호사, 학계 등과 7차례 간담회 등 개최, 의견제출 위한 역량개발
- 의견제출 목록
 - . 향토예비군설치법 관련 위헌제청사건
 - . 여군 중령 강제퇴역처분 취소소송사건
 - . 국립도서관 입관제한 사건

O 평가

- 법원 및 헌법재판소의 인권 관련 재판과정에 접근에 있어서 재판의 비공개성, 사후적 보도 등으로 적절한 대응 곤란
- 헌법재판소 및 법원의 의견 요청 사례가 없었고, 내부 역량의 미흡

나. 일반사업 평가

1) 인권정책의 기획.총괄.평가.조정

O 성과

- '07년 위원회 주요 업무계획의 수립(1월) 및 상반기 평가 보고(8월)
- '07년 부서별 주요 업무계획 수립 기획 및 보고(8월)
- 정부 부처별 업무계획 및 주요 입법계획 분석 및 자료집 발간(3월)
- 위원회 주요 인권정책관련 의견표명 및 권고 내용 분석(8월) 및 '진정 사건 관련 정책과제의 지침'를 마련하여 정책권고 사후관리 강화(6월)
- 위원회 '인권 NAP 권고안'에 따라 정부안이 마련되도록 의견서를 제출하는 등 적극적 활동
- 아동인권 보호증진을 위한 '아동인권기획조정회의' 구성 및 운영(11월)

O 평가

- 위원회 업무계획의 조기 수립 및 개별 사업의 기획 조정 등을 통해 안정적 업무 수행을 도모할 수 있었음.
- 그러나 위원회 중장기 발전전략 수립 및 인권정책에 관한 종합적.체 계적 접근은 미진하였음

2) 인권정책관계자협의회 운영

O 성과

- 교육인적자원부, 문화관광부, 대한체육회, 3개 시도교육청 관계자들 및 전문가들과 "학생선수 인권 개선을 위한 인권정책관계자협의회"를 개최(11월)하고, 협의회의 논의 성과를 토대로 학생선수 인권 보호

및 증진을 위한 정책 권고(12월)를 실시함.

- 한편, 법령상에 규정된 형태의 인권정책관계자협의회는 아니나, 팀에서 검토한 다양한 법령, 정책 과제에 대하여 정부부처 및 관계기관들과 지속적인 정책 협의를 실시
 - .북한인권과 관련하여 개성공단 노동자 인권 현황 및 탈북 여성 인권 상황을 파악하기 위하여 통일부, 외교통상부, 통일연구원과 협의
 - .재외 탈북자 인권 개선 방안 및 새터민 입국과정의 인권 개선 방안을 모색하기 위하여 외교통상부, 국가정보원, 경찰청 등과 협의
 - .군내 자살처리자에 관한 법제 개선 방안, 원폭피해자 인권개선 방안을 모색하기 위하여 교육인적자원부, 군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 대한적십자사 등과 협의
 - .군인복무기본법 제정안에 대하여 국방부와 협의
 - .인권NAP 권고안의 수용을 위하여 정부(청와대)와 협의 등

○ 평가

- 법령상의 인권정책관계자혐의회는 인권NAP와 같은 범국가적 차원의 사업을 위하여 구성된 측면이 있어 개최가 용이하지 않은 점이 있음. 그러나 인권 정책 업무 과정에서 정부와 시민사회 및 전문가들과 유기적인 정책 협의 네트워크를 구축하기 위해 노력하였으며, 2008년에 도 사회적 인권 포럼 역할을 강화할 필요가 있음.

3) 인권 NAP 권고안 이행 점검

O 성과

- 2007. 5. 정부(법무부)가 '2007-2011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확정
- 정부의 인권NAP 수립과정을 모니터링하고 정부(법무부)의 인권NAP 안을 항목별로 분석함.
- 분석결과 약 73%의 사항이 반영(수용 49%, 일부수용 24%)

O 평가

- 인권NAP가 수립되는 과정에서 법무부에 협력.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였으나 법무부가 일방적으로 진행함.

- 향후 법무부에 의한 NAP 이행 점검 결과를 공유하고 확인하는 적정 한 방법을 강구할 필요가 있음.

4) 대통령 특별 보고

O 성과

- 위원회 설립후 6년간 활동상황, 우리 사회의 인권현안 등을 보고(8월)

○ 평가

- 대통령께 위원회 활동성과와 인권상황에 대해 적기에 보고함으로써 인권에 대한 인식을 새롭게 하고, 적극적 지지를 이끌어내는 계기 마 련
- * 청와대 브리핑 요약(2007. 8. 21.)
 - 국가인권위 활동은 우리 사회에 인권 기준의 틀을 제시하고, 국가기 관의 제반 업무에 인권개념을 자리잡게 하는 데 크게 기여함
 - 우리나라가 경제선진국으로서 뿐만 아니라 인권선진국으로서 국격 (國格)을 높이는 데 기여함.

5) 실태조사 총괄

O 2007년도 인권상황 실태조사 과제 추진 현황

계약명	담당부서 담당자	계약상대방	계약기간	계약금액	검수	보고서 발간
인권친화적 초중등 인권교육 체계화 연구	학교교육팀 김재석	경인교대	2007.5.10 ~ 8.9	30,000,000	완료	완료
노동사건에 대한 형벌적용 실태조사	인권연구팀 김태영	새날	2007.5.11	19,692,260	완료	수정중

수사, 재판, 형집행과정에서의 장애인 차별실태조사	장애차별팀 김정학	한남대학교	2007.5.10 ~ 12.3	29,900,000	완료	수정중
빈곤층아동급식제도 실태조사	인권연구팀 김화숙	한국보건사회 연구소	2007.5.10 ~ 11.9	30,000,000	완료	완료
새터민 정착과정실태조사	정책총괄팀 조영국	이화여대	2007.5.10 ~11.9.	29,992,000	완료	완료
재판과정에서의 국제인권기준 적용연구	정책총괄팀 윤명석	전남대학교	2007.7.16 ~ 11.15 .	14,927,490	완료	수정중
경찰관서 인권상황 평가지표 개발연구	침해구제1팀 장영아	한국형사정책 연구원	2007.5.7 ~ 12.21 .	30,000,000	완료	수정중
공적개발원조정책의 문제점과 수혜국의 인권증진에 미치는 영향	국제인권팀 오병훈	한국인권재단	2007.5.8 ~ 12.21 .	20,000,000	완료	수정중
유통업 여성비정규직 차별 및 노동권 침해 실태조사	신분차별팀 강을영	한국노동사회 연구소	2007.7.11 ~ 12.10 .	31,940,000	완료	수정중
청소년 미혼모의 교육권과 학습권 인권실태조사	광주지역사 무소	서울여자대학 교	2007.7.16 - 12.15 .	19,909,560	완료	수정중
자유권실현현황과 방향정립에 관한 실태조사	정책총괄팀 이발래	건국대학교	2007.7.16 - 12.15 .	29,534,560	완료	수정중
노인복지서비스에서의 노인건강권 보장 실태조사	인권연구팀 손두진	시민건강증진 연구소	2007.7.20 ~ 12.19 .	25,000,000	완료	수정중
아동권리협약과 소년사법 연구	정책총괄팀 진수명	동아대학교	2007.10.1 ~ 12.31 .	10,000,000	완료	수정중
사회권 지표개발을 위한 기초연구	인권연구팀 심광진	서강대학교	2007.11.21 ~2008.3.20.	29,000,000		

- 2007년 인권상황 실태조사는 3억5천만원의 예산으로 14개 과제 수행
- 2007. 12. 31. 기준, 총 14개 과제 중 13개 과제가 계약기간 내에 최종보 고서 제출(2008. 3. 종료 예정 1과제)

○ 평가

- 2007 인권상황 실태조사는 다른 해보다 더욱 실태조사 결과의 활용을 강조하여 과제수행자 선정
- 수행과정에서 과제 담당자에게 관리 철저의 요청 공문 수회 발송
- 개별과제 담당자와 확인하여 실태조사 과제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쟁 점 개발 요청

- 홍보협력팀과 협조하여 실태조사 결과 활용방안 검토중
- ※ 실태조사과제의 관리 철저로 소기의 성과 획득
- 다만, 과제를 선정하는 절차가 지연됨에 따라 발주가 늦어져 연말에 종료 시기가 집중된 문제점이 있고, 한 과제는 종료시점인 11월말에 과제를 시작하여 사고 이월 발생

6) 위원회 T/F 운영 총괄

- O 2007년 TF 운영현황
 - 국제협력팀 (2007. 2. ~ 12월)
 - 인권교육종합계획수립팀 (2007. 2. ~ 2008. 2)
 - 차별판단지침작성팀 (2006. 4. 26. ~ 2007.12)
 - 범죄피해자인권보호팀 (2006. 7. 14. ~ 2007.12)
 - 정신장애인 인권 국가보고서팀 (2007.11.~ 2009년6월)

○ 문제점

- 다른 국가기관의 경우 TF 예산을 편성하는 대신 필요한 경우 기본사업 비.인건비 및 예비비를 활용하여 TF를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는 바, 예산 편성 지침상 집행계획이 불확실한 TF 예산을 별도 편성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는 지적이 있었음.
- 향후에는 체계적이고 심도있는 연구를 통해 합리적 대안을 제시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는 인권현안의 경우에는 주요사업비로 예산을 편성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7) 자문위원회 운영

O 성과

- 제2기 정책자문위원회 구성 : 정책자문위원 34명, 임기 2년(2007. 11.

26. ~ 2009. 11. 25.)

- 제2기 정책자문위원 위촉식 및 제1차 회의 개최(2007. 11.)

O 평가

- 제1기 정책자문위원회에 비하여 다양한 인적 구성, 많은 숫자의 자문 위원으로 구성되어 여러 분야에 대한 자문위원들의 의견을 들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 다만, 자문기구로서의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기 위하여, 전체 회의 개최 일정의 확대 혹은 개별 현안에 대한 수시 자문을 할 수 있는 방법 모색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됨.

8) 인권위원 워크숍

O 성과

- 국가인권위원회 워크숍 실시(5월): 운영지원팀 주관
- 국가인권위원회 워크숍 실시(11월)
 - . 차기정부 주요 인권정책 방향, 상반기 워크숍 결과에 대한 추진상황 보고 청취, 기타 정책 제안 등 논의

O 평가

- 위원회의 운영 방향 및 실적에 대한 중간점검의 기회가 되는 점과 향후 추진할 인권정책에 대해 논의할 수 있다는 의미를 부여할 수 있으며, 내년에도 지속 추진 필요

9) 권고사후관리업무

O 성과

- 권고 사후 관리 실태를 분석하고 개선 방안을 검토한 결과 권고사후 관리지침(위원회 예규 제12호)을 수립하여 업무 방식을 체계화하였음. - 청와대 민원제도개선협의회를 적극 활용하여 장기간 지연된 주요 제 도개선 권고의 이행이 이루어졌음.

O 평가

- 인트라넷시스템 등의 보완이 지연되었음.
- 권고 이행 협의, 조정을 위한 정책협의가 별도로 기획, 가동되지 못하였음.
- 시스템을 조속히 정착시키고, 향후 위원회 차원에서 권고 이행 협의 과제를 적극 발굴하여 권고 영역별, 부처별로 협의할 필요가 있음.

3. 외부환경 동향 분석

가. 새정부 출범에 즈음한 국내외 인권 동향

- 참여정부 5년간 과거 권위주의 시기 발생한 인권 침해사건의 진상규명 및 주요 국가권력기관의 과거사청산활동, 사회보호법 폐지, 양심적 병역 거부자 등에 대한 대체복무제 도입, 실질적 사형폐지국가 진입, 공판중심주의의 실현을 위한 형사소송법 전면개정 등 자유권 분야의 인권 보장이 강화되었음. 또한, 제1차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인권NAP) 수립, 장애차별금지법의 제정, 차별금지법 입법 추진 등 차별시정 법제화를 통해국가적 차원의 인권정책 및 차별금지법제의 정비 노력이 이루어져왔으며, 여성.장애인.아동.노인.이주민 등 사회적 약자, 소수자의 인권 및 복지분야에서도 지속적인 개선 노력이 있어 왔음.
- 그러나 자유권 분야에서도 국가보안법.보안관찰법과 같은 반민주적 법령의 개폐가 온전히 이루어지지 않았고, 사형제의 폐지도 적극적으로 실현되지는 못한 한계가 있음. 또한 최근 한미 FTA 추진 등에 따른 사회갈등이 심화되면서 각종 집회 및 시위에 대한 경찰의 과도한 규제 및 폭

력 사용이 문제가 되어 왔으며, 삼성의 검찰 매수 의혹 등에 따른 국민의 사법 신뢰도가 매우 낮은 상황임.

- 사회권 분야와 관련하여, 신자유주의적 세계화 및 이에 적극 부응해 온 정부의 경제사회정책이 사회적 양극화를 심화시켰고, 이로 인해 청년실 업과 조기은퇴자의 증가, 비정규직과 영세자영업자의 양산 등 고용과 분배의 질이 악화되었으며, 사교육시장의 팽창과 부동산 가격의 폭등 등으로 인해 다수 서민과 빈곤층 등 사회적 약자들의 삶의 질과 실질적 인권 상황도 함께 악화되어 왔다는 비판이 제기되어 왔음.
- 국제적으로는 유엔인권위원회가 유엔인권이사회로 승격, 개편되어 국제 사회에서 인권 의제의 중요성이 더욱 커졌고, 반기문 유엔사무총장을 배 출한 우리나라도 국제사회에서 인권선진국의 일원으로 역할해야 한다는 대내외적 기대가 높아졌음. 한편, 테러리즘 및 반테러전쟁 등으로 인해 안보와 자유권적 인권에 대한 논쟁이 계속되는 한편, 세계화시대의 다문 화주의와 사회통합의 과제가 국제적인 주요 의제로 부상하였으며, 지구 온난화에 대응한 기후환경협약의 갱신, 글로벌 컴팩 등 초국적 기업의 활동과 인권 책임성에 대한 국제적 논의 흐름도 최근 주목할 사안임.
- 한편, 새정부의 "선진화", "실용주의" 방향에 따라 경제, 교육, 산업, 문화 등 여러 부문에서 규제의 혁파가 예상되고, 이에 따라 많은 법령이 개정 이 뒤따를 것임. 한편 법치와 원칙의 존중을 강조함으로서, 공권력에 대한 시험이나 도전 등에 대해 단호한 처리가 예상됨.

나. 아동, 청소년, 학생 인권 동향

- O 참여와 자율 중심의 아동인권 보호 방안 마련의 필요성
 - 아동권리협약 채택과 가입 이후 아동인권보호 및 증진에 대한 국제적.국 내적 요구가 증대되고 있으며, 특히, 아동의 생존, 보호, 발달, 참여의 권리가 강조되고 있음
 - 이에 따라 정부도 '참여와 자율'을 중심으로 아동정책을 설정하였으나,

- 아동정책관련 전담기관의 부재와 부처간 정책추진 방향의 혼선으로 인해 종합적.체계적 정책추진에 한계가 발생되고 있음
- 이러한 상황에서 정부의 아동정책에 대한 상시적 모니터링 및 협의.지원을 통해 국제기준에 부합하는 아동인권보장을 위해 국가인권위원회의 능동적 역할이 필요함
- 특히, 위원회 차원의 유기적.체계적 아동인권증진 방안을 마련.추진하여, 궁극적으로는 우리 정부가 국제기준에 부합하는 아동인권 정책을 추진 할 수 있도록 독려하고 지원할 필요가 있음
- 학생인권 문제의 사회적 이슈화 및 실질적 개선 방안 강구 필요
 - 2005년 학교에서의 과도한 두발제한과 체벌 문제를 중심으로 학생인권 에 대한 문제가 사회적 이슈로 등장하였고, 교육부 등 관련부처에서 학생인권 보장을 강화하기 위한 각종 정책을 실시함
 - 그러나 2006년 중고등학생 인권상황 실태조사 등을 통해 우리위원회의 두발제한 개선권고(2005) 이후에도 일선 학교 현장에서의 학생인권의 실 질적 개선은 여전히 미흡한 것으로 드러남
 - 따라서 학생인권법의 법제화 검토와 각 시도교육청, 각급 학교 등과의 정책협의 등의 지속적 개최 등을 통해 학생인권의 실질적 개선을 도모 할 필요가 있음
- O 학생선수 인권 증진을 위한 지속적인 실태파악 및 사회적 공론화 방안 강구 필요
 - 2007년 위원회의 실태조사 결과발표 및 학생선수 인권 개선 권고, 국회의 「학원스포츠 정상화를 위한 촉구 결의안」통과 등을 계기로 교육부와 문화관광부를 중심으로 학생선수의 인권 증진을 위한 정책적, 제도적 개선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상황임.
 - 2008년에도 학생선수 인권 증진을 위한 주요 의제를 지속적으로 발굴, 공론화하여 실질적인 문제 해결을 선도할 필요가 있음. 해외 선진국의 정책 및 국제기준 등에 대하여도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해 국내 소개할 필요가 있음.

다. 정보인권 관련 동향

- 우리나라는 정보통신과 과학기술의 발달로 각 분야에서 정보화가 급속히 진행되고 있음. 이러한 정보화를 통해 각 분야에서 개인정보의 집적 및 유통이 증가되고 있는 추세임. 그러나 개인정보보호를 위한 일원화된 법제가 부재하고, 공공부문 및 민간부문을 아우르는 통합된 보호체계가 구축되지 않아 여러 분야에서 발생하고 있는 개인정보 침해를 일관성있고, 통합적 인 시각에서 보호.구제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었음.
- 국제적으로는 공공.민간부문을 통합한 입법 및 관리.감독이 일반적인 추세이며,
 - 영국, 프랑스 등 유럽의 대부분의 국가 및 호주, 뉴질랜드, 캐나다 등
- 특히 유엔 개인정보보호가이드라인(1990), 유럽연합의 개인정보보호지침 (1995), 유럽평의회의 개인정보보호협약 추가의정서(2001) 등 국제기준에 는 독립적인 개인정보보호기구의 설치를 강조하고 있음
- O 최근 우리나라에서는 몇몇 국회의원에 의해 '개인정보보호법안'이 제안 되었으나 진전이 없는 상태임.
 - ※ 더불어 '행정정보공동이용법안' 제정안이 국회에 계류중임('07년)

4. 주요업무

가. 중점사업

1) 이동 청소년 인권 보호 및 증진 방안

□ 배경 및 목적

- O 아동.청소년 관련 인권정책 업무의 유기적 체계적 추진을 통해 국제인권기 준에 부합하는 아동인권 보장 도모
- O 아동.청소년 인권 개념의 발전에 부응하는 참여와 자율 중심의 학생인권 보호 및 증진 체계 마련

□ 사업 내용

- O 아동.청소년 인권보호팀의 구성 및 운영
 - 인권정책본부 및 인권교육본부 등 아동인권 보호 관련 부서 중심의 프로 젝트팀의 구성 및 운영
 - 아동인권 정책 추진 방향 수립 및 부서별 주요 업무 조정, 월별 추진 상황 점검 등 아동인권 보호업무의 유기적 체계적 추진
- O 초중등학생 인권 보호 및 증진을 위한 정책검토 추진
 - 학생인권법안(초중등교육법 개정안)에 대한 의견표명 검토
 - 체벌, 두발단속, 학생자치 등에 관한 개선 방안 검토
 - 교육부 및 각 시도 교육청과의 인권정책관계자협의회 실시

□ 기대 효과

- O 종합적.체계적인 정책업무의 추진을 통해 아동인권의 실질적 보장 제고
- O 학생인권 문제의 근본적 해결(법제화 등)과 일선 학교에서의 실행 방안 강 구를 통한 학생인권의 실질적 개선 효과

□ 추진 일정

- O 아동청소년 인권보호팀의 구성 및 운영
 - 프로젝트팀의 구성(1월)
 - 사업 추진상황 점검 및 사업 내용 및 일정 조정 회의 실시(매월)
 - 아동청소년 인권보호 사업 종합 결과보고서 작성(12월)
- O 초중등 학생인권 보호 및 증진을 위한 정책검토
 - 학생인권법안(초중등교육법, 교육기본법)에 대한 의견표명 검토(3월)
 - 체벌, 두발제한, 학생자치 보장 등 개선 방안 검토(5월 중)
 - 교육부, 각 시도교육청과의 인권정책관계자협의회(4월, 9월)

□ 소요예산

- O 아동청소년 인권보호팀의 구성 및 운영
 - 400만원(매월 인권보호팀 회의 개최, 전문가 의견 수렴 등)
- O 초중등 학생인권 보호 및 증진을 위한 정책검토
 - 600만원(아동인권전문위원회 개최, 전문가 자문, 인권정책관계자협의회 실 시 등)
- ※ 담당자: 정책총괄팀 김민태

2) 학생선수 인권 증진

- 학생선수 인권 보호 및 증진을 위한 정책 권고(2007. 12.) 추진 과정에서 확인된 주요 정책 개선 과제에 대하여 지속적으로 실태를 파악하고, 효과 적인 정책 대안을 모색하고자 함.
- O 해외 선진국의 학원스포츠 정책 및 인권 가이드라인 등을 국내 소개하는 한편, 주요 정책 의제들에 대하여 실태조사, 연속 기획 토론회, 사회적 캠 페인 등을 통해 사회적 관심과 인식을 제고

□ 사업 내용

- O 중도 탈락 학생선수의 인권 개선 방안 검토(실태조사)
 - 부상, 질병, 대회 성적 부진 등으로 인해 중도 탈락한 학생선수가 학습 재 진입 및 진학, 사회진출 과정에서 겪는 소외와 배제 실태 연구
 - 하반기 중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하고, 정책 개선 과제를 도출
- 전국(소년)체전 개선 방안 검토(해외 선진사례 연수)
 - 전국(소년)체전 및 학교운동부 시스템 등의 바람직한 개선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미국, 캐나다, 일본 등 선진국의 정책 및 사례 연수프로그램 기획
 - 연수 이후 토론회, 국제심포지엄 등과 연계하여 성과를 극대화
- O 학생선수 인권 증진을 위한 연속 기획 토론회 개최
 - "학생선수 성폭력 실태 및 개선 과제" 등 학생선수 인권 관련 주요 의제를 선정하여 연속 기획 토론회를 실시(연3회)
 - 학생선수 인권에 관심이 높은 언론사 등과 공동으로 사업을 기획, 협의하여 사회적 공론화
- O 학생선수 인권 증진을 위한 국제심포지엄 개최
 - 해외 선진국의 정책 사례 및 국제 가이드라인 등의 인식 제고를 위한 국 제심포지엄 개최
 - 주제 : "스포츠와 인권-학생선수 인권을 중심으로"(가안)
- O 학생선수 인권 증진을 위한 사회적 캠페인 추진
 - 사회 일반의 인식을 제고하기 위하여 대중적인 스포츠 스타 등이 참여하는 사회적 캠페인 기획, 추진
 - 사업 기획 단계에서부터 국민체육진흥공단 등 관계기관과 협의하고, 적절 한 언론 홍보 방안을 수립하여 사업 효과 극대화

□ 기대 효과

○ 학생선수 인권에 관한 지속적인 연구와 실태 파악을 통해 정책 과제를 도출하고, 관련 토론회, 협의회, 국제심포지엄 등을 통해 바람직한 정책 대안 모색 및 사회적 공론화

□ 추진 일정

- 중도 탈락 학생선수의 인권 상황 실태조사 : 2008. 4. ~ 11.
- 전국(소년)체전 개선 방안 검토(해외 선진사례 연수): 2008. 5.
- O 학생선수 인권 증진을 위한 연속 기획 토론회 : 2008. 4. 7. 12.
- O 학생선수 인권 증진을 위한 국제심포지엄: 2008. 10.
- 학생선수 인권 증진을 위한 사회적 캠페인 : 2008. 7. ~ 12.

□ 소요예산

○ 실태조사 : 4,000만원

O 해외 연수 : 2,000만원

○ 연속 기획 토론회 : 600만원(200×3회)

○ 국제심포지엄: 1.500만원

※ 담당자: 정책총괄팀 서현수

3) 정보인권 보호

□ 배경 및 목적

- O 정보관련 분야와 과학기술의 발달로 정보화가 급속도록 진전되고 있는 반면 개인정보 보호 체계가 이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어 개인정보 침해가 우려됨.
- O 따라서 우리나라 정보화 수준과 국제적 수준에 걸맞는 개인정보보호 체계 확립과 공공부문 및 민간부문을 아우르는 통합적 정보 보호 체계 확립이 필요함

□ 사업 내용

- O 우리나라 개인정보 보호체계의 점검 및 세계적 동향 파악
 - 위원회 접수되고 있는 정보인권 관련 사건 분석
 - 정보인권 관련 침해우려 분야 발굴.구제 및 실태파악

- . 건강보험정보, 금융신용정보, 행정정보 등의 이용 및 유출 실태 파악(예시)
- . 인터넷상의 프라이버시 침해 개선 방안 검토(예시)
- O 국내 정보인권 담당부서와 긴밀한 협조(정보통신부, 행정자치부, 한국정보보 호진흥원, 경찰청 등)
- 공공부문 및 민간부문을 아우르는 통합 개인정보 보호 법안 제안(장기 과제)
- 위 사업의 효과적 추진을 위한 '정보인권 프로젝트팀' 구성 및 운영

□ 기대 효과

O 최근 중요시되고 있는 '정보인권'에 대해 공론화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하고 장기적으로 선진국형 개인정보 보호 체계 구축의 기반 조성

□ 추진 일정

- O '정보인권 프로젝트팀' 구성 및 운영: 2월말(분기별 운영)
- O 독일, 프랑스, 영국, 미국, 일본 등 주요 선진국의 정보보호법령 번역(상반기)
- O 정보인권 관련 진정사건 분석(3월)
- 정보인권 관련 부서와 간담회(4월, 11월)
- 정보인권 관련 해외 실태파악(5 6월 중 실시)
- 정보인권 관련 실태조사(5월 10월)
- O 정보인권 관련 정책 과제 발굴(상시, 그리고 실태조사 자료를 바탕으로 발굴)

□ 소요예산

- O 관련부처와 간담회 2회 실시: 60만원
- 정보인권 프로젝트팀 운영 4회: 120만원
- O 번역료: 600만원
- O 자료 발간비: 100만원
- 실태조사 실시(1건) : 3,000만원
- O 해외 사례 연구 : 2,000만원

※ 담당자: 정책총괄팀

4) 북한 인권

□ 배경 및 목적

- O 2003. 4. 임시국회 법사위에서 국가인권위원회의 북한인권 연구사업 부재에 대한 비판 및 사업의 필요성 제기
- 2006년 12월 북한인권에 대한 국가인권위원회의 입장 표명
- 위원회 입장 표명을 토대로 차기 정부 출범에 따른 대북정책 및 대북인권정 책 변화 대비
- 북한인권 관련 사항, 즉 재외 탈북자 인권, 새터민, 국군포로.납북자.이산가 족 문제, 북한내부의 인권에 대한 중장기 사업방향 설정

□ 사업 내용

- O 재외 탈북자
 - 재외 탈북자의 현황 파악(몽골, 중국, 라오스, 캄보디아, 베트남, 태국, 미 얀바 등)
 - 탈북자 지위문제, 강제송환 문제 등에 대한 검토
 - 탈북자의 국내 입국 과정의 인권침해 문제 해결방안 모색
- Ο 새터민
 - 입국, 교육, 정착과정에 대한 실태조사
 - 새터민 직업실태 파악 및 정책권고 검토
 - 새터민 자녀의 교육실태 파악 및 정책권고 검토
 - 새터민 지원대책 검토. 중앙 및 지방자치단체의 지원 현황 파악
 - 새터민 정착실태. 한국사회 정착과정에 대한 심리 및 의식 조사
- O 납북자, 국군포로, 이산가족 문제
 - 현황 파악 및 국외 비교사례 검토를 통한 해결방안 모색
 - 정부에 대한 정책권고 검토
- O 보편적 국제인권규범에 근거한 북한인권 연구활동
- O 국제협력 네트워크 강화

- 국내외 NGO에 대한 북한인권 동향 모니터링
- 관련 기구 및 전문가의 의견 수렴
- 국제네트워크를 활용한 직.간접적 활동

□ 기대 효과

- 북한인권 관련 사항에 대한 실효적 정책방안 모색 가능
- O 북한인권 관련 현황파악
- O 북한인권 국내외 단체 및 전문가와 협력관계 구축
- O 북한인권 관련 정책권고 추진

□ 추진 일정

- 북한인권(새터민, 인도주의적 사안문제 등) 관련 실효성 있는 연구조사 및 실태조사 착수
 - 탈북 청소년 교육 관련 실태조사(4월)
 - 재외탈북자 인권 실태조사(중국, 라오스, 캄보디아, 베트남, 미국, 유럽 등),
- O 국제인권 기구와 연대를 통한 북한인권 관련 협력관계 활성화
- 국내외 비정부기구(NGO와 INGO), 북한 및 인권 전문가들과 협력관계 활성화(1월 영국출장 예정, 북한인권국제회의 참석)

□ 사업구분

- O 실태조사
 - 탈북 청소년 교육 실태조사 (1분기)
 - 국군포로.납북자 등 인도적 사안에 관련한 문제에 대한 연구 및 실태조 사(3-4분기)
- O 방문조사
 - 새터민 관련 시설 등에 대한 방문 및 조사, 하나원, 한겨레 학교 등(1-2-3분기)
 - 재외탈북자 지원 단체 및 조직의 현황 파악, 해외출장(1-2-3분기)
 - 새터민과 북한인권 전문가 간담회, 토론회 개최(연중)
 - ex) 새터민 관련 전문가 간담회 개최(10회)

새터민 정착단계의 생활 연구, 전문가 토론회 개최(4회)

- 취약 새터민의 인권상황에 대한 실태조사(1-3분기)
- 국군포로.납북자 등 인도적 사안의 문제해결을 위한 실태조사 및 연구조 사 (3-4분기)

O 연구조사

- 국제회의 참관 및 국제기구 모니터링(2-3-4분기)
- 국군포로.납북자 등 인도적 사안의 문제 (3-4분기)
- 사회주의 체제전환국(중국, 몽골, 베트남, 동구유럽)의 인권상황 및 정책 변화 연구(2-3분기)
- 주요 인권조약기구에 북한이 제출한 보고서 및 심의 내용 번역
- O 토론회 및 간담회
 - 연구조사, 실태조사, 북한인권 모니터링을 위한 토론회 및 간담회 상시적 개최 추진(연중)
- O 국제심포지엄 개최
 - 북한인권 국제심포지엄 개최(4분기)
 - 북한인권 국제심포지엄 관련 전문가 간담회(3분기)

□ 소요예산

- O 일억사천오백만원
- ※ 담당자: 정책총괄팀 조영국

나. 일반사업

1) 법령, 정책 검토 강화 및 모니터링 체계화

- O 입법예고기간 확대에 따른 법령 검토 방식 개선
 - 기존 20일의 짧은 입법예고기간으로는 예비검토, 본안검토, 위원회상정 시까지 적시에 의견을 내기가 곤란했으나, 금년부터 예고기간이 40일로 확대될 예정임.
 - 부처별 모니터링 체계화시 40일내 위원회 상정이 가능한 구조로 검토방 식의 개선 필요
- O 모니터링시 외부역량 이용
 - 부처별 담당제가 내부 인력만으로는 한계가 있으므로, 효과적 운영을 위하여 외부인(대학생 등)을 모니터링 요원으로 이용하는 방법 강구
 - 주요 인권시민단체와의 수시 간담회
- O 법령. 정책 검토에 관한 허브 기능
 - 자유권 이외의 법령이라도 원칙적으로 법령에 대한 총괄적 기능수행, 타 부서 정보제공 등 역할 필요
 - 법령관련 검토시의 검토기준, 국제적 기준 등 내부 역량 개발의 중심적 역할 담당
 - 입법예고기간 내(40일) 검토 원칙화
 - 법령, 정책 검토에 관한 허브 기능
- 2007. 기실태조사 과제의 정책권고화
 - 재판과정에서의 국제인권기준 적용연구
 - 새터민 정착과정 실태조사
 - 아동권리협약과 소년사법 연구 등

2) 법원, 헌재에 대한 의견 제출 활성화

□ 배경

- O 2007년 들어 위원회는 법원, 헌재 등 의견 제출의 필요성에 대해 절감하고 중점 사업으로 추진하였음
- 그러나 재판과정에의 접근이 재판의 비공개성, 사후 보도, 헌재 및 법원의 의견 요청 사례의 전무, 내부 역량의 미흡 등으로 적절히 대응하지 못함
- 위원회의 사법개입의 활성화를 위해 법원.헌재.법조단체 등과 정례적 협의 채널을 구축, 의견 제출을 위한 방법론의 개발이 필요함

□ 사업내용

- 재판과정에 국제인권기준의 적용연구(2007년 실태조사) 최종발표회(법원 및 헌법재판소, 법조단체 관계자 초빙 등 대대적 홍보) 개최
- 위원회, 대법원.헌법재판소, 학계, 법조계, 인권단체 등의 관계자가 포함된 방법론, 과제 개발, 평가를 위한 토론회 년 2회 개최
- 주요 인권 관련 재판사건의 위원회 보고 정례화

□ 기대효과

- O 법 제28조 소정의 법정업무의 적절히 수행 및 국제인권기준에 관한 법정조 언자의 역할 수행
- O 위원회의 위상 강화 및 정립

□ 추진일정

- 재판과정에 국제인권기준의 적용연구에 관한 최종발표회 개최(2월)
- O 방법론, 과제개발을 위한 토론회 개최(3월)
- O 법원, 헌재, 변협, 민변, 학계, 시민단체 등 관계자와 의견제출 과제선정을 위한 간담회 실시(5월, 6월, 8월, 9월)
- O 사업 평가 및 활성화를 위한 토론회 실시(11월)

□ 소요예산

- O 토론회, 간담회 등 비용(450만원)
- ※ 담당자 : 정책총괄팀 이발래, 윤명석

3) 자유권 분야 국제인권규범의 국내 이행 강화

□ 배경

- 직제령 개정안에서 자유권 분야의 국제인권규범의 국내 이행 강화 업무가 정책1팀 업무로 개편됨에 대비하여 관련 업무 계획을 수립함.
- 또한, 직제령 개정과 별개로 주요 정책 검토 과정에서 인권 조약 관련성 검토를 활성화하는 등 업무의 국제성을 제고하고자 함.

□ 사업내용

- O 자유권 협약, 고문방지협약, 강제실종협약에 대한 체계적 모니터링 및 국내 이행 강화
 - 관련 정부보고서의 검토 및 의견표명
 - 관련 조약감시기구 회의 참석 및 모니터링 실시
 - 고문방지협약 선택의정서 가입, 비준을 위한 후속 조치 기획
 - 위 협약들 관련 주요 문헌 및 자료 수집, 분석, 번역 등
- 주요 정책 검토 과정에서 인권조약 관련성 검토 철저
 - 해당 조약의 조문 및 조문 해석에 대한 국제적 경향 파악
 - 필요시 해외 전문가에게 자문의뢰(해당 조약별 주요 참고서적 수집, 주요 UN 특정기구 및 국제 NGO 전문가 네트워크 구축)
- O 자유권실현현황과 방향정립에 관한 실태조사 결과 분석 및 활용
- ※ 추진일정 및 소요예산은 추후 보완

4) 인권 포럼 역할 강화 및 유기적 정책 네트워크 구축

□ 배경 및 목적

○ 정책 추진 과정에서 관계기관 및 단체, 전문가 등과 적극적인 의사소통과 토론, 협의의 장을 마련함으로써 위원회 권고의 실효성 및 수용도를 제고하 고, 위원회의 사회적 인권 포럼 역할을 강화하며, 정부 및 시민사회와의 정 책 협력 네트워크를 구축하고자 함.

□ 사업 내용

- O 인권정책관계자협의회 개최, 활용
- O 법령, 정책 검토시 토론회, 간담회, 청문회, 공청회 등 적극 개최
- O 인권 관련 연구기관 및 전문가들과 상시적 네트워킹
- O NGO 등 인권현장 정기 방문 및 지속적인 교류.협력

□ 기대 효과

- 권고 등 정책 추진 과정의 절차적 정당성 및 실효성 제고
- 정부 및 시민사회와 다각적 협력체계 구축

□ 추진 일정

- O 연중 수시 추진
- O NGO 등 인권 현장 방문은 최소 분기별 1회 이상 추진

□ 소요예산

- 인권정책관계자협의회 : 2,500만원
- 토론회, 간담회, 청문회, 공청회 등은 개별 사업과제 예산에 포함
- 인권현장 방문 프로그램 : 400만원(100×4회)
- ※ 담당자: 정책총괄팀

5) 권고 사후 관리 시스템 강화

□ 배경 및 목적

○ 위원회 내부의 총괄 기능을 강화하고, 피권고기관과 적극적인 권고 이행 협의 방안을 마련하여 권고사후관리지침을 충실히 시행하고자 함.

□ 사업 내용

- O 권고 이행 현황 일제 파악 및 시스템 보완
- O 주요 영역별, 부처별로 권고 이행, 조정을 위한 협의회 개최
- O 권고 이행 현황 및 협의 실적 등 전원위 보고(상, 하반기 각 1회)
- O 청와대 민원제도개선협의회 등 참여

□ 기대 효과

- 권고 사후 관리 시스템의 정착 및 미이행 권고 과제의 이행 촉진
- 정부와 피권고기관에 대한 협상력 제고

□ 추진 일정

- O 권고 이행 현황 일제 파악 및 시스템 보완: 2008. 1.
- 권고 이행, 조정을 위한 협의 : 연중
- O 전원위 보고 : 2008. 1./ 7.

□ 소요예산

- 권고 이행, 조정 협의 : 1,000만원(인권정책관계자협의회 예산 활용)
- ※ 담당자: 정책총괄팀

6) 기타 주요 주관 업무

□ 실태조사 기획, 조정

- 2007. 11. 위원회 내부 각 부서와 외부에는 인권.시민단체와 정부 출연연 구기관 등에 대하여 2008 실태조사 과제 제안 요청
- 2008. 1. 상임위원회에 2008 실태조사 과제 보고 및 선정
- 2008. 2. 선정된 과제에 대하여 공고 및 적격자 선정심사
- 2008. 3. 과제 계약 수행
- 2008. 11. 수행된 과제 발표회 실시

□ 대통령 보고

- 대통령께 위원회의 성격, 활동상황, 인권현안 등을 보고함으로써 위원회 위상강화 도모 및 인권에 대한 인식 제고
- 일정: 5월경부터 추진
- ※ '06.'07년의 경우는 8월에 보고함

□ 위원회 T/F 운영 총괄

- O 2008년 TF 운영현황
 - 인권교육종합계획수립팀 (2007. 2. ~ 2008. 2)
 - 정신장애인 인권 국가보고서팀 (2007.11.~ 2009년6월)
 - ※ 08.01.03일 현재 2008년 TF 운영현황이며, 08.01.15일까지 각 부서에 추가 TF운영 계획을 제출받아 추진 예정
- O 예산현황

- 1034-301-210-01(일반수용비) : 14,527천원

. 인 쇄 비 : 4,927천원

. 자 문 료 : 3,600천원

. 운영경비 : 6,000천원

- 1034-301-240-01(업무추진비) : 1,200천원

O 향후추진계획

_	테스크포스팀	추진계획	팀별	취합	
---	--------	------	----	----	--

- 테스크포스팀 예산배정 08.01.30

□ 정책자문위원회 운영

- O 학식과 경륜이 풍부한 각계 인사들의 고견과 경험을 위원회 정책에 반영함으로써 정책의 실효성 제고 및 참여형 인권 정책 실현을 도모하고, 정책자문위원들에게 선행적(proactive)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인권 정책에 대한 지지 확보와 관심 제고
- 전체회의는 연 2회 개최(5월, 11월)를 원칙으로 함. 다만, 주요 현안 과제 발생 등의 필요한 경우 개최
 - 정책 수립 및 개선에 관한 토론 및 설문조사 실시. 인권위원회 현안, 워크숍 등에 자문위원 참여
- 소요예산 : 2,000만 원(1,000만 원×2회)

□ 인권위원 워크숍

○ 위원회 정책 역량을 강화하고, 인권현안 개선을 도모할 수 있는 인권위 원 워크숍 개최

- 실시방법: 연 2회(상.하반기)
- ※ 위 주관업무 중 일부는 직제령 개정 이후 새로운 업무분장에 따라 적절히 이관, 조정

5. 연간 추진 일정

시기		사업 및 과제	사업구분
	1월	- 아동청소년 인권보호팀 구성(매월 정기회의)	아동, 청소년 인권
		 차기 정부 출범과 북한인권 정책 과제와 전망, 전문가 간담회 개최 북한내부 인권, 새터민 교육 상황 파악(국정원, 하나원, 한겨레 학교 방문) 	북한인권
		- 권고 이행 협의 계획 수립	권고사후관리
		- 2008. 실태조사 과제 선정	실태조사
1분기		- 위원회 T/F 운영계획 파악 및 예산 배정	T/F 총괄
		- 새터민 직업 실태조사 관련 정책권고안 마련	북한인권
	2월	- '정보인권 프로젝트팀'구성 및 운영(2월, 5월, 8월, 11월)	정보인권
		- 2008. 실태조사 과제 공고 및 심사	실태조사
		- 학생인권법안(초중등교육법안)에 대한 의견표명 검토	아동, 청소년 인권
	3월	- 학생선수 인권 연속 기획 토론회(3, 6, 11월)	학생선수 인권
		탈북 청소년 실태조사북한내부 인권 상황 파악을 위한 토론회 개최	북한 인권
	4월	- 학생인권 보호 관련 인권정책관계자협의회 개최(교육 부, 각시도 교육청)	아동, 청소년 인권
		- 중도탈락 학생선수 인권상황 실태조사(4-10월)	학생선수 인권
		- 정보인권 관련부서와 간담회	정보인권
2분기		- 북한인권 동향파악을 위한 국외출장 - 탈북 청소년 관련 전문가 간담회	북한인권
		- 체벌, 두발제한, 학생자치 보장 등 개선 점검 및 실 질화 방안 검토	아동, 청소년 인권
	5월	- 학생선수 인권 관련 해외 선진 사례 연수	학생선수 인권
		- 정보인권 관련 해외 현지 방문을 통한 실태 파악(5-6 월)	정보인권

		- 정보인권 관련 실태조사 1건 발주(5-10월)	
		- 새터민 정착과정 관련 전문가 간담회	북한 인권
		- 법원, 헌재 의견 제출 관련 간담회(5, 6, 8, 9월)	법원, 헌재 의견 제출
		- 2008년 정책자문위원회 제1차 회의	정책자문위원 회
		- 인권위원 워크숍	인권위원 워크숍
	6월	- 사회주의 체제전환국의 인권상황과 정책 변화 연구, 토론회 개최	북한 인권
	7월	- 학생선수 인권 증진 사회캠페인(7-12월)	학생선수 인권
	/ Έ	- 북한인권 관련 국외출장(미국)	북한 인권
3분기	8월	- 새터민 정착과 적응; 지방자치단체의 지원 시스템을 중심으로, 토론회 개최	북한 인권
	0 01	- 학생인권 보호 관련 인권정책관계자협의회 개최(교육 부, 각시도 교육청)	아동, 청소년 인권
	9월	- 북한인권 동향 파악 국외 출장(베트남, 라오스, 캄보 디아)	북한 인권
		- "스포츠와 인권-학생선수 인권을 중심으로"국제심 포지엄 개최	학생선수 인권
	10월	- 북한인권 관련 국제심포지엄 개최	북한 인권
		- 정보인권 관련부서와 간담회	정보 인권
		- 정보인권 관련 실태조사 최종보고회 및 정책과제화 검토	정보 인권
4분기		- 국군포로, 납북자 문제 관련 전문가 간담회	북한 인권
	11월	- 2008년 정책자문위원회 제2차 회의	정책자문위원 회
		- 하반기 인권위원 워크숍	인권위원 워크숍
	12월	- 아동청소년 인권보호팀 사업 종합결과 보고	아동, 청소년 인권
		- 북한 인권 업무 종합평가	북한 인권

2008년 국제인권팀 업무계획(안)

- 1. 일반 현황
- 2. 2007년 업무 평가
- 3. 외부환경 동향 분석
 - 가. 유엔인권이사회(HRC) 동향
 - 나. ICC 동향
 - 다. APF 동향
 - 라. NI 설립 동향
- 4. 주요업무
 - 가. 중점사업
 - 1) 국제심포지엄 개최: 다문화사회에서 인권 보호 및 증진 '선언' 공표
 - 나. 일반사업
 - 1) 국제인권기구(UN OHCHR 등)와의 실무 협조 체제 구축
 - 2) 유엔인권이사회 발언을 위한 전략적 의제 개발
 - 3) ICC, APF에서 위원회의 지도적 역량 강화
 - 4) 아태지역인권보호 메카니즘의 기반구축
 - 5) NI 설립을 검토하는 국가 기술지원 및 직원초청연수
 - 6) 국제기구파견
 - 7) 기타 주요 주관업무
 - 국제협력TF 운영
- 5. 연간 추진 일정

2008년 국제인권팀 업무계획(초안)

1. 일반 현황

구 분	정원(현원)	업 무 분장			
국제인권팀 (2007)	6(5)	 국내인권조약·기준 및 국제인권기구 권고사항의 조사·분 석과 국내이행에 관한 사항 국제인권조약에의 가입 및 그 이행에 관한 연구와 의견 표명 인권관련 국제기구 및 외국의 인권기구·단체 등과의 교 류·협력 			
국제협력팀 (2008)	6(5)	1. 인권관련 국제기구 및 외국의 인권기구·단체 등과의 교류·협력 2. 인권관련 국제기구의 업무 및 활동에 대한 모니터링 (2008년 신규직제령에 의거함)			

2. 2007년 업무 평가

가. 국제인권규범의 국내적 이행 강화

1) 정부보고서 검토 및 의견표명

- 추진계획: 정부보고서 심의를 체계적으로 준비하기 위한 국내외적 모니터 링 체계 구축
- O 추진실적: 인종차별철폐위원회(8월) 및 여성차별철폐위원회(7월) 정부보고

서 심의 참가 및 위원회 의견 발표

○ 평가: 정부보고서 검토에 대한 위원회 의견을 조약감시기구에 적극적 개 진함으로써 국제기구에서의 논의되고 있는 국가인권기구의 연관성 및 위 상제고 달성, 독립성 확보 및 정부와 조약감시기구간 건설적 대화 도모

2) 6대 인권조약의 최종견해와 국내법의 비교를 통한 정책권고

- O 추진계획: 국제인권 현안에 대한 국제심포지엄 개최
- O 추진실적:
 - 여성차별철폐협약 선택의정서 국내이행방안 관련 세미나 개최
 - 자유권규약 최종견해 이행 방안 관련 세미나 개최
 - 장애인권리협약 이행 방안 관련 세미나 개최
 - 여성차별철폐위원회 정부보고서 심의 참가, 심의시 발표
 - 인종차별철폐위원회 정부보고서 심의 참가, 정보보고서 제출 및 심의시 발표
- 평가: 조약감시기구에 적극적 참여를 통한 국제기구에서의 논의되고 있는 국가인권기구의 연관성 및 위상제고 달성, 독립성 확보 및 정부와 조약감 시기구간 건설적 대화 도모

3) 미가입 협약 및 성안중인 인권협약에 대한 가입 촉진

- O 추진계획:
 - 미가입 협약 등에 대한 가입 촉진 및 후속조치
 - 성안중인 인권협약 국제회의에 적극 참여를 통한 모니터링
- O 추진실적:
 - 미가입 협약인 강제실종협약 관련 세미나 개최 및 가입권고 (12월말 현재 상임위 심사후, 전원위 심사의결 예정)
 - O 평가:
 - 강제실종협약 관련 쟁점에 관한 세미나 개최를 통해 학계, 실무계 등의 관심 촉구 및 정책권고 기초 마련
 - 장애인권리협약 해설집을 유관기관(정부기관, 시민사회)에 배포함으로써

협약에 관한 국내적 관심유발

4) 국제인권규범의 확산 및 보급

O 추진계획:

- 중요한 국제인권법 관련 문서를 번역, 보급하며, 6대 인권협약에 대한 해석의 지침이 될 수 있는 문건을 우선 선정 발간

O 추진실적:

- '06 6대 인권협약 일반논평 및 일반권고 번역집 발간 및 유관기관 배포
- '국가예방기구 설립과 지정'에 관한 APT 자료 번역 감수중
- 건강과 인권건강과 인권에 관한 25가지 질문과 답변 번역 완료
- Making Standard Work 번역 완료
- 평가: 인권조약의 구체적 내용에 대한 번역집 발간을 통해 국제인권규범 의 구체적 이행 담보

나. 국제인권법적 접근방법이 필수적인 정책과제 개발

1) 외국인관련 인권정책 검토

○ 추진계획: 외국인의 인권보호를 위한 외국인 기본법제정/헌법개정 등 방 안에 대한 국제법, 비교법적 고찰(장기과제)

O 추진실적:

- 인종차별철폐위원회 정부보고서 심의 참가, 정보보고서 제출 및 심의시 발표
- 미등록 이주노동자 및 여성 이주가사노동자 인권보호 관련 '자카르타 프 로세스' 대표자 방문
- 고용허가제 시행 이후 몽골, 베트남의 이주절차 및 국제결혼과정에서 나 타난 인권침해 실태조사 연구용역 수행중

- 2008년 '다문화 사회에서의 인권 보호 및 증진' 국제회의 개최 예정
- 외국인 관련 사안에 관해 국제법적 검토를 통해 장기적으로 외국인 인권 보호를 위한 정책검토

2) 자유권, 사회권 보장을 위한 정책권고

- O 추진계획:
 - 인권연구팀에 대한 지원 및 공조를 통한 정책 개선 권고
 - 사회권규약과 국내법제의 괴리에 대한 실태조사
- O 추진실적: 경제적, 사회적 및 문화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해설집 발간
- O 평가:
 - 해설집 발간 및 배포를 통해 향후 법령 및 정책권고를 위한 토대 마련
 - 장기적으로 사회권규약 및 국내법제의 괴리에 대한 실태조사

다. 국제인권규범 형성과정에 적극 참여

1) UN 및 국제기구의 인권논의에 적극 참여

- O 추진계획: 유엔인권이사회, 유엔인권관련회의 등 참가 및 모니터링
- 추진실적: 제19차 ICC 회의 참가(3월), ICC 승인소위원회 참가(3월, 10월), 제5차 인권이사회(6월) 및 ICC 집행이사회(6월, 12월), 제12차 APF 연례회의(9월) 참가, 여성차별철폐위원회(7월), 인종차별철폐위원회(8월), UN 인권고등판무관실 주최 국가인권기구 설립 워크숍(10월 마닐라) 발제자로참가

O 평가:

- ICC 부의장 및 ICC 집행이사회 실질적 참여, APF 의장직 수행 및 부의 장직 현재 수행중. 인권이사회에서의 국가인권기구 관련 제도구축 과정 참여를 통해 국제역량 강화
- 2008년 하반기 위원회 ICC 승인소위 재심사 대비
- 위원회의 대외적 국제역량 평가에 긍정적으로 기여

2) 아시아 지역 국가인권기구 간 공동사업

- 추진계획: 아시아 국가인권기구 간 인권현안에 대한 공동연구
- O 추진실적: 고용허가제 시행 이후 몽골 및 베트남의 이주절차 및 국제결혼 과정에서 나타난 인권침해 실태조사 연구용역 종료
- 평가: 실태조사를 통해 향후 정부의 관련정책 수립에 기여할 것임(11월 중 중간보고, 12월 용역결과물 제출)

3) 공적개발원조정책(ODA)와 인권 실태조사

- 추진계획: 공적개발원조정책(ODA)의 문제점과 수혜국의 인권 증진에 미치는 영향
- 추진실적: 필리핀, 인도네시아에 대한 한국정부의 공적개발원조 가 현 지 인권상황에 미친 영향에 대한 실태조사 연구용역 종료
- O 평가: 실태조사를 통해 향후 정부의 관련정책 수립에 기여할 것임(10월 중 중간보고, 12월 용역결과물 제출)

라. 위원회의 국제적 위상 제고 및 지도적 역량 강화

1) UN 및 국제인권회의에서 위원회 위상강화

- O 추진계획:
 - ICC 회의, APF 회의, 세계국가인권기구대회, 기타 국제회의에 참여하여 위원회 활동성과를 공유
 - ICC 등에서 비중있는 역할 수행을 통한 위원회 국제적 위상 강화
 - 개도국 국가인권기구 초청연수를 통한 국가인권기구 간 협력 및 국제적 위상강화

O 추진실적:

- ICC 부의장기구(3월) 선임, ICC 승인소위활동 적극 참여, ICC 집행이사 회 적극참여

- APF 의장기구(3월), 제12차 APF 연례회의 적극적 참가, 부의장기구 선임 (9월)
- APF 지원 조사관 훈련 워크숍 개최(차별시정본부 협조)
- O 평가: 유엔 등 국제사회에서 인권에 관한 선도적 국가인권기구로서 역할 수행

2) 국제협력 TF 구성 및 운영

- O 추진계획: 위원회의 체계적인 국제협력, 국제홍보 및 국제역량 강화를 위한 TF 운용
- 추진실적: 제1차 회의(3.9) 이후 8차례 회의, 제2차 회의(7.31) 이후 3차례 개최
 - 국제협력 TF 운영을 통한 국제협력 시스템 구축(10차 이상 개최와 현안 집중논의)
 - 위원회 중장기 국제협력 청사진 작성
 - 위원회 영문 홈페이지 개선(영문홈페이지 개선팀 구성)
- 2007년 국제세미나, 2008년 국제심포지엄 개최준비 관련 자문
- 위원회 국내외 홍보계획 수립
- 외빈초청행사 준비 자문
- O 평가: 위원회 내외의 국제역량을 집중시킴으로써 위원회 주요행사 준비 방법과 중장기 전략 마련에 크게 기여

3) 국가인권기구(NI)간 교류와 국제인권 전문적 역량 강화

- O 추진계획:
 - 국가인권기구 간 상시 협력체제 구축을 통한 정보 및 전문가 교류 확대
 - 국제인권 전문가 초청 강좌 개설
 - 국제인권매커니즘 훈련
- O 추진실적:
 - 개도국 국가인권기구 직원 초청을 통한 경험 공유(5월, 중국; 9월, 나이지리아, 동티모르, 아프간; 11월 발글라데시)

- 유엔 인권고등판무관실과 직원파견 협의, UN OHCHR이 전세계 NI 직원 대상 공개 경쟁 공고(결과 대기중)
 - 유엔 인권이사회 제도 관련 국제심포지엄 개최로 전문가 초청을 통한 내 부역량 강화
 - 직원인권기구 교류사업(4개팀 8명 교류연수 실시)

기간	교류 연수내용			
$9.3 \sim 9.11$	○ 제목:고문방지위원회 활동성과연구 ○ 방문: 유럽고문방지위원회 ○ 목표: 구급시설고문방지를 위한 조사.권고의 전문지식을 습득			
$6.25 \sim 7.5$	○ 제목 : EU고용평등지침.이행실태 ○ 방문 : 벨기에(EU본부), 독일(독일의회), 영국(의회,장애위원회) ○ 목표 : EU고용평등지침이해 및 국내 차별판단지침 작성에 활용			
$6.25 \sim 7.4$	○ 주제 : 외국인보호시설 실태파악 ○ 방문 : 독일(구금소), 네델란드(공항보호소), 영국(IOC 등) ○ 목표 : 유럽의 외국인 단속.보호 절차 및 법제연구를 통한 국내제도 개선			
9.22 ~ 10.3	○ 주제 : 친 인권적 교과서 도입 ○ 방문 : 프랑스(교육부, 유네스코, 인권위원회) ○ 목표 : 프랑스 인권교육내용 국내 교과서 집필진들에게 전달하여 인권친화 적 교과서 제작을 도모			

○ 평가: 아태지역 뿐만아니라 전세계 인권기구와의 다각적 교류를 통해 위원회 활동의 국제적 외연을 확대했을 뿐아니라, 유엔 및 개별 NI와의 심도있는 협력관계 구축

4) 국제적 수준의 영문자료 생산 및 정보수집 시스템 구축

- O 추진계획: UN 등 국제기구의 인권관련 동향 모니터링
- O 추진실적: 유엔인권동향 정기적 홈페이지 게재(월 2회)
- 평가: 유엔인권동향의 게재를 통해 국민 및 위원회 직원들의 국제사회 인 권동향에 관한 지식제고

5) 국제인권전문위원회(국제협력TF 운영으로 대체)

- O 추진계획: 국제인권 현안에 대하여 필요시 전문위원회 적극 개최 및 활용
- O 추진실적: '국제인권전문위원회'보다 더욱 확대된 목적을 가진 '국제협력 TF'를 구성, 운영
 - 국제인권현안 및 중장기전략에 관한 자문 및 논의
 - 영문홈페이지 개선
 - 국제세미나 개최 준비 자문
 - 외빈초청행사 준비 자문
 - 위원회 조직 영문명칭 초안
- O 평가: 국제인권 논의에 실질적으로 기여할 수 있는 역량을 집중시킴으로써 국제인권 분야의 새로운 변화 모색

마. 국제회의, 워크숍 개최를 통한 국제협력 달성

- 1) 국제인권전문가 초청 및 워크숍 개최 등
- O 추진계획:
 - APF 공동 조사훈련 프로그램 실시
 - 체계적인 전문가 초청 프로그램 구축
- O 추진실적:
 - 직원교류와 국제인권전문가 초청과의 연계추진(이주팀, 시민팀, 학교교육 팀, 부산사무소)
 - 침해조사본부, 차별조사본부, 인권교육본부의 국제행사 및 관련 업무 수시 지원
- 평가: 국제인권전문가 초청 및 워크숍 계획 수립

2) 국제회의 개최

- 추진계획: 국제심포지엄 개최 등을 통해 인권 보호·증진을 위한 위원회 역량 강화
- O 추진실적: '국제인권제도의 최근 변화와 NI 역할'에 관한 국제워크숍 개최

(11.15)

- 주제: The Role of NHRIs in the Newly-Established Human Rights Council
- 전문가초청:

국외 De Alba 주제네바 멕시코 대사 등 10명 국내 이양희 유엔아동권리위원회 위원장 등 9명

- 참석대상: 위원회 직원, NGOs, 각대학 교수 및 대학원생
- 특별강연: De Alba 대사 초청강연회 11월 16일 14:00-16:00
- 최종보고서발간:(영문, 국문요약) 12월말
- O 평가: 국제인권전문가 초청을 통해 위원회 국제역량 및 위상 강화 및 국 제인권 현안에 관한 Best Practices 발견

바. 국제인권 수시 현안업무수행

- 산타클라라 법과대학생 인턴십 수행(일정 기입)
- 위원회 간부 외국장기연수 대상기관 조사(8개 기관 수용)
 - UNHCR, 뉴질랜드, 인도, 캐나다, 북아일랜드, 남아공 NI 등
- O 대만 국제법학회 초청 워크숍 참가 준비 및 사무총장 수행
- O 유엔 OHCHR/필리핀 인권위 공동주최, 국가인권기구 설립에 관한 워크숍 참가
- O 창립기념 및 인권선언기념 관련(12.10) 외교사절 리셉션 초청 및 진행 업무 수행

3. 외부환경 동향 분석

가. 유엔인권이사회(HRC) 동향

- 2006 출범한 이후, 금년 6.18 제도형성에 관한 결의안을 통해 국제인권보호를 위한 새로운 메카니즘으로서 UPR(보편적정기검토)제도를 도입함. 47개 이사국이 순번제로 동료회원국들에 의해 인권상황이 심의되고 평가됨...
- 이 과정에서 국가인권기구(NHRIs)의 국내외적으로 새로운 역할을 갖게 되고 더 이상 국내인권기구에 머무르지 않고, 국제적 역할와 위상을 갖 게 됨. 그러나 각국의 국가인권기구가 각국 정치문화적 조건에 따라 그 권한과 위상에 있어서 차이를 갖게 됨으로써 새로운 국제적 역할을 담 지할 수 있는 역량강화가 더욱 요구되고 있음.

나. 국가인권기구국제조정위(ICC) 동향

- 국가인권기구의 국제적 역할 증대와 함께, 그동안 회원기구간의 연대와 정보교류 업무를 지원해온 ICC는 유엔인권이사회의 출범이 가져온 국가 인권기구의 국제적 역할 강화에 맞추어 각국 NI 역량강화와 새로운 인 권기구설립 지원 등으로 유엔 인권고등판무관실의 지원 하에 적극적인 지원사업을 전개함.
- 그러나 아직 ICC는 법적인 실체를 갖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기금모집이 나 제네바 대표의 선임(고용) 등 실질적 국가인권기구 지원사업에 한계 를 노정하게됨에 따라, 최근 ICC 제네바 대표(사무소)를 설치하기 위한 회원기구간 공감대가 형성되었음. 현재 제네바에 임시대표를 운영하고 있으며, 전세계의 지역대표격인 국가인권기구가 그 비용을 부분적으로 지원하고 있음.

다. 아태지역인권기구포럼(APF) 동향

O 아태지역인권기구포럼(APF)은 지역 인권기구설립 지원 및 기술지원, 전

문가연수 등에 있어서 탁월한 실적을 쌓아왔다는 점에서 국제적으로 평가되고 있음.

○ 최근 ICC의 공세적 사업확장과 제네바를 중심으로한 국가인권기구 국제 사업의 영향으로 아태지역의 국가인권기구 활동의 축이 일시적으로 제네 바로 집중됨에 따라 ICC와의 관계정립 및 지역조정기구로서의 역할에 있어서 혼선되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음. 그런 점에서 최근 APF는 아태 지역 및 제네바 국제공동체에서 ICC와는 차별화된 접근전략과 보다 실 질적으로 기여할 수 있는 사업개발에 박차를 가하고 있는 양상임.

라. 국가인권기구(NI) 설립 동향

- 인권보호와 증진을 위한 국가인권기구 설립에 대한 각국의 관심증대와 국제인권공동체에서의 국제적 역할에 대한 호의적 평가에 힘입어 아태 지역을 비롯한 전세계 후발인권보호지역에서 국가인권기구 설립 또는 확충의 움직임이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음.
- O 아태지역의 국가인권기구의 설립을 지원하기 위해 유엔인권고등판무관 실은 아시아에서 인권기구가 설립되지 않은 국가(13개국)를 초청하여 워크 숍을 개최하는 등 다양한 지원활동을 하고 있음.
 - ※ 방글라데시, 부탄, 브루나이, 참보디아, 중국, 일본, 북한, 라오스, 파키스탄, 싱가포르, 베트남, 파푸아 뉴기니
-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내적으로 정부기관과의 관계, 국제적 경험과 역량 의 한계 등으로 국제인권공동체의 영향력있는 행위자로서 적극적으로 활동하기 위해서는 국가인권기구간의 협력과 공동대응이 더욱 요청되고 있는 상황임.

마. 국제인권공동체의 동향

- 종래 유럽중심의 인권논의가 점차 아태지역, 아프리카지역, 남미지역으로 확산되면서, 동지역의 인권기구가 확충 내지는 신설되는 방향에서 활성화되고 있음.
- 그 이면에는 유엔인권이사회로의 변화과정에서 유발된 정부대표들의 인 권에 대한 관심제고 뿐만아니라, 그동안 유엔인권고등판무관실이 역점을 두고 정례적으로 추진해온 지역인권워크숍, 세계국가인권기구대회 등이 동 지역에서 인권의 제도적 정착에 기여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임.
 - 국제사회에서는 안보문제와 함께 인권문제가 중요한 이슈로 부상하고 있으며, 그 변화의 과정에서 국가인권기구는 최근 국제적 연대를 강화함 으로써 국가와 NGO간의 가교를 쌓는 인권논의의 새로운 촉진자로서 영향력을 증대하고 있음.

4. 주요업무 (2008 업무분장에 기초함)

가. 중점사업

1) 국제심포지엄 개최:

디문화사회에서 인권 보호 및 증진 선언' 공표

□ 배경 및 목적

- 동사업 계획은 <2008~2009년 중점사업영역> 중 2. 다문화 사회의 이주민 인권보 호에 관련 되는 사항임.
- 한국이 다문화사회로 변화과정에서 다문화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 형성과 인종, 소수민족 차별금지, 인권침해의 사각지대인 이주노동자 및 국제결혼 가정 인권보호에 대한 논의
- O 이들에 대한 인권보호와 경제발전 수준에 부응하는 인권 보호 및 증진 체 계 마련
- O 각국의 경험과 전문가의 논의에 기초한 "서울선언문" 작성 공표

□ 사업 내용

- O 국제회의의 실무팀 구성을 통한 의제 개발 예정
- 국제인권규범의 형성에 실질적으로 기여할 수 있는 결과산출

□ 기대 효과

O 종합적.체계적인 정책업무의 추진을 통해 이주노동자 인권의 실질적 보장 제고 ○ 국제이주노동자 협약 관련 국제인권기준에 대한 국내외적 인식제고. 이를 통한 이주자 인권의 실질적 개선 효과

□ 추진 일정

- O 준비단 구성 및 운영
 - 실무팀의 구성(1~2월)
 - 실무팀 운영(2~11)
 - 국제심포지엄 개최 및 선언문 공표(11월)
 - 최종보고서 작성(12월)
- □ 소요예산: 국제인권전문가 워크숍 약 2억원

※ 담당자: 국제인권팀 황성룡

나. 일반사업

1) 국제인권기구(UN OHCHR 등)와의 실무 협조 체제 구축

□ 배경 및 목적

- 국제인권기구(UN OHCHR 등)는 국가인권기구의 국제적 활동을 지원하고, 활성화시킬 수 있는 국제인권 논의의 장으로써 최근 이들 국제기구들과의 교류와 참여 수요가 점증하고 있음.
- 우리위원회는 이들과의 적극적 교류를 통해 국제인권에 대한 최신동향과 정보를 습득하여, 국내적으로 소개함으로써 국제인권규범의 국내적 인지도 를 제고하고 국내법의 한계에 대한 전문적 시각을 배양하고 자함.

□ 사업 내용

- 위원회 OHCHR 파견관 활용을 통한 업무관계 정립 (소속팀, 인사혁신팀과 협의사항)
- O UN 등 국제인권동향에 대한 체계적 정리 및 공유 (검토사항)
- O 위원회 간부 및 직원들의 국제역량 강화 프로그램 정립
- 참석 조약감시기구에 대한 NI 별도보고서 작성 제출 (2008년 관련팀 이관) (2008.5 아동권리위원회, 11월 사회권위원회 등)

□ 기대 효과

- 국제인권에 대한 최신동향과 정보를 습득하여, 국내적으로 소개함으로써 국제인권동향에 대한 국내적 인지도를 제고하고 국제인권기준에 대한 전 문적 시각 배양
- O 국내인권정책의 동향과 새로운 방향에 대한 국제적 인지도 제고

□ 추진 일정

O 국제인권기구 중요회의 참석 및 인적 교류 : 2008. 1. ~ 12.

□ 소요예산:

O 국제교류협력강화 : 4억 8천 만원 중 일부

※ 담당자: 황성룡, 홍승기, 오유진

2) 유엔인권이사회 발언을 위한 전략적 의제 개발

□ 배경 및 목적

- O UN 및 국제기구의 인권논의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국제인권규범의 형성 과정에 위원회의 입장을 제시하고, 논의과정을 모니터링하며, 관련 정보가 위원회 내부에 적용되어 각종 사업으로 구체화될 수 있도록 함
- 유엔인권이사회 제도형성 결의안 5/1에 따르면, 유엔인권이사회에서 모든 의제에 발언할 수 있게 됨에 따라 전략적으로 우리위원회가 기여할 수 있는 분야 개발을 통해 동 의제에 대한 발언권을 높이며 나아가 규범 형성과정에 기여
 - 그러나 제한된 인적지원과 경험을 갖고 있는 국가인권기구의 입장에서 처해진 상황과 경험을 감안하여, 특정분야에 대한 관심을 전문화시킴으로써 국제인권논의가 국내인권증진에 기여할 수 있는 실효성 제고

□ 사업 내용

- O UPR, 과정에서 국가인권기구 정보노트 제출
- 정부보고서 심의과정에 참가 및 모니터링
- O 최종결정문 이전에 일반논평 발표

□ 기대 효과

O 국제인권무대에서 국제역량을 강화함으로써, 국제/국내 인권전문기구로서 의 위상제고

□ 추진 일정

- UPR, 과정에서 국가인권기구 정보노트 제출(1-2월)
 - UPR 7]?\(4.7-18,. 5.5-16, 12.1-12\)
 - 정부보고서 심의과정에 참가 및 모니터링(5월)
 - 최종결정문 이전에 일반논평 발표(10월-11월)
- 유엔인권이사회(연3회), 유엔인권관련회의 등 참가 및 모니터링

방안에 대한 전략적 접근 필요 (위원회 발언 검토)

* 유엔인권이사회 기간(3.3-28, 6.2-13, 9.8-26)

□ 소요예산

○ 국제교류협력강화 : 4억 8천 만원 중 일부

※ 담당자: 국제인권팀 홍승기, 오유진

3) ICC, APF 교류 및 위원회의 지도적 역량강화

□ 배경 및 목적

- 국제인권규범의 국내외적 이행 활성화를 위하여 국제인권 현안에 대한 위원회의 지속적 관심과 역량강화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함. 이를 통하여 중장기적으로 아시아 및 국제사회에서 국가인권기구로서 지도적 역량을 발휘하도록 함.
- 국가인권기구간 국제인권공동체에서 위원회 지도적 위상강화

□ 사업 내용

- O ICC 회의, APF 회의, 세계국가인권기구대회, 기타 국제회의에 주도적으로 참여하여 위원회 활동성과를 공유
- O ICC 등에서 비중있는 역할 수행을 통한 위원회 국제적 위상 강화
- ICC 부의장 역할 수행
- ICC 승인소위 아태지역 대표 수행(4월, 10월)

□ 기대 효과

- O 우리위원회의 국제적 위상강화
- O 선진 국가인권기구의 선례 습득
- O 후발 국가인권기구에 대한 기술지원을 통한 국제인권상황 증진

□ 추진 일정

- O ICC 20차 연례회의: 2008. 4. 14-18 (제네바)
 - * 승인소위 동시 개최: 아태지역 대표로 참석
- O APF 연례회의: 7월 28일-8월 1일 (말레이지아)
- 세계국가인권기구대회: 9월 (케냐 나이로비)
- O 우리위원회 ICC 승인소위 심사: 2008. 10. 예정 (제네바)

□ 소요예산

- O 국제교류협력강화: 4억 8천 만원 중 일부
- ※ 담당자: 국제인권팀 황성룡(ICC), 오유진(APF)

4) 아태지역 인권보호메카니즘의 기반구축

□ 배경

- 최근 동남아시아국가 국가인권기구(필리핀,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태국) 의 국가인권기구가 소지역기구를 설립하여 작은 발전을 이루었음.
- O 이 모임의 의장격인 필리핀 인권위 측은 관심있는 아시아국가의 참석을 요 청함.

□ 사업내용

○ 제15차 아태평양지역워크숍 유치 등을 통해 국가인권기구의 국제적 역량과 전문성 제고, 그리고 지역인권메카니즘의 구축을 위해 적극적 제안 참여

□ 기대효과

O 위원회의 국제적 역할 제고

□ 추진일정

O ASEAN-NI4 측과 협의

5) NI 설립을 검토하는 국가 기술지원 및 직원초청연수

□ 배경

- O 아태지역의 국가들은 다양한 정치.경제.문화적 특성을 가지고 있으며, 현 재 13개 국가가 아직 국가인권기구를 설립하지 않은 상태임
- 07년에 중국, 방글라데쉬에서 국가인권기구설립을 위한 실무단이 위원회를 연수방문한 바 있으며, 캄보디아도 국가인권기구설립을 추진중임.

□ 사업내용

- 개도국 국가인권기구 직원 및 국가인권기구 설립을 추진하고 있는 국가의 실무단을 초청하여, 한국인권위원회의 경험과 노하우를 경험할 수 있는 초 청연수 프로그램 제공.
- 08년 직원 초청연수 대상
- NI 설립을 검토하고 있는 아시아 국가 : 캄보디아, 라오스, 일본, 중국, 베트남, 파키스 탄. 방글라데쉬 중 섭외

□ 기대효과

- O 개도국 국가인권위 직원의 역량강화지원을 통한 국제사회기여
- O 지역 인권현안에 대한 인식 공유
- O 한국인권위원회의 국제적 위상강화 등을 도모.

□ 추진일정

O 6월 : 2/4 분기 중 초청 대상 NI와 협의하여 결정

□ 소요예산

O 항공.체류비 등 초청경비 : 2,260만원

※ 담당자 : 국제인권팀 홍승기

6) 국제기구파견

□ 배경 및 목적

- 2007년 유엔인권고등판무관실과 협의를 통해 국가인권기구의 직원 국제역 량강화를 위해 OHCHR 교육프로그램으로 제도화함.
- 2007년 12월 우리위원회 직원 1명 파견 결정

□ 사업 내용

- 근무기간: 2008.1-6 기간 1차 시행후 신규 파견기관 등 검토
- O 근무지: 유엔인권고등판무관실 국가기구팀
- O 업무내용: 국제인권메카니즘 동향조사 및 업무지원

□ 기대 효과

O 위원회와 유엔인권고등판무관실간의 업무관계 긴밀화

- O 위원회 국제역량 강화
- □ 추진 일정
 - 제1차 파견기간: 2008. 1-6
 - 제2차 파견기간: 2008. 7-12
- □ 소요예산
 - O 국제기구파견 2.200 만원
- ※ 담당자: 국제인권팀

7) 기타 주요 주관 업무

- □ 국제협력 TF 운영 (검토사항)
 - 2008년 국제세미나 관련 자문위원회로 구성 검토
 - 회의 안건 개발 및 회의 준비 전반에 대한 자문
 - 월 1회 정도 개최 예정
 - 2008년 국제세미나 실무단 구성시 함께 검토
- □ 조약감시기구 모니터링 등 국제인권관련 업무지원
 - O 아동권리위원회 (3월 예정)
 - 경제사회적 및 문화적 권리규약 관련 제3차 정부보고서 심의 모니터링 (11.10-28)
 - **국제장애인권리위원회** 및 협약관련 동향 조사
 - 유엔 등 국제인권동향분석에 중점과제로 포함시킴
 - * 사무총장지시(1.2일자): 중점사업 업무(프로젝트팀 업무)

5. 연간 추진 일정

시기		사업 및 과제	비고
	1월	유엔인권이사회 NI 정보보고서 제출	
1분기	2월	ACJ 참석(2월 말)	인도
	3월	유엔인권이사회 개최(4주간)	제네바
	4월	ICC 연례회의 참석(4.14-18) * 승인소위 동시개최	제네바
2분기	5월	유엔인권이사회 정부보고서 심사 (2주)	제네바
	6월		
	7월	APF 연례회의 참석(7.27-8.1) (6월 7월)	말레이지아
3분기	8월		
	9월	세계국가인권기구대회참석(9월말) (8월 9월)	나이로비
	10월	ICC 승인소위 참석 (우리위원회 심사) (8월 10월)	제네바
4분기	11월	국제심포지엄: 다문화사회에서 인권보호 및 증 진 (1월 11월)	
	12월		

2008년 인권연구팀 업무계획(안)

- I. 일반 현황
- Ⅱ. 업무 평가 ; 주요사업 업무성과 및 평가

Ⅲ. 외부환경 동향 분석

- 1. 사회권 관련 권고 및 의견표명
- 2. 차별금지관련 입법 추진
- 3. 사회권 포럼 및 인권단체 등과의 협력

Ⅳ. 주요업무

<중점사업 1: 아동.청소년.노인 등 소외계층 인권보호>

- 1. 아동권리협약의 국내적 이행 및 모니터링 강화
- 2. 아동권리협약 해설집 작성 및 발간
- 3. 사회권규약의 국내적 이행 및 모니터링 강화
- 4. 피학대.방임 아동에 대한 권리보호
- 5. 입양.양육 등에서 아동의 이익 우선을 위한 법제개선
- 6. 노인의 건강권 보장을 위한 관련법제 개선
- 7. 미성년 환자 등 취약한 의료수요자 권리보장제도 개선
- 8. 아동.노인 등 취약집단의 건강관련 환경보건 정책.법제 개선
- 9. 사회적 약자의 인권침해 사각지대 해소 위한 법제개선

<중점사업 2 : 양극화사회에서의 빈곤계층 인권보호>

- 10. 5인 미만 사업장 근로조건 향상 위한 제도 개선
- 11. 사내하도급근로자 보호 위한 법제개선
- 12. 노동사건의 과도한 형벌적용 개선위한 제도 보완
- 13. 빈곤계층 최저주거기준 실현 위한 정책 제도 보완
- 14. 강제철거과정의 거주민 권리보호 위한 정책.법제개선
- 15. 노숙인 인권개선을 위한 방안 마련

<일반사업>

- 1. 사회권관련 국가통계의 체계적 관리 위한 기초연구
- 2. 차별금지 관련 입법지원 및 후속조치
- 3. 인권연구 활성화를 위한 지원
- 인권논문공모사업
- 인권문헌번역사업
- 4. 사회권 관련 정책.법제 모니터링 및 협력 강화

V. 연간 추진 일정

2008년 인권연구팀 업무계획(안)

I. 일반현황

구 분	정원(현원)	업 무
인권연구팀	7(7)	 ○ 사회적 기본권 분야와 중장기 인권현안 관련 법령.제도.정책 및 관행의 조사와 연구.개선 ○ 정부출연기관 또는 각종 연구단체 등에 대한 연구요청 및 공동연구에 관한 사항 ○ 인권관련 연구기관.전문가 등과의 교류.협력

- 신규 직제령(안)의 인권정책2팀 업무분장 사항
 - 1. 사회권과 본부 내 다른 팀에 속하지 아니하는 인권 관련 다음 각목의 사항
 - 가. 법령.제도.정책.관행의 조사.연구 및 그 개선에 관한 사항
 - 나. 국제인권조약.기준 및 국제인권기구 권고사항의 조사.분석과 국 내이행에 관한 사항
 - 다. 국제인권조약에의 가입 및 그 이행에 관한 연구와 의견 표명
 - 라. 정부출연기관 또는 각종 연구단체 등에 대한 연구요청 및 공동연구에 관한 사항
 - 마. 인권 관련 연구기관.전문가 등과의 교류.협력
 - 2. 인권상황에 대한 실태조사의 총괄

Ⅱ. 업무평가

주요 사업의 업무성과 및 평가

1. 사회권 관련 권고 및 의견표명

1) 성과

- 2007년 권고 및 의견표명 총 16건 중 사회권 관련 내용은 15건으로 영역별로 보면, 차별관련 5건(장차법 2건, 차별금지법 2건, 고령자 고용촉진법 1건), 노동관련 3건(최저임금법, 청소용역, 사업장 전자감시), 장애관련 2건(장애인복지법, 장애인권리협약), 여성 1건(남녀고용평등법), 취약계층 4건(AIDS, 주민등록말소자, 단전단수, 무호적자 호적 취득)임
 - 2007년 업무목표를 "사회적 약자.소수자 인권 증진을 위한 정책.법제 대응 강화"에 두고 개별 영역에서의 정책과제 검토와 권고(의견표명)를 취약계층 의 사회권 강화를 위한 구체적인 내용에 치중하였음

2) 평가

- 위원회가 사회권 보호 차원에서 그동안 해왔던 개별구제 차원을 넘어서 정책 및 법령 개선 권고(의견표명)를 통한 포괄적이며 종합적인 사회권 개선을 모색하였다는 점에서 사회권 관련 업무의 전환적 의미가 있다고 평가할수 있음
- 그런데, 사회권 업무의 특성상 우리사회에서 우선적으로 검토가 필요한 과제를 적절하게 선정하기가 어려웠을 뿐만 아니라 관련된 주요 쟁점에 대한 종합적이고 포괄적인 검토가 필요하고, 이해당사자뿐만 아니라 전문가, 관계부처 등 다양한 의견수렴이 필요하여 일부 과제의 경우 추진 일정이 지연되기도 하였음

○ 따라서 사회권 관련 정책 및 법령 검토를 보다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서 는 과제선정 과정에서 전문가 및 인권단체 관계자들의 의견수렴을 강화하 고, 검토과정의 효율성을 극대화할 수 있도록 업무 체계성을 강화할 필요가 있음

2. 차별금지관련 입법 추진

1) 장애인차별금지법 및 차별금지법(안) 마련 성과

○ 인권연구팀은『차별금지법 제정 TFT』에 참여('07.3.~'07.5.)하여 모니터링 및 의견표명을 하였고, 장애인차별금지법에 대해서는 의견표명('07.1.25.)과 『장애인차별금지법 시행령 제정』 정부합동 준비단에 참여('07.3.~)하여 모니터링 및 적극적인 의견개진, 관련 부처에『장애인차별금지법 시행령』가이드라인 등을 제공('07.7.)함

2) 평가

- 장차법의 제정, 정부의 차별금지법(안) 마련, 노동부의 연령차별금지법안의 경우 등은 신속하며 적절한 대응으로 업무권한의 합리적 조정과 관련 법령 시행의 토대를 성공적으로 마련하였음. 다만, 위원회법상 법률발의 권한이 없어 정부 입법과정에서 우리 의도가 모두 반영되지 못한 한계가 있음
- 따라서 우리 위원회는 향후 차별금지법제정에 대한 지속적인 지원과 함께 차별금지법령들의 시행기구로서 적극적인 해석과 이행을 통해 사회적 약자.
 소수자 보호의 기반을 강화해야 함

3. 사회권 포럼 및 인권단체 등과의 협력

1) 성과

- 사회권에 대한 관심을 확대하고 사회권에 대한 올바른 이해와 합리적인 대 안을 마련하기 위하여 지난 2년 동안 분야별 전문가들과 초청하여 총론 4 회, 외국인 2회, 장애 4회, 노인 4회, 아동 3회, 사회권 지표 1회, 주거 3회 등 총19회에 걸쳐 사회권 포럼을 개최함. 또한 이를 바탕으로 하여 2007년 상반기에 아동, 노인, 장애인, 여성 등 주요 대상별 사회권보고대회를 통해 기존 연구 성과 및 관련 정책 등에 대한 종합적인 점검을 실시함
- 노동, 기초생활, 건강, 주거 등 6개 주요 사회권 대상.영역을 선정하여 관련 인권단체들과의 정책간담회를 실시하여 우리 위원회의 활동과 단체들의 현 장 경험에 바탕을 둔 정책과제 등을 공유함

2) 평가

- 사회권 포럼은 우리 사회의 사회권 전반에 관한 공론의 장을 제시하였고, 소외계층 및 빈곤층의 사회권 확인과 합리적 권리보장 방안 모색의 새로운 계기가 됨. 다만, 사회권 영역의 포괄성 및 종합성 등으로 인해 많은 횟수의 포럼 및 정책간담회에도 불구하고 논의된 주제를 실절적인 정책검토 및 권 고로 연결시키지 못하였음
- 따라서 사회권 포럼의 논의.연구 내용을 직접적으로 정책권고로 연계시키기 보다는 구체적이며 현실적인 정책과제를 선정하여 관련 인권단체 및 정부 부처와의 협의, 간담회 등을 통해 효과적인 대안 마련에 노력해야 함

Ⅲ. 외부환경 동향분석

1. 사회권 관련 국내외 동향

○ 유엔 인권이사회(HRC) 출범 및 장애인권리협약 채택 등 사회적 약자.소수자 보호를 위한 국제적 협력과 노력이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국내에서는 2007.

- 5.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NAP)이 수립되어 특히, 사회적 약자.소수자의 권리 증진을 위한 토대가 마련됨
- 아울러 장애인차별금지법이 제정 되는 등 차별에 관한 사회적 관심과 차별 시정 요구의 증가에 따라 그 동안 소외되어온 집단.계층으로부터 다양한 영 역에서 실질적 형평성 실현 요구가 더욱 확대 될 것이며 이에 대한 효과적 이며 능동적인 대처가 필요함

2. 사회적 약자 등의 보호 필요성 및 국가 역할 증대 요구

- 사회복지 분야 규모나 정책, 제도 등이 과거에 비해 상당 부분 확대되어 왔고 이에 비례하여 빈곤계층이나 사회적 약자에 대한 국가의 구체적 책임과역할도 꾸준히 증가되고 있음. 그러나 최근 정부개입 축소나 시장기능의 역할 확대 등 국가 정책방향에 변화가 예상됨에 따라 국가가 필수적으로 보장하고 제도화해야할 핵심적 영역과 대상, 권리 내용 등에 대한 구체적 검토가 요구됨
- 특히 가족이나 민간부문의 역할에 많은 부문을 의존해온 아동.청소년, 노인 등의 권리보장에 대한 국가의 제도적 개입과 법제.정책의 보완이 시급함. 그리고 사회적으로 소득이나 취약한 지위에 따라 소외되거나 양극화가 확대될수 있는 건강, 주거 등 영역에서의 적정한 보장이 실현되어야 하며 기초생활취약계층이나 근로빈곤층에 대한 사회적 안전망 역시 국제인권기준에 부합될 수 있도록 개선의 요구가 증가되고 있음

Ⅳ. 주요업무

중점시업 1: 이동 청소년 노인 등 소외계층의 인권보호

1. 아동권리협약의 국내적 이행 및 모니터링 강화

※ 신규 직제령(사무분장규정) 인권정책2팀 업무

□ 배경 및 목적

- 우리나라의 아동권리협약(CRC) 선택의정서 심의가 5월에 있으므로 이에 대한 참가를 준비하기 위하여 쟁점목록에 대한 분석이 필요하며, 아동권리협약 (CRC) 정부보고서가 2008년에 제출될 예정이므로 이와 관련한 위원회의 의견 표명을 준비하여야 함
- 또한 동 협약 위원회의 최종견해에 대한 국내적 이행상황에 대한 지속적인 모 니터링과 국내법과의 정합성 검토를 통하여 국내적 이행방안을 강구하여야 할 필요가 있음.

□ 사업 내용

- O 아동권리협약 정부보고서 의견표명
- O 아동권리협약 선택의정서 심의 참가
- O 아동권리위원회의 최종견해에 대한 지속적인 모니터링

□ 기대 효과

- 아동권리협약 정부보고서 심의에 있어 올바른 평가를 위한 자료 제공
- O 아동권리위원회에 우리가 의견 표명한 것을 기초로 정보노트를 제출하여 심의 시 활용
- O 아동 및 청소년의 전반적인 인권 상황 파악
- O 아동권리협약의 국내적 이행 강화

□ 추진 일정

- O 아동권리협약 선택의정서 심의 참가(5월)
- 정부의 정부보고서 작성에 일정부분 참여하여 가이드라인을 제공하고 위원회에 요청된 정부보고서에 의견표명(11월)
- O 아동권리협약의 국내적 이행 상황 모니터링(상시)

□ 소요예산

- O 아동권리협약 선택의정서 심의 참가(제네바): 700만원
- 전문가 간담회 및 전문가 의견 수렴 : 200만원

※ 담당자: 인권연구팀 조형석

2. 아동권리협약 해설집 작성 및 발간

※ 신규 직제령(사무분장규정) 인권정책2팀 업무

□ 배경 및 목적

- 아동 및 청소년 인권 증진은 2008년 우리 위원회의 중점 추진 사업으로 앞으로 권고할 정책과제 중 많은 부분을 차지할 것으로 예상됨
- 따라서 관련 정책 권고를 위해서는 아동권리협약에 대한 정확한 이해가 필요하 므로 아동권리협약 해설집의 발간은 우리 사회의 아동 관련 인권증진과 더불어 반드시 필요함

□ 사업 내용

- O 해설집 작성 관련 연구용역(실태조사) 실시
- O 해설집 내용 조율 및 검수, 위원회 내외 기반자료로 활용

□ 기대 효과

○ 국제인권조약이 사법부에 의하여 원용되기 위해서는 아동권리협약에 대한 체계 적인 주해가 필요함

- 국제인권협약의 국내이행에 대한 검토 및 권고에 활용
- O 아동 및 청소년의 인권 증진을 위한 교재로 활용

□ 추진 일정

- O 실태조사 연구용역 실시(3월)
- O 해설집 발간(10월)

□ 소요예산

- 관련 실태조사 연구용역 : 3,000 만원
- ※ 담당자: 인권연구팀 조형석

3. 사회권규약의 국내적 이행 및 모니터링 강화

※ 신규 직제령(사무분장규정) 인권정책2팀 업무

□ 배경 및 목적

○ 우리나라는 올 11월 정부보고서 심의가 예정되어 있으므로 이에 대한 준비가 필요하여, 사회권 규약의 국내 이행 강화를 위해서 규약위원회의 최종견해에 바탕을 둔 이행상황을 수시로 점검하고 개선사항을 관련 법제 및 정책 개선권고에 반영할 필요가 있음

□ 사업 내용

- O 사회권규약 정부보고서 심의에 참가하여 우리 위원회의 의견을 반영하고 정부의 심의를 모니터링
- 사회권 규약 위원회의 최종견해에 대한 모니터링 및 토론회 개최를 통하여 우리나라의 사회권 관련 인권상황을 알리고 최종견해의 국내이행을 도모함
- O 사회권규약과 관련 법제를 모니터링하여 그 개선사항을 관련 법제.정책개

선권고에 반영

□ 기대 효과

- O 정부정책 등에 사회권 규약 위원회의 견해를 바탕으로 법제.정책의 국제기준 만족도를 높임
- O 우리나라의 사회권 전반에 대한 인권상황 파악

□ 추진 일정

- O 사회권규약 정부보고서 심의 참가(11월)
- O 사회권 규약 위원회의 최종견해에 대한 모니터링 및 토론회 개최(12월)
- O 사회권규약 관련 국내법적 정합성 검토(수시)

□ 소요예산

○ 심의참가 및 전문가 간담회 및 전문가 의견 수렴 : 500만원

※ 담당자: 인권연구팀 조형석

4. 피학대 방임 아동에 대한 권리보호

※ 신규 직제령(사무분장규정) 인권정책2팀 업무

□ 배경 및 목적

- 아동학대는 인간의 존엄성을 무시하는 처사일 뿐 아니라 어린이에게 고통을 주어 완전하고 조화로운 인격발달을 저해하고 생존을 위협하는 아동과 관련하여 가장 시급한 개선사항임
- 현재 아동복지법 등은 아동학대와 폭력의 금지 및 처벌과 아동학대예방센터의 운영등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지만 폭력과 학대로부터 아동을 충분히 보호하고 있지 못하므로 동 법에 대한 개정이 필요함

□ 사업 내용

O 아동복지법 개정 및 피학대 아동의 권리보장을 정책권고

□ 기대 효과

- O 아동학대.방임에 대한 아동의 보호
- O 아동학대 방지를 위한 법령 및 정책의 정비

□ 추진 일정

O 아동복지법 개정 및 전반적인 제도 권고(4월)

□ 소요예산

○ 전문가 간담회 및 전문가 의견 수렴 :200만원

※ 담당자: 인권연구팀 김화숙

5. 입양, 양육 등에서 아동의 이익 우선을 위한 법제개선

※ 신규 직제령(사무분장규정) 인권정책2팀 업무

□ 배경 및 목적

○ 현재 입양 및 이혼시 우리나라의 법령은 아동의 최선의 이익에 대한 존중보다 는 친권에 대한 복종과 행정편의주의적 자세로 인해 아동의 인권이 보호되지 않고 있는 실정임

□ 사업 내용

- O 입양특례법 개정 검토
- O 입양시 아동의 의사표명권 확대
- O 해외입양시 국적상실에 대한 검토
- O 이혼시 친권, 양육권, 면접교섭권 처분과 변경시 아동의 참여권 확대
- O 이혼시 아동의 양육비 확보방안 검토

□ 기대 효과

- O 입양시 아동의 최선의 이익을 고려할 수 있는 제도 구축
- O 이혼시 아동의 최선의 이익 고려와 양육비 확보를 통한 안정적 양육

□ 추진 일정

O 단계적으로 법령개선 권고

□ 소요예산

○ 전문가 간담회 및 전문가 의견 수렴 :200만원

※ 담당자: 인권연구팀 조형석

6. 노인의 건강권 보장을 위한 관련 법제 개선

□ 배경 및 목적

- 고령화 사회에 처해 있음에도 보건의료분야에서 노인의 특성을 반영한 제도는 미약한 실정임. 국민건강보험제도와 의료급여제도 중 일부 내용과 최근 실시되 는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에 의존하고 있음
- 따라서 노인 건강권 증진을 위해 관련 법령상의 보장내용을 재검토하고, 노인 장기요양보험제도 역시 그 보완을 위한 검토가 요구됨

□ 사업 내용

- O 건강보험법과 의료급여법상 건강검진 등 보장내용의 차별 개선
 - 노인을 포함한 일정 연령 이상에게 국가가 무료로 제공하는 건강검진에서 의료급여 대상자에 대한 불합리한 사항 개선
 - 기타 건강권의 형평성 확보 차원에서 의료급여수급권자 및 건강보험 가입자 등에 대한 보장내용의 불합리한 사항 개선
- O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상 노인의 건강권 강화를 위한 제도 보완

- 보건복지서비스 영역의 대표적 취약집단인 노인 건강권 보장을 위해 2008년 부터 전면 실시되는 장기요양보험제도의 이용, 접근성 등을 재검토
- 노인의 특성과 인권 인식에 기반을 둔 제도적 보완 사항 권고

□ 기대 효과

O 향후 계속 증가되는 노인층의 권리보호 내용 중 건강권에 대한 새로운 인식 확 산과 이에 기반을 둔 관련 법제 보완

□ 추진 일정

- 정부 보건의료정책종합계획 등의 관련 내용 재검토(1월~2월)
-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관련 실태조사 결과 검토 및 자문(3월)
-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의 보완 검토 및 개선 권고(5월~6월)
- 의료급여법상 건강검진 내용 등 건강권의 형평성 보장 검토(7월)

□ 소요예산

- 관련 정책 및 법제개선 검토 관련 자문, 간담회 등 : 200만원
- ※ 담당자: 인권연구팀 손두진

7. 미성년 환자 등 취약한 의료수요자의 권리보장 제도 개선

□ 배경 및 목적

- 보건의료분야의 공공성이 미흡한 상황에서 인식 또는 법적 능력이 부족한 아동 등을 대상으로 한 의료서비스의 규제가 부족한 실정임
- 특히 아동, 장애인, 노인 등 사회적 소외계층에 대한 의료피해 방지 및 구제에 대한 제도 보완과 필요시 입법적 방안의 검토가 요구됨

□ 사업 내용

- O 의료서비스 영역에서 의료소비자 권리보장 제도 검토
 - 일반적인 환자권리 보장 법제, 취약집단의 특별 보호 정책 등
- O 임상실험 관련 규제 법령 검토 및 개선 사항 권고
 - 약사법, 의료기기법, 생명윤리법 등 취약집단에 대한 신규의료기술, 약제 실험의 피해방지, 구제 방안 검토

□ 기대 효과

O 건강권 보장을 위한 국가책무 및 권리 인식 확산과 보건의료의 공공성 확대를 위한 제도적 보완의 계기 마련

□ 추진 일정

- O 환자권리 관련 법령 검토 및 개선 필요 영역과 제도관련 전문가 간담회, 자문 의견 등 취합(8월~9월)
- O 의료사고피해구제법, 임상실험관련 법령 등의 개선 검토(10월)
- O 법제개선 관련 정부 협의 및 개선 권고(11월)

□ 소요예산

O 관련 정책 및 법제개선 검토 관련 자문, 간담회 등 : 200만원

※ 담당자: 인권연구팀 손두진

8. 아동.노인 등 사회적 취약집단의 건강관련 환경보건법제 보완

□ 배경 및 목적

- 약제, 식품 등 소비자의 명확한 인식이 어려운 유해환경의 증가 속에서 특히 국가의 개입이 절실한 취약집단의 보호제도 점검이 요구됨
- 따라서 분산된 관련 법제상의 보호영역과 대상의 적정성은 물론 신규법제의 필

요성 등에 대한 검토가 필요함

□ 사업 내용

- O 유해환경 규제 및 일반적 건강보호 관련 환경보건법제 검토
 - 기존 환경보건정책 및 관련 분야의 법제상 규제사항 검토
 - 환경보건법제상 전문기술적 내용에 대한 보완적 사항 재점검 및 전문가집 단의 의견취합
- O 학교보건법, 식품영양안전보호법 등 관련 규정 보완 및 개선 검토

□ 기대 효과

○ 유해환경 등에 대한 건강권 보장 차원의 인식 제고와 아동.노인 등 취약집단에 대한 국가의 책임과 제도적 보장 범위 확대

□ 추진 일정

- O 건강권 관련 환경보건법제 세부내용 검토 및 전문가 자문(9월~10월)
- 사회적 약자에 대한 환경보건법제 개선 사항 검토(11~12월)

□ 소요예산

O 관련 정책 및 법제개선 검토 관련 자문, 간담회 등 : 200만원

※ 담당자: 인권연구팀 손두진

9. 사회적 약자의 인권침해 사각지대 해소 위한 법제개선

□ 배경 및 목적

○ 국가의 실질적 보호 및 권리보장이 요구됨에도 불구하고 제도적 흠결 로 인해 방치된 영역의 법제보완이 요구됨. 특히, 국가 개입이 제한되어온 사적 영역의 권리침해 예방을 위한 제도보완이 필요함

□ 사업 내용

- O 가정폭력, 노인학대 등의 예방과 피해구제를 위한 제도 보완
 - 가정 내 폭력과 사회적 학대 등에 대한 미흡한 정책적 대응을 넘어 관련 법 제 보완과 구제기능의 제도화 추진
 - 여성, 노인 등에 대한 가정폭력 및 학대 관련 법령 개선

□ 기대 효과

○ 현행 법제상 사회적 소수자 등에 대한 인권보장의 사각지대 해소를 통해 구체 적이며 실질적 보장을 실현하며, 국가개입의 가능성과 범위 등에 대한 향후 연 구 성과 및 논의 확대의 계기를 마련

□ 추진 일정

- O 가정폭력범죄 처벌 특별법, 노인복지법 등 사회적 약자 인권침해 사각지대 관련 법령 검토(4월)
- 관련 간담회 및 토론회 등 개최(5월~9월)
- 관련 법령 등 개선 권고(7월~)

□ 소요예산

- O 법제개선 등 전문가 자문 및 간담회, 토론회: 500만원
- ※ 담당자: 인권연구팀 김화숙

중점시업 2: 양극화시회에서의 빈곤계층 인권보호

10. 5인 미만 사업장 근로조건 향상 위한 제도 개선

□ 배경 및 목적

- 고용의 불안정 및 사회적 양극화 심화로 근로빈곤층의 인권상황 악순환이 발생되고 있고 그 근간에는 빈약한 근로조건이 원인이되고 있음
- 5인 미만 사업장은 저임금.장시간근로 및 고용의 불안정 등 열악한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해고.근로시간.임금 등 근로기준법의 주요조항이 배제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한 개선이 필요함

□ 사업 내용

- O 5인 미만 사업장의 근로조건 현황 파악 및 개선방안 검토
 - 선행연구자료 검토 및 전문가 의견조회
 - 근로기준법 적용범위에 대한 외국 사례 검토 및 비교연구
 - 상시근로자수 기준의 적용범위 문제점 및 개선방안 검토

□ 기대 효과

O 근로빈곤층 권리침해의 악순환에 대한 제도적 방지장치를 마련함으로써 노동관계에서 양극화 완화와 취약계층의 삶의 질 향상에 실질적 계기를 마련함

□ 추진 일정

O 5인 미만 사업장 근로조건 개선 검토보고서 작성 및 권고 (1월~3월)

□ 소요예산

O 전문가 의견조회 등: 100만원

※ 담당자: 인권연구팀 김태영

11. 사내하도급근로자 보호 위한 법제개선

□ 배경 및 목적

- O 2007. 7. 비정규직법 시행이후 일부에서는 고용보장이 이루어졌으나, 외주화. 계약해지를 통한 왜곡된 현상으로 인해 실효적인 법령 정비가 요구됨
- 특히, 사내하도급 근로자에 대한 도급(사용)사업주의 사용자 책임성 인정, 차별시정제도 적용 등 보호를 위한 법제검토가 필요함

□ 사업 내용

- O 비정규직법 시행 1년 평가 및 노사정참여 토론회 개최
 - 비정규직법 시행이후 1년에 대한 평가 및 문제점을 진단해보고 이를 기초 로 개선방안 모색
- O 비정규직법의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사내하도급근로자에 대한 보호입법 방 안 권고

□ 기대 효과

- 차별시정제도로부터 배제되어 있는 사내하도급근로자에 대한 노동법적 보 호방안 마련을 통한 노동취약계층의 노동인권 개선
- O 비정규직 중 간접고용근로자에 대한 차별시정 강화

□ 추진 일정

- O 비정규직법 시행 1년 평가 및 노사정참여 토론회 개최(7월)
- 외국입법례 조사 및 전문가 의견조회, 학계.NGO등 정책간담회 개최, 법제 및 정책 개선 권고(7월~9월)

□ 소요예산

O 전문가 의견조회, 정책토론회 개최 등 : 약 300만원

※ 담당자: 인권연구팀 김태영

12. 노동사건의 과도한 형벌적용 개선 위한 제도 보완

□ 배경 및 목적

- 최근 노동문제의 주된 내용은 비정규직이 대상이 되고 있고 관련 분규로 인한 형벌적용 역시 이들에게 집중되고 있음. 이로 인해 대부분 근로빈곤층 에 포함되는 비정규직의 처우가 더욱 악화될 우려가 있음
- O 사회권규약위원회, ILO 역시 이러한 노동사건의 과도한 형벌적용을 여러 차례 지적한 것을 고려하여, 제도 개선과 함께 관련된 ILO주요협약(제87호, 제98호등) 미비준 현황의 개선도 같이 요구됨

□ 사업 내용

- O 관련실태조사 결과 발표 및 정책토론회를 통한 학계.전문가.정부.NGO 등 의견수렴, 주요 쟁점의 구체화
- 실태조사 및 정책토론회 논의내용을 기초로 제도개선 방안 검토 및 권고
- O ILO 주요협약 비준의 당위성 공유 위한 관련부처 정책협의 실시

□ 기대 효과

- 국제노동기준에 부합하도록 현행 법제.정책 정비
- 노사관계 관련 법제의 선진화 및 국제화(Global Standards)
- O 주요 ILO 협약 비준을 통한 보편적 노동인권의 실현

□ 추진 일정

- 노동사건의 형벌적용 제도개선 권고(4월~6월)
 - 관련 실태조사 결과발표 및 학계. NGO 등 정책토론회 개최 (2월)
- O ILO 제87호【결사의 자유 및 단결권 보호】, 제98호【단결권 및 단체교섭권 원칙의 적용】 협약 비준 검토보고서 작성 및 권고 (10월~12월)
 - 의견 공유를 위한 관련부처 정책협의회 개최(10월)

□ 소요예산

O 정책토론회 개최 등 : 약 200만원

※ 담당자: 인권연구팀 김태영

13. 빈곤계층의 최저주거기준 실현을 위한 제도 보완

□ 배경 및 목적

- O 모든 국민이 쾌적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는 주거권은 헌법에 규정된 권리로 국가는 적절한 주거정책을 통해서 국민의 주거권을 보장해야 할 의무를 지니고 있음
- 빈곤계층에 대한 주거복지 정책이 확대되고 있으나, 주택법상의최저주거기 준의 실현을 위한 장치도 결여된 실정임. 따라서 현행 법제상 주거빈곤층 을 위한 제도보완이 필요함

□ 사업 내용

- O 최저주거기준의 내용의 적정성 및 적용의 실질화 방안 검토
 - 정부가 주택법상 최저주거기준을 반영하여 처음 실시된 06년 주택조사 내용의 검토를 통해 동 기준의 적정성 등의 제도개선 방안 마련

□ 기대 효과

○ 지역개발의 일부 부작용으로서가 아닌 국가가 보장해야할 주거권으로서의 사회적 인식 제고와 함께, 최저주거기준의 실현 등 빈곤계층의 실질적 주 거보장을 위해서 정부의 주택종합정책의 접근 방향에 대한 재검토를 시도 함

□ 추진 일정

O 최저주거기준의 적용의 실질화 방안 검토(1월~4월)

□ 소요예산

O 전문가, 인권단체, 정부부처 등 종합 정책토론회, 협의 등 : 200만원

14. 강제철거 과정의 거주민 권리보호 위한 정책 법제 개선

□ 배경 및 목적

- 국제적으로 강제철거와 강제퇴거에 대해 원칙적으로 금지되고 지극히 예 외적 상황에서 국제법의 관련 규정들을 준수하는 경우에 한해서 가능하다 고 인식되고 있음
- O 그러나 도시지역 등의 개발사업과정에서 불법적인 강제퇴거 등 으로 인해서 거주민의 심각한 권리침해가 발생하고 있으므로 현행 법제상 보완이필요함

□ 사업 내용

- O 개발지역의 강제철거과정에서 거주민의 권리보장 방안 마련
 - 도시지역의 재개발 과정에서 빈번히 발생하는 거주민의 권리침해와 관련한 행 정대집행법 등의 절차 개선과 철거민 이주정책의 합리화 방안 검토

□ 기대 효과

O 철거상황 조건의 법적 통제수단 마련 및 민간개발로 인한 철거와 퇴거에 대한 법적 보호장치 마련 등을 통해 거주민의 인권을 보호함

□ 추진 일정

O 강제철거과정의 거주민의 적정 권리보장 방안 검토(5월~7월)

□ 소요예산

○ 전문가, 인권단체, 정부부처 등 종합 정책토론회, 협의 등 : 200만원

※ 담당자: 인권연구팀 박병수

15. 노숙인 인권개선을 위한 방안 마련

□ 배경 및 목적

- 노숙인은 공권력은 물론 쉼터 및 의료서비스 기관 등 다양한 영역에서 인권 침해에 쉽게 노출됨에도 불구하고 보호제도가 대단히 미흡한 실정임
- 노숙인 문제의 본질을 충분히 고려하고, 주거권, 건강권, 노동권에 기초한 법률 정비, 행정 조치, 정책 프로그램의 종합적 고려 속에서 인권보호 방안 이 마련되어야 함

□ 사업 내용

- O 노숙인의 적절한 주거 부재, 부실한 건강상태, 노동기회 확보 어려움 등 상 호 연계된 영역에서의 관련 정책 검토
- 노숙인의 급식, 보건의료 등의 건강문제와 강제노동, 임금체불과 착취 등 노 동문제 개선 방안 검토

□ 기대 효과

○ 노숙인의 인권상황과 밀접하게 연계되어 있는 주거권, 건강권, 노동권 등 의 개선방안을 마련하여 노숙인의 인권을 보호함

□ 추진 일정

O 노숙인 인권 개선 방안 검토(8월~10월)

□ 소요예산

○ 전문가, 인권단체, 정부부처 등 종합 정책토론회, 협의 등 : 200만원

※ 담당자: 인권연구팀 박병수

일반 사업

- 1. 사회권 관련 국가통계의 체계적 관리 위한 기초연구
 - 사회권 지표 개발을 위한 1차년도 과제

□ 배경 및 목적

- 2007년 사회권 심포지엄의 후속조치로 우리 사회의 사회권 현실을 조망할 수 있는 지표의 개발이 필요함
- 사회권 지표는 사회권의 현 실태를 보여주는 간결한 표현방식으로, 사회권 에 대한 국민적 관심과 이해를 증진하고 정부정책에 대한 가이드라인으로 서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음

□ 사업 내용

- O 사회권 관련 국가통계의 체계적 관리를 위한 기초연구 수행 및 시안 마련
 - 2007년 '사회권 지표 개발을 위한 기초연구' 실시 결과 검토
 - 관련분야 전문가 및 인권단체 활동가 의견수렴
 - 향후 추진할 연구방향 및 내용에 대한 초안 보고서 제출
 - 심층연구가 필요한 영역에 대해 추가 연구용역 실시

□ 기대 효과

- O 사회권 관련 국가통계의 체계적 관리 유도
- O 사회권의 쟁점화를 통한 사회정책의 변화를 이끌어내는 동력화
- O 사회권 실현수준을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 자료를 제공, 국제비교 등 다양 한 방법을 통해 발전방향과 사회권 보장목표를 제시
- O 사회정책의 전체적인 상황 파악으로 균형 있는 사회정책 유도

□ 추진 일정

- O 관련 실태조사 연구 지원 및 검사(3월)
- O 연구용역 결과 발표회 개최(4월)
- 사회권 지표개발 초안 마련 및 심층연구를 위한 파일롯 스터디 구성, 초안보 고서 작성(5월~7월)
- O 제2차 사회권 지표 개발을 위한 연구 실시(7월~)

□ 소요예산

- 연구용역 결과 발표회 : 1,000만원
- O 제2차 사회권 지표 개발을 위한 연구용역 : 4천만원

※ 담당자: 인권연구팀 심광진

2. 차별금지 관련 입법 지원 및 후속조치

□ 배경 및 목적

○ 장애인을 비롯하여 사회적 약자.소수자에 대한 대표적 보호기반이 되는 장애인 차별금지법 시행령과 차별금지법(안)이 현재 법제처 심사와 정부입법으로 국회 에 계류 중이므로 이에 대한 모니터링이 필요하며, 차별금지법의 경우 현행 국 회 임기 내에 입법이 되지 않을 시 차기 정부에서 제정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지원과 후속조치가 요구됨

□ 사업 내용

- O 장애인차별금지법 모니터링 및 내용 보완
 - 현행 정부 시행령안에 대한 모니터링
 - 관련 경과 상임위 및 전원위 보고
- O 차별금지법 입법 모니터링 및 내용 보완
 - 현행 정부법안의 입법에 대한 모니터링
 - 차기정부의 차별금지법 제정에 대한 모니터링, 내용 검토 및 의견 개진을 통해 지속적인 지원 및 보완
- O 차별금지법 제정에 따른 후속 조치
 - 입법화될 경우 관련 시행령 제정에서 구체적 사안에 대한 검토 및 권고. 관

계기관과의 능동적인 협의 등을 통해 차별시정의 실효성 확보

- O 차별적인 법령 및 제도의 개선 검토
 - 차별금지법 입법 전.후의 조치로서 현행 법령 및 제도에서 차별적 규정을 분석하여 이의 개선 권고

□ 기대 효과

- 장애인차별금지법은 장애인 인권 보호의 중요한 척도가 되며, 우리 위원회가 실질적인 이행기구로 규정되어 있어 이에 대한 적극적인 모니터링을 통해 향후 위원회의 관련 업무를 차질 없이 수행토록 함
- 현행 법제상 사회적 소수자 등에 대한 일반적인 제도적 보호기반이 될 수 있는 차별금지법의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를 지속화하고 동법 제정 시 그 시행을 구 체화할 수 있는 토대를 제공함

□ 추진 일정

- O 차별금지법 입법 모니터링 및 관련조치(1월~4월)
- 장애인차별금지법 시행령 관련 상임위 및 전원위 보고(4월)
- 차별금지법 제정시 동법 시행령 제정 지원 및 해설서 발간, 홍보작업 등(수시)
- O 차별적인 규정의 개선 검토(6월)

□ 소요예산

- 전문가 간담회 및 기타 협의 : 100만원
- 차별금지법 제정시 해설서 작성 및 발간(연구용역): 2,000만원
- ※ 담당자: 인권연구팀 김화숙, 조형석

3. 인권연구 활성화를 위한 지원

□ 배경 및 목적

- 인권논문공모사업은 신진연구자들의 인권연구에 대한 관심을 제고하고 인 권연구의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실시하고 있음
- O 인권문헌번역사업은 주요 인권관련 문헌의 번역·출판을 통해 학술 연구 및 인권의식 향상에 기여하고 위원회 내부 업무를 지원함으로서 업무수행 능력을 강화하고자 함

□ 사업 내용

- O 2008년 인권논문공모사업 실시
 - 위원회 주요과제 및 사회 현안에 대한 연구개발 유도
- O 2008년 인권문헌번역사업 실시
 - 번역대상 인권문헌 선정을 위한 선정위원회 구성 및 심의
 - 2003~2007년 문헌번역물 중 출판할 번역물 선정, 재감수 및 인쇄

□ 기대 효과

- O 인권연구 활성화
- O 연구활동 및 위원회 업무 지워

□ 추진 일정

- O 2008년 인권논문공모사업
 - 논문 공모 추진 계획안 작성(1월), 공고 및 홍보(2~3월)
 - 논문 접수 및 심사(9~10월)
 - 심사결과 발표 및 인권논문 수상집 제작·배포(11월)
 - 인권논문공모사업 업무매뉴얼 보완(12월)
- O 2008년 인권문헌번역사업
 - 인권문헌 번역 추진 계획안 작성(1월)
 - 번역대상 인권문헌 선정(2~3월) 및 번역·감수·인쇄(3~12월)

- 2003~2007년 문헌번역물 중 출판할 번역물 선정, 재감수 및 인쇄(3~12월)
- 인권문헌번역사업 업무매뉴얼 제작(~12월)

□ 소요예산

○ 인권논문 공모사업: 2,200만원

O 인권문헌 번역사업: 7,000만원

※ 담당자: 인권연구팀 심광진

4. 사회권 관련 정책 법제 모니터링 및 협력 강화

□ 배경 및 목적

- O 사회권에 대한 인식이 부족한 현실에서 정부정책 및 입법에 대한 능동적 인 사전 모니터링과 이를 통한 개입이 요구됨
- 아울러 관련 논의의 확산과 인식제고를 위해 전문가집단은 물론 정부 관계자와의 협력을 강화하고 이와 함께 다양한 영역의 인권단체와의 교류를 통해 정책과제의 구체화 및 효과성을 높임

□ 사업 내용

- O 사회권 관련 정부 및 국회(의원발의)입법에 대한 점검 강화
 - 정부 정책.입법계획 검토, 국회 의안정보 모니터링 등을 통해 사회권 관련 제 도개선 권고 및 의견표명 시의성 확보
- 정부관련 부처 및 인권단체와의 주기적 협력 강화
 - 권고 및 의견표명 전후로 소관부처와의 실무적 협의를 원칙적으로 시행하며, 인권단체와의 협력을 통해 구체적 정책과제 개발

□ 기대 효과

○ 위원회의 사회권 관련 권고 및 의견표명의 수용성을 강화하며, 정부정책 등에 사회권규약 위원회의 견해를 바탕으로 법제.정책의 국제기준의 충족 도를 높임. 아울러 인권단체의 현장 경험의 공유를 통한 현실적 과제개발 에 기여함

□ 추진 일정

- O 사회권관련 정책.법제 모니터링 등(수시)
- O 정부 소관부처 및 인권단체 협력(수시)

□ 소요예산

○ 정책협의 및 간담회 등 : 300만원

※ 담당자: 인권연구팀

V. 연간 추진 일정

기간	사업 내용	비고
1월	■차별금지법제정 입법 모니터링 및 관련조치(~4월) ■5인 미만 사업장 근로조건 개선 검토 ■최저주거기준 적용의 실질화 방안 검토(~4월)	
2월	■노동사건 형벌적용 실태조사 결과 발표 및 정책토론회 ■강제철거과정의 거주민 권리보장 방안 검토 ■인권논문공모사업 실시	
3월	■아동권리협약 해설집 연구용역 실시 ■인권문헌번역사업 실시 ■5인 미만 사업장 근로조건 개선 권고	
4월	●아동복지법 등 아동학대 방지 개선 권고 ●노동사건에 대한 형벌적용 제도개선 검토 ●강제철거과정의 거주민 권리보장 방안 권고 ●사회권지표 개발 기초연구 결과 발표	
5월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보완 검토 ■아동권리협약 선택의정서 정부보고서 심의 참가 ■가정폭력 관련 법령 검토 및 개선 권고 ■강제철거과정의 거주민 권리보장 방안 권고(~7월)	
6월	■노동사건에 대한 형벌적용 제도개선 권고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보완 또는 개선 권고 ■사회권 보장 강화를 위한 차별적 규정의 검토 및 권고(~12월)	
7월	■비정규직법 시행 1년 평가 및 노사정 참여 토론회 개최 ■사회권지표 개발 2차 연구용역 실시	
8월	■의료급여법상 건강검진 형평성 개선 권고 ■노숙인 인권개선 방안 검토(~10월) ■사내하도급근로자 보호방안 검토	
9월	■노인학대 및 여성폭력 관련 법령 검토 및 개선 권고 ■사내하도급근로자 보호방안 권고	
10월	■최저주거기준 적용의 실질화 방안 권고 ■임상실험 등 관련 법제 개선 검토 ■ILO협약(제87,98호) 비준 권고를 위한 관련부처 정책협의회 ■아동권리협약 해설집 발간	
11월	■사회권 규약 정부보고서 심의 참가 ■아동권리협약 정부보고서 의견표명 ■의료피해구제법, 임상실험 등 관련 법제 개선 권고 ■인권관련 국가통계 보완사항 시안 확정 및 권고	
12월	■ILO협약(제87,98호) 비준 권고 ■인권논문공모사업 완료 ■인권문헌번역사업 완료	



2008년도 업무추진 계획

2008. 1.

인권교육본부

차 례

Ι.	일반현황1
ΙΙ.	2007년도 주요업무 실적 및 평가 2
Ⅲ.	외부환경 동향 분석8
IV.	주요업무10

I. 일반 현황

□ 인원

O 팀장 포함 7인

□ 주요 업무

- 인권교육 기본계획 수립.종합 및 조정
- O 학교 인권교육 강화를 위한 법령.제도.정책.관행개선 사항 연구 및 위원회 권고. 의견 표명, 관련 국내.외 협력
- 학교 인권교육 기본계획 수립.시행
- 학교 인권교육업무 관련 기관 협의
- 학교 인권교육 프로그램.자료의 개발 및 보급
- O 학교 인권 전문인력 양성훈련
- O 학교 관련 국내외 인권관련 교육제도 및 교육운영실태에 관한 조사.연구
- O 본부 총괄 업무

□ 2008 예산

소관팀	사 업 명	예산액(천원)	비	고
	인권교육 포럼	7,897		
	인권교육 강사단 표준 교안	2,000		
	인권교육 지침서 개발	4,019		
	인권교육 협의 체계 구축 운영	3,750		
	인권교육 훈련센터	40,006		
	사이버인권교육과정 운영	30,000		
하고고이티	교원연수과정 운영	60,564		
학교교육팀	사이버컨텐츠 개발	52,525		
	인권교육 프로그램 개발	30,000		
	인권교육 컨설팅	9,611		
	인권교육 실천대회 개최	9,194		
	인권교육 연구학교	55,607		
	인권교육 연구 중심대학 지원	45,000		
	위원회 방문프로그램	1,200		·
계		351,373		

Ⅱ. 2007년도 업무 실적 및 평가

1. 2007년도 주요 업무 실적

- □ 인권교육법 제정 및 인권교육 실행기반 구축
 - 인권교육 종합 발전계획 수립
 - 인권위원 및 외부 인권교육 전문가들로 종합계획 수립 TFT 구성.운영하여 지난 5년 간의 인권교육 활동을 평가하고 향후 추진과제를 도출하여 분과별 종합계획 초안을 마 련함
 - 2008. 2월중 인권교육종합발전계획(2008~2012) 확정 예정

○ 인권교육법 입법 추진

- 2007. 4. 23 인권교육에 관한 법률(안)을 마련하여 국무총리에게 법안 제출을 건의(2007. 5. 9)하였고 부처 의견 수렴 등 입법절차를 거쳐 국무회의 의결(2007. 10. 30) 및 국회 제출(2007. 11. 2)
-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제1소위원회 심의 중

○ 사이버 인권교육 활성화

- 중앙인사위원회 다수부처에 공통되는 전문교육과정 지정(07.7월) 등의 교육메리트 확보, 사이버인권교육전문위원회(07.4월) 구성 및 운영을 통한 운영전문화, 사이버학습관리시 스템 구축
- 공무원, 교사, 일반시민 등을 대상으로 교육과정을 운영(7,355명 신청)
- 매월 원격화상시스템을 활용하여 복창초등학교 및 부천여월중학교를 대상으로 총13회 2,100명 인권교육실시

□ 학교인권교육 기반구축 및 제도화

○ 학교인권교육협의회 구성

- 학생(아동)인권교육 관련 4개 중앙부처 및 교육청 등 20개 기관의 담당부서장(과장급)

이 참여하는 학교인권교육협의회 구성하고 제1차 협의회 개최(2007. 10. 5)

○ 친 인권적 교과서 도입 추진

- 교과서 인권내용 체계화를 위한 연구 용역을 실시하여 인권친화적 교과서 집필기준 및 교과별 인권내용을 개발하고 교과서 집필진 및 출판사 관계자 대상으로 설명회 개최(9. 19, 약 100명 참석)

○ 교원연수기관의 인권과목 개설 강화

- 교원연수기관에 인권교육 강사 명단 제공 및 강의지원을 하였으며 연수기획담당자 대 상으로 전국 시도 교육연수원 인권교육 간담회를 개최(12. 12)

○ 인권 거점 대학교 지정·육성 등 대학 인권교육 활성화

- 서울 3개, 인천 1개, 경북 1개, 전북 1개 등 총 6개교를 인권교육연구중심대학으로 지정하고 위원회와 MOU체결
- 전국 434개 대학을 대상으로 인권강좌 개설 현황을 조사.분석하고 강좌 확대 요청

□ 학교인권교육 프로그램 개발 및 교육 지원

○ 제2기 인권교육 연구학교 운영(2년차) 및 확산

- 제2기 인권교육연구학교 11개교에 대해 인권교육프로그램 및 자료 보급, 강의지원, 연구학교 운영 관련 기술 및 재정 지원
- 연구학교 최종보고회(학교별) 개최 및 종합보고회 개최(12. 12~13)
- 2008년도 제3기 인권교육 연구학교 지정 신청을 통해 현재 교육인적자원부에서 지정절 차 진행중

○ 학교현장 인권실천프로그램 개발 지원 및 실천대회 개최

- '인권친화적 학교문화 조성 지침서' 등 개발
- 2007년도 인권교육 실천사례 공모(25편 접수) 및 4개 권역별 대구·경북권, 수도권) 실천 대회(11.28~30, 12.13) 개최

□ 인권연수과정 운영 등

○ '인권교육포럼' 구성

- 인권교육포럼을 구성하고(현재 107명 신청), 제1차 포럼 개최(12. 14)

○ 교원 인권감수성 향상과정 운영

- 교원 인권감수성 향상 기본과정 위탁 운영기관으로 5개기관(성공회대학교 인권평화센터, 신라대학교 중등교육연수원, 광주교육대학교 초등교육연수원, 영남대학교 인권교육연구센터, 전남대학교 공익인권법센터)을 선정하고 여름방학기간중 각 10일간의 사이버 강좌 및 3박4일간의 집합연수과정 운영
- 하반기(겨울방학기간)에 1개의 심화과정 운영(성공회대)

○ 교육관리자 대상 인권교육 관련 국제 워크숍 개최

- 주한 영국대사관, 교육인적자원부와 공동으로 16개 시.도 교육청의 학생인권 담당 교육행정가 및 연구학교 교사 등을 주 대상으로 "인권친화적 학교문화 조성을 위한 국제 워크숍" 개최(2007. 2월, 3개 지역 순회개최)하여 학생인권 관련 정책 및 연구학교 운영에 반영되도록 함
- 최근 우리 사회에 화두로 등장한 다문화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다문화 관련 업무 공무 원들을 대상으로 주한 영국대사관과 공동으로 "다문화시대의 지역사회 인권증진에 관 한 국제세미나"를 대구(12. 6)와 광주(12. 7) 개최

○ 격 오지 학생 중심 위원회 방문프로그램 운영

- 방문프로그램의 내용을 세분화하고 콘텐츠를 보강하여 연간 30회(1,170명)의 위원회 방 문프로그램을 운영함

2. 평가

- □ 2007년도는 인권교육종합발전계획 수립, 인권교육법 제정 등 그 어느 해보다 인권교육 의 기본 틀을 제도화하는데 역점을 두었고 대부분 마무리 단계에 있음
 - 인권교육종합발전계획 수립은 초안이 마련되어 의견수렴 및 위원회 의결 절차를 남겨 두고 있음
 - 인권교육법 제정은 정부입법 방식을 택하여 추진함에 따라 부처간 이견 조정에 상당한 노력과 시간이 소요되었고, 법무부의 반대로 당초 15개 조항에서 7개 조항으로 축소된 정부안으로 확정되어 국회에 제출되었으나, 제17대 국회에서 통과되기 위해서는

남은 기간 보다 적극적이고 전략적인 대 국회 활동 필요

O 이러한 단위 사업들의 성공적인 완료 및 이행을 위해서는 위원회 차원에서 대내외적 으로 적극적인 관심과 노력이 필요

□ 사이버 인권교육 활성화 사업은 제도 및 운영에 있어 안정기에 접어듬

- 2006년 월 평균 162명이었던 사이버 인권교육 신청자가 2007년도에는 734명으로 353% 증가하였음
- 특히 하반기에 중앙인사위원회의 다수부처 공통 전문교육과정으로 지정됨에 따라 공 무원의 사이버 인권교육에 대한 인지도 및 교육수요가 크게 증가하였고 이러한 추세 는 2008년도에도 지속될 것으로 보임
- 다만 현재 1인이 사이버인권교육 제도 운영, 콘텐츠 개발 및 관리, 과정 운영 등을 전 담하고 있어 증가하는 교육수요를 충족시키기에 한계가 있어 인력 보강 필요

□ 학교인권교육 기반 구축 및 제도화

- 학교인권교육협의회를 구성하여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인권교육 협의 및 확산 구조를 마련하였고, 친 인권적 교과서 도입을 위한 자료개발 및 설명회를 실시하여 향후 교과 서에 인권내용을 체계적으로 반영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함
 - 향후 이를 잘 활용하면 초.중등학교 인권교육이 그 틀과 내용에 있어 장기적이고 안 정적으로 확산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 교원연수과정에 인권강좌 확대 반영을 위한 노력의 결과 인권 강좌가 점차 확대 반영 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향후에는 연수기획 담당자이 인권강좌의 필요성을 직접 느낄 수 있도록 하는 기회 제공이 필요
- 인권거점대학교 지정을 비롯한 대학교 인권교육 활성화도 2006년 전남대에 이어 2007 년도에 수도권 4개 대학과 영남대, 전북대와 추가적으로 교류 협정을 체결함으로써 전 국적으로 권역별 추진 기반을 구축하였음

□ 학교 인권교육 프로그램 개발 및 교육 촉진 지원

- 제2기 연구학교 운영이 마무리되면서 현장의 다양한 교육자료와 함께 타 학교에 확산 적용될 수 있는 기틀이 마련되었음
 - 특히 2007년도에는 교육인적자원부에서도 자체적으로 학생인권보호 정책연구학교 32 개교를 지정.운영하고 동 학교에서 기존 위원회가 운영한 연구학교의 결과물들이 활 용되고 재생산됨으로써 인권교육의 확산 및 발전에 기여함
- 학교현장의 인권실천프로그램 개발 지원 및 지역적 확산을 위해 2006년도에는 수도권에서 1회 개최하였던 인권교육 실천대회를 수도권, 대구, 부산, 광주 등 4개 권역별로분산 개최하였고, 학교현장에서 구체적 인권기준의 제시 요청이 꾸준히 제기됨에 따라 "인권친화적 학교문화 조성 지침서"를 개발하였음

□ 인권연수과정 운영

- O "인권교육 포럼"을 구성하여 제1차 포럼을 개최(12. 14)하는 등 인권교육 인적 역량 개발 및 축적을 위한 기반을 구축함
- 교원인권감수성 향상과정 운영 및 학생방문프로그램 운영은 지난해에 비해 내용의 충 실도가 더욱 향상되고 양적으로도 많이 확산되었음
 - 교원인권감수성 향상과정은 지난해 3개 기관에 위탁 운영하였으나 금년도 기본과정 5 개 기관, 심화과정 1개 기관 등 총 6개 기관에 위탁 운영하였고 사이버 강좌와 연계 하여 교육의 효과성을 높임
- 학교 현장 및 교육행정 분야의 인권교육에 대한 인식 개선과 선진 외국의 사례를 국 내에 접목하기 위해 주한 영국대사관 등과 공동으로 국제워크숍을 개최하는 등 인권 교육을 위한 기관간 상호 협력 방식의 새로운 모델을 제시하고 기반을 구축함
 - 2007. 2월에는 주한 영국대사관, 교육인적자원부와 공동으로 교사, 교육행정 공무원 등 600여명을 대상으로 수도권, 영남권, 호남권 3개 지역에서 "인권친화적 학교문화 조성을 위한 국제워크숍"을 개최하여 인권교육 확산 및 우리나라와 영국과의 인권교육 교류.협력 기틀을 다짐
 - 이러한 상반기 성과를 토대로 12월에는 주한 영국대사관 및 MOU 체결대학(영남대, 전남대)과 위원회가 업무를 상호 분담하여 대구와 광주에서 "다문화 시대 지역사회 인권증진 방향에 관한 국제세미나"를 개최하여 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다문화 사회

에 대응함

O 방문프로그램은 방문대상 및 요구에 따라 프로그램을 세분화하여 교육효과를 높이고 연간 30회, 1,170명이 방문프로그램에 참여하는 등 운영에 있어 성숙단계에 접어든 것 으로 평가됨

Ⅲ. 외부환경 동향 분석

□ 인권교육 수요의 증가

- 그 동안 학교분야에 대한 인권교육 제도화 노력의 결과 인권교육의 양적 확산 및 교육 수요 증가
 - 2007년도 개정교육과정에 인권내용 강화, 교원연수과정에 인권강좌의 확대, 지역별 주요 대학과의 MOU 체결, 대학의 인권강좌 개설 확대 등
 - 점차 심화되고 있는 학교폭력의 완화 및 민주적 학생생활지도의 방안으로서 인권교육을 인식하고 도입하는 사례의 증가
 - 사이버 인권교육 수요의 증가
- 특히 인권교육에 관한 법률이 국회를 통과할 경우 인권교육의 양적 확산 및 수요는 더욱 증가할 것으로 예상

□ 학교현장의 구체적 사안과 관련된 인권기준 제시 요구

- 두발, 체벌, 생활지도 등 학교현장의 구체적 사안별로 인권(친화)적 처리 기준 등 문제 해결형 인권가이드라인 제시 요구의 지속
- 친인권적 학교환경(문화)에 대한 기준 제시 요구 등

□ 인권 및 인권교육에 대한 부정적 인식 지속

- O 학교현장에서는 아직도 교사의 권위 실추 및 교권 붕괴, 학생 생활지도의 어려움을 학생인권 강조 및 인권교육을 원인으로 인식
- O 학생인권과 교권, 교육과 인권을 상호 대립적인 것으로 인식하는 경향이 많음
- 특히 이러한 인식은 초등학교보다는 중고등학교에서, 그리고 학생들의 학력수준이 비교적 낮고 학생생활지도에 어려움이 많은 학교일수록 강함

□ 인권교육에 대한 정확한 이해와 인식의 부족

○ 아직 인권교육에 대한 정확한 이해와 인식의 부족으로 인권교육이 단순히 지식 전달 수준에 머물거나 인성교육, 법 교육, 민주시민교육, 다문화교육, 도덕교육 등과 그 내 용에 있어 혼재되어 이루어짐

IV. 주요업무

1. 중점사업

가 다문화 시대 다문화 이해 교육 등 인권교육을 통한 인권증진 방향 모색(지속)

□ 배경 및 목적

- 이주 노동자와 결혼이민자의 증가로 이주 인권이 우리 사회의 주요 인권의제로 대두, 다문화의 이해와 관용을 통한 인권의 보호와 증진 필요
- O 07년도 영국대사관 등과 함께 추진한 다문화 시대의 지역인권증진 방향을 위한 국제 세미나의 후속 조치 필요

□ 사업내용

- O 학교 등의 다문화 이해교육 관련 실태조사
- 다문화 담당 지자체 행정 및 교육공무원 정책네트워크 구성 및 정책 간담회 개최
- 인권교육실천시범학교 특성화 주제로 운영

□ 기대효과

- O 다문화 관련 정책네트워크 활성화
- O 다문화시대 인권, 특별히 지역사회 인권증진에 기여

□ 추진일정

- O 다문화 이해교육관련 실태조사
 - 계획수립 및 용역 발주 (6월까지)
 - 실태조사 완료(11월까지)
- O 다문화관련 정책네트워크 구성.운영

- 정책네트워크 구성(2월)
- 정책간담회 개최(4월부터)
- O 인권교육연구학교 운영
 - ※ 추진계획 별도보고

□ 소요예산

- O 다문화 이해교육 관련 실태조사 : 약 30.000천원
- 정책네트워크 구성 운영 : 약 1,000천원
- ※ 담당자: 백인애

나 이동 청소년 노인 등 소외계층 인권보호

과제1. 학생인권 신장을 위한 지침서 개발

□ 배경 및 목적

- 권위적이고 일방적인 학교생활규정의 개정을 요구하는 학생들의 요구 지속
- 학교생활규정이 단위 학교 차원에서 인권 친화적으로 개정될 수 있도록 실제 학교 현장에서 보장되어야 할 학생 인권 사항들에 대한 명확한 지침의 제시요구 증가
- 2007년도 개발된 '인권친화적 학교문화 조성 지침서' (최종보고서형태)에 대한 후속 조치로서 관계기관과의 협의를 통해 활용형 지침서 개발 필요

□ 사업내용

- O 학생인권 전반에 대한 기준과 인권친화적 학교문화 조성에 초점을 둔 '인권친화적 학교문화 조성 지침서'에 대한 간담회, 토론회 실시
 - 교육부, 시.도 교육청, 학교인권교육협의회 및 아동관련 시민단체 등과의 협의를 통해 지침서에 대한 의견 수렴

- 일선학교에서 보급.적용할 활용형 지침서 개발 및 활용 워크숍 추진
- 학생생활규정에 대한 지속적인 실태조사 및 우수 운영 사례 발굴.보급

□ 기대효과

- O 체벌, 두발.복장 제한, 과도한 학습, 학교폭력 등 학교 내.외에서 발생하는 심각한 인권 침해적 상황을 개선하여 학생인권을 신장하는 지침 역할 수행
- 학교의 구조와 문화를 친인권적으로 조성하여 인권교육이 지지하는 가치와 질서가 학교 내에서 실현되는 바탕 마련

□ 추진일정

- ○『인권친화적 학교문화 조성 지침서(최종보고서형)』을 주제로 한 교원연수 심화과정 모니터링: 2008. 1.
- 『인권친화적 학교문화 조성 지침서(최종보고서형)』에 대한 관계기관 협의 실시 : 2008. 2.~4.
- 『인권친화적 학교문화 조성 지침서(활용형)』개발: 2008. 4.~7.
- ○『인권친화적 학교문화 조성 지침서(활용형)』활용 워크숍 추진 및 보급: 2008. 7.~12.

□ 소요예산

- 지침서 개발 : 4,000천원
- O 보급용 책자 제작 : 5,000천원
- 관계자 간담회 및 워크숍 실시 : 3,000천원

※ 담당자 : 임선영

과제2 : 아동인권존중 지역사회 만들기

□ 배경 및 목적

○ 지방자치단체가 아동 인권 존중의 지역문화를 형성하도록 분위기를 조성하고 인권 현장 및 국민 속으로 스며드는 인권교육 활동을 전개하여 위원회 이미지 제고 ○ 지역단위 인권존중 민관협력체계 구축계기 마련 및 아동 인권관련 시민사회단체의 인권활동 활성화 지원

□ 사업내용

- O '아동 인권존중 지역사회 만들기'를 위한 지역순회 프로젝트 추진
- 지역사무소 소재지를 중심으로 아동 인권존중 지역(4곳 정도) 선정
- 워크숍, 토론회, 캠페인, 인권교육 등을 통해 지역단위 민관협력체계 구축
- 인권존중 지역사회 만들기 지킴이 선정 및 활동 지원
- O '아동 인권존중 지역사회 만들기' 실천과제 이행서약 및 홍보
- 아동 인권존중 지역사회 만들기 실천과제 개발 및 실천과제 협약체결
- 아동의 권리, 통합교육, 다문화교육 등을 지역별 핵심과제로 선정

□ 기대효과

- 지역사회내 아동에 대한 권리 인식을 통해 아동인권신장 및 인권존중문화 확산
- O 지역단위의 통합적 인권교육 실시 및 지역네트워크 구축을 통한 인권 친화적 지역 사회 문화조성

□ 추진일정

- O '이동 인권존중 지역사회 만들기' 기본계획 수립 및 아동 인권존중 지역 선정 : 2008. 1~3
- O '아동 인권존중 지역사회 만들기'를 위한 지역순회 프로젝트 추진 : 2008. 4.~12

□ 소요예산

- 관계자 간담회 및 워크숍 실시 : 3,000천원
- 인권교육 실시 및 관련 자료 제작 : 2,000천원

※ 담당자 : 임선영

2. 일반사업

가 인권교육에 관한 법률 입법 추진

□ 배경 및 목적

○ 인권교육에 관한 법률안이 법사위에 제출되어 있는 상황에서 참여정부 임기 내에 입법화를 위한 국회활동이 필요

□ 사업내용

O 법사위 위원 등에 대한 인권교육법안의 심사 촉구

□ 기대효과

- 17대 국회 임기가 4월 중 마무리되기 때문에 적극적 국회활동을 통하여 법안 통과
- 향후 시행령 제정 등을 통하여 인권교육이 공공기관 등에 의무화되는 계기 마련

□ 추진일정

- O 1/4분기 내 국회활동 : 법사위원장 및 양당간사 간담회, 법사위 위원 법안설명 등
- 국회통과 후 하반기 시행령 제정

□ 소요예산

- O 간담회 등 업무추진비 : 2,000천원
- ※ 법제정을 위한 국회활동을 위한 위원회 차원의 업무추진비 지원 필요

※ 담당자 : 오영택

나 사이버인권교육 운영의 안정화와 내실화

□ 배경 및 목적

- 대내적으로는 꾸준한 교육과정 운영으로 2007년 구축한 학습관리시스템과 교육포털 사이트의 안정화와 최적화를 도모하고, 대외적으로는 적극적인 콘텐츠 공동 활용과 기관협의로 위원회 사이버인권교육의 위상을 높임
- 2년간의 운영경험을 토대로 사이버교육과정에 토론, 과제 및 시험 평가 등의 운영방 식을 도입하여 사이버인권교육의 내실화를 기함

□ 사업내용

- O 사이버 인권교육과정 운영 활성화와 내실화
 - 운영과정(6개 과정, 과정별 6회 이상 운영)

과정	성명	인권의이해	장애차별예방	성차별예방	행정과인권	아동권리이해	한국사회와	인권		
대	상	교사, 중앙·지방공무원, 학생, 시민								

- 과정 운영 중 토론, 과제, 시험 등의 운영방법을 적극적으로 도입
- 사이버 인권교육관련 공동 활용 및 기관협의
 - 사이버인권교육과정 공동 활용, 교육메리트 확대, 콘텐츠 공동제작
 - 시도 교육연수기관과 콘텐츠 공동 활용 협의를 통해 교원 연수에 사이버인권교육 활용 활성화
- O 사이버 인권교육 기반구축
 - 위원회 사이버인권교육을 위한 시스템 안정화 및 최적화
- O 사이버인권교육 콘텐츠 개발
 - 기존 콘텐츠에 대상별 교육을 특성화할 수 있는 콘텐츠 추가 개발(교사용, 공무원용, 학생용 등) 및 사이버 인권동화 등 기존 콘텐츠 수정

□ 기대효과

- O 사이버인권교육의 안정적 정착
 - 공무원, 교사 등을 대상으로 한 인권교육의 운영경험이 축적되고 콘텐츠를 지속적으로 개발하고 보완함에 따라 사이버인권교육의 안정적 정착
- O 사이버 학습효과 제고 방안 도입을 통한 사이버인권교육의 내실화

□ 추진일정

- O 학습관리시스템 및 포털사이트 안정화 도모: 1~3월
- O 교육운영을 통한 학습관리시스템 및 포털사이트 최적화 도모 : 2~7월
- 사이버인권교육 내실화 도모 : 9~11월
- O 콘텐츠 제작 및 수정: 8~12월
- O 기관공동활용 및 기관협의 : 연중

□ 소요예산

- O 교육운영 : (위탁) 30,000천원 (일반수용비) 17,571천원
- 콘텐츠 개발 및 수정 관련 : 52,525천원

※ 담당자: 이인영

이권교육 훈련센터 운영

□ 배경 및 목적

- 기존 팀별, 대상별로 각기 다른 장소에서 개별적으로 기획.운영해온 인권교육과정을 연단위로 체계적으로 편성.운영
- 인권교육원 설립시까지의 대안 및 운영 경험 축적
- 기존 연평균 6.5회, 277명에 불과한 인권연수과정을 확대 운영

□ 사업내용

- O 연간 인권교육 연수과정 편성 및 교육 수요 조사
 - 교육본부내 세 팀의 연수과정을 통합하여 연단위 인권교육 연수과정 편성
 - 과정별 프로그램, 일정, 대상 및 인원, 주요 교과목 등을 제시하고 과정별 교육수요 조사 실시
- 연단위 인권교육 연수과정을 운영할 수 있는 연수시설 임차 및 교육자재 확보
- O 연수과정 운영
 - 금년도 최소 10회, 400명 이상 실시

□ 기대효과

- 인권교육 연수과정 및 교육인원의 확대
- O 연수과정의 운영의 표준화 및 효율화
- O 연수과정 운영 경험 축적을 통한 전문성 확보로 향후 인권교육원 설립 운영 기반 구축
- O 인권(교육) 전문인력의 양성

□ 추진일정

- 연간 연수과정 운영계획 수립 : 1. 31까지
- 연수 장소 임차 및 교육시설 준비 : 2. 1 ~ 3. 31
- O 연수과정 운영: 4.1~11.30

□ 소요예산

○ 인권교육 훈련센터 임차 및 운영: 101,000천원

※ 담당자 : 김재석

라 인권교육실천시범학교 운영

□ 배경 및 목적

- 금년도에 초등학교 2개교, 중학교 2개교, 고등학교 4개교등 8개교가 인권교육 실천 시범학교로 신규 지정될 예정
- 신규지정 8개교 및 지난해 지정된 1개교 등 총9개교에 대해 2007년 개발한 "인권친화적 학교문화 조성 지침"을 시범적용하여 인권친화적 학교문화를 확산하고 정규교육과정 내 인권교육 도입을 일반화하고자 함

□ 사업내용

- O 중점방향
 - 인권친화적 학교문화 조성 지침의 시범 적용 및 세부주제별로 특화하여 운영
 - 아동인권, 장애인인권, 이주민인권 등 위원회 중점과제를 단위학교에서 시범실천
- O 신규 지정 연구학교 교장, 교감, 담당 교사, 관할 교육청 관계자 등을 대상으로 1박2 일의 워크숍 개최

- 연구학교 운영 방안 논의 및 인권교육에 대한 기본적 학습
- 제1기 및 제2기 연구학교 운영의 경험 및 우수사례 공유
- O 연구학교 운영 지원
 - 학교당 연구개발비 5백만원 지원 및 인권교육프로그램.자료 등 지원
 - 연구학교 운영 우수 공로자에 대한 표창
 - 연구학교 운영에 대한 모니터링체계구축 및 컨설팅 지원

□ 기대효과

- O 인권친화적 학교문화 형성의 지역거점화로 인권교육의 지역적 확산
- 인권친화적 학교문화 지침서의 유효성 검증 및 보완
- O 우수 인권교육 사례 및 자료의 개발
- 교사들의 인권교육 능력 개발

□ 추진일정

- 연구학교 지정 : 1월중
- O 연구학교 운영계획 수립: 3월
- 연구학교 운영 워크숍 개최 : 3월말
- 재정 및 프로그램 등 지원 : 연중

□ 소요예산

- 55,000천원
- ※ 담당자: 백인애

미 인권교육 국내의 협력

□ 배경 및 목적

- O 인권교육 현안 및 인권교육 정책을 각계의 의견을 수렴하여 추진
- O 의견수렴과정을 통해 인권교육을 확산하고 인권교육 현안을 공론화
- 국내.외 교류를 통하여 인권교육관련 우리나라의 입지를 공고히 하고 해외 모범사 례를 국내에 소개하여 인권교육 역량 강화

□ 사업내용

- O 전문위원회 운영
- O 인권교육홍보브로슈어 보급
- O 해외 우수 인권교육자료 번역
- 영국대사관과 협력으로 인권교육연구학교 관계자 영국연수 추진

□ 기대효과

- 다양한 이해관계자를 인권교육정책 추진에 참여시킴으로써 추진의 동력을 확보하고 현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반발을 최소화
- O 국내.외 교류활동을 통한 인권교육 역량 강화 및 우리나라 인권교육의 대외 홍보

□ 추진일정

- O 전문위원회
 - 전문위원 재 위촉 및 신규 위촉 : 1월
 - 연 2회 이상 개최하되 현안발생시 수시 개최
- O 인권교육홍보브로슈어 보급(지속)
- O 해외 우수 인권교육자료 번역 및 사이버인권배움터 탑재
 - 번역 대상 자료 선정 : 1~3월
 - 번역 의뢰 및 번역 : 4~9월
 - 인권교육자료 발간 및 사이버인권배움터 탑재 : 10~12월
- 영국대사관과 협력으로 인권교육연구학교 관계자 영국연수 추진
 - 영국대사관 협의 : 1~3월
 - 연수대상 인권교육연구학교 관계자 선정 및 연수 실시 : 5~8월

□ 소요예산

○ 전문위원회 개최 : 약 3,400천원

○ 인권교육자료 번역 및 발간 : 8,000천원

※ 담당자: 백인애

바 학교 인권교육 콘텐츠 개발

□ 배경 및 목적

- 인권교육 전문가가 열악한 상황에서 각 대상별로 인권교육 자료를 개발·보급하여 인 권교육 인프라 조성에 기여하였으나 인권교육 자료에 대한 질적 수준을 담보하고 다양한 시각의 차를 합의하고 논의하는 공론의 장 미비
- 학교 인권교육이 효과를 거두기 위해서는 다양한 교수학습 방법과 자료가 개발되어 인권교육을 지도하는 교사들에게 보급되어야 함
- 인쇄매체 중심의 인권교육 자료에서 인권문화 콘텐츠와 인권교육 콘텐츠를 유기적으로 결합한 전자 매체형 인권교육 자료 개발 필요

□ 사업내용

- 전자매체형 표준 인권교육 자료 개발
 - 위원회 발간 프로그램 및 각종 인권교육 실천사례들을 인권교육적 원칙하에 재정립하여 학교 현장에서 쉽게 활용할 수 있는 전자 매체형 표준 인권교육 자료로 개발
- O 학교 및 시민사회 각 분야의 인권교육 실천경험을 발표하고 공유하기 위한 실천사 례 모집 및 지역별 실천대회 개최

□ 기대효과

- 인권교육 자료의 질적 수준 향상과 인권교육에 대한 다양한 교수자료 개발
- 현장 적용을 통해 검증된 다양한 맞춤형 인권교육 프로그램 발굴 및 지역별 인권교육 실천대회를 통해 지역사회 인권교육 확산

□ 추진일정

- 기본계획 수립: 1~3월
- 프로그램 용역사업 추진 및 실천사례 모집 및 권역별 실천대회 개최 : 4~12월

□ 소요예산

- 인권교육 프로그램 개발: 30.000천원
- 인권교육 실천사례 모집 및 권역별 실천대회 개최 : 9,000천원

※ 담당자 : 임선영

사 대학교 인권교육 역량 강화

□ 배경 및 목적

- O 인권교육연구 중심대학을 중심으로 인권교육.연구 기반 마련 및 네트워크 형성을 통한 인권가치 확산 도모
- 인권관련 교과목 개설 확대 및 특강개설 등을 통한 대학내 인권교육 확산 도모

□ 사업내용

- O 인권교육연구 중심대학과의 협력
 - 정례 협의회의 개최 : 사업 평가 및 업무계획 조정
 - 로스쿨에서 인권교육 강화 방안 및 대학교에서 인권교육 방안 토론회 및 시범적용
 - 지역사회 인권증진 사업 운영, 연수과정 위탁 등 공동사업 진행
- O 인권관련 교과목 개설 영역 확대
 - 인권과목 담당 교수.강사 간담회(워크숍) 운영
 - 총장협의회(교육대학교, 지역별 등), 사범대학장협의회 등과의 간담회 개최

□ 기대효과

- O 로스쿨 도입에 따른 인권전문 법조인 양성의 기반을 마련하고, 다양한 인권교육 경험을 통해 해당 대학교 및 지역내 타 대학교 등 지역사회에 인권가치 확산
- 대학과의 협의 강화 및 모델강좌 보급을 통하여 대학내 인권관련 교과목 개설이 확대되고, 교육대학교에서의 인권교육 강화

□ 추진일정

- 인권교육연구 중심대학 : 워크숍(3월), 연수위탁(8월), 인권증진행사 진행(3/4분기)
- 인권관련 교과목 : 인권과목 담당 교수.강사 간담회 진행(2/4분기) 및 기존 현황조 사 후속조치.모니터링(2/4분기), 모델강좌 개발.보급(3/4분기)
- 총장협의회 간담회 : 교육대학교 총장협의회 간담회(3/4분기)

□ 소요예산

- O 인권교육연구 중심대학 토론회 및 정례 협의회의 : 4,000천원
- 인권증진행사 진행(용역비): 45,000천원
- 인권과목 담당 교수.강사 간담회(워크숍): 5,000천원
- O 교육대학교 총장협의회 간담회 : 500천원

※ 담당자 : 오영택

아 교원연수기관 인권강좌 제도화 확대

□ 배경 및 목적

O 학교 인권교육에서 주체적이고 핵심적인 역할을 담당해야 할 교사들의 인권감수성

향상 및 인권교육 역량 강화 필요

○ 그 동안 교육인적자원부 및 각 시.도 교육연수원과 교원연수에 인권강좌 포함을 협의하여 일정부분 반영하여 왔으나 이를 더욱 확대하고 제도화 시킬 필요가 있음

□ 사업내용

- O 신규교사 임용 및 자격 연수과정에서 인권강좌가 기본과목으로 제도화 되도록 추진
 - 연수기관(장) 인권교육 간담회 지속 실시
 - 연수기관 기획담당자 대상 인권교육 연수과정 또는 워크숍 실시
 - 가능한 경우 독립된 인권연수과정을 편성토록 협의
- O 인권강좌 현황 조사
 - 2005년도부터 매년 실시하고 있는 교육연수원 인권강좌 현황조사를 보다 세분화하여 지속 실시
- 위원회 사이버인권교육콘텐츠의 공동 활용 추진 및 인권교육 프로그램, 자료, 강의 등 지원

□ 기대효과

O 인권강좌 확대로 교원의 인권감수성 및 인권교육 능력 향상

□ 추진일정

- 연수기관(장) 인권교육 간담회 : 9월
- O 연수기획 담당자 인권연수: 10월
- 사이버인권교육콘텐츠 공동활용 및 인권교육 프로그램 및 자료 등 지원 : 연중

□ 소요예산

※ 담당자 : 김재석

자 교원 인권감수성 향상과정 위탁운영

□ 배경 및 목적

- O 교원의 인권감수성 향상 및 인권교육 역량 강화를 통하여 인권친화적 학교문화 조성
- O 위탁운영을 통한 인권교육 역량의 전국적 확산 및 지역사무소와의 연계 강화

□ 사업내용

- O 교원인권감수성 연수과정 위탁 운영
 - 6개 과정을 운영할 위탁기관 선정 및 연수과정 위탁
 - 지역사무소가 해당 지역 위탁운영기관과 연계하여 협력 및 모니터링 추진

□ 기대효과

- 인권교육연구 중심대학에서 인권감수성 향상과정을 운영하도록 하여 대학 및 지역사 회의 인권전문성을 강화하고 인권교육의 경험 축적
- ※ 위탁운영기관 공모 절차 또는 인권교육연구 중심대학 지정시 방안 마련
- 지역사무소.인권교육연구중심대학.지역인권단체의 네트워크 구축

□ 추진일정

- O 상반기 중 위탁계약 체결
- O 여름방학 기간 중 연수과정 운영(심화과정도 여름방학 때 운영)

□ 소요예산

- 연수과정 위탁 : 9,900천원 * 6과정(성공회대는 심화과정에 특화)
- O 연수과정 운영 담당자 워크숍: 2,500천원
- ※ 담당자 : 오영택

차. 학교평가시스템에 인권기준 반영 권고

□ 배경 및 목적

- 학교 내 인권 친화적 환경 및 인권존중 문화 조성을 위하여 교육인적자원부의 교육 청에 대한 평가, 교육청의 각급 학교에 대한 평가로 이루어지는 학교평가 시스템에 인권적 관점 도입 필요
- O 3년 단위로 개정 검토되는 학교평가 공동지표가 2007~2009년도로 확정.시행되고 있어 2008년도에 실시되는 공동지표 개정시에 반영 추진

□ 사업내용

○ 교육부 및 시·도 교육청의 초·중·고등학교 및 대학교, 지역 교육청 평가시스템 및 평가 지표를 조사·분석하여 각 기관 평가지표에 '인권교육 실시' 및 '인권 개선 사항'을 포 함하도록 교육인적자원부 등에 의견 표명(권고)

□ 기대효과

○ 피평가기관(학교)의 인권교육 관심도 제고 및 인권교육 확산

□ 추진일정

- O 기 추진 현황
 - 시.도교육청평가지표 및 학교평가공통지표 분석 및 관련 문헌 연구
 - 관련 전문위원회 개최(07년10월)
- O 관계기관 간담회 및 인권단체 의견수렴 : 2~3월
- O 상임위원회 상정 검토: 3~5월
- 권고 또는 의견표명 : 6월
- ※ 담당자 : 백인애

카 위원회 방문프로그램

□ 배경 및 목적

- 위원회를 인권교육 및 홍보 공간으로 활용하고 학생들에게 인권체험의 기회 제공
- 위원회 직원과 위원회 고객과의 직접적인 접촉과 상호 의사소통 기회 제공
- 인권교육 프로그램을 적용 발전시키고 프로그램 진행 능력 신장

□ 사업내용

- 위원회 소개 및 위원회 주요부서 방문
- O 참여형 인권교육 프로그램 실시
 - 모의진정서 작성, 영상자료 시청, 모의 전원위원회, 주요 관심사항에 대한 담당부서 직원과의 면담 등
- O 현장체험 활동
 - 장애체험 활동
 - 청계천 견학 등

□ 기대효과

- 위원회를 교육의 장으로 활용하여 저비용으로 효과적인 인권교육을 실시하고 위원 회 홍보 및 긍정적 이미지 제고
- 인권교육 프로그램의 시범 적용을 통해 프로그램을 검증, 발전시키고 인권교육 담당 자의 인권교육프로그램 진행능력 신장

□ 추진일정

○ 매월 평균 2회 실시

□ 소요예산

O 약 2,000천원

※ 담당자 : 박혜경

다. 학교인권교육 협의회 운영

□ 배경 및 목적

- O 학생인권 및 인권교육 관련 관계기관과의 공식적 협의체 운영을 통한 학생인권 신 장 및 인권교육 확산 도모
- 개별적 인권교육 협의의 한계를 극복하고 관련기관간 정책의 상호 조정
- 학생인권 및 인권교육에 관한 관계기관의 부정적 인식을 해소하고 위원회와의 원할 한 협력관계 구축

□ 사업내용

- 협의회 운영 활성화
 - 상반기(2월), 하반기(8월) 각 1회씩 연 2회 정기회의 개최
 - 협의회 안건을 적극 발굴하고 학생 인권 관련 특정 사안에 대한 논의가 필요할 경 우 수시 개최

□ 기대효과

- O 학생인권 관계기관과의 공식적 협의 채널 가동 및 협력관계 조성으로 위원회 학생 인권 관련 정책의 실효성 확보
- 교육행정에 있어 학생인권이 학교교육의 주된 과제로 인식되도록 함으로써 학교인 권교육 확산 도모

□ 추진일정

- 제2차 학교인권교육협의회 개최 : 2월
- 제3차 학교인권교육협의회 개최 : 8월

□ 소요예산

O 회의운영 경비 : 3,750천원

※ 담당자 : 김재석

피 인권교육 전문인력 양성

□ 배경 및 목적

- 인권교육에 관한 전문연구기관의 부재 및 저변이 취약함에 따라 인권교육 전문인력 의 양성 및 전문성 강화 필요
- 이에 따라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세부 실천과제의 이행

□ 사업내용

- 인권교육 전문인력 개발 계획 수립
 - 학교, 공공, 시민사회 등 분야별 인권교육 전문인력 양성체계를 구축 방안
 - 인권교육에 대한 연구.지원 기능 강화 방안
 - 인권교육 포럼의 운영 및 지역단위 인권교육 소모임 지원 등
- O 인권교육 컨설팅 및 모니터링 체계 구축
 - 인권교육 강의 지원 및 모니터링 실시

□ 기대효과

- O 인권교육 인력 양성 및 전문성 강화 기반 구축
- 포럼, 연수 등을 통하여 인권교육에 대한 동기 부여 및 인권교육가의 역량 강화
-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인권교육 방법 및 인력의 현장 보급

□ 추진일정

- 인권교육 전문인력 개발 계획 수립: 3~10월
- 인권교육 컨설팅 및 모니터링 체계.운영: 7~12월
- 인권교육 포럼 운영 : 분기별 1회

□ 소요예산

○ 인권교육 전문인력 개발계획 수립 : 3,000천원

○ 인권교육포럼 지원 : 4,700천원

○ 인권교육 컨설팅 및 모니터링 : 9,600천원

※ 담당자 : 백인애

2008년도 업무계획

2008. 1. 4.

공공교육팀

1. 일반현황

가. 주요업무 및 업무분장 현황

- O 팀 업무 총괄, 외빈초청사업 : 임 송(팀장)
- 법집행분야 제도화, 연수과정 운영(군), 심화프로그램 개발(검찰, 교정): 이성규
- 평가시스템구축, 프로그램 개발(입법,사법), 국제협력 사업: 안상희
- O 사회복지분야 제도화, 분이별 인권강사 양성과정, 사회복지시범시설 운영: 박한우
- 분야별 교재 활용 워크숍, 교육정보 관리, 방문프로그램 : 김현혜

나. 예산 현황

(백만원)

	구 분	2007예산	2008예산	비고
	인권교육포럼	30,329	7,897	
│ 인권교육 │ 기반조성	강사단 표준교안		4,000	
	인권교육 지침서		16,074	
코 저 O Od	인권교육훈련센터	60 644	40,006	
과정운영	공공분야 연수과정	69,644	20,188	
프로그램	인권교육 프로그램 개발	78,777	60,000	
	인권교육컨설팅	26,306	19,222	
하시기이	평가지표 개발		30,000	
확산지원	사회복지 시범시설		40,000	
	방문프로그램		1,200	
	합 계	205,056	238,587	

2. 분야별 추진 실적 및 평가

가. 군 대

<추진 실적>

- 인권교육 지침서 개발 : 군 인권교육 실행체계, 군 인권교육 시 필수적으로 다루어야 할 내용을 개발하여. 국방부가 이를 제도화하도록 의견을 표명
- 심화교재 개발 : 군 수사 및 의료관계자 대상 인권교재 개발
- O 연수과정 실시 : 국방부 인권팀과 공동으로 군 인권교육 교관, 육.해.공군 지휘관(대대장급)을 대상으로 지역순회 인권연수과정 실시

<평 가>

- 위 3개 사업 모두를 국방부 인권팀과 공동추진 함으로써 관계기관과의 파트너 십에 기초한 사업 공동추진 모범사례 창출
- 지침서 및 심화교재를 위원회가 직접 팀을 꾸려 개발함으로써 예산 절감, 관계 기관과의 파트너십 및 팀 내부역량 강화 도모
- O 연수과정을 국방부 인권팀이 주관하고 위원회는 기술 지원하는 방식으로 추진 함으로써 인권교육 기술 전수 도모

나. 경찰

<추진 실적>

- 인권교육 심화교재 개발 : 수사 및 경비 분야 근무자 대상 인권교육 심화교재 개발
- O 기 개발된 경찰인권교육방법론 영문화

<평 가>

O 위 심화교재 개발도 군대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경찰청 인권보호센터와 공동으로

직접 개발팀을 구성하여 추진함으로써 관계기관과의 파트너십 강화, 예산 절 감, 팀 프로그램 개발역량 강화를 도모하였음

O 위 수사 및 경비 교재는 교육대상자의 직무특성을 반영한 최초의 심화교재 임

다. 사회복지

<추진 실적>

- 노인, 정신보건 분야 인권교육 교재 개발
- O 아동. 장애인, 노인, 정신보건 분야 종사자 대상 연수과정 실시
- O "인권과 사회복지 실천" 토론회 개최
- O 문헌 번역 : 장애인생활시설 인권교재 영문화, "Social Work and Human Rights" 번역 등

<평 가>

- O 위원회가 직접 팀을 꾸려 노인, 정신보건 분야 인권교재를 개발함으로써 예산 절감, 팀 역량 강화 도모
- 노인 및 정신보건 분야 연수과정을 한국노인복지시설협회, 정신요양시설협회와 공동주최함으로써 관련 단체와의 파트너십 강화, 위원회의 기술 이전 도모
- O 아동 및 장애 분야 연수과정을 전년도에 위원회와 연수과정을 공동주최한 경험이 있는 한국장애인복지시설협회 등에 위탁 운영토록 함으로써 위원회의 기술이전 도모
- "인권과 사회복지실천" 토론회를 한국사회복지학회와 공동주최함으로써 파트 너십을 강화하고, 2008년도 사회복지교과목 지침서 개편 시 인권관점 반영 기 반 형성

라. 일반 행정

<추진 실적>

○ 2007년도에 이어 중앙인사위원회 2008년도 공무원교육훈련지침 상에 인권과목

- 이 주요시책과목에 포함
- 4개 지방자치단체(광주, 대전, 경기, 경남)의 2007년도에 직무교육과정에 인권 교육을 포함시켰으며, 중앙공무원교육원 및 7개 지방자치단체(광주, 대전, 경기, 경남, 대구, 부산, 강원)가 2008년도 교육훈련계획에 인권교육 포함을 적극 검토하기로 함
- 건교부, 환경부 등 일반 행정 기관 공무원을 대상으로 총 12회(1957명) 인권특강 실시
- O 3개 지역사무소와 공동으로 인권문화 행사 개최

<평 가>

- 일반 행정 분야는 아직 인권교육 필요성에 대한 인식 정도가 높지 않고, 해당 직무별 인권실천 방안에 대한 연구가 미진하여 인권교육 제도화 추진에 어려움을 겪고 있음
- 이러한 문제점을 돌파하기 위해, 유엔이 개발한 "인권에 기초한 접근(Rights Based Approach; RBA)"에 정통한 해외 저명인사를 초빙하여 지역 순회 워크숍을 개최하고자 하였으나 일정조정이 잘 안되어 2008.3에 개최하기로 하였고, 3개 지역사무소와 공동으로 추진한 인권문화행사도 가능성을 확인하는 정도에 그쳤음
- 2008년도에는 RBA 관련 워크숍 개최, 기관방문 협의 강화, 행정공무원 대상 연수과정 운영 등을 통해 인권교육 필요성 인식 확산에 주력할 계획임
- 3. 공공분야 인권교육 외부환경 동향 분석

<강 점>

- ◎ 현실적 필요성에 대한 사회적 요청과 인식제고 - 국민들의 교육수준이 높기 때문에 인권교육의 효과가 효율적으로 나타나리라고 판단함
- 사회적 약자들의 기본적 인권의식 강함,한국사회의 민주화 운동의 경험 및민주주의를 향한 국민적 기대
- 인권시민단체, 국가인권위를 통해 인권 교육 관련 경험 및 기본적인 인권교육 교재, 내용 등 축적
- ◎ 빠른 전파력 인터넷 및 언론 등을 통해서 보도되는 경우에는 사회 전반에 빠른 속도로 인식의 전환을 가져오게 됨 / 교육열, 대학교육의 보급과 확대

<약 점>

- ◎ 관료주의가 여전함
- ◎ 과거의 잘못된 경험에서 비롯된 심리적 저항감
- 나와 다른 이질적인 존재를 받아들이지 못하는 국민정서
- ◎ 보수적인 시회 분위기와 형식적인 인권교육
- ◎ 인권교육 프로그램 및 인권교육 전문가 부족
- 공동체의 복지와 공존을 위해서가 아니라 출세의 수단으로 변질되어 남을 배려지하 지 않는 교육열은 오히려 인권에 장애 -출세지상주의, 황금만능주의 등
- 체계적이고 점진적인 변화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하는데, 그렇지 못함. 특히, 각 교육의 주체들이 자발적으로 인권교육을 수 용하고 실행하는 풍토 조성이 필요함

<기 회>

- 인권위법을 통해 최소한의 인권교육의 제도화 기반 보장 및 NAP를 통한 이행강화 여건 마련
- ◎ 국가인권위원회라는 국가기관
- ◎ 사회 전반의 인권에 대한 의식 제고
- ◎ 인권의식의 점짐적인 개선, 사회적 약자의 목소리가 점점 높이짐
- 민주화의 진전에 따른 권위주의 소멸과 자아실현 욕구 증진
- ◎ 국제적 관심이 큼
- ◎ 그래도 살아 있는 일부의 양심

<위 협>

- ◎ 보수주의 바람이 커지고 있음
- ◎ 획일적 군사적 문화의 뿌리 깊은 잔존
- ◎ 언론의 보수성, 상업주의, 정치적 당파성
- ◎ 정치판에서의 승자 독식주의/지연, 혈연, 학연의 배타성
- 나와 다른 사람에 대한 배타성 및 편 협성과 인식부족
- ◎ 인권의 사각지대에서 이득을 보는 기 득권 세력의 조직적인 방해
- ◎ 인권교육연구전담혹은 전문기관의 부재
- 인권교육을 피상적으로 도입하고, 실 제적인 생활과 관행의 변화를 추구하 지 않는 경향. 이 점에서 국가인원위 원회가 인권교육의 실행까지를 책임져 야하는 구조를 바꾸어야 함.

※ 출처: 인권교육 전문가 델파이조사 결과(2007. 7.)

4. 주요업무

업무 중점 방향

- 위원회 6개 중점사업 영역의 인권교육 강화
- 일반 행정 분야는 인권교육 필요성 인식제고; 군대와 사회복지 분야는 인권교육 제도화; 경찰 등 법집행 분야는 인권교육 실효성 확보 중점 추진
- 분야별 인권교육 강사 육성, 인권교육 평가도구 개발 및 분야별 진단, 인권교육 표준화 중점 추진
- 관계기관과의 파트너십 강화 및 분야별 인권교육 네트워크 구축

가. 중점사업

- 정신장애인 등 장애인 인권보호
- 정신장애 시설 종사자 대상 인권교육 연수과정 실시
- 2006년도에 개발한 정신장애인 관련 인권교재 발간.배포 및 교재 활용 워크 숍 개최
- 사회복지 분야 인권강사 육성을 위한 연수과정
- 다문화 사회구조 속의 이주민 인권보호
- 출입국 공무원 대상 인권교육 연수과정 실시
- 아동.청소년.노인 등 소외계층 인권보호
- 2006년도에 개발한 노인 관련 인권교재 발간.배포 및 교재 활용 워크숍 개최
- 양극화사회에서의 빈곤계층 인권보호 및 프라이버시 침해 정보인권 보호
- 인권강사 양성과정, 인권교육 교재 및 프로그램 개발, 표준교안 제작 등 관련 사업에 빈곤계층 인권보호 및 정보인권 내용 포함

나. 일반사업

- 1) 인권교육 제도화 등 기반 구축
 - 인권교육 필요성 인식확산을 위한 워크숍 등 개최

- RBA 관련 외빈초청 워크숍 개최(지역순회)
- * 서울은 보건복지부 · 중앙인사위, 지역은 지자체와 공동개최
- '사회복지와 인권' 기획토론회 개최
- 기 개발된 인권교육 프로그램 활용을 위한 순회 워크 숍 개최
- * 군(기본교재, 의료, 수사), 경찰(수사, 경비), 사회복지(노인, 정신장애)
- 직무교육 기획담당자 대상 워크숍 개최

○ 인권교육 제도화 추진

- 일반 행정 : 접근가능성, 파급력 등을 고려하여 우선협의 대상 중심으로 제 도화 추진
- * 우선대상 : 중앙공무원교육원, 지방혁신인력개발원, 지역사무소 소재 관할 지자체, 경 인지역(서울, 경기, 인천) 공무원교육원
- 군대: 위원회 의견표명(군 인권교육 규정제정) 이행상황 점검 및 이행 독려
- 사회복지 : 인권연구중심대학(MOU 체결 대학)을 중심으로 사회복지학과에 인권과목 개설 협의(커리큘럼 공동개발 등 기술지원)
- 법집행분야 : 경찰 인권교육 지침서 개발
- * 군대의 경우와 유사한 방식으로 추진

○ 인권교육 평가시스템 구축

- 인권교육 평가도구 개발(연구용역)
- 분야별 인권교육 진단 및 평가대회 개최
- * 진단은 경찰, 군대, 법무, 사회복지분야에 대하여 실시

2) 인권교육 프로그램 운영

○ 인권교육 연수과정 운영

- 인권강사 양성과정과 일반연수과정으로 구분하여 실시
- 인권강사 양성과정은 위원회직원, 외부전문가, 관련기관(단체) 추천 받은 사람 등 예비강사를 대상으로 기본 및 심화과정 실시
- * 인권교육 수요가 많은 사회복지, 경찰, 검찰, 교정, 군대 분야에 대하여 실시
- 일반연수 과정은 군대, 지자체, 사회복지(노인, 정신요양) 분야에 대하여 실 시

○ 위원회 방문 프로그램 활성화

- 방문 프로그램 콘텐츠를 강화하고 법무연수원 등 유관기관의 직무교육과정 과 연계하여 실시하는 방안 추진

○ 사회복지 인권교육 시범시설 운영

- 2개 분야(장애, 노인) 8개 시설을 인권교육 시범시설로 지정,운영
- 장기적으로 지역 인권교육 확산 거점으로 활용
- * 지역 안배(서울, 경기, 광주, 대구, 부산)

3) 인권교육 프로그램 개발 및 기술지원

○ 인권교육 프로그램 개발 및 발간

- 2006년도 개발한 인권교재 6종(군대, 노인, 정신보건, 수사, 군 의료, 경찰 경비분야) 발간.배포
- 입법 및 사법 분야는 연구용역으로 개발하고, 검찰 및 교정 분야 심화교재는 자체 개발

○ 인권교육 표준화

- 인권교육 표준교안 개발
- * 2006년도에 개발한 표준교안(6종, 군대, 노인복지, 정신보건, 경비, 수사, 의료) 내용을 보완하고, 교정, 행정, 사회복지 분야 등 추가개발

○ 인권교육 지원체계 효율화

- 2006년도에 추진하지 못했던 인권교육 지원체계 효율화 방안 재추진
- * 온라인 지원시스템 적극 활용
- 인권교육 정보관리 강화 : 교육실시 결과 보고 강화, 교육과정에서 생성된 정보 축적, 만족도 조사결과 분석 및 환류 강화 등

4) 국내외 협력강화

○ 국제협력 강화

- 기 번역한 영문화 자료 2종('경찰인권교육 방법론', '장애인시설 인권교육 프로그램')발간.배포
- 해외 인권교육 전문기관과의 교류 협력 방안 검토.추진

○ 국내협력

- 분야별 인권교육 네트워크 구축
- 관계기관(단체)와 인권교육 사업 공동 추진
- 공공시민인권교육전문위원회 활성화

1-1. 인권교육 필요성 인식확산을 위한 워크숍 등 개최

□ 배경 및 목적

- 일반 행정 분야는 아직 인권교육 필요성에 대한 인식 정도가 높지 않아 제도화 추진에 어려움이 있고, 최근 사회복지분야에서의 인권관점 도입에 대한 논의도 이슈되고 있는 상황임
- 또한 작년에 개발한 인권교재 6종(군 일반, 군 의료, 수사, 경비, 노인, 정신보건)을 보급·확산할 필요가 있음. 이에 관련분야 종사자를 대상으로 워크숍을 개최하여 인권교육 실시기반을 마련함

□ 사업 내용

- O '인권에 기초한 접근(Rights Based Approach)' 관련 외빈 초청 워크숍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서 정책의 형성.집행.평가 등 모든 단계에 인권을 반 영시키도록 UN이 개발한 개념을 소개
 - * UN인권고등판무관실이 추천한 유엔인권고등판무관실 사회권위원회 'Virginia Bras Gomes' 위원 초청
 - * 중앙인사위원회 및 보건복지부.관련 지자체와 권역별 워크샵 공동개최
- O '사회복지와 인권'을 주제로 기획 토론회 개최
 - * 한국사회복지협의회와 공동 개최
- O 기개발된 인권교재 활용 워크 숍 개최
 - * 지역사무소와 연계하여 추진

□ 기대 효과

- O 분야별로 인권교육 관련 워크 숍 개최을 개최함으로써 인권교육 필요성에 대한 인 식 확산
 - O '인권에 기초한 접근(Rights Based Approach)'에 대한 국내소개 및 도입
 - O 인권과 실무의 접목에 관한 논의를 통하여 현장에서의 인권실천 방안 연구 및 교육 기회 제공

□ 추진 일정

O 관계기관과 사전 업무협의 : 1월

O 분야별 기본계획 작성: 2월

○ 워크숍 실시 : 3~6월

O 워크숍 결과 보고: 7월

□ 소요예산

O 외빈초청 워크 숍: 국제인권팀 예산 활용

O '사회복지와 인권' 토론회 발제비 및 사례비 : 3,000천원

O 인권교육 교재 활용 워크 숍: 12,000천원

※ 담당자: 안효철, 박한우, 김현혜

1-2. 인권교육 제도화 추진

□ 배경 및 목적

- 인권교육에 대한 인식 확산, 인권교육법 국회통과 예상 등 외부적 환경의 변화로 인권교육의 수요는 날로 증대될 것으로 예상됨.
- O 이같은 교육수요에 부응하고, 인권교육이 지속 발전해 나가기 위해서는 당해 기관 스스로 인권교육을 수행해 나갈 수 있는 제도 마련이 필수적임.

□ 사업 내용

- 공무원교육훈련기관의 인권교육 제도화 확산
 - 교육과정에 인권과목 개설 및 정부업무평가·공무원교육훈련기관 평가 시 인권항 목 삽입
- O 대학 및 사회복지분야 인권교육 확대
 - 『사회복지학 교과목 지침서』개편시 각 과목에 인권관점 포함 및 인권과 목 단독 개설 추진
 - * 위원회와 MOU를 체결한 대학과 커리큘럼 공동 개발
 - 사회복지분야 관련협회 및 직능단체의 직무교육과정에 인권교육 포함 및 자체 과정을 개설·운영할 수 있도록 기술 지원
- O 군 제도화 관련 위원회 의견표명 이행에 대한 모니터링 및 이행 촉구
- O 경찰 인권교육 지침서 개발
 - * 지침서에 경찰청 교육과정, 직무교육시 인권교육 의무화 등 포함

□ 기대 효과

- 인권교육 제도화를 통해 상시적인 교육 체계 마련 및 교육기회 제공
- O 인권교육 내용 및 방법, 교관의 자격 등 인권교육에 관한 기준 마련을 통하여 인권교육의 질 제고

□ 추진 일정

- O 인권교육 제도화 기본계획 수립: 1~2월
- 인권교육 실태조사, 간담회 등 현황 파악 및 업무협의 : 2월
- O 제도화 추진 : 2~11월
- 제도화 추진 결과 보고 : 12월

□ 소요예산

- O 사회복지관련 인권교육 커리큘럼 개발 : 900만원
- 경찰 인권교육 지침서 개발 : 1,000만원
- ※ 담당자: 안효철, 박한우, 이성규

1-3. 인권교육 평가시스템 구축

□ 배경 및 목적

- 인권교육 사업은 인권위 설립 초기부터 주요사업으로서 규정, 2006년엔 독립본부로 확대하여 분야별 사업의 세분화 등의 양적 팽창을 경험한 반면.
- 인권교육의 효과성이나 질에 대한 진단과정 및 연구 미흡
- 2008년도 업무 목표로서 인권교육의 효과성 재고를 위한 인권교육 평가시스 템 구축 및 인권교육 진단 제시
- 인권교육의 효과성을 체계적이고 객관적으로 측정함으로서 인권교육 사업 이 국가인권기구의 핵심적인 기능수행과 지속적인 발전을 꾀함

□ 사업 내용

- 공공분야 인권교육 평가체계 구축 및 평가도구 개발
 - 로직모델(Logic model), outcome-base approach, RBA 등과 같은 객관적이고 검증된 인권교육 프로그램의 진단 및 평가방법 연구
 - 기 개발된 군대 및 사회복지분야 인권교육 프로그램 진단 및 평가지표 개발

□ 기대 효과

- 공공분야의 인권교육의 체계성과 실효성 확보
- O 공공분야의 책임성(accountability)있는 인권교육 사업의 수행

□ 추진 일정

O 기본계획수립: 1-2월

- O 공고 및 용역계약 : 3월 중
- O 연구진행 : 3월 말 ~ 10월 말
- O 중간보고 : 5월
- O 최종 결과보고 : 11월 중
- □ 소요예산 : 총 3,000만원
 - 공공분야 인권교육 평가체계 연구개발비
- ※ 담당자: 안상희

1-4. 교육 정보관리 강화

□ 배경 및 목적

- 위원회는 그동안 인권교육 연수과정, 워크숍, 위원회 방문프로그램, 인권교육 강사지원 등 다양한 형태로 인권교육을 실시해 오고 있으며 인권특강의 경우 매년 실시회수가 증가하고 있는 추세에 있음
- 그러나 관련 교육정보의 축적이 원활히 이루어지지 못한 관계로 현장의 생생한 목소리들이 제대로 반영되지 못했고, 유용한 교육정보들이 사장되 는 등 유기적 교육시스템 구축에 미흡한 측면이 많았음
- O 이에 인권교육 기능의 체계화, 내실화를 기하기 위해 인권교육 정보관리를 강화하고자 함

□ 사업 내용

- O 교육 정보 관리
 - 교육실시 결과 보고시 교육생들의 분위기 등을 상세히 작성, 보관
 - 연수과정에서 교육생들이 작성한 자료를 체계적으로 정리, 보관
 - 만족도 조사결과 분석 강화
 - 각종 교육관련 자료 인트라넷 공유
 - 교육생들의 메일링 리스트 구축 및 위원회 고객관리시스템(PCRM)을 활용 한 각종 정보제공 및 사후관리

□ 기대 효과

- 현장에서 요구되는 교육내용이 무엇인지 파악하고, 이를 강의내용에 포함 시켜 질 높은 인권교육 실시 가능
- O 인권교육 정보의 체계화.내실화 도모

- □ 추진 일정
 - O 연중 수시
- □ 소요예산
 - 별도 소요 예산 없음

※ 담당자 : 김현혜

2-1. 인권교육 연수과정 운영

□ 배경 및 목적

- O 인권교육에 대한 수요가 증대하고 있는 반면 인권교육을 담당할 수 있는 전문인력이 부족함에 따라 인권교육 활성화에 어려움이 있음.
- O 한편 지자체.사회복지시설(정신요양, 노인).출입국관리소 종사자의 인권감수 성 향상을 위한 인권교육 확산
 - ※ 노인, 이주민 인권보호는 2008~2009년 위원회 중점 추진사업임

□ 사업 내용

- O 분야별 인권강사 양성과정 실시
 - 인권교육 수요가 많은 사회복지분야, 경찰, 교정분야 인권교육 전문강사 를 육성하되. 기본과정과 심화과정으로 운영
- O 지자체, 사회복지시설(정신요양, 노인) 및 출입국 공무원대상 연수과정 운영(위탁)
- O 군 인권교육 연수과정 운영
 - 군 교관, 의료 및 수사분야 종사자 대상
 - * 국방부 인권팀과 공동 개최

□ 기대 효과

- 인권교육 강사의 역량강화를 통해 내실 있는 인권교육을 실시하고 관계 기관 의 인권교육 강사 수요를 충족시킴으로써 인권교육 활성화에 기여
- 관계 기관 소속 직원을 인권강사로 양성함으로써 이들이 소속기관 인권강 사로 활동할 수 있도록 하여 현장감 있는 교육 및 인권교육에 대한 반감 을 줄일 수 있는 효과가 있음.

O 인권교육의 위탁운영을 통한 위탁기관의 인권관련 역량 강화

□ 추진 일정

- O 기본계획 수립: 2월
- 교육프로그램 개발 및 교육실시 : 3월 ~ 10월
 - ※ 인권교육 강사단 구축 : 4월
- 평가 및 보고 : 11월

□ 소요예산 : 4,000만원

- 프로그램 개발 및 강사료 등 : 1,700만원
- O 교육생 급량비 : 600만원
- 교육장소 임차 및 차량 임차 등 : 1,500만원
- 교육생 다과비 및 여비 등 : 200만원
 - ※ 군 인권교육 연수과정 운영은 국방부 예산 활용
- ※ 담당자: 박한우, 이성규

2-2. 위원회 방문프로그램 운영

□ 배경 및 목적

- 공공분야 인권교육 서비스 제공을 통한 인권의식 제고
- O 위원회 활동에 대한 직접적 홍보와 긍정적 이미지 제고
- O 상호 의사소통 기회 부여 및 업무협력 관계 정립

□ 사업 내용

- O 대상별 방문프로그램 제공
 - 위원회의 기능과 역할 등 간단한 소개
 - 상담센터, 인권자료실 등 업무유관부서 순회
 - 인권영화등 영상자료 시청 및 대상별 인권침해 사례 소개
 - 휠체어로 이동, 수화 배우기 등 사회적 약자 이해 프로그램

□ 기대 효과

- O 인권교육 핵심인력으로서 전문성 신장 및 강사양성체계 구축
- 공공분야 관련 종사자들의 인권 기반 관점 확산
- O 위원회에 대한 긍정적 이미지 제고 및 해당기관과의 파트너십 강화

□ 추진 일정

O 월 1~2회 진행 * 12월

□ 소요예산

○ 1039-300-240-01 : 1,200천원

※ 담당자 : 김현혜

2-3. 사회복지시범 시설 운영

□ 배경 및 목적

-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의 경우 인권교육에 대한 수요는 많으나 시설이 전국 적으로 분포되어 있어 이들에 대한 집합교육 실시에 어려움이 있음.
- 따라서 지역별로 사회복지시범 시설을 지정하여 분야별 특성이 반영된 인 권교육과정 및 교육프로그램 등을 개발하게 하여 지역에서 인권교육 거점 시설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함.

□ 사업 내용

- O 사회복지시범시설 지정 및 운영
 - 8개 시설을 인권교육 시범시설로 지정하되, 지역별 안배를 고려하여 서울.경기지역, 광주지역, 대구지역, 부산지역에 각각 두개(장애시설, 아동시설) 시설 지정
 - 시범시설은 인권교육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소속 직원 및 타 시설 종사자를 위한 인권교육과정 운영 등 인권교육의 지역 거점시설로서의 역할을 하게 됨.

□ 기대 효과

- 사회복지시설의 자체인권교육역량을 강화하여 지역에서 인권교육 거점시 설로서의 역할을 하여 지역 인권교육활성화에 기여하고,
- O 시설에서 자체적으로 인권교육을 실시함으로써 종사자들의 인권교육에 대한 거부감을 줄일 수 있음.

□ 추진 일정

- O 기본계획 수립: 1월 ~ 2월
- 용역 공고 및 시범시설 선정 : 3월 ~ 4월
- O 용역사업실시 : 5월 ~11월
- O 용역사업 보고 및 평가 : 11월 ~12월
- □ 소요예산 : 4,000만원
 - O 용역비 : 4,000만원

※ 담당자: 박한우

□ 배경 및 목적

- 우리 위원회에서는 공공분야 인권의식 증진을 위해 각종 교육요청에 내부직원및 외부전문가를 강사로 파견하여 인권교육을 실시
 - * 우리 위원회의 '07년도 인권교육 강사파견 현황 : 194회
- 인권교육은 인간의 존엄성과 권리를 존중하는 분위기에서 인권의 소중한 가치를 경험할 수 있는 교육이 되도록 촉진자.안내자로서의 강사 역할을 요구
- 더불어 인권교육의 수요가 증가하고 있어 각 영역별.주제별로 질 높은 인권교육 실시를 위해 교육 강사를 확보 및 심화훈련과 이를 위한 표준교안 마련

□ 사업 내용

- O 인권교육 강사단 구축 및 운영
 - 직원 및 인권.사회단체의 추천 등을 통해 인권강사단 구성 및 교육과정 운영 (2회, 합숙형태)
 - 연수과정 및 강사파견 이후 인권강사단의 자체평가와 내부평가(모니터링)을 병행 실 시
 - ※ 인권교육 방법 평가 및 모니터링 방안 등 마련
- O 공공분야 표준 커리큘럼 및 교안개발
 - '07년도에 개발된 표준교안 초안을 기준으로 내부직원 및 전문가의 의견수 럼을 통해 보다 심화된 인권교육 표준교안 마련
 - 인지도가 높거나 이슈화 된 사례 및 각종 교육진행 방법(Tip)을 제공하여 인 권교육 강사의 질적 향상을 도모
 - ※ 인권관련 미디어 자료(단편영화,사진,PT자료)의 활용방법 등 소개

□ 기대 효과

- 인권교육의 질적 향상 및 피교육자의 인권의식 향상과 만족도 증진
- O 인권교육 관련 인련풀(Pool) 구축 및 활용과 이를 통한 민관협력 토대마련
- O 인권강사에 따른 편차 없이, 일정한 수준에서 교육의 질 담보

□ 추진 일정

- O 인권교육 표준화 기본계획 수립: 2월
- O 인권교육 강사단 구축(위촉): 4월
- 인권교육 강사단 평가방안 마련 : 5월
- 인권교육 강사단 교육과정 운영 : 6월.10월
- 5개 분야(경찰.교정.행정.군대.사회복지) 표준인권교안 제작 : 11월
- 인권교육 표준화 결과보고 및 차기년도 계획 수립 : 12월

□ 소요예산

- O 인권교육 강사단 교육과정 운영: 2,000만원
- O 5개 분야(경찰.교정.행정.군대.사회복지) 표준인권교안 제작: 3,000만원

※ 담당자 : 안효철

3-2. 인권교육 프로그램 개발 및 발간

□ 배경 및 목적

O 그간 인권교육 수요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입법 및 사법분야의 인권교육 프 로그램이 개발되지 못하였음. O 이에 따라 입법 및 사법 분야 공무원들에게 적절한 인권교육 내용 및 방법 등에 대한 프로그램 개발

□ 사업 내용

- O 입법 및 사법분야 인권교재 및 프로그램 신규 개발(2종, 용역)
- 2007년도에 개발된 인권교육 교재 및 영문화 자료 발간 및 보급
 - 인권교재 : 6종(군대, 노인, 정신보건, 수사, 군 의료, 경찰 경비 분야)
 - 영문화 자료 2종('경찰인권교육방법', '장애인생활시설 인권교육 교재 및 프로그램 개발')

□ 기대 효과

- O 법 제정, 사법 업무 수행에서의 대국민 인권의식 개선
- O 법제정 및 사법 집행과정에서의 RBA(Humman Rights-based Approach)도입
- O 인권교육 교재는 각 분야별 직무교육시 활용, 영문자료는 개도국 NI 등에 기술지원 자료 제공

□ 추진 일정

- O 기본계획수립: 3월 중
- O 공고 및 용역계약: 4월 중
- O 개발진행 : 4월 말 ~ 9월 말
- 기본목차 구성(안) 및 1차 보고 : 5월 초
- 결과보고 : 10월 초

□ 소요예산 (총 6,000만원)

- O 입법 및 사법분야 프로그램 개발(2종): 각 3,000만원 (총 6,000만원)
- 교재 발간비 : 18,000천원
 - 인권교육 교재 6종 각 300부 : 12,000천원
 - 영문화 자료 2종 각 200부 : 5,000천원
 - 자료 발송 비용(국.내외 유관기관) : 1,000천원

※ 담당자: 안상희,

3-3. 검찰 및 교정분야 심화 프로그램 개발

□ 배경 및 목적

- O 2007년도에는 직무와 연계된 특성화된 교육을 위하여 군 및 경찰분야에 4종(군 일반, 의료, 경비, 수사)의 프로그램을 개발함.
- O 금년도에는 검찰 및 교정분야의 심화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개발대상영역을 확 대하고자 함.
 - 특히 검찰 분야는 '07년 하반기부터 인권교육 수요가 증대함

□ 사업 내용

- O 심화 프로그램 개발
 - 검찰 및 교정분야 각 1종 (잠정)
- ※ 프로그램 개발의 효용성을 도모하기 위해 법무부 인권옹호과와 공동개발을 협의한 결과 사업의 내용과 방법에 관해서는 '08. 1월말 재논의하기로 함

□ 기대 효과

- 검찰 및 교정분야의 특성화된 교재 개발로 직무와 연계된 인권교육 가능
- O 교육의 직무 활용성을 높임으로써 교육생의 관심도 및 효과 제고

□ 추진 일정

※ 법무부 인권옹호과와 협의 후 결정

□ 소요예산

※ 법무부 인권옹호과와 협의 후 결정

4-1. 인권교육 국제협력 사업

□ 배경 및 목적

- O 2007년도 호주 커튼대 인권교육센터와의 MOU 채결 추진
- O 인권교육의 다양화와 질적 향상을 위하여 외국의 인권교육 전문기관의 정 보교류 및 최신 정보의 보급
- 공공분야 인권교육에 대한 정보의 업데이트 및 네트워킹 활성화

□ 사업 내용

- 해외 인권교육 전문기관 간의 교류 및 네트워킹 사업
- 국제기구의 인권교육관련 프로그램 현황분석 및 교환사업

□ 기대 효과

- 공공분야 인권교육 최신정보를 접할 수 있는 기회 확대
- O 국제 인권교육 분야에서의 리더쉽 강화

□ 추진 일정

- 공공분야 인권교육 국제협력 및 네트워킹 추진기본계획수립 : 2월 중
- □ 소요예산 : 별도 책정 없음

※ 담당자 : 안상희

4-2. 국내 협력강화

□ 배경 및 목적

- O 인권.사회단체와의 다양한 협력을 통해 우리 위원회와 NGO가 동반성장 할수 있는 민관협력은 시대적인 요구
- O 인권교육의 활성화 등 향후 사업진행의 추진을 위해 전문성과 경험을 보유한 인권.사회단체와의 적극적인 상호교류가 필요

□ 사업 내용

- O 인권교육 포럼 및 관계자협의회 등 인권교육 네트워크의 참여
- O 인권.사회단체의 다양한 경험과 전문성의 상호 교류
 - 전문위원회 운영 지원을 통한 인권교육업무 질적 향상 및 역량 강화

□ 기대 효과

- 다양한 이해관계자 및 전문가의 참여를 통한 인권교육 업무 네트워크 증진
- 인권교육 관련 인적네트워크를 통한 동력의 확보

□ 추진 일정

- O 분야별 인권교육 네트워크 참여 및 구축 : 연중
- 분야별 인권교육 네트워크 참여 및 구축 결과보고 : 12월

□ 소요예산 : 없음

※ 담당자 : 안효철

2008년도 업무계획

2008. 1. 4.

시민교육팀

1) 일반현황

가) 주요업무 및 인적 구성 현황

○ 팀 업무 총괄, 인권교육발전5개년계획 : 남규선(별정4급)

○ 기업활동과 인권, 평생교육부문 : 백선익(일반5급)

O 언론인 및 사회적 약자 관련 인권교육 : 윤설아(계약5호)

○ 평생교육부문 : 박미숙(일반7급)

O 인권문화콘텐츠 개발 및 보급 : 최윤정(전문계약)

O '영화와 인권' 강좌 운영, 성희롱 특별인권교육 : 임경숙(기능8급)

나) 예산 현황

(백만원)

구 분		2007예산	2008예산	비고
	인권옹호집단 프로그램 개발.보급	73	75	언론인 인권상 및 평생분야 포함
	평생교육시설 프로그램 개발.보급	22	-	
시민일반 인권교육	평생교육시설 인권강좌 개설	18	18	
	평생교육사 연수과정 운영	12	_	
	소 계	125	93	△32(25.6%)
인권문화 콘텐츠 개발		465	254	애니메이션 포함
계		590	347	△243(41.2%)

* 실태조사 사업비 및 인권교육센터 등 본부공통예산 제외

2) 업무평가

가. 2007년도 업무추진 기본 방향

- 사회일반, 특히 성인을 대상으로 한 '인권교육'은 각자의 환경과 관련된 구체적 이슈에 대한 토론과 함께 문화적 접근이 중요
- 이러한 인식에 따라, 첫째 사회적 영향력이 큰 '인권옹호집단(Human Rights Defender)' 중 기업인과 언론인을 대상으로 한 인권교육, 둘째 사회적 약자와 관련된 평생교육.자원봉사분야 인권교육, 셋째 인권문화 콘텐츠 개발 등으로 업무 영역을 설정

나. 영역별 추진실적 및 평가

- O 기업인 대상 인권교육
- 업무추진 배경
- . 압축적 경제성장 과정에서 왜곡.굴절된 한국적 특수성을 감안
- . 개별 기업에 대한 인권교육에 앞서 '기업활동과 인권'에 대한 개념을 정립(기존 CSR 논의와 연관)하여 인권경영의 당위성을 제시
- . 국제적 기준과 동향을 일반시민들에게 널리 소개하여 국내기업들의 태도 변화를 견인
- 실적
- . 기업인권교육 연구모임 운용(CSR 및 SRI 연구자, NGO 등 9명, 6회)
- . '기업활동과 인권'위원장 특강(5월, 대한상공회의소 초청 CEO 200명 참석, 원 광대.고려대.서울대.배제대 최고관리자과정 등)
- . 기업의 사회적 책임에 관한 국제컨퍼런스 개최 (9월, 전경련 공동주최, 기업인 260명 참석)
- . 이주노동자 고용업주 대상 인권교육(경기도 광주시, 용인시)
- . 기업 활동과 인권 교재 개발(단행본 발간 후 일반보급)
- 평가

- . 기업 태도변화를 위한 전략적 접근이 필요하다는 인식을 정리한 점, 기업과 시민사회가 이 주제에 대한 우리 위원회의 관심과 향후 합리적 역할 의지를 확 인한 점, 관련 전문가들을 발굴하고 CSR에 대한 인권적 접근의 중요성과 유 효성을 공유한 점, 그리고 일반시민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는 교재를 개발한 점 등은 성과로 평가
- . 기업관계자 외에 소비자나 일반 직장인, 특히 우리사회 대표적 인권취약분야 라 할 문제가 이주노동자 고용 중소기업 등을 대상으로 한 교육기회를 확보하지 못한 점, 이 주제에 대한 수준 높은 담론과 전문가 네트워크가 아직 초보적인 수준에 머물고 있다는 점, 그리고 인권교육 프로그램 표준화, 강사POOL의 적정화 및 안정화 등이 미흡했던 점1) 등은 개선해야 할 사항

O 언론인 대상 인권교육

- 업무추진 배경
- .우리사회 인권 보호와 증진에 영향을 미치는 언론인의 역할을 고려
- .국제사회가 요구하는 언론의 역할과 활동을 소개하고, 언론인으로 하여금 직무 수행과정에서의 인권 보호 및 인권 관련 의제 형성자로서 역할을 수행할 수 있 도록 견인
- 추진 실적
- . 미디어에서의 소수자 표현, BBC 에디터 가이드라인, 의제 형성자로서 언론의 역할 등을 중심으로 프로그램 모음집 발간
- . 장애, 이주, 여성, 노인, 성소수자 분야 언론 모니터링을 실시하여 비인권친화 적 보도 사례를 수집하고, 기초적 가이드라인 정리
- . MBC, YTN, 중앙일보, 한겨레, 한국경제신문, 서울신문 등 방송사 및 중앙·지역 언론사 신입기자 대상 인권교육 20회
- . 한국기자협회 여성언론인 인권특강(4월, 위원장), PD연합회 대의원대회 인권특

¹⁾ 이 점은 시민교육팀의 다른 분야도 마찬가지 상황이어서 이후 거론 생략

강(6월, 사무총장), 내일신문, 오마이뉴스 등 <u>중견기자 대상</u> 인권교육 4회 - 평가

- . 언론재단, 한국기자협회, PD연합회 등 유관 기관과의 지속적 협의를 통해 안 정적인 교육기회를 확보한 점, 적실한 프로그램의 개발로 교육 만족도를 제고함으로써 중견 기자 대상 인권교육 요청을 이끌어냈다는 점, 집합 교육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모니터링 사업과 교재개발.보급 등 간접 교육을 추진한점 등은 성과로 평가
- . 주요한 인권 이슈를 발굴하고 관련 분야 전문가와 토론 위주의 교육을 시행 함으로써, 교육 효과를 최대화 하는 한편 인권의제 형성자로서 언론의 역할을 다하도록 촉진시키지 못한 것은 향후 개선해야 할 과제

O 평생교육분야 인권교육

- 업무추진 배경
- . 평생교육은 제도교육의 비수혜자를 대상으로 하고 있어서 주로 노인, 빈곤층, 여성 등 사회적 약자가 주요 학습자이며, 연간 13백만여명이 2천여개의 시설을 이용하는 등 양적 성장은 이루었으나 교육 내용에 대한 질적 평가는 크게 미흡
- . 기왕에 갖춰진 평생교육 인프라를 인권교육의 장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노력과 함께, 역설적으로 이 시스템을 통해 성.인종 차별 등 반인권적 의식들이 확산될 수 있는 개연성 차단이 절실

- 실적

- . 평생교육시설 인권시민강좌('영화와 인권' 한겨레문화센터, 10주) 개설
- . 평생학습도시 관계자 Workshop 인권특강(2007. 12. 14. 오한숙희, 기초자치단 체 관계자 80명 참석) 시행
- . 전문가 간담회(12월) 및 평생교육관계자 연수과정(12월, 성공회대 고병헌교수 및 김찬호교수, 21명 참석) 개최
- 평가

- . 친인권적 평생교육의 확산을 위해서는 해당분야에 대한 실태 파악과 전문가 공조가 긴요하다는 인식을 확립하고, 이 공감대를 토대로 복잡한 이해관계²⁾와 일종의 배타적인 태도를 가진 평생교육분야에서 인권교육의 필요성을 알리고 소규모나마 연수과정을 운용한 것은 의미있는 진전이었다고 평가
- . 평생교육과 인권을 접목하는 논리 개발과 구체적 교육 콘텐츠 확보노력이 우선되지 않고 평면적인 교육협의에 치중하면서 시행착오를 겪은 점, '친인권적 평생교육'에 동의하는 관계자 네트워크가 아직 견고해지지 못한 점 등은 개선해야 할 사안

O 자원봉사분야 인권교육

- 업무추진 배경
- . 최근 사회 각 영역에서 자원봉사 활동이 활성화되고 있으나, 시혜적 차원에 머무는 경우가 많고 전문성 부족으로 오히려 클라이언트의 인권을 침해하는 사례도 발생하고 있는 것이 현실
- . 따라서, 인권교육을 통해 양적으로 급성장하고 있는 자원봉사 활동이 실질적인 인권 옹호 활동으로 기능할 수 있도록 유도
- 실적
- . 인권교육의 필요성 공유와 교육기회 창출을 위해 자원봉사센터협회, 강릉, 대전, 인천 등 광역단위 자원봉사센터, 이주여성단체 관계자 등 간담회 개최(3회)
- . 관련분야 전문가 원고 의뢰 등의 방식으로, 자원봉사 활동과 인권 및 자원활동 실천 과정에서의 인권 이슈를 주제로 교재 개발
- . 전북 14개 시·군 자원봉사센터 실무자 인권교육(2007. 7. 7. 60명)
- . 군포 방과후 아카데미 청소년지도사 인권교육(2007. 7. 3. 50명)
- . 강릉지역 아동시설 자원봉사자 대상 인권교육(2007. 10. 20. 200명)

²⁾ 관계기관과 단체 난립 및 역할 부정립(교육인적자원부 평생학습과, 교육개발원 평생학습센터, 평생교 육총연합회, 평생학습도시협의회, 평생교육사협회 등)

- . 강릉시 자원봉사 관계자 대상 인권교육(2007. 11. 16, 110명)
- 평가
- . 사회적 관심과 참여가 집중되고 있는 자원봉사 분야에 주목해 이들을 대상으로 인권교육의 필요성을 인식하게 한 점, 관련분야 전문가와 함께 현장실정에 맞 는 교육콘텐츠를 축적한 점, 새로운 분야에서 교육 기회를 창출하고 높은 만족 도를 이끌어 낸 점 등은 성과로 평가
- . 기시행한 교육기회는 자원봉사분야 인권교육 수요에 견주어 볼 때 다소 미흡한 것으로 평가되며, 따라서 향후에는 대학, 단체, 민간 등 각 영역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사회적 약자 대상 자원활동 분야로 협력 및 교육 확대 노력 필요
- O 인권문화콘텐츠 개발 및 보급
- 업무추진 배경
- . 한 사회의 인권 수준은 결국 구성원들이 일상에서 가지는 마음가짐과 태도에 크게 의존하며, 특히 成人들이 인권이슈를 공감하고 실천하도록 하기 위해서 는 법과 제도의 개선과 더불어 문화콘텐츠를 통한 접근이 실효성 담지
- . 관행적 사고에 묻혀있는 인권문제들을 문화적 감수성으로 낚아 올려 자연스럽 게 인권이슈들을 다시 생각하도록 하는 계기로 삼는 교육 교재로 활용
- 실적
- . 인권애니메이션 '별별이야기 2- 여섯빛깔무지개' 개발(장애.아동.여성.다문 화가정.성소수자.인종.나이 등 차별을 주제)
- . 인권영화4편 개발(아동.청소년인권 주제로 각기 다른 5편 구성)
- . 인권만화.사진.영화.포스터 展 '달라도 같아요' 광주시립미술관 전시(2007. 5. 1~20.)
- . 인권교육을 위한 <별별 이야기> <여섯 개의 시선> <다섯 개의 시선> <세 번째 시선> 교안 개발
- 평가

- . 학교.공공은 물론 시민을 대상으로 한 인권교육 현장에서는 다양하게 활용된 것은 물론, 대중상영과 언론 등을 통해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었던 것에서 확인된 바와 같이 인권문화 콘텐츠는 교육 도구로서도 매우 유용한 것으로 평가
- . 시민의 눈높이에서 토론과 수용을 보다 자연스럽게 이끌 수 있는 '교육콘텐츠' 로서의 유용성을 제고하는 방안에 대해 지속적인 고민이 필요

3) 시민교육 관련 외부환경 동향 분석

가) 국내인권상황 위축 가능성 증대

- 세계경제체제가 보다 강화되면서 단위 국가내에서는 물론 국가간의 양극화도 심화되는 추세이며, 최근 우리 사회는 '공공의 행복'보다는 '경제성장 이데올로 기'에 지나치게 함몰된 경향을 노정
- 이에따라, 특히 사회권 보호를 위한 정책과 여론이 위축되고, 사회적 약자의 인권 수준도 열악해 질 가능성이 증대되는 상황

나) 국제적 인권 기준은 지속 내지 강화

- 한편, 국제적으로는 UN을 중심으로 기후변화협약 등의 환경운동과 '인간의 얼굴을 한 자본주의' 운동이 전개되고 있으며, 국가권력 못지않게 큰 영향을 미치고 있는 기업의 책임까지도 주목하는 양상
- 예컨대, UN Global Compact, UN PRI³), UNEP FI⁴)등 3개 기구는 2008. 6.경 국내에서 반기문 UN사무총장이 참여하는 대규모 행사를 공동 개최할 예정

³⁾ 유엔의 사회책임투자 원칙(Principles for Responsible Investment)으로 투자시 ESG(환경 Environment, 사회 Social, 기업지배구조 Governence) 이슈를 고려하는 것이 주요 내용

⁴⁾ 유엔 환경계획의 Finance Initative로 지속가능발전에 금융부문이 역할을 해야 한다는 취지에서 유럽 미국 일본 등의 금융기관들과 UNEP가 2006. 8. UNEP/FI를 창설. 여기에 참여하는 금융기관들은 기후변화, 자산관리, 지속가능성 보고기준에 따른 실무그룹을 구성해 운영(현재 국민, 우리, 대구은행 등이 가입)

- 결국, 우리사회의 다양한 인권 이슈의 상당부분을 포괄하고 있을 뿐 아니라 사회적 약자에게는 생존권에 다름 아닌 '경제적 권리'의 문제에 대해서는 ISO-26000 등 국제적 기준의 요구 수준이 지속 내지 강화될 전망

다) 시민일반의 인권의식 제고 필요성 증가

- 기존 제도교육의 한계와 시민운동의 미성숙으로 사회적 가치판단의 훈련이 취약한 우리사회 일반에게 '인권 가치의 실현 없이는 이른바 선진사회로의 발전도 무망하다'는 공갂대 확산이 절실
- 질적 수준을 갖춘 교육프로그램과 강사를 통하여 민주시민으로서 갖춰야 할 인권.평화.생태에 대한 인식과 학습의 기회를 제공하는 것은 우리 위원회의 중요한 임무

4) 주요업무

<기본 방향>

- 2007년도 실적을 토대로 주요 분야별 교육내용의 질적 심화와 교육 기회의 확대 및 안정화를 도모하며, 계몽주의적 일방통행식 강의를 지양하고 사회적 의제화 노력과 병행하는 교육 시행
- 각 인권이슈별 강사요원5)을 확보하고 Workshop을 통해 전문성 및 강의기법 등을 공유하며 평면적 만족도 조사에서 벗어나 '학습자와 함께 만들어 가는 인권교육'을 유도
- 역량있는 작가들을 설득하여 예술성과 활용도를 함께 담보할 수 있는 문화콘텐츠 개발 및 보급

가) 중점사업

⁵⁾ 언론인 대상 인권교육, 평생교육관계자 인권강사 양성과정, 사회적약자 관련 활동가 인권교육과정에 공 통 투입

- ① '기업활동과 인권'에 관한 교육(약70백만원/연구용역40백만원)
 - O 수준 높은 인권경영 논리 개발
 - '기업활동과 인권' 교재6) 개발(실태조사 연구용역)
 - 다학제적 전문가 세미나 개최(2회)
 - O 시민일반 대상 '인권경영' 교육콘텐츠 개발
 - '인권경영'에 대한 '마음의 지도' 시민의식조사(실태조사 연구용역)
 - '자본과 인권'을 주제로 한 컨퍼런스 개최 및 기획보도 유도
 - O '기업활동과 인권'에 관한 교육 시행
 - 경제단체, 기업, 소비자단체, 지방자치단체 등 대상

나) 일반사업

② 언론인 대상 인권교육(약35백만원)

- O 신입언론인 인권교육 안정화·내실화
 - 언론재단 및 개별 언론사 교육팀 등과 협의해 신입 언론인 인권교육 안정 적 실시(연 15회)
 - 프로그램의 다양화 및 내실화, 강사 발굴을 위한 전문가 간담회 개최
- O 중견언론인 전문교육 확대
- 언론재단, 한국기자협회, 한국PD연합회 등 관련 단체와 협의해 중견 언론 인 전문교육 실시(연 5회)
- 인권이슈 학습 및 토론 기회를 제공하고, 인권의제 형성을 위한 보도 생산 촉진
- O 인권친화적 보도·방송물을 발굴 사업
- 인권친화적 보도·방송물을 발굴하고 시상함으로써, 간접적인 인권교육 효과 달성

⁶⁾ 일반인을 대상으로 한 교재(한겨레경제연구소 개발)와 함께 교육콘텐츠 표준화 도모

③ 평생교육분야 인권교육(약45백만원/연구용역20백만원)

- 평생학습과 인권교육 접목방안 연구(실태조사용역)
- 기초자체단체 평생학습도시를 중심으로 인권적 관점에서 평생교육 내용을 점검하고 개선방안을 모색
- O 평생교육 관계자 인권강사 연수과정 개설
- 프로그램 기획.운영자 및 교.강사를 대상으로, 인권강사 연수과정을 개설(년 2회)하고 관계기관 공동 인증방안 도입 검토
- 평생교육시설 프로그램.강사 지원 및 사회적 인식사업 전개
- 작은 도서관 운동 등 프로그램 및 강사지원
- 2008 평생학습축제(순천시)에 인권교육 부쓰 설치 및 운용
- 성공회대학교와 2009 국제민주교육대회 IDEC 유치 협력

④ 사회적 약자 분야 인권교육(약20백만원)

- O 사회적약자 관련 활동가 연수과정 개설
- 자원활동 리더 및 관리자 대상 인권강사 연수과정 개설(연 2회)
- O 인권교육 프로그램·강사 지원
 - 이주, 아동 등 분야별 자원활동가 네트워크 대상 인권교육 프로그램 및 강 사 지원
- O 언론 기획보도물 제작등을 활용한 인식개선 모도
- 언론 등 다양한 매체와 협력하여 사회적 약자의 인권에 대한 우리 사회의 인 식개선을 도모

⑤ 인권문화 콘텐츠 개발 및 보급

- O 인권영화V 개발
 - 일반 시민, 특히 성인들의 일상적 인권수준을 향상시키기 위한 문화적 접 근의 일환으로 인권영화를 개발. 보급

- <별별이야기2-여섯빛깔무지개> 보급
- 2008년 2월 또는 3월 극장 개봉 예정
- DVD.비디오 출시, 공중파.케이블 방송 등 배급
- O 인권영화IV
- 타이틀 작업 및 옴니버스 구성
- 영화제, 극장개봉 등 배급 및 활용 추진
- O 인권교육용 문화콘텐츠 보급
- <세 번째 시선> 비매품 DVD 제작 및 보급
- <별별이야기2>. 인권영화IV 교안 개발 및 보급

<붙임>

1. 기업활동과 인권에 관한 교육(중점)

□ 배경 및 목적

- 기업은 사실상 현대 사회의 존재기반으로서 국가부문보다 개인의 삶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고 있고, 따라서 법규준수는 물론 사회적 책임과 사회공헌까지 요구받고 있는 것이 국제적 추세
- 그러나, 국내기업들은 대부분 자본축적과정에서의 정당성도 확보하지 못했을 뿐 아니라 최근까지도 일련의 스캔들에서 보는 것같이 민주적 시장질서마저 준 수하지 못하고 있으며, 한편 이에 대한 사회적 대응도 다른 나라의 사례와 비교 했을 때 기대 수준에 크게 미흡한 것이 현실
- 따라서, '인권경영'이 기업생존과 성장에 핵심적 문제임을 경제적 관점에서 입증할 수 있도록 수준높은 논리를 개발하고, 한편으로 사회일반에 대해서도 국제적 경향과 주요 내용을 널리 알리는 노력이 절실

□ 사업 내용

○ '인권경영'의 필요성에 대한 전문가용 교재 개발(실태조사용역)

- 기존 CSR 전문가 그룹들과 인권적 접근의 유효성을 공유하여 '윤리 경영'의 한계를 넘는 '인권경영'에 대한 연구를 하도록 유도
- GRI 보고서에 대한 질적 평가 또는 기업관련 핵심적 인권문제(예컨대, 비정규 직문제, 이주노동자문제 등)에 대한 검토를 통해 인권경영의 의미와 내용, 당 위성을 담은 교재를 경영학부 또는 MBA 과정에서 활용될 수 있는 수준으로 개 발하여 단행본 발간 보급
- 향후 '인권경영'에 대한 지표 개발 및 평가보고 방식으로 발전 도모

○ '인권경영' 주요쟁점에 대한 전문가 세미나 개최

- 경영학적 CSR연구자와 사회학, 경제학 등 유관연구자를 섭외하여 공부모임을 개최하고 '인권경영' 담론 형성 및 콘텐츠 확보

○ '기업활동과 인권'에 대한 시민의식 조사(실태조사용역)

- 개인이 기업인, 노동자, 소비자, 투자자, 사회구성원 등 각각의 역할을 기준으로 인권경영에 대해 어떤 인식과 정체성을 가지는지 조사.분석
- 연구결과는 인권경영 교육 접근전략 수립의 기초 자료로 사용하는 한편, 시민일반 이 스스로 부조리한 행태를 체크하고 바람직한 역할을 찾아가도록 하는 교육 콘텐츠로도 활용
- 언론사와 협력하여 연구결과를 기획보도하고 이를 사회적 의제화할 수 있도록 다양한 시각의 토론을 유도하는 세미나 등 개최

○ 기업활동과 인권에 관한 교육 시행

- 경제단체, 대기업, 중소기업 등은 물론, 소비자단체와 시민들을 대상으로 '기업 활동과 인권'에 관한 교육을 시행할 수 있도록 노력
- 각 자치단체와 협력하여 이주노동자를 고용한 사업자를 대상으로 한 인권교 육도 보다 적극적으로 개발

□ 기대 효과

○ 국내 기업들의 형식적 사회공헌 활동에 가려질 수 있는 사회적 책임을 인권적 접 근으로 명확히 하고 전문적 수준에서 설득력 있는 논거를 개발하는 한편, 사회 일반의 눈높이에 맞춰 그 당위성을 설명함으로써 기업 태도변화를 도모하고 우리 사회발전에 기여

□ 추진 일정

O 실태조사 2건 : 2월 ~ 12월

○ '투자와 인권'세미나 개최 : 10월

□ 소요예산

○ 실태조사 2건 : 40백만원

○ 원고료·강사료 : 5명 X 10회 X 300천원 = 15백만원

○ 세미나 개최 : 15백만원(장소 임차, 발제자 원고, 자료집 발간 등)

※ 담당자: 백선익

2. 언론인 인권교육

□ 배경 및 목적

- O 우리 사회 인권보호 및 증진에 있어 영향력과 파급력이 큰 집단인 언론의 역할 에 주목하여
- O 인권교육을 통해 언론인이 직무수행 과정에서 인권 옹호자로서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조력하고 지원

□ 사업 내용

○ 인권교육 프로그램 개발 및 강사 양성

- 언론인 인권교육은 △인권보호·증진에 있어 국제사회에서 요구하는 언론인 역할 △미디어에서의 소수자 표현 등 직무수행 과정에서의 인권보호 △인권 의제 형성자로서의 언론 역할 등을 중심으로 프로그램 개발 및 강사 양성
- 특히, 새로운 인권 이슈를 학습하고 이를 인권 관점에서 조명하고 해석할 수 있는 훈련의 기회를 제공하는 인권교육을 통해 '인권의제 형성자'로서의 역할 강조
- 이를 위해 관련분야 전문가를 발굴하고, '인권강사 워크숍'을 추진하는 등 강의 에 대한 사전 협의 및 사후 모니터링 등을 통해 강의 품질을 담보

○ 언론인 인권교육 시행

- 2007년 언론재단, 한국기자협회, PD연합회 등과 협력하여 신입 및 중견 언론인에 대한 안정적인 교육기회를 확보할 수 있었으며, 특히 언론재단에서 자체적으로 실시하는 강의 평가에서 인권교육이 좋은 평가를 받아 향후에도 안정적인 교육 진행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
- 2008년에는 교육 프로그램을 강화하는 것과 더불어, 언론재단 중견기자 대상 전문교육 과정에 결합하는 등 영역을 확대

○ 인권친화적 보도·방송물 발굴 사업 실시

- 외부 기관·단체와의 협력을 통해 언론인 인권교육이 일정부분 안정되었다 하나, 언론 업무의 특수성으로 인해 중견기자, 독립PD 등에 대한 집체교육의 한계가 여전하므로, 이에 대한 대안으로 인권 친화적 보도·방송물 발굴 사업을 통해 인권교육 효과를 도모
- 본 사업은 2007년 수행한 '언론 모니터링 사업'의 다음 단계로, 보도·방송물 발굴 과정에서 전문가 네트워킹 도모 및 인권친화적 보도 지침 수립 등을 유도

□ 기대 효과

○ 프로그램 및 강사 품질 관리, 신입 및 중견 언론인 대상 인권교육 시행, 인권친화적 보도·방송물 발굴 사업 등을 통해, 우리 사회 언론인들이 직무수행 과정에서 인권을 보호하고, 인권 의제를 적극적으로 형성하고 관련 보도·방송물을 생산하는 등의 활동 촉진 가능

□ 추진 일정

- O 프로그램·강사 양성 및 운영7)
 - 강사 발굴 관련 협의 및 워크숍 : 3월 ~ 4월
 - 관련 원고 의뢰 및 인권교육 시행 : 1월 ~ 11월
 - 모니터링 및 피드백 : 1월 ~ 11월
 - 교안 모음집 발간 : 8월 ~ 11월
- O 인권친화적 방송·보도물 발굴 사업
 - 전문가 자문 회의 : 1월 ~ 4월
 - 발굴 의뢰 : 4월 ~ 10월
 - 발표 및 시상 : 11월

□ 소요예산

- 원고료·강사료 : 5명 X 2회 X 400천원 = 4백만원
- 교안 모음집 발간: 500천원
- 7) 평생교육 분야 및 사회적약자 활동가 분야 연수과정과 공동 적용

O 인권친화적 보도·방송물 발굴 사업

- 자문료 및 사례비 : 16백만원

- 시상금 : 10백만원

※ 담당자: 윤설아

3. 평생교육분야 인권교육(일반)

□ 배경 및 목적

- 2007년도의 다양한 전문가 협의와 연수과정 운용 등을 통해 평생교육 분야에 대한 기초적인 이해 및 접근전략을 정립한 바를 토대로 보다 본격적인 인권교육을 시행
- 인권친화적인 평생교육의 정착을 위하여 법제.정책개선을 유도하고 사회적 인 식개선을 노력하는 한편, 관계기관.단체와 공동으로 '관계자 인권강사 양성과정' 운영 및 다양한 협력사업 전개

□ 사업 내용

- 평생학습과 인권교육 접목방안 연구(실태조사용역)
 - 현재 76개 기초자체단체로 구성된 평생학습도시를 중심으로 인권적 관점에서 평생교육 내용을 점검하고 개선방안을 모색
 - 관련 법.제도.정책개선 사항을 정리하는 한편 모범사례들은 적극 전파할 수 있도록 유도
- 평생교육 관계자 인권강사 연수과정 개설
 - 각 시설의 프로그램 기획.운영자 및 교.강사를 대상으로, 인권강사 연수과정 개설(년 2회)

- 평생학습 진흥원⁸⁾, 평생학습도시협의회, 평생교육총연합회, 평생교육사협회 등 관계기관.단체와 협력하여 공동 인증제 도입 검토

○ 평생교육시설 프로그램.강사 지원 및 사회적 인식사업 전개

- 작은 도서관 운동 등 열악한 상황에서 의미있는 평생교육을 시도하고 있는 소규 모 주체를 발굴하여 프로그램 및 강사지원
- 2008 평생학습축제(순천시)에 인권교육 부쓰 설치 및 운용
- 성공회대학교와 2009 국제민주교육대회 IDEC⁹⁾ 유치 협력
- 평생교육시설에서 '영화와 인권' 프로그램 운영(계속)

□ 기대 효과

○ 평생교육 분야에 인권교육의 필요성 및 중요성을 인식시키고, 프로그램 기획.운 영자 및 교.강사요원들의 인권감수성 제고를 통하여 인권친화적인 평생교육 정착을 유도하고 우리 사회 인권의식 향상

□ 추진 일정

- O 실태조사 연구용역 : 2월~10월
- 평생교육 관계자 인권강사 연수과정 : 5월, 10월

□ 소요예산

- 평생학습과 인권교육 접목방안 연구(실태조사용역) : 약 25백만원
 - 연구용역 : 20백만 원, 워크숍 : 5백만원
- 연수과정 개설 : 약 1천5백만원

⁸⁾ 현 교육개발원 평생학습센터가 법개정에 따라 진흥원으로 전환될 예정이며, 그렇게 되면 이곳에서 평 생교육 관계자 연수과정이 개설될 전망이므로 이 과정에 인권교과를 개설하는 한편 심화과정으로 연 수과정을 개설하고 이수자 혜택 부여방안 등을 협의

⁹⁾ International Democratic Education Conference로 2008년도 캐나다 개최, 약 120여개국이 참여하는 민주시민교육(인권.평화.생태) 박람회(세부사항 별도 보고)

- 강의 원고 및 강사료: 6백만원, 자료집 발간: 4백만원, 기타 운용비: 5백만원 (임차료, 급량비 등은 본부공통예산으로 집행)
- **인권특강 기타** : 약 8백만원(영화와 인권 프로그램 운영, 강사료 등)

※ 담당자: 박미숙, 임경숙

4. 사회적 약자 관련 인권교육(일반)

□ 배경 및 목적

- 사회적 약자 인권교육은 그 당위성과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교육 수요자에 대한 접근이 쉽지 않으므로, 자원봉사 영역, NGO, 방과후 학교 등 사회적 약자와 직접 대면하는 자원 활동가 대상 인권교육 필요
- 또한, 자원활동의 분야가 확대되고 양적으로 급성장하고 있는 최근의 경향에서 이러한 활동이 우리사회 인권보호·증진 활동으로 자리잡을 수 있도록하는 접근이 필요
- O 따라서, 이들에 대한 협력 강화 및 인권교육사업을 통해 인권의식 제고, 인권 전문가로서의 역량 강화, 인권 관점에서의 실천 활동 내실화 등을 꾀하고자 함

□ 사업 내용

- 사회적 약자 관련 활동가 연수과정 운영
 - △인권 가치에 기반한 자원활동 △자원활동 실천과정에서의 인권 이슈 등을 중심으로 관련분야 전문가 워크숍 등을 통해 프로그램 개발 및 강사 양성
 - 광역 및 기초단체 자원봉사센터 및 복지시설, 대학내 자원봉사단체, NGO 활동 가 등을 대상으로 연수과정 개설(연 2-3회)
- 인권교육 프로그램.강사 지원 및 사회적 인식 사업 전개

- 이주, 아동, 노인, 장애 등 분야별 네트워크를 운영하고 있는 NGO 및 자원활동 관련 단위를 발굴하여 인권교육 프로그램 및 강사 지원

○ 언론사 연계 기획보도 유도

- 언론사등과 연계하여, 한국에서의 이주노동 기간중의 경험을 자국에서 성공적으로 활용하고 있는 사례(예: 한국인 멘티로부터의 도움, 근면성실한 한국문화의 영향 등) 등을 중심으로 기획 보도 유도함으로써 사회적 약자 인권보호에 대한 우리사회 인식 제고

□ 기대 효과

○ 지자체 산하 센터·시설 등에서 자원봉사자를 모집·교육·배치하는 업무를 담당하는 자원봉사 관리자 대상 인권교육을 통해, 자원봉사활동이 실질적 인 인권옹호활동으로 기능하도록 하는 역할 가능

□ 추진 일정

O 사회적 약자 관련 활동가 연수과정 운영 : 5, 10월

□ 소요예산

- 연수과정 개설 : 약 1천5백만원
 - 강의 원고 및 강사료: 6백만원, 자료집 발간: 4백만원, 기타 운용비: 5백만원 (임차료, 급량비 등은 본부공통예산으로 집행)
- 인권특강 : 약 5백만원(강사료 등)

※ 담당자: 윤설아

5. 인권문화 콘텐츠 개발 및 보급(일반)

□ 배경 및 목적

- 시민, 특히 성인들에게 오랜 기간 내면화되어 있는 차별문제는 법·제도 개선과 더불어 문화적 접근을 통해 인권이슈를 공감케 하고 인권의식의 변화를 유도하는 것이 효과적임
- 시민들의 문화적 감수성에 호소하여 산적되어 있는 인권문제들을 일상적으로 자연스럽게 되돌아보도록 하는 콘텐츠를 개발하여 인권교육교재로 활용

□ 사업 내용

○ 인권영화5 개발

- 19가지 차별 유형 중 요즘 부각되고 있는 소재를 선택하여 극장용 장편 영화를 제작하고 극장개봉, 비디오 및 DVD 출시, TV 방영, 국내외영화제 초청상영 등 일반유통과 인권교육교재로 보급 활용 등

○ 인권영화 보급 및 활용

- <별별이야기2> 극장개봉 및 보급
- 인권영화4 극장개봉 및 보급
- <세 번째 시선> 비매품 DVD 제작 및 보급
- <별별이야기2>. 인권영화4 학습지도안 개발 및 보급

□ 기대 효과

- 일반시민의 사회적 환기 유도 및 인권의제 형성을 꾀하고, 전 국민의 인권교육교 재로 활용되도록 하여 차별예방 및 인권감수성 향상에 기여하고자 함
- 학교·공공부문, 시민사회단체 등에서 인권교육 교재로 활용하여 우리 사회 인권 의식 증진

□ 추진 일정

- 인권영화 5 개발 : 1월 ~ 2월
- <별별이야기 2> 개봉 및 보급 : 2월 ~ 3월
- 인권영화 4 개봉 및 보급: 5월 ~ 11월

□ 소요예산

- 인권영화5 개발 : 총 2억 2천 3백만원
 - 연구용역 : 2억 2천만원
 - 기타 운용비 : 3백만원
- 보급 : 약 3천만원
 - 옴니버스 구성 등 : 1천만원
 - 교안개발 : 8백만원
 - * 개발비 2백만원(2종), 디자인비 2백만원(2종), 인쇄비 4백만원(2종)
 - 비매품 DVD : 1천만원
 - 기타운용비 : 2백만원
- ※ 담당자 : 최윤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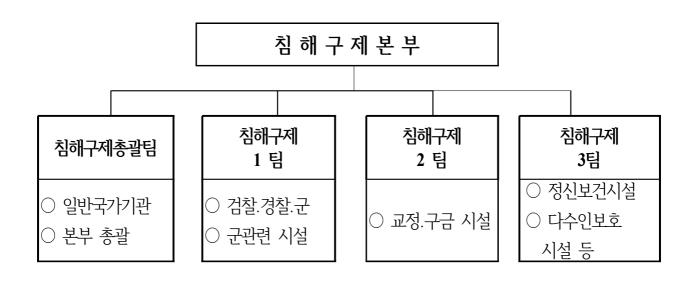
2008년도 침해구제본부 연간업무계획

2008. 1. 4.



침해구제본부 일반 현황

- □ 조직 현황
 - 조직 및 인원



○ 인원 현황

- 정원 : 33명, 정원 외(파견 5, 계약직 1) 포함 총현원 : 39명

구분	정원	본부장	팀장	5급 이상	6급 이하	계약직	파견	과 부족 (B-A)
소 계	39	1	4	15	13	1	5	_
침해구제총괄팀	9	1	1	3	3	1	_	-
침해구제 1팀	12	_	1	7	3	-	1	-
침해구제 2팀	11	-	1	3	5	-	2	-
침해구제 3팀	7	_	1	2	2	_	2	-

^{*} 침해구제본부장은 침해구제총괄팀에 포함

□ 예산 현황

(단위 : 천원)

구분	소계	관서운영비	여비	업무추진비	보상금	배상금
기관운영기본경비	41,508	15,840	5,376	20,292	-	-
침해구제본부 기본경비	153,350	54,486	81,864	-	16,000	1,000
취약분야 인권개선	62,547	39,239	19,888	3,420	1	-
합 계	257,405	109,565	107,128	23,712	16,000	1,000

[※] 위원회 전체예산 233억 4,938만원의 1.1%임

□ 조사대상 기관

1. 검찰

합계	고등검찰청	지방검찰청	지청
60	5	18	37

2. 경찰

합계	지방경찰청	경찰서	지구대	파출소
1,378	14	234	855	275

3. 교정기관

합계	지방교정청	교도소	구치소.지소	보호감호소
51	4	32	14	1

4. 다수인 보호시설(신고시설)

합계	노인	장애인	아동	성매매피해자 지원시설	부랑인	정신의료
2,200	357	238	279	39	45	1,242

5. 일반 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공립학교 등

□ 일반 업무 현황

침해구제1팀	침해구제2팀	침해구제3팀	침해구제총괄팀		
검찰.경찰(국정원 포함). 특별사법경찰.군헌병대, 군검찰, 국군기무사령부, 군교도소, 그밖에 군내부의 인권침해 행위와관련하여,	(군 관련 구금시설 은 제외) 인권침해	정신보건시설 및 다수인 보호시설 관련 인권침해 행 위 관련 사항	본부 내 다른 팀의 소관에 속하지 아 니하는 인권침해 행위 관련 사항		

- 가. 진정사건 조사.조정.구제
- 나. 진정사항의 조사. 구제 관련 법령.제도.정책.관행의 개선사항 연구, 위원회의 권고 및 의견의 표명과 이행실태 점검
- 다. 진정사항의 조사.구제 관련 국내외 협력 및 교육
- 라. 진정사항의 조사.구제 관련 실태조사 및 직권조사
- 마. 진정사항의 조사.구제 관련 긴급구제조치의 권고, 조정, 법률구조의 요청, 정보제공자에 대한 보상금 지급 및 진정인과 증인의 보호업무
- 바. 진정사항의 조사.구제 관련 인권침해의 유형과 원인 연구 및 예방지침
- 사. 진정사항의 조사.구제 관련 업무편람 발간 등



본부총괄업무(침해구제총괄팀)

- 가. 침해구제 관련 기본계획의 수립 총괄 조정
- 나. 침해구제관련 조사절차 및 기법의 연구.개선
- 다. 침해구제관련 조사 및 구제에 관한 통계의 유지.관리
- 라. 침해구제위원회 운영 및 총괄
- 마. 본부 내 다른 팀의 소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업무

2007년도 업무평가

가. 인권침해 행위 관련 진정사건 처리

○ 인권침해사건의 진정접수 현황은 2007년 12월말 현재 전년에 비하여 51.8%의 증가(2006년도 3,333건→2007년도 5,061건)

침해 행위 관련 진정사건 연도별 처리현황(2001.11.26.~2007.12.31.)

							인용	사건					미인용사건				
구분	접수	종결	수사 의뢰	합의 권고	조정	권고	고발	징계 권고	법률 구조 요청	긴급 구제	합의 종결	소계	각하	이송	기각	조사 중지	소계
2001	619	1	1	0	0	0	0	0	0	0	0	1	0	0	0	0	0
2002	2,214	1,364	1	3	0	5	1	16	0	2	0	28	1,174	26	136	0	1,336
2003	3,041	3,137	5	2	0	55	4	3	0	2	23	94	2,210	116	717	0	3,043
2004	4,627	4,931	2	0	0	79	4	2	4	0	54	145	3,306	148	1,280	52	4,786
2005	4,199	4,132	2	0	0	156	4	6	2	1	73	244	2,378	147	1,318	45	3,888
2006	3,333	3,249	0	0	0	164	17	2	1	0	23	207	2,018	70	933	21	3,042
2007	5,061	4,751	1	0	1	144	12	16	2	0	61	237	3,146	116	1,215	36	4,514
합계	23,094	21,565	12	5	1	603	42	45	9	5	234	956	14,232	623	5,599	154	20,609

- 2007년도 사건처리실적을 살펴보면 인권침해 진정사건은 이월사건 포함하여 전체 4,751건(2006년 3,249건)을 처리하여 전년 대비 1,502건. 46.2%증가하였 으며, 이중 237건을 인용하여 2006년 207건 대비 14.5% 증가하였음
- 각하사건 중 '조사중 해결'을 반영한 인용률을 산정해보면,
 - 2006년도는 27.9%(조사중 해결 542건) ← 18.6%(현재 인용률)
 - 2007년도는 64.9%(조사중 해결 2,010건) ← 19.5%(현재 인용률)로
 - 진정인들의 진정내용에 대한 실질적인 해결로 볼 수 있는 것으로 상당한 의미가 있다고 보여짐
- 침해구제본부의 평균 진정사건처리 소요일수는 99일로 전년(122일)에 비하여 무려 23일이나 단축되었음.

각 팀별 업무현황 및 2008년도 업무 계획

침해구제총괄팀

침해구제1팀

침해구제2팀

침해구제3팀

침해구제총괄팀

1. 일반 현황

가. 인원현황

구분	합계	본부장	팀장	5급이상	6급이하	계약직
정원	9	1	1	3	3	1
현원	9	1	1	3	3	1

나. 업무현황

직제령 제13조	업무분장규정 제11조
1. 침해구제 관련 기본계획의 수립·총 괄·조정 2. 침해구제관련 조사절차 및 기법의 연구.개선 3. 침해구제관련 조사 및 구제에 관한 통계의 유지.관리 4. 본부 내 다른 팀의 소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인권침해 행위 관련 다음의 사항 가 진정사항의 조사.구제 나. 진정사항의 조사.구제 나. 진정사항의 조사.구제 반. 진정사항의 조사.구제 관련 법령.제도.정책.관행의 개선사항연구, 위원회의 의견표명다. 진정사항의 조사.구제 관련 국내외 협력라. 진정사항의 조사.구제 관련 국내외 협력라. 진정사항의 조사.구제 관련 고급구제조치의 권고, 조정, 법률구조의 요청, 정보제공자에 대한 보상금 지급 및 진정인과 증인의 보호업무 등에 관한 사항	1. 침해구제 관련 기본계획의 수립·총괄·조정 2. 침해구제관련 조사절차 및 기법에 관한 연구와 개선 에 관한 사항 3. 침해구제 조사 및 구제와 관련된 통계의 유지.관리 4. 침해구제위원회 운영 및 총괄 5. 침해구제본부의 각 팀이 본장하지 않은 인권침해행 위와 관련도니 다음 사항 가 진정사항의 조사.조정.구제 나. 진정사항의 조사.조정.구제 나. 진정사항의 조사.구제관련 법령.제도.정책.관행의 개선사항 연구, 위원회의 권고 및 의견표명과이행실태 점검 다. 진정사항의 조사.구제 관련 국내외 협력 및 교육라. 진정사항의 조사.구제 관련 국내외 협력 및 교육라. 진정사항의 조사.구제 관련 길급구제조치의 권고, 조정, 법률구조의 요청, 정보제공자에 대한 보상금지급 및 진정인과 증인의 보호업무 등에 관한 사항바. 진정사항의 조사.구제 관련 인권침해의 유형과원인에 대한 연구 및 예방지침 마련사. 진정사항의 조사.구제 관련 업무편람 발간

2. 2007년도 업무평가

가. 총 평

- 총괄팀 소관 인권침해사건의 진정접수 현황은 2007년 12월말 현재 1,117 건으로 전년 658건에 비하여 459건, 69.8%의 증가
- 종결사건은 863건으로 전년 623건 대비 240건, 38.5% 증가

<연도별 진정 사건처리현황, 기관유형별, 12. 31.기준>

연노	구분	접수	종결	권고	징계 권고	합의 종결	인용 소계	각하	이송	기각	조사 중지	조사 중
	지방자치단체	174	138	15	0	1	16	78	1	43	0	36
'06	기타국가기관	484	485	18	0	0	18	348	11	105	3	25
	합계	658	623	33	0	1	34	426	12	148	3	61
	지방자치단체	575	438	32	0	12	44	248	0	140	6	394
'07	기타국가기관	542	425	15	1	0	16	290	3	112	4	409
	소계	1,117	863	47	1	12	60	538	3	252	10	803

- 침해구제본부에서 처리한 전체 인용건수 237건 중 침해구제총괄팀 인용 건수는 60건으로 25.3%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전년 34건 대비 12건, 76.5% 증가함. 조사대상기관인 기타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등의 수행 업무가 비교적 인권침해의 개연성이 높지 않은 점을 감안하여 볼 때 전 년 대비 76.5%의 인용사건 수의 증가에서 알 수 있듯이 침해구제총괄팀 은 인권침해 구제에 최선에 노력을 하였다고 볼 수 있음
 - 침해총괄팀 담당사건의 인용율은 19.2%로 2006년도 침해행위 관련 진정 사건의 전체 인용율은 19.5%과 비교해보았을 때, 비슷한 수준을 보임
- 침해구제총괄팀의 평균 사건처리 소요일수는 126.1로 전년도 140일보다 약 14일 단축되었다. 로 전체 평균처리소요일수(99일)보다 다소 많은 기일이 소요되었는데, 이는 본부 행정업무의 총괄 및 서무, 소위원회 운영등 진정사건조사와 위원회 운영지원업무를 병행하는 조사관이 다수인(4명)것에 기인한 것으로 보임

나. 주요업무 추진실적

- (1) 진정사건의 효율성 제고
 - 권고결정 수용 및 이행 모니터링
 - 권고 이후 수용여부 및 이행상태 룰 수시로 점검하여 수용률을 제고함.

(2) 조사구제 역량강화

○ 방문조사 표준모델개발

- 유럽 고문방지위원회의 활동사례와 그리스 방문조사결과보고서 등을 참고하여 우리 위원회 법 24조 2항의 방문조사활동의 표준 절차 및 지침을 개발

○ 인권침해분야 결정례집 발간

- 지난 2004년 발간된 결정례집 1집에 이어 2006년까지 주요 권고 결정문을 수록. 인권침해 분야 결정례집을 발간

○ 권고사후관리체계강화

- 정책총괄팀과 협업을 통해 관련 지침을 공동개발하고 일상적 권고 사후 모니터링을 전개하여 우리 위원회 권리구제효과성 제고에 기여

○ 중요사건처리지침 수립

- 위원회에 접수된 진정사건 중 중요사건으로 분류하여야 할 대상, 보고체계, 관리 및 처리에 관한 지침을 인권상담센터 및 조사부서의 의견수렴을 통해 개발, 마련함.

(3) 인권침해분야 제도개선

- 범죄피해자 인권보호 TFT활동
 - 지난해에 이어 범죄피해자TFT를 운영, 법무부의 범죄피해자보호 및 지원에 관한 기본계획에 대한 의견표명 시행

(4) 조사관 역량 강화

○ 조사관 역량강화 교육 실시

- 상반기에는 2006년 발간된 조사구제 매뉴얼을 활용, 오리엔테이션 실시 (진정사건조사와 실태조사, 직권조사, 방문조사의 개념과 정의를 명확하 게 정리)
- 하반기에는 조사관의 사건해결능력 제고를 위한 코뮤니케이션 역량 강화 후력 실시

○ 기타 국가기관 쟁점관련 세미나 진행

- 세 차례에 걸쳐 조사대상 포섭 여부에 대한 쟁점토론을 진행(1.공단, 공사의 조사대상 검토 2.여권발급거부의 주관적 처분문제 3.금융감독원의 조사대상 포섭 여부 검토 등)

(5) 본부총괄역할 수행

- 본부 법률상담 등 지원활동 전개
 - 법률 쟁점 사건에 대한 처리방향, 방법 등 문제점에 대한 논의 및 토의
- 효율적 소위원회 의사 지원 등
 - 침해구제 제1위원회, 제2위원회의 차질 없는 진행을 위해 일정관리 및 사건기록 사전 송부, 회의록 작성 등 의사지원 업무 수행
- 예산.국회.기타 총괄업무 수행
 - 예산편성 및 집행, 국회답변자료 작성 및 자료 제출, 각종 업무보고자료 작성 등 본부 총괄 업무 수행

(6) 기타 업무수행

○ 전략기획 TF 등 각종 TF 활동

3. 외부환경 및 동향분석

- 새 정부 출범에 따라 성장과 효율성 중심으로 정책기조가 펼쳐질 가능성이 높으므로 이 과정에서 장애인 및 이주민, 아동.청소년, 빈곤계층 등 취약계층 의 인권상황이 자칫 열악하게 변화될 수 있고,
- 취약계층에 대한 인권보호책을 강구하는 것은 단지 취약계층만을 위한 게 아 니라 사회불안정 요인을 사전에 차단하고 지속가능한 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사회공동체의 공동의 과제이므로,
- 사회적 소수자 및 약자의 인권보호를 위한 독립적 국가인권전담기구로서 소임을 부여받은 우리 위원회로서는 <2008-2009 국가인권위원회 업무지침>에서 제시된 바와 같이 빈공계층 및 아동, 장애인, 이주민 등 인권취약계층보호를 위한 사업을 보다 적극적으로 전개하여야 할 필요가 있음.
- 침해구제총괄팀은 그동안 고문방지협약선택의정서비준에 다른 방문조사역량 강화를 위한 사업을 기획사업으로 전개하여 왔으며 진정사건 조사를 통해 두 발규제 등 학생인권침해사건, 국가기관 및 각급 지방자치단체에 의한 행정대 집행과정에서의 빈곤계층 인권보장 문제 등을 지속적으로 다루어 왔음.
- 특히 학생 및 빈곤계층 인권보장을 위한 사업과 정보인권사업은 올해 <업무 지침>상의 중점사업영역과 조응되는 내용이어서 이와 관련한 사업을 더욱 활 발히 전개해 나가고자 함.
- 아울러 2008년도는 우리 정부가 국제사회에 약속한 고문방지협약선택의정서 비준이 이뤄질 가능성이 크고, 이에 따라 독립적 국가예방기구의 기능을 원활 히 수행하기 위해 조사관 역량을 강화할 필요가 있으므로 체코와 그리스, 유 럽고문방지위원회의 기술적 지원을 받아 조사관 워크샵을 진행하고자 함.

4. 2008년도 주요업무계획

가. 침해구제총괄팀 전략계획 흐름도

침해구제본부의 비전

인권침해 근 효과성 제고

침해구제총괄팀의 비전

사회적 약자 선리구제 강화

전략목표

- 1. 신속한 진정사건 처리
- 2. 조사 구제 역량 강화
- 3. 기획 및 협력 활동 강화
- 4. 조사구제 효과성 강화

나. 2008년도 주요 업무 계획

1. 중점시업-행정대집행 관련 법령제도 실태조사

□ 배경 및 목적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각종 개발사업을 진행하면서 행정대집행과정에서 주민과 갈등사례가 속출하고 있고 또한 이와 관련한 진정사건이 위원회에 접수된 바가 있으나 조사대상의 한정으로 인해 실질적인 권리구제의 대상 에서 배제되고 있는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 관련 법 제도에 대한 실태조사 를 실시하고자 함.
- O 이를 통해 궁극적으로 관련 법규의 보완을 모색하고자 함.

□ 사업내용

- 행정대집행 관련 각종 법규를 수집, 분석 등 실태조사
- 행정대집행 관련 위원회 진정사건 유형 및 처리결과 분석
- 쟁점 정리 및 대안 마련을 위한 전문가 초청 간담회

□ 기대 효과

- O 위원회 권리구제 효과성 제고
- O 행정대집행 관련 법규 보완을 위한 대안 마련

□ 추진 일정

- O 상반기(7월): 관련 법규 수집 및 분석 등 실태조사
- O 하반기(11월): 쟁점정리 및 대안 마련을 위한 전문가 초정 간담회 실시

□ 소요예산 : 200만원

- O 실태조사
 - 100만원× 2회 (외부전문가 자문사례금 및 출장비 등)

※담당자 : 옥수희

2. 중점시업-학생인권증진을 위한 시례발표회 및 청문회 개최

□ 배경 및 목적

- 위원회가 이미 권고한 바 있음에도 불구하고 학교에서 학생두발규제 등 인 권침해를 호소하는 진정사건이 지속적으로 접수되고 있고, 이 사안에 대한 사회적 합의도 미진한 실정이어서 학생인권증진을 위한 위원회의 노력이 필요한 시점임.
- 학생-학부모-교사 등 학교당국자-언론-시민단체-정부 관계자 등이 연석하여 상호 입장을 경청하고 최소한의 공감대를 도출하여 합의 가능한 수준의 학 생 인권보장 대안을 마련코자 함.

□ 사업내용

- 진정사건 중심 학생인권침해 주요사례발표 및 당사자 및 관계자 공개진술 청취를 통한 사회적 공론화
- 인권교육시범학교 사례 등 당사자 및 관계자를 중심으로 청문회 개최

□ 기대 효과

- O 학생인권보장 증진
- O 학생인권보장을 위한 사회적 관심 유발

□ 추진 일정

O 10월 경 추진

□ 소요예산 : 400만원

○ 사례비 : 200만원(5명×40만원), 자료 인쇄비 등 : 200만원

※담당자: 김형완

3. 중점시업-정보인권 관련 단체 협력 강화 및 쟁점토론 워크샵 개최

□ 배경 및 목적

- 우리 사회의 급속한 정보화에도 불구하고 그 진전속도에 조응하는 정보인 권보장책이 종합적으로 강구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임.
- O 따라서 프라이버시권 침해뿐만 아니라 사회적 약자 등 인권취약계층의 정 보접근권의 불균등성 등을 예방하기 위한 종합적인 방책이 요구됨.
- 이에 위원회가 정보인권 관련 인권시민사회단체와 상시적 네트워킹을 구축 하여 정보인권 관련한 쟁점을 공유하고 정보인권침해에 대한 신속하고 효 과적인 권리구제가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워크샵을 개최하고자 함.

□ 사업내용

- O 함께하는시민행동, 참여연대, 인권운동사랑 등 단체 및 전문가와 상설적인 논의체계획립
- O (가칭)사회취약계층 정보격차해소 등 정보인권보장을 위한 토론회 개최

□ 기대 효과

○ 정보인권보호 전담부처로서 위상을 확립하고 특히 사회취약계층에 대한 정 보격차 해소와 정보인권보호를 위한 법제도 정책적인 방안을 강구함.

□ 추진 일정

O 2007년도 상반기

□ 소요예산 : 400만원

O 간담회 경비: 50만원, 전문가 사례비: 200만원, 자료인쇄비 등: 150만원

※담당자 : 김형완

4. 일반시업-고문방지협약선택의정서비준에 따른 방문조시역량 강화 워크샵 개최

□ 목적 및 취지

○ 우리 정부가 국제사회에 약속한 고문방지협약선택의정서비준을 앞두고 독립적 국가예방기구로서 역할 수행을 위해 국제기준이 정하고 있는 방문조사 기법 및 절차를 살펴봄으로써 조사관의 조사역량을 제고하고자 함.

□ 실행 방안(내용)

- 관련 국제 전문기구인 APT(국제고문방지협회)의 기술지원을 받아 사례중심 으로 워크샵 실시
 - 2006년도 실시한 워크샵 자료집을 적극 활용

□ 기대 효과

- O 위원회 고유의 방문조사 활동에 대한 조사관들의 인식 제고 및 명확화
- O 조사관의 조사 및 구제 역량 강화

□ 추진 일정

○ 2008. 6. 실시

□ 소요예산 : 200만원

O 자료인쇄비: 50만원, 여비: 100만원, 업무추진비: 50만원

※담당자: 김형완

2008년도 업무계획(안)

2008. 1.

침해구제1팀

1) 일반현황

가) 소관업무

- 검찰.경찰.군대.국정원.특별사법경찰.군 구금시설의 인권 침해 행위와 관련,
 - 진정사건 조사.조정.권고, 긴급구제조치 권고, 법률구조 요청
 - 진정사항 관련 법령.제도.정책.관행의 개선권고, 위원회 권고 에 대한 이행실태 점검
 - 진정사항 조사.구제 관련 실태조사, 직권조사 및 방문조사
 - 진정사항의 조사.구제관련 국내외 협력 및 교육
 - 인권침해 유형과 원인 연구 및 예방지침 등 관련업무

나) 인원현황

구 분	정원	현원	팀장	5급	6급	기능직	파견	과부족
인 원	12	12	1	7	2	1	1(경찰)	-

2) 업무평가

- 가) 효율적이고 실효성있는 진정사건 처리
 - 진정사건의 증가에도 불구, 조사업무 협업처리 및 전문성 강화 노력 등을 통한 소요일수 단축 등 효율적 사건 처리

전년대비 진정사건 처리비교

7 H		2006년도		2007년도				
<u> </u>	접 수	처 리	평균소요일	접 수	처 리	평균소요일		
계(건수)	882	925	136일	1,210	1,284	108일		

※ 처리건 수는 이월사건 포함

- 전년 대비 처리건 수 39% 증가, 평균 소요일수 26% 단축 (접수건 수는 37% 증가)
- 현장중심의 조사강화 및 해결 등을 통한 권리구제의 실효성 도모
 - 전년대비 인용사건이 증가(26.5%) 되었음에도, 합의종결 120% 증가(20건→44건) 및 조사중 해결 95% 증가(259건→504건) 39

- 나) 현안사건 적극 대응 및 균형감각 있는 조사활동 전개
 - 긴급구제 요청사건 등 현안사건 적극적이고 합리적 대응
 - 한미 FTA반대집회, 이랜드 점거농성, 범국민행동의 날 등 현안 사건에 대한 현장활동, 긴급구제 및 위원회 입장 표명 등
 - 기획조사 건에 대한 조사결과 및 제도개선 사항 관련 기관과의 간담회, 사전 업무협의 등을 통한 의견 조율 및 반영
 - 징계 등 현안사건에 대한 사전 의견진술 기회 부여 등을 통한 균형감각 유지 노력
- 다) 기획조사 강화를 통한 인권침해 사전 예방활동 적극 추진
 - 전의경 인권상황 및 벌금형 집행관련 직권조사 원활한 마무리 및 권고에 따른 관계기관의 적극적 수용의사 표명
 - 이슈화된 현안과제인 집시법상 집회금지통고 및 사전차단 관 련 정책제도개선 검토, 청문회 개최 및 전원위 상정.심의 중
 - 지난해 실태조사 결과 등을 반영, 군 복무 부적응자 인권개선 정책권고를 통한 군인권 향상에 기여
 - ○「인권관련 경찰업무 평가지침 개발연구」실태조사 연구용역사업 차질없는 사업 마무리
 - 경찰서 유치장(2건) 및 군 영창(3건) 방문조사 당초 계획대로 원만한 사업 완료(소위 상정중)
- 라) 조사관 역량강화 교육프로그램 운영을 통한 전문성 강화에 기여
 - 프로그램 운영 등을 통한 조사관 전문성 확보로 진정사건 처리 의 효율성과 해결능력 제고에 실질적 기여
 - 경찰 수사분야 전문교수(경찰종합학교 등) 초빙 조사역량 강화교육 실시
 - . 2007.6.20 ~ 7.18, 총 5회 20시간(강사 5명), 수사절차 등 6개과목
 - 조사관 사례발표 및 토론회 개최(4회)
 - . 개정 형사소송법의 쟁점 및 진정조사와의 관계 등 4개 분야

- 헌법 기본권 판례모임 운영 및 참여(1기 : 38회, 2기 ; 16회)
- 마) 군 사건 역량집중 투입에 한계
 - 군 사건에 대한 대국민적 관심과 파급력이 크고 군 조사의 특수 성과 조사내용의 방대함에도 불구, 인원 부족 및 시스템상의 한 계로 역량집중 투입에 하계
 - 이에 따라, 우리 위원회 조사업무와 유사한 고충위 등 유사기관 출범에 따른 경쟁력 확보.대처에 미흡
 - 고층위 군조사팀(2팀.20명), 군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 육군 등 각 군 본부 인권팀 출범 등
 - ⇒ 개정 직제령(안) 시행 시 등 군 사건 역량집중 방안 마련 필요
- 바) 진정사건 증가 및 기획조사 강화 등에 따른 집중조사 필요사건 조사역량 집중에 한계
 - 부당.편파수사 조사범위 포함 및 여과없는 진정사건 접수로 진정사건이 급증함에 따라, 상대적 집중조사 필요사건에 대한 상대적 역량결집에 미흡
 - 기획조사 강화에 따른 정책.제도적 검토 시 일반 진정사건 효율적 처리에 한계 및 진정사건 지연처리 원인
 - ⇒ 선택과 집중의 문제로 접수단계에서 적극적 해결방식 강구 및 기획조사 집중처리시스템 도입, 주요 사건 초동조사 적극대응 등

3) 외부환경 동향 분석

- 가) 새 정부 경제.성장 중심의 실용정책 표명에 따라 국내 인권환경의 위축 소지가 있는 반면, 정부정책 추진과정에서의 사회.경제적 소외자 및 약자 보호 요구 증대 가능성 상존으로 인권위 역할 실질적 증대
- 나) UN 사무총장 출신국으로서 국제적 위상과 반기문 총장의 2008 년도 적극적 인권개선 의지 적극적 표명을 하였고, 아시아지역 선진적 NI로서 역할이 증대되고 있으며 인권의 중요성이 국제

적 흐름임

- 다) 참여정부 들어서도 국민의 권리향상과 기관 간 견제 등을 위해 위원회 유사 진정처리 기관인 국민고충처리위원회.노동부 차별시정기구.법무부 인권국.국방부 옴브즈만 등이 출범하여일정 부분성과를 산출하였고, 각 기관별 독자영역 구축 및 유사기능으로 자리 매김 하였음을 자부
- 라) 새 정부 출범에 따른 인식전환에 따라, 전통적 피진정기관인 법무부.검찰.경찰 등이 인권위 권고에 따른 대처.판단이 종전과 같지만은 않은 상황이 예상됨에 따라 인권위 권고 질적 수준 향상 필요성 대두

4) 주요업무

가) 중점사업

○ 수사과정에서의 아동.청소년 인권보장 강화

나) 일반사업

- 석방지휘업무 처리지연 관행 시정을 위한 직권조사
- 피의자(피고인) 접견권 제한 직권조사
- 구금시설 방문조사
 - 해양경찰서 유치장(2개소), 경찰서 유치장(2개소)
 - 군 영창(2개소), 검찰 구치감 및 보호실(4개소)
- 철도공안 수사과정 실태조사
- 국제 인권침해구제기관 판례 등 번역 및 분석
- 인권단체 및 관계기관과의 협력 강화

다) 특별사업 : 없음

5) 연간 추진 일정 : 별첨

<중점사업>

수사과정에서의 아동 . 청소년 인권 보장 강화

□ 배경 및 목적

- O 아동.청소년은 수사과정에서 방어권, 진술권 등의 수행 능력을 갖추지 못하여 성인과 다르게 처우 받도록 국제규약 및 국내 법령에서 규정
- 아동.청소년 관련 범죄의 증가와 함께 수사과정상 사건별 다양한 상황이 발생함에 따라 아동.청소년의 인권침해 예방을 위해 수사과정별수사방법 등을 조사.분석, 아동.청소년의 인권 향상을 도모 필요

□ 사업 내용

- 경찰서별 아동.청소년 사건 수집(또는 진정사건에서 발췌)
 - 경찰서(지역 배분) 10여개서 선정
 - 범죄유형별, 피의자, 피해자, 참고인별 구분(기타 장애 유무, 특수 신분 등 고려)
- O 해당 사건 수사과정 조사
 - 수사장소, 수사시간, 수사방법, 보호자 등에 관한 사항, 개인정보보호, 특별 배려 사항, 관련 법령 준수 여부 등
- O 방지 대책 수립 권고 및 홍보 등 후속조치

□ 기대 효과

- O 수사과정에서 아동.청소년의 인권침해 예방 및 인권의식 제고
- 아동.청소년의 인권 향상을 위한 법령.정책 등 수립에 활용

□ 추진 일정

- 2008. 3. 조사계획 수립. 실시
- O 2008. 10. 조사 완료, 결과 보고

□ 소요예산

O 출장비, 전문가 자문비 등 3,000천원 소요 예상

주 담당 : 장영아 조사관

<일반사업>

1. 석방지휘업무 처리지연 관행 시정을 위한 직권조사(신규)

□ 배경 및 목적

- 피체포자에 대한 조사가 종료되어 더 이상 인신구금상태를 유지할 필요가 없는 경우에도 심야에 석방지휘를 할 검사가 없다는 이유로 석방이 지연 되어 유치장에서 하룻밤 더 유치되어야 했다는 진정사건이 접수되었고, 심 야시간에는 석방지휘를 할 검사가 업무를 하지 않는다는 지적이 있음.
- O 따라서 석방지휘를 할 검사가 없다는 이유로 피체포자가 하룻밤 더 유치 장에 유치되는 관행은 시정될 필요가 있음

□ 사업 내용

- O 전국적으로 몇 개 지역 유치장과 검찰청을 선정하여 심야시간에 석방 지휘 업무를 어떻게 처리하고 있는지 파악하기 위한 예비조사 실시
- 예비조사 결과 문제점이 드러나면 직권조사 결정, 광범위한 조사 실시

□ 기대 효과

- O 피체포자에 대한 심야시간대 석방지연을 당연한 것으로 여겨왔던 풍토에 대한 경종을 울리는 계기
- O 체포상태 유지가 불필요한 경우 최대한 신속하게 석방해야 한다는 헌 법정신을 환기시키는 계기

□ 추진 일정

- 2008. 2. ~ 3. : 대도시 2, 중소도시 2, 읍면지역 2를 선정, 방문 및 자료조사
- O 2008. 4. ~ 6. : 직권조사 결정 후 확대 조사 실시
- □ 소요예산 : 약 2백만원 소요 예상

주 담당 : 김원규 조사관

2. 피의자(피고인) 접견권 제한 직권조사(신규)

□ 배경 및 목적

- 피의자 등의 접견교통권은 헌법상의 기본권이라는 점에 유념하여 접견금지 결 정을 할 경우 접견금지 범위. 기간 등을 구체적으로 특정하여 실시하여야 함
- 접견 관련 인권침해 진정사건 중 기간 등을 특정하지 않고 부당하게 접견금 지를 한다는 내용이 접수되고 있는바, 이에 대한 전반적인 실태파악을 통한 개선책 마련 필요

□ 사업 내용

- O 검찰, 경찰 및 법원의 접견금지 제한 실태 확인
- O 조사범위
 - 기초조사 : 경찰서 4개서 선정, 교정시설 4개소 선정 접견금지 관련 실태 파악
 - 본안조사 : 기초조사를 토대로 직권조사 실시 여부 결정, 직권조사 결정시 조사범위 확대하여 실태조사를 통한 본안조사 실시

□ 기대 효과

- 인권침해 요소 사전 예방
- 제도적 개선방안 모색 및 부당행위에 대한 제재 권고

□ 추진 일정

- 2008. 7. ~ 8. : 접견금지 관련 기초조사(자료수집 등 실태파악)
- 2008. 9. ~ 10. : 방문조사 및 조사보고서 작성 등(상, 하반기 실시)
- □ 소요예산 : 약 200백만원 소요 예상

주 담당 : 임채호 조사관

3. 방문조사 실시(신규 및 계속)

가. 해양경찰청 유치장 방문조사(신규)

□ 배경 및 목적

- 인권위 출범이후 해양경찰서 유치장 관련 방문조사 활동은 전무
 - 전국 13개 해양경찰서(3개청)로 인권수요가 예상되나, 진정접수는 미약
- O 방문조사를 통한 유치장 시설.환경 및 처우 등에 대한 인권실태를 확인 하고 그 결과에 따른 개선책 마련 필요

□ 사업 내용

- O 해양경찰서 유치장 2개소 방문조사 실시
- O 조사범위
 - 유치장 내 각종 기본시설 및 운영 실태
 - . 진정권 고지.접수 처리, 절차 및 적법절차 등
 - 3대 기본 조사사항
 - . 변호인 접근권, 의사진료접근권, 가족 등에의 통지
 - 각종 인신 구금관련 기록, 정보의 유지 확인

□ 기대 효과

- 그동안 관심이 미약했던 해양경찰 부문 인권침해 요소 사전 예방
- 관계기관과의 정책협의 및 인권 교육자료 활용

□ 추진 일정

- 2008. 1. ~ 2. : 방문조사 관련 자료 수집 및 조사대상 기관 선정
- O 2008. 3. ~ 4. : 방문조사 및 조사보고서 작성 등
- □ **소요예산** : 국내여비 및 자문료 등 약 400백만원 소요 예상

주 담당 : 임채호 조사관

나. 경찰서 유치장 방문조사(계속)

□ 배경 및 목적

- O 방문조사를 통한 유치장 시설.환경 및 처우 등에 대한 인권실태 확인 및 결과에 따른 개선책 마련 필요
- '06, '07년도 경찰서 유치장 각 2개소 실시결과 통보에 대한 현장에서의 이행여부를 경찰청 합동조사 실시

□ 사업 내용

- O 경찰청 산하 경찰서 유치장 2개소
- 조사범위
 - 유치장 각종 기본시설 및 운영 실태 등 기 통보한 방문조사결과의 현 장 이행여부
- O 가급적 경찰청과 합동으로 추진

□ 기대 효과

- O 경찰서 구금시설의 인권침해 요소 사전 예방 및 인권위 통보사항 현장 이행여부 확인
- 관계기관과의 공동실시로 기관 간 업무협력 도모

□ 추진 일정

- 2008. 3. ~ 4. : 관계기관과 업무협의 및 조사기관 선정 등
- 2008. 6.. ~ 8. : 방문조사 및 조사보고서 작성 등
- □ 소요예산 : 국내여비 및 자문료 등 약 400백만원 소요 예상

주 담당 : 임채호 조사관

다. 군 영창 방문조사(계속)

□ 배경 및 목적

- O 방문조사를 통한 구금시설.환경 및 처우 등에 대한 인권실태 확인 및 결과에 따른 개선책 마련
- '07년도 군 영창 3개소에 대해 방문조사를 실시 하였으나 인권침해 환경 등의 사전 예방을 위해 군 영창 등에 대한 방문조사 지속 실시 필요

□ 사업 내용

- 국방부 산하 군 영창 2개소
- O 조사범위
 - 군 영창 각종 기본시설 및 운영 실태, 전년도 조사결과통보에 다른 현 장 전파 정도 확인 등

□ 기대 효과

- 군 영창의 인권침해 요소 사전 예방 및 인권위 통보사항 현장 이행여부 확인
- 관계기관과의 정책협의 및 인권 교육자료 활용

□ 추진 일정

- 2008. 7. ~ 8. : 방문조사 자료 준비 및 조사기관 선정 등
- O 2008. 9.. ~ 10. : 방문조사 및 조사보고서 작성 등
- □ **소요예산** : 국내여비 및 자문료 등 약 400백만원 소요 예상

주 담당 : 이기성 조사관

리. 검찰 구치감 보호실 방문조사(신규)

□ 배경 및 목적

- 경찰 및 법무부 교정국에서 운영하는 유치장 및 구금시설에 대하여는 어느 정도의 감시 및 시정조치가 제도화.일상화 되고 있으나.
- 전국의 관할 검찰청 내에서 운영되고 있는 구치감(호송출장소) 및 보호실은 소관업무가 각 경찰, 법무부, 검찰청으로 분화되어 관리되고 있고, 운영실태 또한 정확히 관찰된 바 없는 실정임.

□ 사업 내용

- O 검찰 내 구치감 실태에 대한 방문조사 실시
 - 수용자의 식사 등 기본처우 실태, 이송 후 수갑 및 포승 해갑실태, 응 급 시 병원후송 실태. 검찰 조사대기 시간 등 애로사항 파악
- O 검찰 내 보호실 운영 실태에 대한 방문조사 실시
 - 야간 및 벌금형 수배자, 또는 검찰 긴급체포자를 일시 수용하는 경우, 그 실태에 대하여 기초조사

□ 기대 효과

- O 일시 대기시설이라는 이유로 관심이 저조하였던 구금시설에 대한 인권침 해 예방 및 기본적 실태파악
 - 부당한 장기 조사대기. 열악한 시설에 대한 처우 개선 효과

□ 추진 일정

- 분기별 각 1회 실시(총 4회)
 - 서울.경기권, 중부권, 남부권 등 각 구치감 및 보호실 방문조사 실시
- □ **소요예산** : 국내여비 및 자문료 등 약 300만원 정도 소요

주 담당 : 정상영 조사관

4. 철도공안 수사과정상의 인권침해 실태조사(신규)

□ 배경 및 목적

- O 인권위 출범이후 일반 수사기관에 대한 실지조사와 진정사건 조사 등은 활발히 진행되어 왔으나 특별사법경찰관리에 대한 조사 활동은 미흡
- O 특히 노숙자 등 소외계층을 상대로 하는 철도공안에 대한 점검 필요

□ 사업 내용

- O 철도공안사무소 3개소(부산, 대전, 서울) 실지조사 추진
- O 피의자 보호실 등 시설실태 및 수사과정 전반에 대한 점검
 - 응급진료접근권, 변호인접근권, 가족 등에의 통지 등
 - 심문, 수사과정 등에서의 인권침해 여부 확인
 - 철도공안범죄수사규칙 등 관련규정 점검
- O 방문조사결과 공표 및 권고

□ 기대 효과

- O 특별사법경찰 영역으로의 조사 활동 강화
- O 노숙자 등 소외계층 인권보호 향상

□ 추진 일정 및 소요예산

- O 상반기 조사활동 전개, 7월중 권고안 마련
- 조사관 출장비 등 300만원정도 소요 예상

주 담당 : 박달경 조사관

5. 국제 인권기구 수사관련 판례 등 수집, 번역 및 분석(신규)

□ 배경 및 목적

- 조사기법 등 향상에도 불구하고, 조사기법 및 판단은 국내적 법규, 논리 및 상식, 판례 등의 수준을 벗어나지 못하고 기껏해야 일부 국제인권 규범 적용에 불과한 실정
- 또한, 그동안 인권위 초기 특성상 인프라 등 구축에 있었다면 이제는 업무 개발 및 조사 권고의 질적수준 향상을 도모할 때임.
- 따라서, 조사과정상의 조사기법 및 판단에 참고자료로 활용하고 국제적 인권동향과 흐름에 대처하기 위해 관련 판례에 대한 번역 및 분석 필요

□ 사업 내용

- 국제 인권기구 조사보고서 및 결정례 해석 및 분석
 - 유럽인권법원, 국제형사재판소(ICC), 유럽고문방지위원회(CPT), Humanrights Watch, Amnesty International, APT 등 기타
- 위 국제기구의 판례 등에 대한 모니터링을 통해 인권위 활동과 유사 한 기구의 판결례를 수집.선정, 번역 용역 의뢰

□ 기대 효과

- O 조사기법 및 판단 등에 활용을 통한 조사의 질적 수준 도모
- 국제 인권흐름 및 동향파악에 기여

□ 추진 일정

- O 2008. 6. 대상 판례 수집, 용역 대상자 선정 및 의뢰
- O 2008. 10. 용역 완료 및 분석
- □ **소요예산** : 번역 용역비 및 인쇄비 등 약 10,000천원 소요 예상

주 담당 : 이은애 조사관

6. 인권단체 및 관계기관과의 협력 강화(계속)

□ 배경 및 목적

O 권리구제의 실효성, 현장감 있고 균형감각 있는 조사활동 등을 위해 인권단체 및 관계기관과의 긴밀한 협력관계 유지 필요

□ 사업 내용

- O 인권현안 의견수렴 및 협력강화를 위한 인권단체 간담회 개최(연 1~2회)
- O 관계기관과의 협력관계 강화
 - 검찰청.경찰청.국방부.각 군과의 정례적 간담회 개최(연 1~2회)
 - 현안과제(정책과제, 방문조사 결과 등) 정책협의를 위한 간담회 개최(필요시)
 - 권고사건 미수용 및 미처리 사안에 대한 사후관리 차원의 해당 기관 방문 협의 등(상.하반기 각 1회)

□ 기대 효과

- 조사관 전문성 강화를 통한 사건의 효율적 처리 및 질적수준 제고
- O 위원회 위상제고 및 권리구제의 실효성 제고

□ 소요예산

O 업무추진비 2,000천원(7회) 등

주 담당 : 김용국 조사관

< 추진일정 >

월	1	2	3	4	5	6	7	8	9	10	11	12
수사과정에서의 아동.청소년 인권보장												
석방지휘업무 처리지연 관행 시정을 위한 직권조사												
피의자(피고인) 접견권 제한 직권조사												
해양경찰청 유치장 방문조사												
경찰서 유치장 방문조사												
군 영창 방문조사												
검찰 구치감, 보호실 방문조사												
철도공안 수사과정상의 인권침해 실태조사												
국제인권기구 수사관련 판례 등 수집, 번역 및 분석												
인권단체 및 관계기관과의 협력강화												

2008년도 침해구제2팀 업무계획

2008. 1. .

침 해 구 제 본 부 침 해 구 제 2 팀

I . 일반현황	1
Ⅱ. 2007년도 업무 평가	3
Ⅲ. 외부환경 동향분석	10
Ⅳ. 주요 업무	11
1. 중점사업	
가. 정신장애(질환) 수용자 인권상황 실태조사	12
나. 장애수용자 수용환경 및 처우 실태조사	13
다. 아동.청소년 구금.보호시설 방문조사	11
2. 일반사업	
가. 진정사건 신속처리	15
나. 행형법 하위 법령 개정을 위한 관련 규정 검토	16
다. 인권침해 예방을 위한 구금시설 방문조사	17
라. 조사관 전문역량 강화교육 및 토론회	18
마. 교도관 인권의식 향상을 위한 간담회 및 교육 활성화	19
바. 유관기관 및 단체와의 교류 현력 내싴화	

I. 일반현황

□ 이워 혀황

정원	현원	팀장	5급이상	6급이하	파견
9		1	5	3	
	11	1	3	5	2

□ 업무 현황

직제령 제13조

[교정.구금시설(군관련 구금시설 제 [교정.구금시설(군관련 구금시설 제 외)에서의 인권침해 행위와 관련된 다 외)에서의 인권침해 행위와 관련된 다 음 사항]

- 1. 진정사항의 조사.구제
- 2. 진정사항의 조사.구제 관련 법령.제 나. 진정사항의 조사.구제 관련 법 도.정책.관행의 개선사항 연구, 위원 회 권고 및 의견의 표명
- 3. 진정사항의 조사.구제 관련 국내외 협력
- 4. 진정사항의 조사 관련 긴급구제조 정보제공자에 대한 보상금 지급 및 한 사항

업무분장규정 제11조

음 사항]

- 가. 진정사항의 조사.조정.구제
- 령.제도.정책.관행의 개선사 항 연구, 위원회 권고 및 의견의 표명과 이행실태의 점검
- 다. 진정사항의 조사.구제 관련 국내 외 협력 및 교육
- 치의 권고, 조정, 법률구조의 요청, 라. 진정사항의 조사,구제 관련 실태 조사 및 직권조사
- 진정인과 증인의 보호업무 등에 관 마. 진정사항의 조사.구제 관련 긴 급구제조치의 권고, 조정, 법률구 조의 요청, 정보제공자에 대한 보상금 지급 및 진정인과 증인의 보호업무 등에 관한 사항
 - 바. 진정사항의 조사.구제 관련 인 권침해의 유형과 원인에 대한 연 구 및 예방지침 마련
 - 사. 진정사항의 조사.구제 관련 업 무편람 발간

□ 팀내 업무분장 현황

구 분	성 명	담 당 업 무					
총괄	홍세현	팀업무 기획 및 총괄, 국회 및 타부처 협력.대응 팀원 복무관리, 업무분장, 성과관리 등					
조사	이용근/이경우/ 장관식/현정덕/ 김선일/박우열/ 이시현/김경진/ 나상원	○전국 교정시설 관련 인권침해 진정사건 조사 및 구제(담당 교도소 지정) ○기획조사(방문조사, 직권조사, 실태조사)					
	김동환/김선일	○치료감호소 진정사건 조사 ○치료감호소 및 소년원 기획조사(직권, 방문 등)					
기획	이용근/장관식/ 김동환/나상원/	○ 진정사건 신속처리방안 연구 ○ 조사:구제 관련 법령.제도정책.관행의 개선 등 ○ 행형법 하위 법령 검토					
	현정덕/김경진/ 이시현	○ 직권.실태조사(용역관리) ○ 유형분석과 판단지침 마련					
교육	이경우/박우열	○조사관 전문역량 강화교육					
협력	현정덕/이시현/ 김동환/김선일	○ 법무부 등 관련 기관 ○ 전문가(학계, 법조계 등) ○ 유관단체(NGO 등)					
서무	나상원/박우열	○문서접수 등 조사지원 ○민원처리, 송부촉탁 처리 등 ○통계 및 분석, 세출예산집행, 성과관리 ○월간보고 등 기타 ○PCRM					

Ⅱ. 2007년도 업무 평가

- □ 진정사건 처리
- 2006~2007 진정사건 접수 및 처리 건수 현황

구분		접수 건수		처리	조사중 사건	인당 건수(월평균)		
7 ਦ	이월사건	06년접수	계	건수		접수	처리	
06	393건	1,246건	1,639건	1,332건	307건	13.7건	11.1건	
07	307건	1,567건	1,874건	1,506건	368건	14.1건	11.4건	

- 조사관 1인당 접수/처리 건수는 팀원 전원을 기준으로 한 것이며, 팀장.행정지원(서무).파견조사관(교정)을 제외한 조사관들의 실질적인 접수/처리 건수는 2006년도에 각 17.1건 /13.9건, 2007년도는 각 19.4건/15.7건으로 평균 2건이 증가되었음.(지역사무소 접수/처리 건수 제외)
- 진정사건수의 총량은 2006년도에 비해 22.55%가 증가하였고, 처리건수 역시 2006년도에 비하여 13.06% 증가하였음. 이는 사건수와 팀원수를 단순 비교한 것으로 조사관 공석기 간, 파견자를 제외한 조사관수를 비교하면 접수사건은 37%, 처리건수는 37.7%가 증가하였음.

○ 심의결과별 처리 현황 및 진정사건 처리 소요일수

구분	심의결과별 처리 현황								
	각하	기각	이송	인용	조사 중지	하 보 경 경	합계	조사중	소요 일수
2006	849	420	39	22	1	1	1,332	307	105일
2007	1,008	422	39	34	1	2	1,506	357	77.5일

- ※ 기각, 각하 중 조사중 해결사건 : 2006년(393건) / 2007년(455건)
- 2007년도 종결건수 1,506건 중 인용은 34건(2.26%), 기각이 422 건(28.02%), 각하가 1,008건(66.93%) 등임. 2006년도 인용 22건 (1.65%)에 비해 54%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나, 각 8건 병합과 3건 병합을 고려하면 인용의 증가는 미미함. 그러나 조사중 해결사건은 전년도 393건에서 2007년도에 455건으로 15.8% 증가했고, 조사중 해결 자체가 인용권고 이전에 조사관의 조사개시로 인하여 또는 진정 이후 구금시설 내에서 진정인과 피진정인 사이에스스로 문제를 해결한 것으로서 보다 신속한 구제에 이르는 실질적인 효과가 있음.
- 특히 2007년도 방문조사에서 조사기간 중 또는 직후 대상 기관이 자율적으로 개선.보완한 사안이 30건, 긍정적으로 검토 중인 사안은 71건으로 총 101건이 자체 개선하거나 시정한 성과를 보임. 이 모두가 한건 한건의 정책 인용권고와 다름없다고 볼 때 방문조사의 예방적 효과가 나타남.
- 2007년도 진정사건 처리 평균 소요일수는 77.5일로 2006년도의 105일에 비해 27.5일을 단축시키는 등 진정사건을 매우 신속하게 처리했으며, 이는 2007년도 위원회 전체사건의 약 30%를 담당한 2팀이 위원회 평균소요일수를 2006년도 123일에서 2007년도 90일로 낮추

는데 크게 기여하였음.

○ 미결사건 현황

- 2007년초 전년도 이월 사건수는 336건이고, 2007.12.31.기준 미결사건은 358건으로 미결 사건수는 다소 증가하였으나, 이는 전년도 보다 더 많은 사건을 처리했음에도 기본적으로 진정사건수가 증가한 것에서 기인하고 있음. 다만, 1년 이상 미결사건이 2건(1건 상정중)으로 장기미결사건 해결에 노력하였음.

경과일수	1년 이상	9개월 이상	6개월 이상	3개월 이상
2006년도	6건	5건	19건	82건
2007년도	1건	6건	13건	97건

□ 2007년도 주요 인용사건

- 수용정원 산정기준 준수, 병사동과 동일형태의 사동운용관련 치료사동의 바닥 난방 설치 권고(06진인693)
- 형집행정지자 중 무연고자를 미신고시설에 인계하지 않도록 감독강화 및 규정마련 권고(06진인2009)
- 당사자의 의사에 반하여 재판기일에 출석하지 못하도록 하거 나 유사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할 것을 권고(06진인1629)

- 관용작업취업자가 타 수용자의 개인정보 등 사생활의 비밀을 취급하는 일이 없도록 관리감독강화 및 제도적 장치마련 권고 (07진인1039)
- 수용자를 폭행한 안양교도소 교도관 징계 권고(07진인537)
- 교정 질서유지에 현저한 지장이 없는 경우 동일 교정시설 내 수용자간 서신교환 허용 권고(07진인1745)
- 구치소 내 수용자 사망과 관련, 유가족이 국가 등으로부터 적절한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대한변협법률구조재단에 법 률구조 요청(06진인1140)
- 수용자 춘추복 지급 시기를 날씨, 수용자의 건강 특성 등을 고려하여 탄력적으로 적용할 것을 권고(07진인3392)
- 징벌위원회 출석통지 지연으로 권리를 침해받지 않도록 감독 강화 및 재발방지 조치마련 권고(07진인1584)
- 폭행, 계구사용 및 인권위 진정방해 관련, 피진정인들에 대해 고발, 징계 등을 권고[06진인2118, 06진인152, 06진인3301, 07진인254, 07진인811, 07진인1276, 07진인1277, 07진인1300(8건)]

□ 2007년도 기획조사(방문)

- 2007년도 기획조사는 정기적이고 효율적인 방문조사를 실시하기 위하여 **방문조사의 "표준화 및 시스템화"에 초점을 맞춰 진행** 하였음. 이를 위해 1/4분기 동안 수차례에 걸쳐 팀원들의 논의를 거친 후, 방문조사 전담 조사관(2명)을 지정.운영하여 표준화를 위한 체크리스트와 설문지를 정리하여 '현장실무노트'를 자체 제작함.
- 2007년도 방문조사는 6개 구금시설, 2개 소년보호시설 등 총 8개 시설에 대해 실시하였으며 현장조사는 실무노트 등의 정리와 사 전 설문조사 실시 이후인 8월 말부터 시작하여 11월 초순까지 진행함.
- 2007년도 방문조사의 특징은 표준화된 체크리스트와 시스템화된 조사방법에 따라 진행하여 인권침해의 요소들이 조사기간 중도는 직후에 개선되거나 시정 조치된 사안이 30건, 긍정적으로 검토중인 사안이 71건으로 총 101건에 달하고 있으며, 모두가 한건 한건의 정책 권고와 다름없다고 볼 때 현장조사가 순차적으로 진행되어 이전 시설에서 지적된 사례가 다음 시설에는 이미 개선되는 등 방문조사의 예방적 효과가 나타난 것으로 보임.(붙임1참조)
- 위원회법 제24조의 취지를 살리고, 인권침해의 사전 예방적 활동을 강화하기 위해 방문조사의 활성화가 요구되는데, 개별 진정 사건이 증가되는 상황에서 방문조사 건수를 확대하는 것은 조사

인력과 예산운용에 애로점이 있음.

□ 2007년도 구금.보호시설 방문조사 현황

구분	조사내용	대상기관	조사기간 (회의일수)	조사인원 (외부)	비고
		영등포교도소	8.28.~8.30.	11(4)	
	구금시설 입소에	의정부교도소	9. 5.~9. 7.	10(4)	
	서 퇴소까지 수용	전주교도소	9.18.~9.20.	11(6)	
.n n	생활 전반과 처우 등에 대한 실태	목포교도소	10.10.~10.12.	9(4)	구금 및
방문조사		대전교도소	10.23.~10.26.	11(6)	보호시설 운용실태조사
		공주교도소	11.7.~11.9.	10(4)	한 0 현세고 1
	소년보호시설 생활과	안양소년원	10.1.~10.2.	8(4)	
	교육 등에 관한 실태	광주소년원	10.9.~10.10.	8(4)	

□ 기획.협력 및 교육사업

- 법무부 보안경비과 간담회(2회) : 3. 28. 6. 14.
- 국가인권위원회법 관련 내부 직원 간담회 : 3. 19
- 인권정책현장 방문, 간담회(2회)
 - 시화직업훈련교도소 : 4. 18, 청송교도소 : 4. 20
- 구금.보호시설 직원 대상 인권교육 실시(10회)
- 2005~2006 방문조사 후속조치 간담회(3회)
- 조사관-교도관 간담회 실시(5회)
- 교도관 인권의식 제고를 위한 교육(4회)
- 교정전문위원회 개최(2회)
- 외부 단체 간담회 실시(4회)
 - 한국교정학회 : 5. 4대한변협법률구조재단 : 5. 8
 - 천주교인권위원회 : 9. 13 인권실천시민연대 : 10. 4

□ 종합평가

○ 진정사건 처리

- 2006년 대비 2007년에는 조사관 1인당 진정사건 접수건수 및 처리건수가 각각 13.7건에서 14.1건, 11.1건에서 11.4건으로 증가하였고 인용건수도 22건에서 34건으로 증가하였을 뿐만 아니라 평균 사건처리 일수는 105일에서 77.5일로 27.5일 (26.2%)을 단축한 것으로서 매우 효율적인 진정사건 처리가 이루어졌고,
- 2007년도 위원회 전체 사건의 약 30%를 처리한 2팀의 실적이 위원회 전체 사건처리 소요일수를 2006년도 123일에서 2007년도 90일로 단축시키는데 크게 기여하였음.

○ 기획조사(방문)

2007년도의 기획조사(방문)는 체크리스트화된 '현장실무노트'를 활용하여 방문조사의 표준화를 달성할 수 있었으며, 조사기간 및 조사 직후 방문조사 대상기관의 자율적인 개선.시정 조치가 이루어지거나(30건) 긍정적으로 개선.보완할 예정(71건)인 점을 고려할 때 방문조사로 인해 현장환경을 개선, 예방 효과가 나타남.

○ 교육 및 협력업무

- 조사관 사례 발표 및 조사관 교육을 통하여 조사 역량이 향상된 결과, 진정사건 처리 및 방문조사의 목표를 달성할 수있었음.
- 교정기관 및 인권단체와의 협력 강화 활동은 조사활동의 동 력으로 작용하였음.

Ⅲ. 외부환경 동향분석

○ 행형법 개정 및 하위 법령의 정비 필요

- 구금시설에서의 수용자의 모든 것을 관장하는 행형법의 전부개 정법률안(「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이 2007. 12. 21. 국회에서 개정되고, 2008. 12. 22. 시행을 앞두고 있으므로 수용생활을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는 하위 규정들에 대한 세심한 검토와 모니터링이 필요함.
- 이를 위해서는 우리 위원회가 그 동안 권고했던 사안들을 정리하고, 그 동안 방문조사에서 나타난 개선점들을 검토하여 관련 전문가 및 인권단체들과 협의하여 법무부에 의견을 제시할 필요가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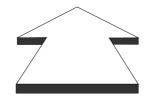
○ 피진정기관의 부정적 반응 확대

- 2007년도 안양교도소가 수용자를 폭행한 교도관의 징계권고를 불수용함에 따라 해당 동영상의 일부를 공개한 것과 관련 교정당국이 민감하게 대응하고 있음.
- 부산교도소 사건(수용자 폭행, 진정방해, 계구남용)과 관련, **피진정** 인인 교도관의 의도적인 민원남발(과다하고 방대한 정보공개청구와 질의 등)과 조사관들을 고소하는 등 일부 피진정인이 과민한 반응을 보이고 있음.

Ⅳ. 주요 업무

기 본 방 향

인권침해 예방을 위한 법제개선 모니터링 사건조사 및 구제의 실효성 강화 교정현장 실무자 인권감수성 제고 조사관 전문역량 강화 및 유관기관 및 단체 교류 협력



세부추진사업

1. 중점사업

- 가. 정신장애(질환) 수용자 인권상황 실태조사
- 나. 장애수용자 수용환경 및 처우 실태조사
- 다. 아동.청소년 구금.보호시설 방문조사

2. 일반사업

- 가. 진정사건 신속처리
- 나. 행형법 하위 법령 개정을 위한 관련규정 검토
- 다. 인권침해 예방을 위한 구금시설 방문조사
- 라. 조사관 전문역량 강화교육 및 토론회
- 마. 교도관 인권의식 향상을 위한 간담회 및 교육 활성화
- 바. 유관기관 및 단체와의 교류.협력 내실화

1. 중점사업

가. 정신장애(질환)수용자 인권상황 실태조사

□ 배경 및 목적

○ 2008년도 정신장애인권에 대한 국가보고서 추진사업이 예정됨. 그러나 구금시설 내의 정신질환수용자에 대한 실태를 별도로 연구할 필요가 있음. 47개 구금시설 및 치료감호소에 수용중인 정신질환수용자에 대한 실태를 파악, 수용환경 및 의료처우에 대한 개선방안을모색함.

□ 사업 내용

- O 정신질환 수용자에 대한 법무부의 계획 및 관리방안 조사
- O 수용자 및 담당직원 등의 심층 면접조사
- O 실태조사를 통해 분석된 문제점 및 이에 대한 개선방안 모색
- O 외국 사례 조사

□ 기대 효과

- O 구금.보호시설 내 정신질환 수용자 인권침해 예방
- O 시설 내 정신질환 수용자에 대한 치료환경 및 요법에 의한 실효적인 치료환경 조성

□ 추진 일정

○ 2008년도 2/4분기 ~ 3/4분기

□ 소요예산 : 3,000만원

- O 외부 용역 실시
- ※ 담당자: 현정덕, 김경진, 이시현

나. 장애인수용자 수용환경 및 처우 실태조사

□ 배경 및 목적

O 전국 장애인 수용교도소(8개소) 내에 수용중인 장애인수용자 실태를 파악하여 수용환경 및 처우에 대한 개선방안 모색

□ 사업 내용

- O 전국 장애인 수용교도소 수용자에 대한 법무부의 계획 및 관리방안 조사
 - 지체장애인: 광주교도소, 안양교도소, 여주교도소, 포항교도소, 김천 교도소, 군산교도소, 청주교도소, 충주구치소
 - 시각장애인 : 여주교도소, 청주교도소
 - 언어.청각장애인 : 안양교도소, 여주교도소
- O 실태조사를 통해 분석된 문제점 및 이에 대한 개선방안 모색
- O 외국 사례 조사

□ 기대 효과

- 구금시설 내 장애인 수용자 인권침해 예방 과밀수용 해소
- O 시설 내 장애인 수용자 편의시설 등 확보(설치)

□ 추진 일정

○ 2008년도 2/4분기 ~ 4/4분기

□ 소요예산 : 500만원

※ 담당자: 현정덕, 김경진, 이시현

다. 아동.청소년 구금.보호시설 방문조사

□ 배경 및 목적

○ 소년교도소(1개소)와 소년원(10개)에 대한 방문조사를 통해 시설 전 반에 대한 현황을 파악하고, 인권침해 및 정책을 개선하고자 함.

□ 사업 내용

- O 표준화된 방문조사 실무노트에 따른 보고서 작성
 - 천안소년교도소
 - 서울소년워
- O 체크리스트, 설문지 보완 재검토

□ 기대 효과

- 소년구금.보호시설 수용자(원생) 인권침해 예방 및 정책권고
- O 시설전반의 운용과 정책 검토로 조사관의 조사역량 강화

□ 추진 일정

O 2008년도 2/4분기 ~ 3/4분기

□ 소요예산 : 약 800만원

- 400만원/회 × 2회 (외부전문가 사례금 및 회의 참석 수당, 출장비 등)
- ※ 담당자: 김동환(김선일), 장관식(나상원)

2. 일반사업

가. 진정사건 신속처리

□ 배경 및 목적

- 진정인에 대한 만족도 제고 및 실질적인 권리구제
- 위원회 설립 이후 전체 진정사건의 약 33%에 이르는 구금시설사건 의 조사는 소요일수 단축 등 위원회의 전체 사건조사 소요일수 단축 에 크게 기여함.

□ 사업 내용

- O 구금시설별 전담 조사관제 강화
 - 지역별 구금시설별도 전담 조사관을 배치함으로써 조사의 효율성 강화
- O 유형분석 및 결정례의 활용
- 표준화된 조사결과보고서 작성
- O 진정사건 쟁점에 대한 지휘 강화

□ 기대 효과

- 출장 조사의 효율화
- 보고서 표준화에 따른 효율화로 조사기간 단축
- O 팀웍 강화

□ 추진 일정

O 연중, 필요시 전담 시설 조정

나. 행형법 하위 법령 개정을 위한 관련규정 검토

□ 배경 및 목적

○ 2007. 12. 21. 개정.공포된 행형법(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의 2008. 12. 22. 시행을 앞두고 수용생활을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는 하위 규정들에 대한 세심한 검토 필요

□ 사업 내용

- 위원회 설립 후 정책 권고 및 방문조사에서 나타난 개선점 정리
- 관계 기관 및 유관 단체, 전문가 등과 유기적인 협조체계 유지
- O TF 구성(필요시)

□ 기대 효과

- O 하위 법령의 인권 친화적인 방향으로 개정, 인권침해요소의 사전 예 방
- O 유관기관 협력체계 구축

□ 추진 일정

- 1/4분기 : 권고 및 정책 제안 내용 수집.정리
- 2/4~3/4분기 : 유관 기관 협의

□ 소요예산: 400만원

- TF 운영: 100,000원 × 5인 × 8회 = 4,000,000원
- ※ 담당자 : 이용근, 김동환, 나상원

다. 인권침해 예방을 위한 구금시설 방문조사

□ 배경 및 목적

O 47개 구금시설에 대한 연차적인 방문조사를 통해 시설 전반에 대한 현황을 파악하고, 인권침해 및 정책을 개선하고자 함.

□ 사업 내용

- O 체크리스트, 설문지 보완 재검토
- O 방문조사 대상 시설 선정 및 표준화된 방문조사 실무노트에 따른 보고서 작성
 - 교정청별 다수 진정 기관 또는 특정 이슈에 따라 선정(2회)
 - 2007년도 방문조사를 통해 보완한 체크리스트, 설문, 현장실무노트 및 표준 보고서에 따라 일관성 있는 방문조사 실시

□ 기대 효과

- 구금시설 수용자 인권침해 예방 및 정책권고
- O 시설전반의 운용과 정책 검토로 조사관의 조사역량 강화
- O 개별 진정사건과 분리하여 판단함으로 조사의 신속과 효율성 증대

□ 추진 일정

O 2008년도 2/4분기 ~ 4/4분기

□ 소요예산 : 약 800만원

- O 400만원/회 × 2회 (외부전문가 사례금 및 회의 참석 수당, 출장비 등)
- ※ 담당자 : 이용근, 이경우(나상원)

라. 조사관 전문역량 강화교육 및 토론회

□ 배경 및 목적

- O 조사관의 내면적 갈등해소를 통해 잠재 역량 강화, 조사 시 집중력 제고
- O 조사관과 진정인 및 피진정인 등 상호 편견과 오해 등 갈등요인 사전 제거
- 진정사건 사례발표(토론회) 등 조사역량 향상으로 업무 효율성 제고

□ 사업 내용

- O 조사관의 자세와 진정인과의 대화 기법 습득
- O 조사기법과 진정사건 처리 노하우 공유 진정사건 처리 등 사례발 표

□ 기대 효과

- O 조사관의 내면적 역량 강화와 갈등해소
- O 유사 진정사건 처리 효율성 제고와 효율적인 조사활동 제고

□ 추진 일정

- 3/4분기 조사관 전문역량강화 교육
- O 4월, 9월, 11월 조사관별 사례발표(토론회)

□ 소요예산 : 230만원

- 강사료, 원고료, 교육 참가비 1,800,000원
- O 토론회비 등 500,000원
- ※ 담당자 : 이경우, 박우열

마. 교도관 인권의식 향상을 위한 간담회 및 교육 활성화

□ 배경 및 목적

○ 교도관들의 수용자들에 대한 태도 및 용어(욕설, 반말 등) 순화를 통해 수용자 인격권과 관련한 인권침해 예방

□ 사업 내용

O 지방교정청 산하(4개소) 구금시설 현장 교도관과의 간담회를 통해 반복 또는 증가되는 진정사건의 유형(결정례 등)을 정리.설명

□ 기대 효과

- O 교도관 스스로 느끼지 못할 정도로 관성화 된 수용자에 대한 태도 및 용어에 대해 경각심을 주어 수용자 인격권 보장을 위한 전기 마련
- O 인격권 침해관련 진정사건 감소

□ 추진 일정

○ 분기별 각 1회 실시(4회)

□ 소요예산: 160만원

○ 20,000원 × 20인 × 4회 = 1,600,000원

※ 담당자: 현정덕, 김경진, 이시현, 김동환

바. 유관기관 및 단체와의 교류.협력 내실화

□ 배경 및 목적

- O 교정 관련 인권단체, 학계 및 연구기관 등 관련분야 의견수렴
- O 관계기관(법무부 교정국, 보호국, 인권국 등)과의 업무 및 정책협의

□ 사업 내용

○ 인권침해 예방방안 등에 대해 인권단체, 관련학계와 간담회 실시

- 교정유관 인권단체 간담회

.대상 : 인권단체, 교정관련 종교단체

.내용 : 위원회 교정관련 사건 조사에 관한 관련단체 의견수렴 및

협조방안 모색

- 교정유관 전문가 단체 가담회

.대상 : 교정학회, 소년보호학회 등

.내용 : 교정관련 진정예방을 위한 전문가 의견수렴 및 연구방안

모색

O 관계기관 업무협의 및 정책협의

- 법무부와의 업무 및 정책협의회 실시

.대상 : 법무부 교정국, 보호국, 인권국

.내용 : 교도소 및 구치소, 치료감호소 등과 진정사건 예방 및 효율

적 처리 방안, 종교위원의 자유로운 활동보장, 일선 교정기

관 실무협의회에서 제기되는 문제점 및 개선방안 논의

□ 기대 효과

- O 교정관련 인권단체 등 관련분야 의견 수렴하여 진정사건 조사 및 기 획조사 때 참고 및 참여유도
- O 법무부 관련 부서 등과 업무협의를 통해 진정사건 예방활동 강화

□ 추진 일정

- O 2008. 2~10 : 교정관련 학계 등 전문가 간담회 : 2회
- 2008. 2~10 : 법무부 관계 부서와의 업무 및 정책협의회 : 2회
- 2008. 2~11 : 교정관련 인권단체, 종교단체 등 간담회 : 3회

□ 소요예산: 300만원

- 학계, 전문가 등 간담회 경비: 30,000원×20인×2회 = 1,200,000원
- 유관기관 업무협의, 정책협의 경비: 30,000원×15인×2회 = 900,000원
- 인권단체, 종교단체 간담회 : 30,000원×10인×3회 = 900,000원
- ※ 담당자: 현정덕, 이시현, 김동환, 김선일

<붙임1>

2007 방문조사 시정 보완 개선 사항

□ **전체 내역: 101건** (완료 30건, 검토중 71건)

o 목포교도소 : 23건(완료 6건, 검토중 17건)
o 대전교도소 : 22건(완료 8건, 검토중 14건)
o 의정부교도소 : 20건(완료 5건, 검토중 15건)
o 전주교도소 : 17건(완료 4건, 검토중 13건)
o 광주소년원 : 14건(완료 5건, 검토중 9건)

o 안양소년원 : 5건(완료 2건, 검토중 3건)

□ 시설별 내역

o 대전교도소 : 22건(완료 8건, 검토중 14건)

н∍	시정.	보완.개선 내용	HI 7
번호	완 료	긍정 검토중	비고
1	사동 복도에 난방용 펜코일 15개 설치	펜코일 미설치 사동 추가예산 확보	
2	수용자 입.출소실 개축 중	병사동 좌변기 설치 및 증설	
3	고령자, 장애인 등 이불급여 대상자 확대 지급	독거수용시설 개선	
4	징벌혐의자 후견인제도 운영	분류처우예비회의에 여성 교도관 참여	
5	94개 독거실 미장, 도색 등 환경개선	영치물품 창고 고장 난 진공청소기 교체	
6	자살우려자에 대한 심리상담 프로그램 운영	병사운동장 맨홀 뚜껑 정비	
7	장애인 전용 접견실 운영	조사자에 대한 독거 수용	
8	미결수용자 종교집회 허용	독거실 환경개선(추가)	
9		접견실 마이크 교체 등 소음방지 흡음재 설치(2008. 3월 중 완료예정)	
10		봉재2작업장 환경개선	
11		신입자 전용 교육장 설치	
12		외국인용 수용안내 책자 제작	
13		장애수용자 안전손잡이 등 시설 보완	
14		장애수용자를 위한 목욕시설 개선	

o 목포교도소 : 23건(완료 6건, 검토중 17건)

₩₩	시정.보	L완.개선 내용	비고			
번호	완 료	긍정 검토중				
1	수용생활안내책자 자체제작 후 각 거실에 지급	미결 2하 사동 화장실 차폐시설 개선				
2	수용자 입.출소실 개축 중	중환자실 좌변기 설치 등 시설 개선				
3	환자, 고령자, 장애인 등 이불급여 대상자 확대 지급	출정실 개축				
4	고장난 세탁기 1대 수리	수용자 영치물품 보관 자루 교체 예산 신청				
5	목포중앙병원과 정신과 진료 협의 (최소 2개월 1회)	독거실 개축으로 과밀수용 해소				
6	징벌위원회 정례화 (매주 목요일 10:00)	조사실 화장실 문 개선				
7		징벌, 조사자에 대한 TV시청 허용				
8		독거사동 개축 예산 반영				
9		소거실 완전 차폐문 설치				
10		징벌사동 별도 운영				
11		목욕, 식사, 용변시 계구사용 일시 해제				
12		접견실 확충				
13		여성수용사동 전화기 설치				
14		미결수용자 전화사용 배려				
15		외부인사를 통한 수용자 인권교육 실시				
16		여성수용자 대상 속옷 판매				
17		외부강사 초빙 기술지도				

o 의정부교도소 : 20건(완료 5건, 검토중 15건)

번호	시정.브	성.보완.개선 내용			
닌오	완 료	긍정 검토중	비고		
1	여성수용자 운동장 재정비	독거수용 시설 보수공사 추진			
2	수용자 신입실 개축	전 수용거실에 난방용 전기패널 설치			
3	재활용품 판매대금 활용	사동입구 세탁실 수리			
4	훈련생 대상 서약서 폐지	수용자 출정실 공사실시			
5	가족만남의 집 신축	목욕탕 탈의실 난방 설치			
6		물 부족 해소를 위한 상수도 공사예정			
7		독립 진료실, 물리치료실 설치			
8		징벌위원회 외부위원 정비			
9		조사징벌실 창문 등 시설 개선			
10		조사 징벌실 선풍기 등 생활용품 비치			
11		접견실 증.개축			

12	화상접견용 단말기 등 하드웨어 교체	
13	신입자 교육 시간 확대	
14	여성미결수용자 생필품 지급	
15	장애수용자 거실 환경 개선	

o 전주교도소 : 17건(완료 4건, 검토중 13건)

на	시정	보완.개선 내용	HI 7
번호	완 료	긍정 검토중	비고
1	조사징벌실 종이식탁 지급	출정실 신축	
2	식사, 세면 시 계구일시 해제하고 관련기록 유지	분류직 전문성 교육 실시	
3	여성수용자 전용 전화기 설치	여성교도관을 예비회의 위원으로 지정	
4	수용자 사용 전화부스 재설치	수용자에게 분류심사의 평가요소 설명	
5		수용자 자치활동제도 시행	
6		협소한 영치품 창고 확충	
7		조사 징벌실 선풍기 등 생활용품 비치	
8		수용거실의 탄력적 운영(7사 6호)	
9		접견실 시설개선(휠체어 출입 가능)	
10		수용자 구독신문 기사삭제 여부 검토	
11		취사장 출역 관용부 적정인원 확보	
12		직업훈련 교사 확충	
13		외진수용자에게 토시용 가리개 제작	

○ 광주소년원 : 14건(완료 5건, 검토 중 9건)

번호	시정.보완.7	.개선 내용			
인오	완료	긍정 검토 중	비고		
1	자율학습실 자유롭게 개방	초대형 세탁기 . 건조기 구입			
2	목욕장면 노출방지 창문선팅	별도의 상담실 확보			
3	소화기 위치 및 사용요령 교육	독서실 생활관내로 이전			
4	신체검사 필요최소한 실시	배드민턴 운동기회 부여			
5	친구 등의 면회 탄력적 허용	신체검사실 별도 설치 신체검사 근거규정 마련 건의			
6		교사 재량에 의한 단독방 격리 수용을 징계절차로 제도화			
7		취침등 설치			
8		주말 공휴일 1시간 실외운동보장			
9		전화통화 확대 실시			

○ **안양소년원** : 5건(완료 2건, 검토 중 3건)

번호	시정.보완.개선 내용						
닌포	완료	긍정 검토 중	비고				
1	원생의 직원업무보조 행위금지	급여품의 수량확대 및 다양화					
2	축구동호회 운동장 사용금지	강의시간표 원생에 맞게 조정					
3		시험장소 등 적정 선정					

<붙임2〉

[과제 개요 (과제추천순위: 1)]

과제명	정신질환 수용자에 대한 실태조사 및 수용환경 및 치료방법의 개선방안 연구					
연구기간	계약체결 후 6개월 소요 예산액 30,000천원					
2008년 주요 업무계획과의 관련성	권리구제의 접근성	및 실호	호성 제고(위	원회 목표)		
연구배경 및 목적	 ● 배경: 2008년 정신장애에 대한 국가보고서를 위한 조사에서 구금시설이 제외됨. 따라서 구금시설 내의 정신질환수용자의 수용실태 및 치료에 대한 연구할 필요가 있음. ● 수용자의 사회복귀시 정신질환으로 인한 재범을 예방하고 안정적인 정착을 위한 실효적인 치료가 필요함을 강조, 제도적으로 지원될 수 있도록 함. 					
주요 연구내용	 ○ 구금시설 내 정신질환 수용자에 대한 치료환경 및 요법에 의한 실효적인 치료에 대한 실태조사 ○ 정신질환 수용자에 대한 법무부의 계획 및 관리방안 ○ 외국 사례 연구 ○ 실태조사를 통해 분석된 문제점 및 이에 대한 해결방안, 대안 제시 					
연구방법	○ 실태조사○ 구금시설 수용자 및 담당직원들에 대한 심층면접조사○ 연구결과에 따른 토론회 및 공청회 개최					
비 고 (계약방식 등)	○ 계약방식: 일반경쟁(협상에 의한 계약)					
선행조사 여부	없음	담당부	서(담당자)	침해구제2팀(000)		

Ⅰ. 일반현황

- 1. 담당업무(다수인 보호시설 인권침해 행위 관련 사항)
- 진정사항의 조사.조정.구제
- 진정사항의 조사.구제관련
 - 법령.제도.정책.관행의 개선사항 연구, 권고 및 의견 표명과 이 행실태의 점검
 - 국내외 협력 및 교육, 실태조사 및 직권조사
 - 긴급구제조치의 권고, 조정, 법률구조의 요청, 진정인과 증인의 보 호업무
 - 인권침해의 유형과 원인에 대한 연구 및 예방지침 마련

2. 일반현황

○ 인원 : 6명(파견 2명 포함)

구 분 정 원		현 원	정원외 파견	과부족	
침해구제3팀	5	4	2	-1	

○ 다수인보호시설 조사대상 현황 (신고시설)

합/	ᅨ	노인	장애인	아동	성매매	부랑인	정신보건
2,19	93	357	238	279	39	38	1,242

Ⅱ. 업무평가

1. 사건처리현황(2007.1.1~2007.12.31)

		인용사건				미인용사건					
접수	종결	소계	권고	고발	합의 종결	소계	각하	기각	기타	조사중	
797	348	35	22	12	1	313	161	131	21	349	

※ 접수: 2006년 이월 233건 포함

※ 2006년 현황 : 접수 395건(전년 이월 123건), 종결 243건

2. 주요 업무추진 실적 및 평가

1) 정신장애인 인권 보호를 위한 법제연구 결과에 대한 전문가 간담회 개최

○ 개요

- 일시 : 2007.7.20. 14:00~18:00

- 장소 : 배움터 1

- 참석: 안경환 위원장, 김칠준 사무총장, 신영전, 서경석, 홍진표, 홍 선미, 서동우, 이원회, 박헌수, 이병관, 박인태, 하정섭 등 100여 명

ㅇ 평가

- 정신보건법 개정과 정책변화의 주요 쟁점인 '보호의무자에 의한 강제입원', '지역사회치료명령제', '지역사회보호서비스체계'에 대한 주제를 전문가, 관련협회, 정부담당자 등이 함께 모여 토론함으로 써 공론화하는 계기 마련
- 각계각층의 전문가 및 정신장애인과 가족 등 많은 참석자로 인해 활발한 논의 이루어짐.
- 3가지 연구주제를 짧은 시간에 모두 논의하면서 각 주제에 대한 심 도 있는 논의가 이루어지지 못함.

2) 부랑인복지시설 방문조사

- 개요
 - 일시 및 장소: 2007. 9. 5 ~ 9. 19. 성경원, 인성원, 은평의 집
 - 조사내용 : 시설환경, 시설 운영 현황, 거주인들의 인권상황(시민. 정치적 권리:자유권, 경제.사회.문화적 권리:사회권, 치료받을 권리 및 건강권) 등
 - 방문조사단 : 정강자.정재근 위원, 외부전문가, 3팀원 등 15명
- 평가
 - 시설의 모니터링을 목적으로 부랑인시설 방문조사를 실시하여 부 랑인시설 내 인권실태 파악과 부랑인시설 정책 과제 제시
 - 향후 노숙인과 부랑인 정책에 대한 종합적인 정책방향을 제시 필요성 제기됨.

3) 정신보건법 개정 추진

- 정신장애인 전문위원회의 및 정신장애인 인권개선을 위한 간 담회 결과를 바탕으로 정신보건법 제24조(보호의무자에 의한 강제입원) 개정권고안 작성
- 2008년 초 정부에 권고안 발표 계획

4) 정신장애인 인권 국가보고서 작성 추진

- 심각한 정신질환자의 인권침해에 대한 실태 및 친인권적 대안
 을 제시하고 사회적 합의를 유도하기 위해 국가보고서 작성
 추진
- 현재 추진위원회와 실무지원팀이 구성.운영 중이며 2008년
 연구.용역, 행사 실시하고 2009년 상반기 보고서 발표준비 중

5) 정신장애인전문위원회 운영

○ 전문위원회의 4차례 개최, 전문위원이 발제.토론하는 정신장

애인 인권개선을 위한 간담회 실시, 정신보건법 제24조 개정 권고안 작성, 정신장애인 인권 국가보고서 제안, 진정사건 자 문 등을 실시

전문위원의 지식과 경험을 정신장애인 인권 국가보고서 작성
 에 적극 활용하고 심도 있는 전문위원회의 운영을 위한 방안을 마려 필요

6) 호주 정신보건 정책 연수

- 개요
 - 일시 및 장소 : 2007.9.30~10.6, 호주 멜번.시드니
 - 내용 : 호주의 정신보건시설(정신병원, 사회복귀시설, 시민단체 등) 견학 및 선진 정신보건시스템 실태 확인, 관계자 면담 등
- ㅇ 평가
 - 호주의 우수한 정신보건정책 견학을 통해 우리나라 현주소를 파악 하고 진정사항 구제 및 정책대안 모색에 활용
 - 짧은 기간과 적은 예산으로 보다 많이 호주의 정신보건체계에 대하여 이해하고자 무리하게 일정을 진행

7) 미국의 탈시설 운동 강연 및 토론회 개최

- 개요
 - 일시 및 장소 : 2007.12.4. 10:00~12:00, 배움터 2
 - 내용 : 캐시의 강연과 관계자 토론
- 평가
 - 미국의 지적장애인 대형시설의 폐쇄와 지역사회통합의 지원체제 수립을 위해 노력한 캐시픽커테릴을 초청하여 시설정책을 방향전환 을 모색하고자 함.
 - 기획시간이 부족하여 대내외적인 홍보가 미흡하였고 관계부처와의 유기적 협력이 부족하였음.

8) 인권교육.단체 협력 및 기타

- 교육 내용
 - 전남사회복지협의회 인권교육(6.12)
 - 서울시 아동복지센터 직원인권교육실시 (8.3)
 - 송광녹지원 생활인 및 직원대상 인권교육(9.6)
 - 다수인 보호시설 종사자 인권교육(전남, 10.30.)
 - 국립서울병원 간호과 소속직원 인권교육(12.6) 포함 23건
- 단체협력 및 기타 내용
 - 복지시설 및 정신보건시설 등 소외계층 인권관련 발제 및 토론 (4.26: 대구 우리복지시민연합)
 - 시립소년의 집 운영발전방안 포럼 토론(11.12.) 등
 - KBS, SBS 등 방송 언론을 통한 다수인 시설 인권 실태 및 문제점, 방안 보도
 - 다수인보호시설 사건 관련 언론 브리핑(4차례)
- ㅇ 평가
 - 전국의 다수인보호시설 종사자 및 학생에 대하여 인권교육을 실시 하여 인권침해를 예방.시정하도록 함.
 - 증가하는 인권교육 수요를 충족시킬 인력 및 교재개발이 미흡하였으나 '07년 공공교육팀의 정신보건시설 및 노인시설 종사자를 위한 교재 작성을 실시하여 올해 이를 적극 활용할 예정

Ⅲ. 외부환경 동향 분석

1.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시행

- 우리위원회의 조사범위가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장애인 1인 이상을 보호하고 있는 시설'까지 확대됨.
- 정신적 장애를 가진 사람에 대한 차별금지 조항을 규정하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인권교육과 홍보조치 강구를 의무화함 (동법 37조).

2. 정신보건법 개정안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계류 중

- 정신보건시설의 설치.운영자, 종사자 및 정신보건전문요원에 대하여 인권교육을 받도록 하여 인권교육 수요가 더욱증가할 예정
- 정신보건시설의 입원절차 및 처벌조항 등의 규정 변화

Ⅳ. 주요업무 업무

1. 중점사업

정신장애인 인권 국가보고서 작성

□ 배경 및 목적

- 정신보건시설 관련 진정사건 급증과 시설 내 심각한 인권침해 상황에 대한 정확한 실태 파악 및 친인권적인 정책대안 마련이 시급함.
- ※ 접수사건 : 2005년 176건에 비해 2007년 564건이 접수되어 3배 이상 증가함.
- O 기존의 격리와 입원위주의 정신보건서비스에서 벗어나 이용자.지역사회 치료와 보호 중심, 예방과 회복, 인권증진의 비전과 방향을 제시하는 로드 맵 제시
- O 정신장애인에 대한 편견과 인식 개선을 위한 여론 조성과 사회적 합의 유도

□ 사업 내용

- 정신장애인 인권 실태 파악과 대안제시 위한 연구 용역
 - 정신장애인 인권보호를 위한 원칙
 - 정신장애인의 인권실태조사(지역사회, 시설 등)
 - 외국 선진 정신보건정책 조사 연구
 - 한국사회에 적합한 대안과 유기적 연결체계 등에 대한 대안 제시
- O 정신장애인과 정신질환에 대한 편견불식을 위한 전국적 단위의 토론회, 책자 발간 사업 등 관련 행사를 실시

□ 기대 효과

- O 정신장애인에 대한 정부정책의 청사진(master plan)제시 및 정책 변화 유도
- O 정신장애인 인권에 대한 국민과 보건업무종사자, 정책담당자, 정치인 의 관심 촉구 및 여론 환기
- ⇒ 정신장애인 인권침해 예방과 구제, 차별해소

□ 추진 일정

- O 2007년 12월 : 추진위원회 위원 위촉 및 제1차 회의
- O 2008년 1월 : 사업계획안 보고, 제2차 회의
- O 2008년 2월 : 연구위원회 구성, 회의
- 2008년 3월 : 용역기관과 용역 내용 확정 및 실시, 제1차 토론회
- O 2008년 4월 : 방문조사 준비회의
- O 2008년 5월 : 제1차 정신보건시설 방문조사 실시
- 2008년 6월 : 제2차 토론회
- O 2008년 7월 : 방문조사 준비회의
- 2008년 8월 : 제2차 정신보건시설 방문조사 실시
- O 2008년 9월 : 추진 경과 중간보고, 제3차 토론회
- O 2008년 10월 : 방문조사 준비회의
- O 2008년 11월 : 제3차 정신보건시설 방문조사 실시
- O 2008년 12월 : 용역결과 보고, 제4차 토론회
- 2009년 5월 : 국가보고서 최종안 보고
- 2009년 6월 : 국가보고서 발표. 발표행사

□ 소요예산

O 연구용역: 3억1200만원(국가보고서 연구개발비)

- O 추진위원회 운영, 토론회 등 : 3800만원(국가보고서)
- 정신보건시설 방문조사: 1800만원(인권취약분야 인권개선 차별분야)
 - ※ 별도 계획서 13쪽 참고
- O 문헌번역사업: 3000만원(인권관련 문헌번역)
- ※ 담당자: 윤세진

2. 일반사업

가. 장애인 복지시설 방문조사

□ 배경 및 목적

- O 정신지체 및 중증장애인 시설 방문 조사를 통하여 입소자들의 인권상황 실태 및 인권침해 여부를 파악하여 생활인의 인권침해 예방 및 인권보호. 증진에 기여
- 장애인 시설의 인권침해의 심각성에 비해 진정사례가 많지 않은 실정과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시행과 장애인 인권보호라는 중점사업과제를 적극 추진하기 위하여 방문조사를 계획함.

□ 사업 내용

- O 방향
 - 위치, 시설평가와 규모, 시설설치일 등을 고려하여 3~4개 시설
 - 조사단은 외부전문가(박숙경, 유원섭, 고명균 등)와 내부직원으로 구성
 - 2005년 장애인생활시설 실태조사 체크리스트를 보완한 평가지표를 이용
- O 시설 방문과 조사

- 실지조사, 설문 및 면접조사, 문헌자료조사 병행
- O 보고서 작성 및 소위 상정. 결과 통지

□ 기대 효과

- 장애인 복지시설 정책의 명확한 방향제시
- 시설환경 및 운영관리 문제점 개선 방안 권고
- O 지속적 모니터링을 통한 시설의 인권침해 요소 예방과 즉시 구제

□ 추진 일정

- O 2007년 4월 : 준비회의 실시
- 2007년 4월 말 ~ 5월 : 방문조사 실시
- O 2007년 7월 : 보고서 작성
- O 2007년 8월 : 보고서 소위상정 및 결과 통지

□ 소요예산

- O 약 800만원(인권취약분야 인권개선 차별분야)
- ※ 담당자 : 윤세진

나. 노인 복지시설 방문조사

□ 배경 및 목적

O 급격한 고령화와 노인복지시설 확대로 인하여 거주노인의 인권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미미함.

○ 노인복지시설 내 인권침해의 우려에도 불구하고 구체적이고 개별적 진정 사례가 거의 없는 실정과 노인 인권보호가 위원회의 중점사업영역 중 하나 로 추진됨에 따라 방문조사를 기획함.

□ 사업 내용

- O 방향
 - 위치, 시설평가와 규모, 시설유형 등을 고려하여 대상시설 결정하되 2005년 방문조사한 시설에 대한 점검여부도 함께 고려함.
 - 2005년 노인복지시설 방문조사시 사용한 평가지표를 수정 보완하고 매 뉴얼화하여 활용
- O 시설 방문과 조사
 - 실지조사, 설문 및 면접조사, 문헌자료조사 병행
- O 보고서 작성 및 소위 상정, 결과 통지

□ 기대 효과

- 노인복지시설 정책의 명확한 방향제시
- 시설환경 및 운영관리 문제점 개선 방안 권고
- O 지속적 모니터링을 통한 시설의 인권침해 요소 예방과 즉시 구제

□ 추진 일정

O 2007년 8월 : 준비회의 실시

O 2007년 9월 : 방문조사 실시

O 2007년 10월 : 보고서 작성

O 2007년 11월 : 보고서 소위상정 및 결과 통지

□ 소요예산

O 650만원(인권취약분야 침해분야)

- 여비 : 190만원(3개 시설 서울, 경기, 기타 지역)

- 방문조사 준비 및 결과 회의 수당 : 120만원(10만원*4인*3회)

- 원고 및 자문 사례비 : 300만원 (20만원*3개소*5인)

- 업무추진비 : 40만

※ 담당자 : 정상훈

다. 정신보건시설 방문조사

□ 배경 및 목적

- O 정신보건시설 방문 조사를 통하여 인권상황 실태 및 인권침해 여부를 파악하여 생활인의 인권침해 예방 및 인권보호에 기여
- 동시에 정신장애인 인권 국가보고서 사업과 연계하여 정신장애인에 대한 국민적 관심 촉구와 지역 내 여론 환기를 적극 추진하기 위함.

□ 사업 내용

- O 방향
 - 지역사무소와 연계하여 부산, 광주, 대구지역을 중심으로 방문조사를 추진(토론회 실시지역을 고려하여 파급효과 증진시킴)
 - 국가보고서 추진위원회 위원, 상임위원, 지역 활동가 등과 대상시설을 방문
 - 지역 언론 적극 활용 및 홍보
- O 시설 방문과 조사
 - 3개 지역 6개소
 - 실지조사, 설문 및 면접조사, 문헌자료조사 병행
- O 보고서 작성 및 소위 상정, 결과 통지

- 기자 브리핑 실시

□ 기대 효과

- 장애인 복지시설 정책의 명확한 방향제시
- 시설환경 및 운영관리 문제점 개선 방안 권고
- 지속적 모니터링을 통한 시설의 인권침해 요소 예방과 즉시 구제

□ 추진 일정

- 2007년 3월 : 종합적인 방향설정 위한 준비회의 실시
- 2007년 4월 : 준비회의 실시
- O 2007년 5월 : 제1차 방문조사 실시
- O 2007년 7월 : 준비회의 실시
- 2007년 8월 : 제2차 방문조사 실시
- O 2007년 10월 : 준비회의 실시
- O 2007년 11월 : 제3차 방문조사 실시
- 2007년 11월~12월 : 보고서 작성 완료
- O 2007년 1월~2월 : 보고서 소위상정 및 결과 통지

□ 소요예산

- O 약 1800만원(인권취약분야 인권개선 차별분야)
- ※ 담당자 : 윤세진

라. 외국 정신보건시설 탐방 및 정책 연수

□ 배경 및 목적

- 우리나라 상황과 유사한 일본 정신보건 시스템 연수 및 실태 확인 및 정신장애인 국가보고서 정신보건 정책 수립 및 권고시 활용
- O 정신보건시설 조사관의 역량 강화

□ 사업 내용

- O 연수 내용
 - 우리나라 현실에 적합한 대안 마련을 위해서 일본의 정신보건시설 견학 및 정신보건담당자 면담을 통한 정신보건체계 파악
 - 일본의 정신장애인의 인권과 일반인의 인식 상황 및 일본 정책의 장단 점을 파악
- O 정신보건정책 담당자 및 정신보건시설 방문
 - 정신보건정책 담당자와의 면담을 통해 법제도, 정책 파악
 - 정신보건시설(정신의료기관, 사회복귀시설) 및 정신보건관련 시민단체 를 견학

□ 기대 효과

- O 일본 정신보건제도 파악하여 국가보고서 작성 사업에 활용
- O 진정사건처리 및 정책권고시 이용

□ 추진 일정

- 2007년 2월~5월 : 대상시설 및 면담자 결정
- O 2007년 7월 초(6~7일) : 연수 실시
- O 2007년 7월 : 보고서 작성

□ 소요예산

O 약 860만 원

※ 담당자 : 윤세진

마. 다각적 협력체계 구축을 통한 인권정책 네트워크 구축

□ 배경 및 목적

- O 다수인보호시설 관련 NGO, 언론, 전문가, 단체와의 긴밀한 협조와 공조를 통해 시설정책의 변화에 대한 사회적 합의 유도
- 시설 내 인권침해에 대한 사회적.일상적 감시와 정책권고의 효과성 제고

□ 사업 내용

- 정신보건시설 및 정신장애인 인권 관련 네트워크 구축
 - 정책관계자, 각종 협회, 정신과 및 사회복지전문가, 인권활동가, 해외전 문가 등과 간담회 및 토론회 실시
 - 시민단체, 언론 등과 연계하여 정신장애인 편견해소 위한 각종 사업추 진
- O 다수인보호시설 관련 대외협력 실시
 - 다수인보호시설 전문위원회 재구성 및 운영(2007년 말 임기 만료)

□ 기대 효과

- 시설 인권에 대한 사회적 합의 및 여론 관심 집중을 유도
- 정책권고의 질 향상과 효과적인 업무 수행 등

□ 추진 일정

- O 지속적 실시
- O 다수인보호시설 전문위원회 재구성 및 운영 : 하반기

□ 소요예산

- O 정신보건시설 및 정신장애인 인권 관련 네트워크 구축 : 국가보고서 사업 예산으로 추진
- O 다수인보호시설 전문위원회 운영 : 약 100만원(회의수당, 업무추진비 등)
- ※ 담당자 : 윤세진, 정상훈

∨. 침해구제3팀의 연간 추진 일정

- O 2008년 1월 : 국가보고서사업계획안 보고, 제2차 회의
- O 2008년 2월 : 연구위원회 구성, 회의
- O 2008년 3월 : 국가보고서용역기관과 용역 내용 확정 및 실시,

제1차 토론회

- O 2007년 4월 : 장애인시설 방문조사 준비회의 실시
- O 2007년 4월 말 ~ 5월 : 장애인시설 방문조사 실시
- 2008년 5월 : 제1차 정신보건시설 방문조사 실시
- O 2008년 6월 : 제2차 토론회
- O 2007년 7월 초(6~7일) : 연수 실시
- O 2007년 7월 : 연수결과 보고서 작성
- 2007년 7월 : 장애인시설 방문조사 보고서 작성
- O 2007년 8월 : 장애인시설 방문조사 보고서 소위상정, 결과 통지
- O 2008년 8월 : 제2차 정신보건시설 방문조사 실시
- 2007년 8월 : 노인시설 방문조사 준비회의 실시
- 2007년 9월 : 노인시설 방문조사 실시
- O 2008년 9월 : 추진 경과 중간보고, 제3차 토론회
- O 2007년 10월 : 노인시설 방문조사 보고서 작성
- 2007년 11월 : 노인시설 방문조사 보고서 소위상정 및 결과 통지
- O 2008년 11월 : 제3차 정신보건시설 방문조사 실시
- O 2008년 12월 : 용역결과 보고, 제4차 토론회

2008년도 연간업무계획

2008. 1.



차별시정본부

차 례

I. 일반현황 ····································
Ⅱ. 업무평가
1. 진정사건 처리 현황2
2. 주요업무 추진 실적4
3. 문제점 및 개선방향6
Ⅲ. 외부환경 및 동향분석 ······6
IV. 주요업무 ······ 9
1. 중점사업 연
2. 일반사업 1(
3. 특별사업 11
V. 주요과제별 추진업무 ·······11
VI. 각 팀별 업무보고 ·······13
1. 차별시정총괄팀 13
2. 성차별팀 2년
3. 장애차별팀47
4. 신분나이차별팀57
5. 이주인권팀8(

│. 일반 현황

1. 주요기능

- 차별시정관련 조사.구제 및 관련 법령.제도.정책.관행의 개선연구, 권 고.의견 표명 등
- 진정사항의 조사.구제관련 국내.외 협력 및 긴급구제조치의 권고 조정, 법률구조의 요청
- 차별시정관련 조사절차 및 기법연구, 관련 통계 유지.관리 등

2. 팀별 인원 및 조사대상

팀명	팀 장 (현원)	조 사 대 상
차별시정 총괄팀	황정모 (7)	- 기타 사건, 종교, 사상 또는 정치적의견 등 【 최낙영, 최승철, 박숙미, 김경희, 정윤주, 김미현 】
성 차 별 팀	이수연 (6)	- 성별, 혼인여부, 임신출산, 기족상황, 성적지향, 용모 등 신체조건 【 최형묵, 강인영, 최현, 송경숙, 서미라 】
장애 차별팀	서영호 (5)	- 장애,병력 【 김정학, 최 진, 김익현, 김윤택 】 '08년도 : 장애인권 1팀 개명, 장애인권2팀 신설예정
신분나이	김은미	- 나이, 사회적신분, 학력, 출신지역, 전과 등
차별팀	(6)	【 김향규, 이성택, 강을영, 김현정, 윤종훈 】
이주인권 팀	이석준 (5)	- 출신국가, 민족, 인종, 피부색 을 이유로 한 차별행위 및 외국인 인권침해 행위(차별행위 포함) 【 백미순, 문은현, 신병곤, 김수산 】

3. 예 산(차별시정본부 총괄) 500,827천원 (천원)

구 분	합 계	기관운영기본경비	주요사업비
총 계	500,827	102,868	381,159
특근매식비	16,800	16,800	-
일반수용비	110,915	55,049	55,866
업무추진비	22,116	17,556	4,560
여비	37,996	29,263	8,733
연구개발비	312,000	_	312,000
배상금	1,000	1,000	

Ⅱ. 업무평가

1. 진정사건 처리 현황

- 인권위 설립초부터 2007. 12월말까지 진정사건 총건수는 28,833건, 2007 년엔 6,253건으로 전년도에 비하여 2,050여건 넘게 증가(49.3%)하였으며, 해마다 증가세를 보이고 있음.
 - 이중 차별사건은 총 3,999건(비중 13.9%)으로 해마다 꾸준한 증가세를 보이고 있으며, '07년도에는 1,157건으로 전년대비 40.2%의 큰 폭 증가(비중 18.5%)를 보였는데, 이는 위원회의 차별시정의 지속적인 활동에 따라 국민들의 차별인식이 매우 높아진 것에 기인하며 향후에도 장애차별금지법 시행 등으로 차별진정 사건의 증가가 예상됨.

< 진정사건의 연도별 접수현황 >

('01.11~'07. 12. 31 기준, 단위 : 건수)

	계	′01	′02	'03	′04	′05	′06	′07.12
총계	28,833	803	2,790	3,815	5,368	5,617	4,187	6,253
차별사건	3,999	53	136	358	389	1,081	824	1,157
(비중)	(13.9)	(6.6)	(4.8)	(9.4)	(7.2)	(19.2)	(19.7)	(18.5)
침해사건	23,081	619	2,214	3,041	4,627	4,199	3,334	4,963
기타사건	1,753	131	440	416	352	337	29	48

- 차별시정본부에서는 '07년도에 1,249건 접수, 1,319건 처리로 전년대비 접수는 51.6%('06년:824건), 처리는 46.7%('06년:899건) 각각 증가하였음,
- '07년도 차별시정본부의 평균사건처리소요일수는 104일로 전년도의 159일에 비하여 55일 정도 크게 단축하였으며, 이중 차별시정총괄팀 및 성차별팀은 88일, 86일로 본부 평균처리일인 104일 보다 신속한 처리로 위원회 처리기 준일인 90일에 부합하고 있음.
- 차별시정본부의 인용건수는 해마다 꾸준한 증가세를 보이고 있으며, 특히 '06년도에는 148건으로 전년도(62건)에 비하여 138.7%의 높은 증가율을 보였으나, '07년도에는 158건으로 전년도의 높은 증가율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은 증가(6.8%)를 보였으며, 이는 아직도 우리사회에서 사회적 신분, 성희롱, 나이, 장애 등 차별사유 및 승진, 채용 등 고용영역에서의 차별관련 개선할 점이 많

다는 것을 의미함 .

- 차별진정사건의 인용률은 '06년도에 44.8%, '07년도에 45.3%로 매우 높은 편이나, 수용률은 '07년 12월말 기준 87.8%로 다소 낮은데, 이는 권고사안들이 상대적으로 장기검토가 필요한 다수의 이해관계에 영향을 미치는 승진, 채용 등 인사정책이나 제도 등에 관한 것이 대부분임.
- 차별시정본부의 '07년도 1인당 평균 사건수는 13건이고, 6개월이상 장기미 결사건은 45건이며, 1년 이상은 3건임.

〈차별행위 진정사건 처리 유형별 현황〉

(단위: 건(%))

		_		인	8			기 각	이 하	-	スル
구 분	접수	종 결	소계	권고	합 의 종 결	조정	기각	각하	이송	조사 중지	조사 중
2002년 이전	189	102	10	8	2	-	18	73	1	_	-
2003년	358	296	33	30	3	_	48	215	_	-	_
2004년	389	368	26	21	4	1	74	263	3	2	_
2005년	1,081	837	62	55	7	-	121	650	2	2	17
2006년	824	899	148	115	23	10	182	553	11	5	322
2007년	1,249	1,319	158	118	37	3	191	934	29	7	280
총계	4,090	3,821	437	347	76	14	634	2,688	46	16	619

- ※ 이표는 차별시정본부에서 처리한 건수임(침해 및 기타사건 포함)
- ※ 권고에는 징계권고 포함(재발방지 권고, 인권교육 권고, 제도·정책·관행 등의 개선 권고)

<**진정사건 인용 및 권고사건 수용 현황>** ('01.11~'07. 12. 31 기준, 단위 : 건수)

			이 형	행 현	황	
권 고	조치건수	수	용	J . C		수용률
_		전부 수용	일부 수용	불수용	검토중	(%)
계	397	206	32	33	126	87.8
진정사건	362	201	29	33	99	87.5
직권조사	27	3	2		22	100
정책권고	8	2	1		5	100.0

2. 주요업무 추진실적

주요 과저	'07년도 계획	추 진 실 적	비고
	○ 차별사건 결정례집 발간 (2005~2006)	○주요 결정사례 중 수록 사건 선정- 인용 77건, 기각 18건- 인쇄 및 배부(1,200부)	완료 (12월 배부)
	○차별판단지침 TF 운영	○차별판단 TF 회의 개최 (총 14회) - '06년도에 작성된 차별사유별 지침 초안에 대한 강평 및 수정.보완 - 관련보고서 상임위 및 전원위 보고	완료
	○성회롱 조사 매뉴얼 제작 발간	○성희롱시정권고 결정례집 발간 - 결정례집 발간 및 배부 : 6월	완료 (1,100부)
	○장애 및 병력차별 사례집 발간	○ 주요 결정시례 정리완료 (예산시정)	'08년 발간
	○ 사회적 신분 차별사유 각하 사건 분석 보고	○종결시건 중심 처리현황 검토 및 정책 과제 발굴 등 분석보고(12월)	완료
1.진정사건의 효율적 처리	의 ○ 본부 및 팀 단위 조사관 교육 실시	○ 본부 총 6회실시(각 팀별 별도실시) - 결정문 작성기법, 파워스피치(보고요령), 장차법 이해 등 - APF 지원조사관 역량강화 훈련실시(호주 인권위 개발 프로그램으로 위원회 조사관 50명대상, 2회 교육실시)	완료
	○ 이주인권조사기법 및 조사역량 강화	○외국인보호시설 입법례 번역 및 아시아 인권연구 모임 운영	
	○ 기획조사 실시	○ 8건 (7건 완료, 1건 추진 중)	
	○ 직권(방문)조사 실시 (총5건)	○ 직권(4건, 완료2건), 방문(1건, 완료)	
	○ 차별시정위원회 운영 등 (총21회)	○ 1,312건 처리(인용 158건, 기각 191건, 각하 927건, 이송 29건, 조시중지 7건	완료
	○ 차별전문위원회 운영 (총11회)	○차별전문위(2회), 성차별(3회), 장애차별 (3회), 외국인인권관련(4회)	완료
2. 권리구제 실효성 강 및 권고이	화 선정 및 추진	○권고사건 중 검토 중이거나 미화신 사건에 대한 이행현황 일체점검 및 정리(6월), 이후 계속 추진 - 위원장과 중앙인사위원장 오찬간담회(7월) - 청와대민원제도개선 정책관계자협의회 실사(11월)	
모니터링 추	○권리구제의 실효성 확보를 위한 다각적 연구 방안 모색	○대안적 권리구제사업 추진 - 국내외 유사기관의 ADR 적용 및 소송 지원제도 활성화 방안검토 보고서 작성	완료

주요 과제	당초 계획	추 진 실 적	비고				
	○여성비정규직 차별실태 조사 (기획조사)						
	○ 파산.면책자 인권실태조사	○개인회생.파산.면책자 차별시정과제 분석	완료				
3. 인권취약	○ 수사, 재판, 형집행과정에서의 장애인차별 실태조사(연구용역)	○연구용역 수행(한남대학교) 용역완료 (12월)	완료				
계층에 대한 실태, 기획조사	○시청각중복장애아동(초.중.고)에 대한 교육권 차별조사	○정책권고 결정(차별소위 11.27)	완료				
역량강화	○장애인 초등학생 순회교육에 대한 차별조사	○2008년도 정책권고 검토대상으로 결정 (차별소위, 12 14)	완료				
	○ 한센인 자녀(초등학생)에 대한 교육권차별 기획조사	○ 조사 중에 자진 시정됨- 중학교 배정차별 개선(경기도교육청)- 한센인 자녀담당 교사에 대한 가산점 부여제도 폐지 (교육인적자원부)	완료				
	○성차별/성희롱 업무 관련 단체, 성차별 전문가/학자 등 간담회	○여성단체와의 성희롱시정업무 및 협력 방안 논의 - 대전, 충청지역 여성단체와 간담회(3월) - 강원지역 여성단체와의 간담회 (5월) ○여성비정규직 관련단체, 노조간단회(12월)	완료				
	○이주인권 관련 단체, 정부 및 유관기관과의 간담회	○이주인권포럼 4회, 전문위원회 4회 - 국제기구간담회 2회(UNHCR ,IOM) - 건강보험법관련 정책토론회 1회 등	완료				
4. 인권단체/ 유관기관 협력	○ 현장 활동을 통한 장애차별상담 및 시정	○지역 장애인 단체와의 순회간담회 실시 - 13개지역(대구, 대전, 청주, 천안, 안동 등)	완료				
강화	○ 나이차별 관련 동향파악 및 정책협의	○노동부 고령화시대의 바람직한 연령치별 금지제도 공청회 참관 및 보고 (3월) ○중앙인사위의 인사정책연구 용역자료 검토(5월) ○공무원시험 나이제한 폐지를 위한 국가 공무원법 개정벌률안 입법동향 보고(9월)	완료				
	○ 유관정부기관의 장애정책 및 관련 단체의 현안시항 검토	○활동보조인 서비스제도 시행 관련 동향 검토 및 보고 (4월) - 대상제한 폐지, 활동보조인 서비스 지원시간 축소 등	완료				

3. 문제점 및 개선방향

- 신원조회와 전과차별에 대한 조사 등 기획조사 총 8건, 여수출입국관리사 무소 화재사건 등 직권 및 방문조사 총 5건을 실시하였음.
 - ⇒ 전년보다도 50%이상 증가된 진정사건을 처리하면서도 주어진 여건속에서 알차게 기획조사, 직권 및 방문조사를 실시하였다고 자평하며, 다만차별사유별, 영역별로 차별발생 빈도수나 개연성이 높은 정책이나 제도중에서 좀더 심화된 과제를 조기에 선정, 추진할 필요가 있음.
- 진정사건에 대한 권고이후 모니터링 및 수용을 위한 다각적인 노력을 기 울였으나 '07년 12월말 현재 수용률이 87.8%로 다소 저조한 편임
- ⇒ 차별사건의 권고사안 대부분이 정책, 제도와 관련된 장기적 검토사안으로 서, 특히 나이차별사건 관련 89건 권고에 23건 수용으로 수용률 저조의 큰 요인이며, 이와 관련한 중앙인사위원회의 공무원 임용령 개정(공무원 응 시연령 제한 관련 권고:17건, 수용:6건)이 나이사건 해결의 핵심적 열쇠로 판단되어짐(공공기관 및 공기업에서도 기준적 제도로 작용)

「권고등에관한사후관리지침」에 의한 모니터링외에 관계자 면담, 관련단체와의 간담회 및 토론회, 언론보도 등으로 수용분위기를 조성하고 또한 정책관계자협의회 및 청와대민원제도개선협의회 등을 통하여 적극적, 지속적으로 모니터링을 추진할 필요가 있음

- 성, 장애, 외국인 인권전문위원회 등 각 차별사유별 전문위원회를 총 11회 정도 개최하였고, 지역별 간담회 및 토론회 등을 개최하였는데
 - ⇒ '08년도에는 미등록 외국인에 대한 합동단속 강화 및 외국인 강제출국관 런 진정사건 증가추세, 여성비정규직 및 장애차별금지법 시행에 따른 장 애차별 진정 증가예상 등으로 관련 정부부처, 유관 단체등과의 상호이 해.협의 채널 구축 및 분야별 전문위원회 적극 활용 필요

Ⅲ. 외부환경 및 동향분석

- 1. 노동부의 성차별 관련 정책
- 성희롱 시정 업무
- 성희롱 관련 신고는 46개 지방노동관서에서 처리하고 있으며, 연 사건수는 100여건이고, 신고는 진정과 고소.고발로, 진정사건은 대부분

시정조치와 과태료 부과로 종결, 고소.고발은 형사처벌 됨.

○ 고용차별 개선 업무

- 남녀고용평등법, 모성보호 관련법 이행실태에 관한 조사, 성차별적 모집광고 모니터링, 민간단체 위탁 고용평등상담실 등을 운영하고, 남녀고용평등법을 일.가정 양립지원법으로 개정, 고용차별에 대한 시정명령제도를 추진 중임.

○ 적극적 고용개선 정책(Affirmative Action)

- 2005년부터 AA를 실시, 일정규모 이상의 근로자를 고용하는 사업주는 남녀근로자 현황자료를 노동부에 제출, 여성근로자 비율이 일정 기준에 미달하는 곳은 적극적 고용개선조치 시행계획을 수립·제출해야 함.

2. 여성가족부의 성희롱 관련업무

○ 공공기관의 성희롱 예방 현황 점검

- 여성발전기본법에 의거 공공기관은 성희롱 예방교육실시 및 결과를 여가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하고, 여가부는 성희롱 방지조치 결과를 언론에 공표할 수 있음.

○ 성희롱 예방교육 강사 육성 및 공급

- 여가부 산하 양성평등교육진흥원을 통하여 성희롱 예방교육 강사과정을 운영, 이수자에게는 기업체 등의 성희롱 예방교육 강사로 활동하게 하 는 등 강사풀을 체계적으로 운영하고 있음.

때▶ 여가부 성희롱 관련 업무의 인권위로의 통합 추진 필요

현재 시정업무는 인권위, 예방관련 업무는 여가부로 이원화되어 있어 업무 연계와 효율성이 떨어짐. 성희롱 시정업무의 노하우가 예방업무에 반영되어야 할 것이며, 이에 인권위는 성희롱 예방 포스터 제작. 배부 및 실업계고 여학생들을 대상으로 성희롱 예방교육을 실시하는 등 예방업무 외연을 확대하고 있으며, 향후 인권위로 일원화되도록 인권위 차원의 노력이 필요함.

3 장애차별금지법 시행관련

○ 장애계는 장애인차별금지법 시행(2008.4.11)에 따른 국가인권위의 업무수행 및 조직변화, 시행령 내용에 대해 지대한 관심을 갖고 있으며, '범장애인계 대선공약 실현 공동행동'이 작년 12월초 대통령 후보자들에게 장애인 연금제도 도입 등 27개 정책요구안에 대해 '장애인 정책에 대한 의견 질의서'를 보냈으며, 이명박 당선인도 답변서를 보냈음. 그러나 답변과 관련하여 아직까지 인수위원회나 정부가 확정하여 발표한 것은 없음.

4. 비정규직 및 나이차별관련 동향

○ 비정직 차별관련 동향

- '07. 7.1.부터 노동위원회가 비정규직차별 시정기구로 활동하였으며, 11. 28. 현재 전국 지방노동위원회에 접수된 비정규직 차별사건은 734건(진행중 623건, 결정 111건)이며 결정 사건 중 시정명령 53건, 기각 15건, 각하1건. 취하 42건으로 인용률이 약 50%에 이르고, 2007. 하반기부터 노동법학계의 비정규직 차별에 대한 논평과 해석이 제시되기 시작했고 민변 노동위원회도 2007. 9. 비정규직법 해설서를 낸 바 있음.
- ► 노동위원회가 적극적으로 판단하지 않을 사안(특히 비교대상 근로자의 범위 와 불리한 처우의 합리성 여부)에 대해서 지평을 여는 방식으로, 위원회 의 복합적 기능(법제개선 권고, 다양한 차별사유의 취급 등)을 활용하는 방향으로 과제를 설정해야 함.

○ 나이차별관련 동향

- '07. 10. 2. 노동부는「고령자고용촉진법」을「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 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연령차별금지법')로 개정하는 법률안을 국회에 제출, '07. 12. 26. 현재 법안자구심사 단계에 있으며 '08. 2. 임시국회 처리 예정으로, 통과시 시행시점은 2009년이 될 것이며 내용은 모집. 채용, 임금, 복리후생, 교육·훈련, 배치, 승진, 퇴직 등 고용의 전 단계에서의 연령차별을 금지하며 연령차별행위로 피해를 입은 자에 대한 구제방법으로 국가인권위원회에 대한 진정 및 이에 따른 권고, 권고 불이행에 대한 시정명령제 도입으로 되어있음
- 나이차별 비중이 달라지는 만큼 진정사건 처리 중심에서 벗어나 기획과 홍 보, 실태조사, 정책협의.대외협력 등을 강화해야 함.

특히 공무원 임용령의 응시연령제한 관련 중앙인사위원회와 적극적인 협 의채널을 가동, 시정노력을 하도록 촉구할 필요가 있음

5. 외국인 정책 동향

- 법무부가 외국인정책 총괄부처로 자리매김 (2007. 7 재한외국인처우기본법 시행)하면서 기존 출입국관리국에서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로 개편
- 결혼이민자 및 외국인노동자의 지속적 유입으로 2007년 외국인 체류인구가 100만명에 이르는 등 우리사회가 급속하게 다인종 다문화 사회로 이행함에 따라 중앙 및 지방정부의 이주민 사회 통합을 위한 한국어 및 다문화교육 관련 사업.예산이 증가추세에 있고
- 법무부가 인권국 신설 및 외국인정책을 총괄하는 부처로 조직개편을 완료하 였으나 여전히 미등록외국인의 기본적 인권보장 보다는 강제퇴거를 위한 단속과 보호에 치중하는 관계로 해당부처와 외국인정책위원회 등 관련정부 부처와의 고위급 협의채널 구축 및 제도화 필요

Ⅳ. 주요업무

1. 중점사업

- 수사재판.형집행 과정에서의 장애인차별 실태조사
 - 2007년도 연구용역사업인「수사.재판, 형집행과정에서의 장애인차별실태조사에 서 도출된 장애인 차별개선을 위한 정책적 대안을 정책권고로 승화
 - 장애인차별금지법 시행 원년을 맞아 장애인차별 개선을 위한 형사사법절 차에서의 법제화 촉구
- 청소년 새터민 차별실태조사
 - 2007. 1. 기준 국내 정착한 새터민수가 1만명을 넘었고, 20세 이하 청소 년 자녀수도 1,000명을 넘는 수준인데 이들에 대한 학교나 지역사회의 차 별적 문화가 지적되고 있음
 - 청소년 새터민이 체감하는 차별 및 이들에 대한 일반국민들의 차별적 의식을 함께 연구하고 토론회 등을 개최하여 사회적 관심과 여론 형성

- 외국인 권리구제 효과성 강화
 - 외국인 체류인구 100만명 시대를 맞이하여 미등록 노동자 단속과정 등에 서의 인권침해와 인종 등을 이유로 한 다양한 차별행위 증가
 - 외국인 관련 진정사건의 법주가 다원화되고 있으며 강제출국 등에 대 비한 권리구제의 실효성 확보 필요
- 이주인권 관련 입법 및 정책 모니터링 강화
 - 출입국정책 등 이주정책 관련 부처의 입법계획, 연간업무계획 등을 적 극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유엔인권조약감시기구 및 위원회 권고사항, 정 부가 마련한 인권정책기본계획에 대한 후속조치 모니터링 강화

2. 일반사업

- 차별영역에서의 기획조사 강화
- 장애차별 관련 편의제공의무 판단기준 마련
- 고용차별 예방 실무 책자 발간
- 여성비정규직 차별 개선 기획사업
- 동일가치 노동 동일임금 실현을 위한 기획사업
- 지자체 법규에서의 성차별적 사항 발굴 및 검토
- 성적소수자 인권보호를 위한 사업
- 외국의 장애차별 사건처리 사례집 발간(장애차별금지법의 중심)
- B형간염바이러스 보유자에 대한 고용차별 예방을 위한 책자 발간
- 항공운항학과 신입생 모집시 나이제한 직권조사
- 대기업 신입직원 채용시 나이제한 실태조사
- 공무원 신규임용시 신원조회(조사)과정의 전과차별 개선
- 이주인권강화를 위한 국내외 협력강화
- 이주민 인권보호를 위한 다문화 교육홍보 강화

3. 특별사업

- 이주인권 정책연구 인프라 구축
 - 인구인권관련 정책 및 집행 매뉴얼 발간, 법집행공무원, NGO활동가등

∨ . 주요과제별 추진업무

1. 진정사건의 효율적 처리

- 차별사건의 결정례집 발간 및 배부
- 장애차별 관련 '편의제공 의무 판단기준' 마련
- 고용차별 예방 실무책자 발간 및 배부
- 조사관 심화교육 및 역량강화
- 외국의 장애차별 사건처리 사례집 발간 및 배부
- 이주인권정책연구 인프라 구축
- 부당노동행위 관련 차별사건 처리 효율성 제고

2. 권리구제의 실효성 강화 및 관련업무 모니터링 추진

- 권리구제 다원화 및 현장화
- 성희롱 예방업무 확대 추가
- 지자체 법규에서 성차별적 사항 발굴 및 검토
- 권고 수용 및 이행 모니터링 추진
- 외국인 권리구제 효과성 강화
- 이주인권관련 입법 및 정책 모니터링 강화
- 비정규직 차별판단기준 모니터링 추진

3. 인권취약 계층에 대한 실태 및 기획조사 역량강화

- 차별영역에서의 기획조사 강화
- 여성 비정규직 차별개선 기획사업
- 동일가치 노동 동일임금 실현을 위한 기획사업
- 여행원 유니폼 성차별 관행 개선을 위한 기획사업
- 성적 소수자 인권보호를 위한 사업
- 수사재판과정에서의 장애인 차별실태조사
- 청소년 새터민 차별실태조사
- 항공운항과 신입생 모집시 나이제한 직권조사
- 대기업 신입직원 채용시 나이제한 실태조사
- 공무원 신규 임용시 신원조회 과정의 전과차별 개선

4 인권단체.유관기관과의 협력강화

- 차별관련 시정동향 홍보
- 여성단체 및 업무유관기관과의 네트워크 강화
- 나이차별 홍보 및 교육(연령차별 금지법관련)
- B형 간염 바이러스 보유자에 대한 고용차별 예방을 위한 책자 발간
- 이주민 인권보호를 위한 국.내외 협력강화
- 이주민 인권보호를 위한 다문화 교육 홍보강화



│. 일반현황

□ 주요 기능

- 차별시정관련 조사 및 구제 기본계획 수립, 총괄 및 조정업무
- 기타 차별사건과 본부내 다른 팀의 소관에 속하지 않는 진정사건조사.구제
- 차별시정관련 조사절차 및 기법 연구.개선
- 조사 및 구제에 관한 통계 유지 관리 등
- ※ '08년도 직제개정으로 차별시정 주요 진정사항에 대한 기획조사, 법령. 제도.정책.관행의 개선을 위한 권고 및 의견표명 업무 담당

□ 팀 구성 및 업무분장

	담 당 업 무
황정모 (팀장)	업 무 총 괄
	• 차별행위 진정사건 처리(기타 사유별)
최낙영	• 국회관련 업무, 본부업무 총괄 및 조정 등
	• 본부 예산 및 결산, 관서운영출납공무원 담당
引人引	• 차별판단지침 TFT 운영 및 차별판단 지침서 발간,
최승철 	• 차별 결정례집 발간 및 배부, 차별법리에 대한 상담 등
비스리	• 차별판단지침 작성(학력, 학벌) 및 조사관 실무교육
박숙미	• 권리구제 다양화 방안 등 조사절차 및 기법 연구.개선 등
기거치	• 차별행위 진정사건 처리(기타 사유별)
김경희 	• 진정사건 처리 등 법률 자문 및 결정문 작성 지원
コゥス	• 차별행위 진정사건 처리(기타 사유별)
정윤주 	• 차별본부 국제관련 업무 및 차별시정동향 홍보
	• 차별행위 진정사건 통계 유지 및 관리
김미현	• 차별시정위원회 상정안건 취합 정리 및 소위 운영
	• 예산집행, 본부 및 총괄팀 서무 총괄 등

□ 예 산(차별시정본부 총괄) 500,827천원 (천원)

구 분	합 계	기관운영기본경비	주요사업비
총 계	500,827	102,868	381,159
특근매식비	16,800	16,800	_
일반수용비	110,915	55,049	55,866
업무추진비	22,116	17,556	4,560
여비	37,996	29,263	8,733
연구개발비	312,000	_	312,000
배상금	1,000	1,000	

Ⅱ. 업무평가

1. 진정사건 처리 현황

- 인권위 설립초부터 2007. 12월말까지 진정사건 총건수는 28,833건, 2007 년엔 6,253건으로 전년도에 비하여 2,050여건 넘게 증가(49.3%)하였으며, 해마다 증가세를 보이고 있음.
 - 이중 차별사건은 총 3,999건(비중 13.9%)으로 해마다 꾸준한 증가세를 보이고 있으며, '07년도에는 1,157건으로 전년대비 40.2%의 큰폭 증가(비중 18.5%)를 보였는데, 이는 위원회의 차별시정의 지속적인 활동에 따라 국민들의 차별인식이 매우 높아진 것에 기인하며 향후에도 장애차별금지법 시행 등으로 차별진정 사건의 증가가 예상됨.

< 진정사건의 연도별 접수현황 >

('01.11~'07. 12. 31 기준, 단위 : 건수)

	계	′01	′02	′03	′04	′05	′06	′07.12
총계	28,833	803	2,790	3,815	5,368	5,617	4,187	6,253
차별사건	3,999	53	136	358	389	1,081	824	1,157
(비중)	(13.9)	(6.6)	(4.8)	(9.4)	(7.2)	(19.2)	(19.7)	(18.5)
침해사건	23,081	619	2,214	3,041	4,627	4,199	3,334	4,963
기타사건	1,753	131	440	416	352	337	29	48

- 차별시정본부에서는 '07년도에 1,249건 접수, 1,319건 처리로 전년대비 접수는 51.6%, 처리는 46.7% 각각 증가하였으며, 이중 차별시정총괄팀은 130건 접수, 133건 처리로 차별시정본부 사건처리 비중의 10% 정도를 차지하였는데, '06. 9. 1.부터 사건처리 한 관계로 전년도와의 단순 비교는 불가능함 ('06년도 접수: 824건, 처리: 899건)
- '07년도 차별시정본부의 평균사건처리소요일수는 104일로 전년도의 159일에 비하여 55일 정도 크게 단축하였으며, 이중 차별시정총괄팀은 88일로 본부 평균처리일인 104일 보다 신속히 처리하였고, 이는 90일 처리기준에도 부합하고 있음.
- 차별시정본부의 인용건수는 해마다 꾸준한 증가세를 보이고 있으며, 특

히 '06년도에는 전년대비 138.7%의 높은 증가율을 보였으나, '07년도에는 158건으로 전년도의 높은 증가율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은 증가(6.8%)를 보였고, 이중 차별시총괄팀은 5건으로 매우 저조한 편인데, 이는 조사대상 사건이 기타 사건인 관계로 인용률이 다소 부진한 것으로 보임.

○ 차별시정본부의 '07년도 1인당 평균사건수는 13건, 차별시정총괄팀은 10건으로 다소 적은 편이며, 6개월이상 장기미결사건은 차별시정본부 전체는 45건, 차별시정총괄팀은 7건임 (1년이상은 3건임)

〈차별행위 진정사건 처리 유형별 현황〉

(단위: 건(%))

				인	용			기 각	이 히	-	조사
구 분 	접수	종 결	소계	권고	합 의 종 결	조정	기각	각하	이송	조사 중지	중
2002년 이전	189	102	10	8	2	_	18	73	1	_	-
2003년	358	296	33	30	3	_	48	215	_	_	_
2004년	389	368	26	21	4	1	74	263	3	2	_
2005년	1,081	837	62	55	7	_	121	650	2	2	17
2006년	824	899	148	115	23	10	182	553	11	5	322
2007년	1,249	1,319	158	118	37	3	191	934	29	7	280
총계	4,090	3,821	437	347	76	14	634	2,688	46	16	619

[※] 이표는 차별시정본부에서 처리한 건수임(침해 및 기타사건 포함)

2. 주요업무 추진실적

[※] 권고에는 징계권고 포함(재발방지 권고, 인권교육 권고, 제도·정책·관행 등의 개선 권고)

[※] 종결건수 : 당해 연도 접수 중 종결사건 + 이월사건 중 종결건수

- 차별판단지침 TFT 운영(14회 운영)
 - '06년도에 작성된 차별사유별 지침 초안에 대한 강평 및 수정.보완을 통하여 차별판단 지침안 마련, 상임위 및 전원위 보고
- 차별사건 결정례집 발간 및 배부(1,200부 발간)
 - '05~'06년의 주요 결정사례 중 인용(77건) 및 기각(18건)사건을 선정, 결정 례집을 발간.배부(정부 각 부처 및 유관기관, 도서관 등)
- 권리구제의 실효성 확보를 위한 다각적 연구 방안 모색
 - 국내외 유사기관의 대안적 권리구제 사례 및 소송지원제도 활성화 방안에 대한 검토 보고서 작성 및 보고
- 차별시정 국내외 동향 홍보
 - 차별시정관련 국내.외 동향을 휴먼레터, 불루틴 및 영문홈페이지를 통하여 매월 홍보(휴먼레터 : 6회, 불루틴 11회, 홈페이지 게재 등)
- 권고결정 수용 및 이행 모니터링
 - 권고를 결정한 사건 중 검토중인 사건에 대한 이행현황 확인 및 정리(6월)
 - 차별사건 권고 및 수용분석 보고서 작성.보고(7월)
- 조사관 전문교육실시(본부: 총 6회, 총괄팀: 5회)
 - 본부내 조사관들의 업무전문성 향상을 위한 현장 실무교육 실시
 - ·조사보고서 및 결정문 작성기법, 파워스피치(보고요령) 등
 - APF지원 조사관 역량강화 훈련프로그램 실시
 - · 호주 인권기회평등위원회가 개발한 조사역량강화 프로그램으로 위원회 조 사관 50명 대상으로 11월에 2회에 걸쳐 교육 실시

3. 문제점 및 개선방향

- 차별판단지침 TFT 운영에 있어서 일부 외부 TF위원들의 사정으로 다소 일 정이 지연된 점이 있었으나 수정된 일정대로 연내 완료
 - 추진일정을 감안한 업무계획 수립 및 효율적인 업무추진 강화
- 차별사유별(기타사건) 진정사건의 심의사항을 연구.검토하기 위하여 차별 전문위원회를 구성.운영하고 있으나 운영실적 부진(2회 운영)
 - 기타사건 중 사회적인 이슈나 반향이 큰 사건을 적극 발굴, 차별전문위원 회 활용방안 강구

Ⅲ. 2008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1. 권리구제 다원화 및 현장화(일반사업)

□ 배경 및 목적

- 조정제도 활성화를 위해서 조사관들이 조정제도에 대한 기초개념과 절차 를 이해하도록 돕고,
- 조정과정에서 조정자로서의 역할과 기능을 숙련시킴으로써 구제조치의 실효 성을 높이고자 함

□ 사업 내용

- O 조정 전문 교육 프로그램의 개발 및 교육실시
- O 모의 조정 실시 및 결과 평가
- O 실제 진정 사건의 조정 및 결과 평가

□ 기대 효과

- O 인권 맥락적 조정 전문 교육의 프로그램화
- O 자체 인권조정 전문가 육성의 기초를 마련
- O 모의조정과 실사례 적용을 통해 제도상의 보완점 도출 가능

□ 추진 일정

- O '08. 2~ 3. : 조정전문 프로그램 계획 수립
- O '08. 4 ~ 10. : 교육실시 및 모의조정 실습
- O '07. 10 ~12. : 평가 및 결과보고

□ 소요예산

※ 담당자: 박숙미

2. 차별영역에서의 기획조사 강화(일반사업)

□ 배경 및 목적

○ 차별사유별 사회적 이슈가 큰 사건에 대한 직권, 실태조사 등 기획조사를 통한 법령.제도.정책.관행 등의 개선을 위한 능동적 접근 및 포괄 적 해결 필요

□ 사업 내용

- O 차별사유별 사회적 이슈나 반향이 큰 사회적 문제 및 진정사건에 대하여 직권, 실태조사 등 기획조사를 실시
- O 기 처리된 각하 사건 중에서도 정책적인 사안을 발굴하여 법령.제 도.정책 등의 개선을 위한 권고 및 의견 표명

□ 기대 효과

- O 기관별 및 차별사유별로 능동적이고 적극적인 접근 가능성 확대
- O 법령.제도.정책.관행의 개선 등 포괄적인 차별시정으로 권리구제 의 효율성 제고

□ 추진 일정

O 연중

□ 소요예산

 \circ

※ 담당자:

3. 차별 결정례집(제3집 2007) 발간(일반사업)

□ 배경 및 목적

- O 차별사건에 대한 결정례가 과거보다 빠른 속도로 축적됨에 따라 1년 단위 로 결정례집을 발간할 필요성 증가
- O 2007년 주요결정사례 중 인용, 기각 결정들을 선별.수록한 결정례집을 발간 및 배부 (2007년 결정건수 : 인용 158건, 기각 191건)

□ 사업 내용

- 차별시정위원회에서 2007년 1월초부터 12월말까지 내린 결정 중 중요하다 고 판단되는 인용 및 기각 결정들을 차별사유별로 선정하여 실음
 - 결정례 선정 → 사건개요 및 결정요지 작성 → 결정례집 편집 및 발 간.배부.

□ 기대 효과

O 발간주기를 1년으로 함으로써 최근의 차별 결정 동향에 대한 조사관 및 일 반 국민들의 이해와 차별에 대한 교육.홍보 효과 제고

□ 추진 일정

O 2008. 1.: 결정례 수집 및 선정

○ 2008. 2.~3. : 사건개요 및 결정요지 작성

○ 2008. 4.~5. : 결정례집 편집 및 발간.배부

□ 소요예산

O 총액: 7,070천원(인쇄비 및 발송비)

※ 담당자: 최승철

4. 편의제공의무 판단기준 마련(일반사업)

□ 배경 및 목적

- 2008년 4월 장애차별금비법 발효 시 '정당한 편의제공'과 관련한 진정사건 이 많을 것으로 예상되나, 그에 대한 구체적 판단기준이 아직 마련되지 않은 실정임
- O 이에 편의제공 관련 진정사건의 효과적이고 일관된 처리를 위하여 정당 한 편의제공의무에 대한 판단기준을 마련하는 것이 시급

□ 사업 내용

- O 외국의 편의제공의무 판단기준 판례 및 지침과, 국내 관련 연구(차별 판단지침 등) 조사
 - 외국 사례로서 미국, 캐나다, 호주 및 영국 사례를 조사
- O 상기 조사 결과를 참고하여 우리 법제 및 경제상황에 맞는 판단기준 제시
 - 외국 판례 및 차별 영역(고용영역 등)별로 판단기준 제시

□ 기대 효과

O 편의제공 관련 사건의 일관된 처리로 위원회 결정의 신뢰성 제고

□ 추진 일정

- 2008. 1.~ 4. : 외국 사례 조사 및 차별영역별 판단기준안 작성
- 2008. 5. : 전문가 자문(간담회 실시), 장애차별전문위 상정, 초안 수정
- O 2008. 6. : 상임위 및 전원위 상정. 지침 발간

□ 소요예산

- O 총액: 2,000천원(자문료 및 인쇄비 등),
- ※ 담당자 : 최승철

5. 고용차별 예방 실무 책자 발간(차별판단지침 후속 사업)

□ 배경 및 목적

○ 차별 금지 담론이 풍부하게 담긴 2007년 차별판단지침을 활용하여, 국가. 민간 부문의 인사 담당자들의 고용차별 예방 실무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책자를 발간 (인사 담당자들의 수준에 맞는 고용차별 예방 실무 책자가 아직 없음)

□ 사업 내용

- 차별판단지침 중 전원위에서 합의할 수 있는 내용을 바탕으로, 모집에서 퇴직 및 해고에 이르는 고용 과정에서 어떠한 고용결정이 차별에 해 당하는지 사례를 곁들여 간략히 설명하는 책자 발간
 - 내부 TF를 구성, 실무책자를 집필하고, 그 내용에 대해 전원위의 심의를 받음.

□ 기대 효과

O 차별에 해당하는 고용결정의 내용을 적시함으로써 국가.민간 부문에서 발생할 수 있는 고용차별을 사전 예방

□ 추진 일정

- 2008. 1.~7. : 초안 집필 및 상임위 보고
- 2008. 8.~9. : 전원위 보고 및 심의
- 2008. 11.~12. : 초안 수정 및 전원위 보고, 책자 발간

□ 소요예산

○ 총액 : 2,807천원(인쇄비)

※ 담당자: 최승철

6. 차별시정동향 홍보

□ 배경 및 목적

- O 2007년 PCRM 도입으로 차별화된 고객관리 및 DM 발송이 용이해짐
- 2008년 장애인차별금지법의 발효와 더불어 증가될 장애인 차별 관련 사건 과 이주노동자의 인권보호 등 차별 관련 주요 사건의 결정 및 동향을 홍 보하여 차별사건에 대한 인식제고

□ 사업 내용

- O 차별시정위원회에서 결정된 주요 인용.기각 사건에 대한 요지를 회의결 과보고를 기반으로 작성, PCRM을 통해 격월로 정책.기본고객들에게 발 송함
 - 차별사건 접수 현황, 사건처리 현황 등의 통계 포함
 - 주요 인용사건 한 건을 지정해서 외국의 유사 결정례를 조사하여 위원 회 결정 논거와 비교.분석하여 게재함

□ 기대 효과

○ 정책기본고객을 대상으로 차별관련 주요결정 및 차별시정동향을 정기적 으로 알림

□ 추진 일정

O 차별시정위원회 개최 시기를 기준으로 하여 격월로 발송

□ 소요예산

O 없음

※ 담당자: 정윤주

7. 조사관 역량 강화

□ 배경 및 목적

- 위원회의 결정문에 논리적인 모순이 있거나 난해한 내용이 순화되지 않고 들어갈 경우 진정인과 피진정인은 물론 국민들에 대한 설득력이 떨어지게 됨.
- O 이에 결정문을 좀 더 가다듬고 논리적 완결성을 확보하여 위원회의 위상 과 역량을 강화할 필요가 있음.

□ 사업 내용

- 본부의 법률 전문가를 활용하여 조사결과보고서 및 결정문의 법적, 논리적 문제점을 찾아 수정.보완하며 그 과정에서 드러나는 문제점들을 조사관에게 수시로 전달 및 교육함으로써 조사관들의 향후 역량 강화를 도모함.
- O 주요 차별사유별로 차별판단지침에 의거 국내.외 사례 및 적용법률 등 교육 실시

□ 기대 효과

- 외부적으로 위원회의 결정에 대해 진정인, 피진정인을 포함한 국민들이 제대로 이해하고 납득함으로써 신뢰성 확보.
- O 내부적으로 결정문 수정.보완하는 과정에서의 문제점들을 조사관들 에게 지시 및 교육함으로써 조사관들의 역량강화

□ 추진 일정

O 연중 수시 및 분기별(차별판단지침)

□ 소요예산

※ 담당자: 최승철, 김경희



│. 일반현황

- □ 팀 구성 현황(팀장 포함 6인)
- 이수연(팀장), 최형묵, 강인영, 서미라, 최현, 송경숙

□ 주요 업무 내용

- 성차별, 성희롱 사건 등에 대한 조사, 조정 및 구제
 - * 혼인여부, 임신.출산, 가족상황, 용모제한, 성적지향 차별 포함
- 성차별.성희롱 관련 제도, 정책 및 관행에 대한 연구
- 성차별.성희롱 등에 대한 실태조사 및 직권조사
- 여성인권 관련 국내외 협력 및 교육

Ⅱ. 업무평가

□ 2007년 주요 업무 추진 실적

1. 진정사건의 효율적 처리로 차별시정효과 제고

구분	2006년	2007년	증가율(%)
처리 건수	222건	286건	64건(28.8%)
(접수건수)	(190)	(총286, 성희롱162)	96건(50.5%)
인용 건수	41건	51건	10건(24.4%)
권고	24	24	-
합의종결	17	27	10건
(조정)	(7)	(1)	(6건 감소)
조사중해결	45건	58건	13건(28.8%)

2. 직권조사 등 기획조사 실시

- 1) 직권조사(1건 완료, 2건 진행 중)
- 공군, 해군의 부사관 모집시 차별 시정 완료
- 대한항공, 아시아나 항공사 승무원 모집시 성차별 사건 심의 중

- 2) 기획조사(3건 진행 중)
- 금융권 여행원에 대한 유니폼의 차별적 착용 현황
- 지자체 운영 영어마을 교재에서의 성차별 실태
- 지역 교육청 기능직 공무원 모집시 차별
- 3) '여성공무원 승진 차별 실태조사' 연구용역 결과발표회 실시 및 언론 보도로 승진차별 문제 홍보 및 민간부문의 관심 제고

3. 업무관련 정책 토론회, 간담회 및 전문위원회 활성화

- 토론회 1회, 간담회 1회, 전문위원회 3회 실시

4. 조사관들의 업무 전문성 강화

- 성희롱 예방교육 강사자격 취득(3인) 및 팀원 심화 교육 실시(5회)

5. 성희롱 예방업무 기획 실시

- '예비취업자를 위한 성희롱 교안' 프리젠테이션 자료 제작 및 실업계 교 졸업예정자 대상 성희롱 예방 교육 실시 : 총 7회
 - → 대구, 광주 등 지역사무소와 공동으로 협력하여 실시하는 등 지역으로의 확산

6. 성희롱 결정례집 발간 및 주요 결정례 홍보 강화

- 1,100부 발간하여 공공기관, 대기업, 단체, 노동조합, 학교 등에 배포, 주요 성희롱 결정례 언론 보도의뢰 6회

7. 여성관련 단체, 노동조합과의 협력 강화

- 업무 간담회 실시 ; 수도권 및 지역단체, 노동조합 등 5회

□ 평가

1. 긍정적 측면

1) 사건 처리건수가 전년도에 비하여 128% 증가하였으며 인용건수 는 124% 증가, 조사중 해결도 128% 증가하여 권고나 합의조정, 또는 조사 과정에서 상당수 해결 되는 등 차별 시정의 효과성 측면에서 긍정적 성과가 있었음.

- 2) 성희롱 구제대상을 적극적으로 해석하여 여성부와 달리 간접성희롱, 동성간성희롱 등 성희롱 당사자 범위를 확대하고 새로운 유형의 성 희롱 사례를 축적하는 등 긍정적 성과를 이루었음.
- 3) 진정사건 이외 공군.해군 부사관모집시 차별에 대한 직권조사를 실 시하여 조사 중 시정되었고 항공사 승무원 모집시 성차별 관행을 시 정하기 위하여 조사 심의 중임.
- 4) 사건처리 이외에도 정책토론회, 전문가 간담회, 전문위원회의 활성화로 업무의 전문화, 체계화를 꾀하였음.
- 5) 특성화고 성희롱예방교육 실시로 구제업무의 영역을 넘어서 예방업 무로의 외연 확대와 지역 확산에 기여하였음
- 6) 또한 성희롱 시정권고 결정례를 500부 제작하여 전국에 배포하고 언론에 홍보함으로써 홍보 및 예방효과를 높였으며 여성단체 뿐 아니라 노동조합 등 업무 유관단체 간담회를 연중 적극 실시하여 차별관련 당사자들과 건설적 협력관계를 구축하였음.

2. 개선할 점

- 타 업무에 비해 기획조사, 직권조사 추진이 미비하여 2007년도에 완료되지 못하고 2008년에 마무리 지어야 하는 것들이 많음. 2008년도에는 여성비정규직 등 현안 과제에 대한 의제 발굴 및 기획조사 추진에 좀더 집중해야 할 것임.

Ⅲ. 외부환경 동향분석

1. 노동부의 성차별 관련 정책

○ 성희롱 시정 업무

- 직장 성희롱 관련 신고는 46개 지방노동관서에서 처리하고 있는데 전국에 접수되는 성희롱 사건 수는 연 100여건임.
- 신고는 진정과 고소.고발의 두 형태로 이루어지는데 진정사건은 대부분 시정조치와 과태료 부과로 종결되고, 고소.고발은 형사처벌됨. 사건 처리기간은 25일이고 1회 연장할 수 있어 최대 50일이 소요되고 감독관 자신의 관할구역 내에서 발생하는 사건이므로 주로출석요구를 하여 조사함.
 - * 최근 인권위도 법개정 요구를 받고 있는 고객 등 제3자 성희롱과 관련하여 노동부는 남녀고용평등법을 개정하여 제3자 성희롱 관련 피해자에 대한 불이익 금지와 배치.전환 조처 등 사업주의 의무내용을 신설하였음.

○ 고용차별 개선 업무

- 남녀고용평등법, 모성보호 관련법 이행실태에 관한 조사, 성차별적 모집광고 모니터링, 사업장 근로자를 명예고용평등감독관으로 위촉하 는 제도, 민간단체 위탁 고용평등상담실 등을 운영하고 있음.
 - * 남녀고용평등법을 일.가정 양립지원법으로 개정하였으며 고용차별에 대한 시정명령제도를 추진 중임.

○ 적극적 고용개선 정책(Affirmative Action)

- 2005년부터 AA를 실시하고 있는데 일정규모 이상의 근로자를 고용하는 사업주는 남녀근로자 현황자료를 노동부에 제출해야 하고, 여성근로자 비율이 일정 기준에 미달하는 곳은 적극적 고용개선조치시행계획을 수립·제출해야 함.

2. 여성가족부의 성희롱 관련업무

○ 공공기관의 성희롱 예방 현황 점검

- 여성발전기본법에 의거 공공기관은 성희롱 예방 교육 실시 등 필요 한 조치를 하여야 하고, 결과를 여가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함. 여가 부는 성희롱 방지조치 결과를 언론에 공표할 수 있음.

○ 성희롱 예방교육 강사 육성 및 공급

- 여가부 산하 특수법인인 양성평등교육진흥원을 통하여 성희롱 예방 교육 강사과정을 운영, 과정 이수자에게는 성희롱 예방교육 수료증을 부여하고 이후 기업체 등의 성희롱 예방교육 강사로 활동하게 하는 등 강사풀을 체계적으로 운영하고 있음.

○ 성희롱 예방교육 자료 개발 및 지원

- 매년 성희롱 예방 교육교재(영상물, 책자)를 제작하여 관계 기관 등 에 배포하고 있음.

⇒ 여가부 성희롱 관련 업무의 인권위로의 통합 추진 필요

- 현재 시정업무는 인권위, 예방관련 업무는 여가부로 이원화되어 있어 업무 연계와 효율성이 떨어짐. 성희롱 구제 사례 및 판단기준, 결정례와 조사 경험 등이 예방업무에 반영되어야 업무가 효과적으로 추진될 수 있으며 공공기관의 성희롱 예방현황을 점검하는 과정에서도 시정업무에서 쌓여진 문제의식과 노하우가 반영되어야 할 것임.
- 인권위는 2006년도에 성희롱 예방 포스터 일만부를 제작하여 전국에 배 포한 바 있으며, 2007년도에는 실업계고 취업 예정 여학생들을 대상으로 지역사무소와 연계하여 성희롱 예방교육을 실시하여 피해자 구제업무의 틀을 넘어 예방업무로 외연을 확대하고 있음.
- 여가부 국정감사시 일부 국회의원들에 의해서도 현재의 이원화된 상황에 대한 문제 지적이 있었으며, 성희롱은 사후적 구제보다는 교육과 계몽 등으로 사전에 예방하는 것이 보다 근본적인 해결책이므로 여가부 예방업무가 인권 위로 일원화되도록 인권위 차원의 노력이 필요함.

Ⅳ. 2008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1. 여성 비정규직 차별 개선 기획사업

1)「텔레마케터 여성비정규직 차별 및 인권상황 실태조사」 추진

□ 배경 및 목적

- 서비스산업의 빠른 상승과 더불어 서비스업에 여성비정규직 비중이 상승하면서 차별이 양산되는 주요 직종으로 지적되고 있는데 특히 텔 레마케터를 포함한 콜센터 소속 여성비정규직의 인권상황은 매우 열 악한 것으로 알려져 있으나 구체적인 선행연구는 드문 상황임.
- O 2008년 연구용역 인권상황 실태조사사업의 일환으로 텔레마케터분 야에 종사하는 여성비정규직 차별 및 인권현황 실태조사를 실시함으로써 여성비정규직 문제에 대한 우리 사회의 인식을 제고시키고 조사결과에 따라 정책권고 또는 직권조사 등의 대응방안을 모색할 수 있을 것임.

□ 주요 조사 내용

- 콜센터 텔레마케터 여성비정규직 성별분리, 임금 등 근로조건 현황
- 콜센터 텔레마케터 여성비정규직의 간접고용화 현황
- O 콜센터 텔레마케터 여성비정규직의 임신 출산시 차별 및 성희롱 실태
- O 콜센터 텔레마케터 여성비정규직 노동권 보호 및 차별규제 방안에 대한 정책 대안 제시

□ 기대효과

- O 콜센터 텔레마케터 여성노동자 차별 및 노동권 침해 실태에 대한 여론 확기
- 콜센터 텔레마케터 여성비정규직 인권 증진
- O 구체적 차별 사실이 드러날 경우 직권조사 실시

□ 추진일정

- 2008. 1. ~ 2 : 연구용역 실태조사 주제 선정 심의

- 2008. 3. ~ 4 : 연구자 공모 및 계약

- 2008. 5. ~ 9 : 연구용역 진행 및 중간보고

- 2008. 10 ~ 11 : 연구용역 최종 보고

□ **소요예산** : 3,300만원(연구용역비 예산에서 충당)

※ 담당자 : 송경숙

2) 유통업 종사 여성비정규직 차별 사항 발굴 및 기획조사

□ 배경 및 목적

○ 2007년에 여성비정규직 부문에서 가장 큰 이슈가 되었던 업종이기도 한 유통업 여성비정규직 문제에 대하여 한국노동사회연구소에 실태조 사를 의뢰하여 수행된 결과보고서 등 현황 자료를 검토, 직권조사 사 안을 발굴하여 진행하고자 함.

□ 사업내용

- O '유통업 여성비정규직 차별 및 노동권 인권상황 실태조사' 보고서 검 토 및 분석
- O 유통업 종사 비정규직 차별 사례 및 과제 발굴
- O 개선이 필요한 사업장, 제도 등 대한 개선 권고

□ 기대효과

○ 유통업 종사 여성 비정규직 차별상황에 대한 실질적 개선 및 여론 환기

□ 추진일정

- 2008. 1. ~ 2 : 보고서 등 현황 자료 분석

- 2008. 3. ~ 4 : 사업장 발굴 및 기초 조사

- 2008. 5. ~ 8 : 직권조사 추진 및 시정 권고

□ 소요예산 : 없음

※ 담당자 : 송경숙

2. 동일가치 노동 동일 임금 실현을 위한 기획 사업

1) 동노 동임 관련 전문가 간담회 등을 통한 판단기준 정립 사업

□ 배경 및 목적

- O 한국의 성별임금격차는 선진국과 비교해 높은 수준인데 임금구조통 계조사에 의하면 2005년 현재 남성 임금을 100으로 했을 때 여성임금 은 66.2% 정도 밖에 되지 않는 현실임.
- O 이러한 임금격차는 근속기간, 교육연수, 생산성, 인적 및 고용특성에 따른 합리적 격차 부분도 있지만 여성에 대한 차별로 인해 발생한 임금격차도 상당함.
- 우리 위원회에도 남녀임금차별 진정이 수 차례 제기된 바 있으나 임금차별로 시정 권고한 것은 기륭전자 사건 1건에 불과하며 현재 조사중인 사건이 일부 있음. 이는 현장에서도 우리 위원회를 통하여 임금차별을 시정하고자 하는 노력의 일환이므로 위원회 차원에서도 이에 대한 연구를 통한 판단기준 및 논리 개발이 필요함.

□ 사업내용

- O 외국의 동노동임 판단기준과 판례 수집
- O 고용차별 관련 전문가 초빙 정책간담회 실시
- O 위원회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 판단기준 정립

□ 기대효과

- O 인권위 동일가치 노동 차별임금 사건 처리 과정의 효과성 제고
- 인권위의 남녀 임금 차별 사건 관련 쟁점에 대한 판단기준 및 논리 개발

- 2008. 1. ~ 4 : 자료 수집 및 분석, 전문가 면담
- 2008. 5. ~ 7 中 : 전문가 정책 협의회 실시
- 2008. 8. ~ 10 : 위원회 판단기준 정립
- □ 소요예산 : 자료비, 전문가 자문비, 간담회경비 등 300만원
- ※ 담당자: 이수연
- 2) 남녀 임금 차별 사례 발굴 모니터링
 - □ 배경 및 목적

○ 위원회 차원에서 판단기준을 마련하는 사업과 아울러 현장에서도 기 륭전자와 같은 전자회사에서 유사한 남녀임금차별 사례들이 많을 것 으로 판단되므로 위원회 결정 사례를 홍보하고 이를 활용하도록 하는 노력이 필요함.

□ 사업내용

- O 동일가치 노동 차별임금 사업장 사례 발굴
- O 노동조합 간부들과의 간담회 실시
- 문제 사업장에 대한 컨설팅

□ 기대효과

- 동노동임 관련 이슈에 대한 여론 환기
- O 기획 진정 사례 발굴 및 인권위로의 진정 유도

- 2008. 10. ~ 12 : 간담회 실시 및 모니터링
- □ 소요예산 : 간담회 비 50만원
- ※ 담당자 : 이수연

3. 여행원 유니폼 등 성차별 관행 개선을 위한 기획사업

□ 배경 및 목적

○ 금융권에 종사하는 여행원 등 여직원에게 남성 직원과 달리 획일적인 유니폼을 입게 하는 관행이 있는데 이는 전문적 직업인으로 보이기 보다는 남성 직원에 비해 단순, 반복적인 업무를 수행하는 보조 인력 으로 이미지가 고착화되는 경향으로 결과됨. 이에 주요 금융사를 중심 으로 이러한 관행에 대한 현황조사를 실시하여 이를 개선하고자 함.

□ 사업내용

- 국내 주요 금융사 및 외국계 은행의 유니폼 착용 실태 현황 조사
- O 차별적 내용 여부에 대한 검토 및 분석
- 개선이 필요한 관행에 대한 시정 권고 등

□ 기대효과

○ 일부 사업장에서 여직원들에게만 유니폼을 입게 하는 것은 직장 내여성의 낮은 지위, 핵심업무 보다는 보조적 업무 수행의 문제와도 연관되는 것으로 특정 성별과 하위직급에만 강제되고 있는 유니폼 착용관행을 개선하여 노동시장에서 여성의 지위를 개선하는데 일정부분 기여할 수 있을 것임.

- 2008. 1. ~ 2 : 자료 취합 및 기획, 모니터링
- 2008. 3. ~ 6 : 보고서 작성
- 2008. 7. ~ 8 : 인권위 입장 마련 및 시정 권고
- □ 소요예산 : 전문가 자문비 60만원
- ※ 담당자 : 최형묵

4. 지자체 법규에서의 성차별적 사항 발굴 및 검토

□ 배경 및 목적

O 2006년 여성가족부와 법제처 등이 성차별적 법령개선 사업을 추진하였지만, 그 대상이 법령에 한정되어 지자체 차원의 법규나 예규 등에서는 여전히 검토되어야 할 차별적 내용이 남아 있을 것으로 예상되므로 이를 발굴하여 시정을 추진하고자 함.

□ 사업내용

- O 성차별적 법규 개선 사항 모니터링
- O 개선이 필요한 법규 등에 대한 개선 권고 등

□ 기대효과

O 지자체 법규 등에 여전히 남아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성차별적 조 항을 시정하여 개선함으로써 차별 예방

□ 추진일정

- 2008. 1. ~ 3 : 자료 취합 및 기획, 모니터링

- 2008. 4. ~ 6 : 전문가 자문의견 취합 및 보고서 작성 - 2008. 7. ~ 8 : 권고안 마련하여 차별시정위 상정.심의

□ 소요예산 : 전문가 자문비 60만원

※ 담당자 : 최형묵

5. 성희롱 기획사업: 성희롱 시정업무 현황 평가 및 발전방향에 대한 토론회

□ 배경 및 목적

○ 성희롱 관련 법제도화가 마련된 지 10년, 여성부로부터 성희롱 시정업 무를 이관 받은 지 3년을 계기로 노동부, 인권위 등 성희롱 시정법제도 의 현황과 그간 우리사회에 미친 영향, 문제점 등을 분석, 평가해보고 향후 발전방향을 모색해 보고자 함.

□ 사업 내용

- 이관 이후 3년간의 성희롱 업무 정리, 통계 분석, 효과 분석 (성희롱 결정례 파일 취합하여 홈페이지 게재)
- O 현행 인권위법상 성희롱 관련 조항에 대한 비판적 분석 연구
- O 전문가, 단체 관계자 등 초청 평가 토론회 실시로 위원회 성과 평가 및 대안 마련
- O 업무 이관 3주년 성과 등에 대한 언론 홍보

□ 기대효과

- O 업무 이관 이후 인권위 성차별, 성희롱 시정의 효과 분석 및 그간의 성과를 홍보함으로써 인권위 위상 강화에 기여
- O 인권위법상 성희롱 관련 조항의 문제점에 대한 대안 마련

□ 추진일정

- 2008. 1. ~ 2 : 사업 구체 기획안 마련
- 2008. 3 : 기획안 결재, 장소 섭외
- 2008. 4. : 발제자 및 토론자 교섭, 원고 의뢰
- 2008. 6 : 자료집 등 제작, 토론회 실시
- □ **소요예산** : 자료인쇄비, 장소대여비, 전문가 자문비, 토론자 원고 및 참석수당 등 500만원

※ 담당자 : 강인영, 최현

6. 성희롱 예방 업무 확대 추진

1) 특성화고 성희롱 예방교육 확대 실시

□ 배경 및 목적

○ 인권위에 접수되는 직장내 성희롱 사건의 대다수는 영세한 소규모 사업장들에서 발생하고 있음. 2007년도에 이 분야로 주로 취업하는 실업계고 여학생들을 대상으로 지역사무소와 협력하여 성차별팀 조사관등이 성희롱 예방교육을 직접 실시하여 긍정적 평가를 받았는 바, 2008년도에는 이를 확대하여 실시하고자 함.

□ 사업내용

- O 예비 취업자 대상 성희롱 예방교육 교재 제작
- O 교육 수요가 있는 특성화고 발굴 및 교섭
- O 성희롱 예방교육 실시

□ 기대효과

- 소규모 사업장으로의 취업이 예상되는 실업계고 여학생들에 대한 성 희롱 대응 방법 등에 대한 교육으로 권리의식을 고취하고 성희롱을 사전에 예방함.
- O 지역사무소의 업무 영역 확대 및 지역 소재 학교와의 협력 관계 구축
- O 인권위 성희롱 업무 홍보 및 외연 확대

□ 추진일정

- 2008. 3. : 사업 구체 기획안 마련 및 기획안 결재
- 2008. 4. : 교육 컨텐츠 제작
- 2008. 5. : 대상 학교 섭외 및 교육 실시
- 2008. 6 : 교육 결과 보고
- □ 소요예산 : 교육 컨텐츠 제작비 500만원, 외부 강사비 100만원

※ 담당자 : 강인영, 최현

2) 공공기관 성희롱 고충상담원 대상 교육 추진

□ 배경 및 목적

O 현재 여성가족부 산하 양성평등교육진흥원에서 주관하여 공공기관에

종사하는 성희롱 고충 상담원들을 대상으로 성희롱 고충 처리에 관한 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나 인권위의 실제 조사경험에서 축적된 내용들이 반영되지 못하고 있음.

O 따라서 보다 실질적이고 효과적인 교육을 위하여 양성평등진흥원과 공조하여 인권위의 결정례, 조사방법에 대한 노하우와 기법 등이 포함 된 내용의 교육을 추진하도록 할 필요가 있음.

□ 사업내용

- 양성평등교육진흥원의 공공기관 고충상담원 교육 프로그램 분석
- 양성평등교육진흥원과 교육 프로그램 공동 개발
- 공동 교육 실시 및 평가, 결과 보고

□ 기대효과

- O 인권위 성희롱 시정 사례 홍보
- O 공공기관에서의 성희롱 예방 및 고충처리 효과성 제고
- O 인권위 성희롱 업무의 외연 확대

□ 추진일정(안)

- 2008. 7. : 양성평등진흥원과 사업 기획 논의
- 2008. 8. : 교육 프로그램 공동 개발
- 2008. 9. : 교육 공동 실시
- 2008. 10 : 교육 결과 보고
- ※ 담당자 : 이수연

7. 성적 소수자 인권보호를 위한 사업

1) 군대내 성적 소수자 인권 보호 지침 마련 및 확산

□ 배경 및 목적

- 2005~2006년 2년 동안 매년 군대내 동성애자의 차별 및 인권침해 사건이 제기되면서 국방부에서 관련 지침을 마련하였으나 이에 대한 군인권 전문가 및 인권단체의 비판은 계속되고 있고 우리 위원회에서도관련 지침의 개정을 권고하였으나 현재 국방부에서 검토 중이라며 미온적 태도를 보이고 있음.
- 그러나 군대내 동성애자의 차별 및 인권침해는 구조적 문제로 유사 피해 사례가 발생할 우려가 높고 피해자들뿐만 아니라 일선 지휘관들 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바, 조속히 관련 지침을 개정하고 교육 등을 통 해 보급·확산할 필요성이 있음.

□ 사업내용

- 기존 국방부에서 제정한 동성애자 관련 지침 개정을 위하여 국방부, 군 인권 전문가, 성적 소수자 단체, 인권활동가, 법률가 등으로 '(가칭) 지침개정팀'구성·운영
- O 지침 개정안을 마련하여 국방부에게 권고

□ 기대효과

- O 군대내 성적 소수자에 대한 차별 및 인권침해 예방
- 기존 군대내 동성애자 관련 지침 개정을 통한 군대내 성적 소수자 인권 향상

- 2008. 4: '(가칭) 지침 개정팀' 구성 및 운영
- 2008. 5. ~ 6 : 관련 간담회 및 토론회 개최
- 2008. 7. ~ 8 中 : 지침 개정안 마련
- □ 소요예산 : 간담회 비 100만원
- ※ 담당자 : 서미라

2) 성전환자 성별정정 과정에서의 인권 보호 사업

□ 배경 및 목적

- 2006. 9. 6. 대법원이「성전환자의 성별정정허가신청사건 등 사무처리지 침」을 제정하면서 성전환자의 성별정정 신청이 늘어나고 있는 반면 동 지침의 차별 및 인권침해성에 대한 비판이 커지고 있는 상황임.
- 2006년 동 지침에 대한 진정이 제기되었고 한편으로는 관련 특별법이 16대(김홍신 의원안, 2002. 11. 4.)와 17대 국회(노회찬 의원안, 2006. 10. 12. 발의)에 걸쳐 계속 발의가 되고 있는바, 우리 위원회에서 동사안에 대한 정책 권고 등을 한다면 성전환자의 인권향상에 큰 기억를 할 수 있을 것임.

□ 사업내용

- O 성전환자 문제 전문가, 당사자, 성전환자 단체, 법률가, 인권활동가 등을 초빙하여 정책적 내용의 가담회 및 토론회 개최
- O 대법원에 관련 지침을 개정하도록 권고
- O 국회에 관련 특별법 제정 권고

□ 기대효과

- O 성전환자에 대한 차별 및 인권침해 예방
- O 관련 지침 개정 및 특별법 마련을 통한 성전환자 인권 향상

□ 추진일정

- 2008. 4 ~ 6 : 관련 간담회 및 토론회 개최
- 2008. 7. ~ 8 中 : 지침 개정안 및 정책 권고
- □ 소요예산 : 토론회 경비 300만원

※ 담당자: 서미라

8. 여성단체 및 업무 유관단체와의 네트워크 강화

1) 업무 유관 여성단체 및 노조 실무자들과의 워크샵 실시

□ 배경 및 목적

- O 2006년 성차별팀이 신설된 이후 전국의 여성단체와 업무 관련 간담회를 지속적으로 실시하였으나 단시간의 1회성 간담회에 그쳐 긴밀한 업무 협력이나 현장의 성차별 과제 발굴 및 모니터링에 한계가 있었음.
- O 이에 2008년도에는 사업의 형식을 개선하여 여성단체 실무자, 노동조 합 여성리더 등을 대상으로 교육성 웍샵을 실시하고자 함.

□ 주요 교육 내용

- O 인권위 중요 결정 사례 및 의의 등에 대한 소개
- 외국 차별 시정 사례, 판례 등에 대한 교육
- 현장의 고용차별 과제 모니터링 방법 등에 대한 소개

□ 기대효과

- O 위원회 주요 결정사례의 홍보 및 현장 확산
- 성차별 관련 기획조사, 직권조사 등의 과제 발굴
- O 성차별 피해 당사자들의 대응능력 강화

□ 추진일정

- 2008. 1. ~ 2 : 사업 구체안 기획
- 2008. 3. : 대상자 섭외 및 강사 섭외. 교재 제작
- 2008. 4 : 웍샵 실시
- □ 소요예산 : 300만원(워크샵 비용)

※ 담당자 : 최현

2) 업무 유관 단체 및 기관과의 간담회 실시

□ 배경 및 목적

O 여성단체나, 상담소, 사무 관련직 노동조합 이외에도 여성부, 노동부, 복지부, 국방부 등과 업무와 관련하여 필요시 간담회 등을 개최하여 동향 파악 필요.

□ 주요 내용

- O 지역 여성단체 중 그동안 간담회 등으로 방문하거나 모임을 갖지 못했던 지역을 중심으로 간담회 개최
- O 사무 금융직, 공공부문, 서비스직 관련 노동조합 여성리더와의 간담회 개최
- O 업무 유관 기관과의 간담회 개최

□ 기대효과

- O 성차별 관련 주요 동향 파악 및 과제 발굴
- O 인권위 주요 고객단체, 기관 등과 협력 네트워크 구축

□ 추진일정

- 2008년 중 필요시 개최

□ 소요예산 :

※ 담당자 : 최현

9. 조사관 심화 . 보수 교육 실시

□ 배경 및 목적

- 2006, 2007년에 외부 전문가 등을 초빙하여 미국 성희롱 사건 판례 분석, 성희롱 사건의 조사기법 등에 대한 교육을 팀 자체적으로 실행하여 업무 능력 향상에 긍정적 효과가 있었다고 평가된 바, 이후에도 심화프로그램을 실시하고자 함.
- O 교육 이외에도 팀내에서 주요 사건 등에 대한 사례 토의 프로그램을 주최하여 개별 조사관들의 전문성 향상에 기여.

□ 사업 내용

- O 사건 사례 토론회
- 주요사건, 특이사건 등에 대하여 팀내 사건토론회 실시
- O 심화학습
- 성별분리직군제, 간접차별 사안 등 여성고용차별 관련 현장의 주요 과 제와 이슈들에 대한 교육 기획 추진
- O 성희롱 예방교육 강사 자격 추가 취득(양성평등교육진흥원)

□ 기대효과

- O 현장의 주요 과제에 대한 감수성 향상
- O 팀내 주요 사건들에 대한 효과적 처리 방향 모색
- O 조사관 전문성 함양

□ 추진일정

O 2008년 년 중

□ 소요예산 : 강사비 100만원

※ 담당자 : 서미라

10. 권고 수용 및 이행 모니터링 사업

□ 배경 및 목적

○ 권고 후 일정 기간 기한을 기다려도 시정이 되지 않거나, 해당 기관이 수용의 의지가 없는 사건들에 대하여 지속적으로 모니터링 하면서 필 요시 관계기관과의 간담회 추진 등의 사업을 추진할 필요성

□ 주요 내용

- O 팀 전체 권고 사건에 대한 분야별 목록화 작업
- 불수용 사건에 대한 정례(월 1회) 모니터링
- O 미수용 사건에 대한 언론보도 등 여론 작업
- 필요시 피진정기관 등 관계기관과의 간담회 추진

□ 기대 효과

- 권고 이후 점검이 제대로 되지 않고 있는데 점검 과정의 체계화
- 권고 미수용 사건에 대한 위원회 차원의 대응방안 모색
- O 권고 수용 비율 제고

※ 담당자 : 송경숙

2008 성차별팀 연간 일정

업 무 구 분	1	2	3	4	5	6	7	8	9	10	11	12	담당자
1.텔레마케터 여성비정규 직 연구용역 실태조사													송경숙
2.유통업여성비정규직 차													소거스
별 사례발굴 및 조사사업													송경숙
3. 동노동임 판단기준 정립													이수연
4. 임금차별 모니터링													이수연
5. 승무원 모집시 성차별 직권조사													최형묵
6.여행원 유니폼 차별 직 권조사													최형묵
7.지자체 성차별적 법령, 법규 발굴 및 검토													최형묵
8. 지역교육청 직원 모집 시 차별 직권조사													송경숙
9. 군대내 성적소수자 인 권보호 지침마련 사업													서미라
10. 성전환자 성별정정 관련 정책 마련 사업													서미라
11. 성희롱 시정현황 평 가및 발전방향 토론회													강인영
12.특성화고 성희롱 예방 교육 추진, 컨텐츠 제작													강인영
13. 공공기관 성희롱 고 충상담원 교육 공조사업													이수연
14. 여성단체 실무자 등 교육 웍샵 실시													최현
15. 여성단체, 관련기관간담회 등 협력업무													최현
16. 팀원 교육													서미라
17. 성차별 전문위 운영													서미라
18. 권고수용 현황 점검													송경숙
19. 성희롱 조사 매뉴얼													
20. 기타													



│. 일반현황

- 1. 정원 : 5명
 - 팀장. 5급 1명. 별정 5급 1명. 6급 1명. 7급 1명
- 2. 담당 업무

장애 및 병력을 이유로 한 차별행위와 관련된 다음 사항

- 진정사항의 조사.구제
- 진정사항의 조사.구제 관련 법령.제도.정책.관행의 개선사항 연구, 위원회의 권고 및 의견의 표명
- 진정사항의 조사.구제 관련 국내외 협력
- 진정사항의 조사.구제 관련 긴급구제조치의 권고, 조정, 법률구조의 요청, 정보제 공자에 대한 보상금 지급 및 진정인과 증인의 보호업무 등에 관한 사항

Ⅱ. 업무평가

- 1. 진정사건의 처리
- O 진정사건의 집중처리
 - 2007년도에는 장애인차별금지법 제정 등으로 인해 장애차별 진정사건이 급증하여 2006년도 접수 113건에 비해 2.1배 증가한 239건이 접수됨.
 - 이에 따라 2007년도에는 진정사건 처리에 집중하여 장애차별 진정을 2006년도 91 건 처리에 비해 2.6배 증가한 241건 처리
- O 권고 및 조사중 해결 사건의 증가
 - 2007년도에 권고한 장애차별은 22건으로 2006년도 9건에 비해 2.4배 증가
 - 2007년도에 조시중 해결된 장애차별은 97건으로 2006년도 41건에 비해 2.3배 증가
- O 평균 사건처리기간의 단축
 - 평균사건처리기간을 2006년도 181일에서 2007년도 95일로 86일 단축

<문제점>

- 진정사건 처리의 집중으로 인해 상대적으로 기획조사를 많이 하지 못함.

2. 기획조사

- O 2007년도에는 5건의 기획조사를 실시하여 모두 조사를 완료(정책권고 1건, 조사중 자진시정 1건)
 - 유치원, 초·중·고등학교 과정에 재학중인 시청각 중복장애아동에 대한 교육권 차별(완료, 정책권고)
 - 한센인 자녀의 중학교 원거리 배정 및 담당교사에 대한 가산점 부여(완료, 조시중 자진시정)
 - 국공립대학교의 시각장애인 대학생에 대한 텍스트 파일 교재 미지급(완료, 저 작권법 개정이 필요한 사항이어서 저작권법 개정 후 전국의 모든 대학을 조사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기로 함)
 - 순회교육에 있어 장애아동 차별(완료, 장애인특수교육법이 2008. 4. 시행예정이므로 동법이 시행된 후 순회교육 실태를 다시 조사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기로함)
 - 수사, 재판, 형집행 과정에서의 장애인 차별실태조사(완료, 2008년도에 후속조치를 취하기로 함)

<문제점>

- 예상치 못한 진정사건 급증으로 5건의 기획조사는 부담이 많았는 바, 이를 고려하여 2008년도에는 기획조사를 줄여야 할 것임.

3. 지방순회 간담회

- O 13개 지역을 순회하여 장애 관련 단체들과 간담회를 갖고 지역의 장애차별 등에 대한 의견 수렴(대구, 대전, 청주, 천안, 안동, 제주 등)
- 장애관련 단체들은 직접 지역을 찾아와 간담회를 개최하고 의견을 수렴하는 국 가인권위의 자세를 높이 평가하였음.

<문제점>

- 지역 장애관련 단체들은 지역정서 등을 이유로 제시한 의견을 진정으로 제출하는 것은 꺼려하였음.

4. 교육 및 홍보

- 장애인 생활시설 및 관련 단체 등을 대상으로 장애인차별금지법, 장애인 차별 사례 등에 대해 총 20회 교육 실시
- O KBS 제3라디오 정례 출연(매주 화요일) 및 TV출연(SBS, 복지TV) 등 총 25회 방송 에 출연하여 장애인차별금지법 및 장애차별 사례 등을 홍보

Ⅲ. 외부환경 동향 분석

- □ 장애계는 장애인차별금지법 시행(2008.4.11)에 따른 국가인권위의 업무수행 및 조직변화, 시행령 내용에 대해 지대한 관심을 갖고 있음.
- □ '범장애인계 대선공약 실현 공동행동'이 대통령 선거 직전인 지난해 12월초 대통령 후보자들에게 장애인 연금제도 도입 등 27개 정책요구 안에 대해 '장애인 정책에 대한 의견 질의서'를 보냈으며, 이명박 당선 인도 답변서를 보냈음. 그러나 답변과 관련하여 아직까지 인수위원회나 정부가 확정하여 발표한 것은 없음.

Ⅳ. 2008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가. 중점사업

수사.재판.형집행 과정에서의 장애인차별 실태조사 후속조치

□ 배경 및 목적

- 2007년도 연구용역 사업 『수사, 재판, 형집행 과정에서의 장애인차별 실 태조사』에서 도출된 장애인차별 개선을 위한 정책적 대안을 정책권고 로 승화
- O 장애인차별금지법 시행 원년을 맞아 장애인차별 개선을 위한 형사사법절 차에서의 법제화 촉구

□ 사업 내용

- 실태조사 결과 발표회 및 토론회
- O 경찰, 검찰, 교정, 법원 등 관계기관 정책간담회를 개최하여 장애인차 별 개선을 위한 제도 정비 촉구

□ 기대 효과

- O 형사사법절차에서의 장애인차별 개선
- O 형사사법 영역에서의 장애인차별 금지 법제화

- 2008. 2.초 : 실태조사 결과 발표회 및 토론회 개최
- O 2008. 3~4. : 관계기관(경찰, 검찰, 교정, 법원) 정책간담회 개최
- O 2008. 5~6. : 관계기관의 장애인차별 개선 추진사항 모니터링
- O 2008. 7. : 외부 전문가 간담회 개최 및
- 2008. 7~8. : 정책권고를 위한 자료보완 및 사례 보완조사
- 2008. 9 : 조사결과보고서 작성 및 정책권고(안) 위원회 상정

□ 소요예산

- O 400만원
 - 관계기관 간담회 4회×50만원=200만원
 - 외부전문가 간담회(1회) 100만원
 - 모니터링 및 사례 보완조사 기타 100만원

□ 참여부서

- O 장애차별팀, 침해구제1팀, 침해구제2팀, 홍보협력팀, 지역사무소
- ※ 담당자: 김정학

나. 일반사업

1. 신규 조사관 교육 실시

□ 배경 및 목적

O 장애인차별금지법 시행에 따라 증원되는 신규 조사관에 대해 장애인차별금지법, 조사방법 및 조사절차 등을 교육하여 조사능력 배양 및 업무 조기 적응

□ 사업 내용

- O 장애인차별금지법, 국가인권위원회법, 판단기준 등 : 외부 전문가 및 차별시정본부장이 교육
- O 조사방법 및 절차, 조사결과보고서 작성 등 : 내부 조사관(팀장 포함)이 교육
- O 교육종료 후 평가 및 워크숍 실시

□ 기대 효과

- O 신규 조사관의 조사능력 배양 및 조사업무 조기 적응
- O 진정사건의 조사 및 권리구제 신속, 진정인의 만족도 제고

□ 추진 일정

- 2008. 1.~2. : 세부 계획수립, 외부강사 섭외, 교안작성
- O 2008. 3. : 교육실시(3주 실시, 1주일에 3일, 1일 8시간, 총 72시간 교육), 평가 및 워크숍 실시(1일)

□ 소요예산

- O 610만원
- 강사 초청비 360만원(10만원/시간, 총 36시간)
- 워크샵 비용 150만원
- 교재발간 비용 100만원
- ※ 담당자 : 김정학

외국의 장애차별 사건처리 사례집 발간 (장애인차별금지법의 새로운 차별영역 중심으로)

□ 배경 및 목적

○ 장애인차별금지법에 새롭게 규정된 차별영역(사법.행정절차, 모.부성권 등)에 대해 외국의 사건처리 사례를 수집.정리하여 조사관의 사건처리 전 문성 및 효율성을 높이고 판단기준 등을 정립하기 위함.

□ 사업 내용

O 장애인차별금지법에 새롭게 규정된 차별영역에 대해 외국의 사건처리 사례를 수집.정리하여 책자로 발간

□ 기대 효과

- O 조사관의 사건처리 전문성 및 효율성 제고
- O 장애차별 판단기준 확보

□ 추진 일정

- 2008. 1.~2. : 세부계획수립
- 2008. 3.~5. : 사례 수집
- O 2008. 6.~7. : 수집 사례 정리
- O 2008. 8. : 책자 발간

□ 소요 예산

- O 250만원
- 인쇄비 120만원
- 번역료 130만원
- ※ 담당자 : 김윤택

3. B형간염바이러스보유자에 대한 고용차별 예방을 위한 홍보 책자 발간

□ 배경 및 목적

- 우리나라 20~39세의 경제활동인구 중 B형간염바이러스보유자는 약 43만 명으로 추정되고 있음. 국가인권위 출범 후 2007년도 말까지 6년간 접수된 고용에 있어 B형간염바이러스보유자에 대한 차별 진정은 71건*으로전체 병력차별 진정사건(117건)의 60.7%를 차지하고 있음.
 - * 71건 처리현황 : 인용 6건, 조사중 해결 15건, 기각 10건, 진정취하 등 40건
- 이와 같이 B형간염바이러스보유자에 대한 차별이 많은 것은 아직까지도 기업들의 인식 부족과 함께 관계기관의 홍보 미흡에 그 원인이 있음. 따라서 국가인권위가 차별사례 등을 통해 B형간염바이러스보유자에 대한 차별을 예방하기 위한 홍보를 적극적으로 할 필요가 있음.

□ 사업 내용

- 홍보책자(소책자) 발간 및 배포
 - 국가인권위의 실태조사, 정책권고, 진정사건 처리 사례 등 수록
 - 관계기관(보건복지부, 노동부, 국회 등)의 관련정책 수록
 - 기업 및 중소기업협동조합중앙회 등 관련단체, 노동부 지방사무소, 의료기관 등에 배포
 - 최종 수록내용은 전문가, 간사랑동우회(시민단체)의 검수를 거쳐 결정

□ 기대 효과

O B형간염바이러스보유자에 대한 차별 예방

- O 2007. 2. : 관계기관, 시민단체, 전문가 간담회(발간 및 배포 계획)
- O 2008. 3.~4. : 자료 취합 및 정리

O 2008. 5. : 수록내용 검수(1차 간담회)

O 2008. 6. : 수록내용 보완 및 검수(2차 간담회)

○ 2007. 7. : 가제본 발간 및 교정 교열

O 2008. 8. : 책자 발간 및 배포

□ 소요 예산

○ 450만원

- 인쇄비 300만원(500부)

- 발송비 50만원

- 간담회 및 기타 100만원

※ 담당자 : 김익현



│. 일반현황

1. 주요 기능 및 업무

- 가. 조사 대상 차별사유: 나이, 사회적 신분, 학력,학벌, 출신지역, 전과, 기타 나. 주요 기능
- 진정사건 조사.구제.조정, 직권조사 및 실태조사, 이행실태 점검
- 관련 법령.제도.정책.관행 개선사항 연구 및 권고.의견표명
- 관련 국내외 협력 및 교육
- 긴급구제조치 권고, 법률구조 요청, 보상금 지급 및 진정인 등 보호업무
- 소관 차별사유 진정의 유형과 원인에 대한 연구 및 예방지침 마련

2. 팀 구성 및 업무분장

담당(대행)	주요 업무								
	 マ공통 업무 > ○진정사건처리, 직권 조사, 기획조사 등 ○관련 대내외 협력 및 교육 ○관련 법령.제도.정책.관행 개선 사항 조사연구 								
김은미 (김향규)	○주요 업무.지시사항 처리 ○진정사건 배분 및 처리현황 관리 ○사건유형 및 관련 정책동향 분석								
강 을 영 (이성택)	○비정규직 차별 판단기준 모니터링 ○동노동임 이론 및 사례 분석								
김향규 (김은미)	○신원조회와 전과차별 기획업무 ○성과관리 업무 총괄								
김현정 (윤종 훈)	○학력 차별 관련 동향 분석 ○예산편성 및 지출, PPSS 관리								
윤종 훈 (김현정)	○진정사건 판단자료 수집.분석 ○문서접수 및 기록물 관리 ○물품 관리								
이성택 (강 을 영)	○기업 채용시 나이제한 실태조사 ○팀 업무지식관리(전문가정보, 연구자료 등)								

Ⅱ. 업무평가

1. 주요 성과

가. 진정사건 처리의 효율성 제고

○ 사건종결 건수가 2006년 308건에서 2007년 357건으로 조사관 1인당 평균 사건처리건수가 증가했음에도 사건처리기간은 단축시켰음.

	구분	구분		종결									
연도		접수	소계	권고	조정	합의 종결	기각	각하	이송	조사 중지			
2006	팀	244	308	48	1	0	68	186	3	2			
	본부	825	899	113	10	23	186	546	12	7			
2007	팀	331	357	35	1	4	67	235	13	1			
	본부	1,249	1,319	108	3	37	191	934	29	7			

- * 참고 : 기각 사건 가운데 결정문 작성 건수는 2006년 본부 72건 중 팀 43건,2007년 본부 74건 중 팀 37건임.
- 전년대비 합의종결(2006년 0건 → 2007년 4건).조사중해결(2006년 26건 → 2007년 44건) 건수 증가,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 2건 등 권리구제 효과성 제고를 위해 다양한 노력을 기울임.
- 위원회 최초로 비정규직에 대한 단체협약 및 각종 근로조건 적용상의 차별여부를 판단한 사건(06진차272, 엘지데이콤 계약직 차별), 사적 단체의회원자격에 대한 위원회 개입 범위를 정하는 계기가 된 사건(07진차855, 프로입문 골프대회 참가자 나이제한: 07진차408, 리 단위 새마을부녀회회원 나이제한) 등을 처리함.
- 사건처리 효율성 및 조사관 사건처리 역량 제고를 위해 「나이차별사건 실무 가이드」를 마련하였으며 이는 2006년 「신분차별팀 업무매뉴얼」에 이은 또 하나의 팀 업무표준화라는 의미가 있음.

나. 기획조사 기능의 강화

- 공무원 신규임용시 신원조회로 인한 전과차별의 경우 79개 기관을 대상 으로 사례를 수집. 분석하였으며 2007. 8. 30. 최종보고를 마침.
- 특수형태 근로종사자 보호방안 정책과제의 경우 위원특위 운영, 관련 토론회 및 공청회 개최, 유관 부처 및 국회 관계자 면담 및 입법동향 모니터링 등을 통해 첨예한 논쟁구도에 놓인 사안을 권고할 때 요구되는 다각적인 의견수렴 절차에 충실하였음.
- 유통업 여성비정규직 차별 및 노동권 실태조사의 경우 여성노동단체 실무자 간담회에서 공통적으로 확인된 핵심과제이나 실태조사 2차 과제로 7월에 야 선정되었음. 그럼에도 적기에 연구용역을 완료함.

다. 정책개발 및 현안 대응능력의 제고

- 차별사건 가운데 단일 사유로는 사건수가 가장 많은 사회적 신분 각하사 건을 분석하여 정책과제 검토사안 7건 발굴. 각하사건의 높은 비중을 고 려할 때 상당히 의미 있는 시도였으며 다른 차별사유에도 적용해볼 만한 함.
- 노동위원회가 2007. 7.부터 비정규직 차별문제를 다루는 상황에서 이루어 진 비정규직 차별 판단기준 모니터링은 시의 적절했을 뿐만 아니라 그 내용에서 위원회 차별시정업무에 미치는 영향과 대응, 판단기준 상의 쟁 점 등 핵심사항을 체계적으로 분석하였음.
- 금융면책자 차별시정과제 정책검토의 경우 이들을 둘러싼 빈곤문제에 주목 하여 정책과제를 검토, 2008년 주요업무 분야인 양극화 사회에서의 빈곤 계층 보호와 관련된 정책권고 과제를 제시하였음.
- 나이차별 동향분석과 관련하여 노동부의 연령차별금지 법제화 관련 공청 회 참관 보고, 공무원시험 응시연령 제한의 근거인 「국가공무원법」제 36조 개정 추진흐름 보고 등 적시에 관련 입법동향을 모니터링하여 보 고하였고 청와대 민원제도개선협의회 안건 제출 등 관계기관 협의를 추 진하였음.

라. 대외협력.교육홍보 및 역량 강화

○ 특수형태 근로 종사자 보호 정책과제와 관련하여 단체, 정부부처, 국회

등 관계자 협의에 충실하였고, 유통업 여성비정규직 차별 및 노동권 침해 실태조사 등 정책과제와 관련하여 여성노동단체 간담회, 발표회 등을 개최 하였으며, 2007년 제1차 차별전문위원회를 주관함.

○ 위원회 나이차별 결정례 평석을 시도한 외부 전문가를 초빙하여 결정례 판단논리의 의의와 한계를 되짚어보는 교육은 높은 실무연관성으로 인해 유익했고, 팀내 사건토론회의를 통해 사건의 핵심 쟁점 토론, 수집 증거 및 자료에 대한 분석, 판단논리 개발 등 조사역량 및 판단논리 강화를 도 모함.

마. 현안 및 자율과제 수행

- 위원회법 제28조(법원 및 헌법재판소에 대한 의견제출)의 사문화 우려가 존재하는 가운데 헌법재판소에 법원공무원 응시연령 제한 헌법소원에 관한 의견서를 제출함으로써 인권 관련 중요 재판사항에 대한 위원회의 적극적인 의견 표명의 한 계기가 됨.
- 2007. 7. 제12차 전원위에서 정인섭 위원이 제안한 '단체협약상의 노동 조합원 피부양 가족 우선채용' 사안을 검토.보고하는 과정에서 국가기관 현업, 지방자치단체, 공기업 및 사기업 등 13개 기관.기업의 단체협약을 수집.분석하고 노사자치의 영역에 대한 위원회 직권조사 여부를 둘러싼 쟁점을 제기하여 다양한 논의의 계기를 마련함.

2. 평가 및 과제

가. 사건 처리의 효율성과 효과성 제고

- 1) 2006년에 비해 '평균' 사건처리 기간이 단축되었으나 조사구제규칙에 정한 사건처리기한 3개월에는 여전히 미치지 못함.
 - 사건조사 초기 처리방향의 신속한 판단, 사건유형 분석을 기초로 한 처리절차의 표준화, 사건토론회의 및 결정례 분석 등을 통한 판단논리 공동 개발 등은 2008년에도 계속 강화되어야 함.
- 2) 합의종결, 조사중 해결, 조정 건수가 증가했으나 실질적인 권리구제 효과를 더욱 제고해야 함.

- ₩ 합의. 조정의 비중을 강화하려는 목적의식적인 접근 필요
- 3) 권고 이후 모니터링 및 권고 수용을 위한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이고자 했으나 미흡함이 있음.
 - 권고 이후 모니터링을 담당 조사관에 일임하기 보다는 팀 차원에서 전체적으로 관리하고 직접 방문, 관계자 면담, 간담회 등을 통해 대화와 설득의 기회를 마련하며, 장기 검토 사안에 대해서는 토론회, 언론보도, 정책관계자협의회 등을 통해 지속적인 관심의 유지와 협의가 필요함.

나. 기획조사의 강화

- 특수형태근로 종사자 보호정책, 유통업 여성비정규직 차별 및 노동권 침해 실태조사 등 연구용역을 포함하여 1년 이상 소요되는 과제가 주를 이루고 단기에 직접 수행하는 직권.기획조사는 다소 미흡했음.
 - 신원조회로 인한 전과차별 기획조사의 예에서 보듯이 연구용역을 거치지 않고 직접 수행할 수 있는 사안들에 대한 기초 실태조사, 비교적 간단한 사안에 대한 직권조사 등을 강화할 필요가 있음.

다. 대외협력 홍보 및 역량 강화

- 전문가 간담회와 자문의뢰, 국가공무원법 개정흐름에 즈음한 국회의원실 자료제공, 정책과제 발굴을 위한 여성노동단체간담회 등 추진했으나 유관부처와의 정책협의는 부족했고, 사건 결정례 보도자료 제공과 관련 인터뷰 외 홍보는 제한적이었음.
 - 행사로 기획하는 데는 한계가 있더라도 국회, 유관부처에 대한 직접 방문과 협의 횟수를 늘려 상호이해의 토대를 넓히고, 홍보에서는 보다 능동적인 방안을 강구해야 함.
- 팀내 사건토론회의, 나이차별 결정례에 관한 부서특화교육 등은 유익했 지만 충분했다고는 보기 어려움.
 - 연간계획 속에서 추진하고 사후 피드백을 강화할 필요가 있음.

Ⅲ. 외부환경 동향분석

1. 비정규직 차별 관련 동향

- 가. '07. 7. 1. 이후 노동위원회가 비정규직 차별시정기구로서 활동하기 시작했음.
- 나. 2007. 11. 28. 현재 전국 지방노동위원회에 접수된 비정규직 차별사건은 734건(진행중 623건, 결정 111건)이며 결정 사건 가운데 시정명령 53건, 기각 15건, 각하1건. 취하 42건으로 인용률이 약 50%에 이름. 2007. 12. 17. 이후 중앙노동위원회 결정이 내려지기 시작했으나 관련 통계나 결정 문은 공개되지 않고 있음.
- 다. 2007. 하반기부터 노동법학계의 비정규직 차별에 대한 논평과 해석이 제시되기 시작했고 민변 노동위원회도 2007. 9. 비정규직법 해설서를 낸 바 있음.
- 노동위원회가 선을 그을 수도 있는 사안(특히 비교대상 근로자의 범위와 불리한 처우의 합리성 여부)에 대해서 지평을 여는 방식으로, 위원회의 복합적 기능(법제개선 권고, 다양한 차별사유의 취급 등)을 활용하는 방향 으로 과제를 설정해야 함.

2. 나이 차별 관련 동향

- 가. 2007. 10. 2. 노동부는 「고령자고용촉진법」을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 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연령차별금지법')로 개정하는 법률 안을 국회에 제출했고 2007. 12. 26. 현재 법안자구심사 단계에 있으며 2008. 2. 임시국회 통과가 예정되어 있음.
- 나. 개정 법률안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므로 통과된다면 그 시점은 2009년이 될 것임.
 - ※ 모집.채용, 임금 또는 임금 외의 금품.복리후생, 교육.훈련, 배치. 전보.승진, 퇴직.해고 등 고용의 전 단계에서의 연령차별을 금지하며 고용상 연령차별행위로 피해를 입은 자에 대한 구제방법으로 국가인권 위원회에 대한 진정 및 이에 따른 권고, 권고 불이행에 대한 시정명령제 도입
- 다. 고령화 사회는 필연적으로 노동시장 진입과 퇴출의 연령대 조정을 요구하 게 됨. 2007. 7. 1. 기준, 총인구 중 65세 이상 인구가 차지하는 비율은

9.9%로 10년전(1997년) 6.4%에 비해서 3.5%p가 증가함. 이런 상황에서 연 령차별금지법이 입법되면 장애인 차별에 비해 범위와 무게는 다르지만 나 이 차별 또한 별도의 차별금지법령을 갖게 됨.

나이차별 비중이 달라지는 만큼 진정사건 처리 중심에서 벗어나 기획과 홍보, 실태조사, 정책협의.대외협력 등을 강화해야 함.

Ⅳ. 2008년 주요업무 추진계획

1. 청소년 새터민 차별 실태조사(아동인권 P/T, 중점사업 제안)

□ 배경 및 목적

- 2007. 1. 기준으로 국내에 들어온 새터민 수가 1만 명을 넘어섰고, 6 세 이상 20세 이하 청소년 자녀수는 2004년 이후 꾸준히 1,000명을 넘는 수 준임. 새터민의 사회적응 연구나 언론보도에서 청소년 새터민에 대한 따돌림 등 학교나 지역사회의 차별적 문화가 지적되고 있음.
- 그간 정부정책은 청소년 새터민을 '보호' 대상으로 간주하고 남한사 회 적응력 제고를 위해 시행되었으나 사회적 차별의 문제를 해소하려 는 노력은 미흡하였음.
- 우리 위원회의 2007년도 새터민 관련 실태조사는 성인들의 직업실태에 집중되어 새터민 사회화에 대한 포괄적 접근에는 한계가 있음. 이에 새터민 실태에 대한 계열적 연구로서 새터민 청소년 차별 실태조사가 필요함.

□ 사업 내용

- O 청소년 새터민이 체감하는 차별 및 이들에 대한 일반 국민들의 차별 적 의식을 함께 연구
- 청소년 새터민 및 일반 국민(생활 속에서 이들을 직접 대면하는 국민 에 한정)을 대상으로 설문조사, 심층·면접조사 병행
- 연구 진행과정에서 토론회 등을 개최하여 사회적 관심과 여론 형성

□ 기대 효과

O 청소년 새터민이 남한사회 이주와 정착과정에서 겪는 사회문화적 장 애를 해소할 수 있도록 정책권고 및 캠페인의 기초자료로 활용

- O 2008. 3. 연구용역 공모
- 2008. 4. 연구기관 선정
- O 2008. 9. 연구 중간발표
- 2008. 11. 최종보고서 제출 및 연구결과 발표회
- □ 소요예산 : 25,000천원
- ※ 담당자: 이 성 택

2. 진정사건 처리의 효율성 및 효과성 제고(일반)

□ 배경 및 목적

O '값싸고, 빠르면, 대안적인 인권보호 서비스' 구현을 위해 보다 효율적인 사건처리와 실질적인 권리구제 효과를 도모함.

□ 사업 내용

- 효율적인 사건처리를 위한 과제
 - 사건토론회의 정례화(월 1회 이상) 및 질적 수준 제고 : 모든 사건이 3 개월 안에 처리될 수 있는 것은 아니나 모든 사건이 3개월까지 걸리지도 않음
 - 주제별 사건 분석을 통한 사건유형 해설서 마련(3건 이상)
- 실질적인 권리구제 효과 제고를 위한 과제
 - 조사 전 조정.합의 가능성 검토 절차화
 - 권고 사후관리 체계의 정비
 - 권고 수용을 위한 간담회 및 정책협의 강화

□ 기대 효과

- O 평균 사건처리 일수 단축
- O 사건처리 업무절차의 표준화
- O 위원회 진정의 효능감 제고

□ 추진 일정

O 연중

□ 소요예산

※ 담당자 : 신분·나이차별팀 공동

3. 항공운항학과 신입생 모집시 나이제한 직권조사(일반)

□ 배경 및 목적

- O 항공기 조종사 양성을 목적으로 한 항공운항학과를 설치한 대학은 한국항공대학교와 한서대학교 두 곳임.
- 2007. 10. 9. 제17차 차별시정위원회에서 '한국항공대학교의 항공운항학과 신입생 모집시 나이제한 개선 권고'를 결정하였으며 2007. 11. 15. 한국항공대학교는 권고를 수용함.
- O 이에 여전히 나이 제한을 유지하고 있는 한서대학교에 대해 직권조 사를 실시하여 항공운항학과의 신입생 모집시 나이제한 관행을 개선 하고자 함.

□ 사업 내용(직권조사 내용)

- O 항공운항학과의 입학시험 자격요건
- O 항공운항학과 학생의 타과로의 전과, 타과 학생의 항공운항학과로의 전과 실태
- O 항공운항학과 졸업생의 취업 및 진로 실태

□ 기대 효과

O 항공운항학과를 두고 있는 국내 대학 두 곳 모두의 신입생 나이 제 한 관행 개선

□ 추진 일정

- O 2007. 12. 제21차 차별시정위원회 직권조사 결정 및 조사 개시
- O 2008. 1. 자료수집 및 실지조사
- 2008. 2. 직권조사 결과보고 차별시정위원회 상정

□ 소요예산

※ 담당자: 김 향 규

4. 대기업 신입직원 채용 시 나이제한 실태조사(일반)

□ 배경 및 목적

- O 연령차별금지법의 상반기 국회 통과가 예상됨에 따라 동법이 시행되는 2009년 이전 동법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한 기초 조사가 필요함.
- 동법이 시행되면 우리 위원회가 차별시정 조사에 대한 1차적인 책임 기관이 되므로, 사전에 연령차별 관련 기업의 채용 관행 실태를 파 악할 필요가 있음.
- 나이차별과 관련하여 2005년 공무원(24개 기관) 및 공기업(43개사) 채용시 나이.학력.정년제한.면접 질문사항 등에 관한 직권조사 외 실태조사가 전무하였다는 점에서도 관련 기획조사가 필요함.

□ 사업 내용

- O 전국경제인연합회 혹은 한국경영자총협회의 협조를 얻어 국내 기업 300여 개를 대상으로 아래 항목에 대한 설문조사를 실시함.
 - ① 지난 3년간 신입직원(경력직 제외) 모집·채용 시 나이 및 나이에 준하는 기준(졸업연도 등)을 응시자격에 포함시켰는지 여부 및 응시자격의 하나였다면 그 내용
 - ② 연령차별금지법 시행에 대비한 채용 관행 개선 계획
 - ③ 2010. 1. 1.부터는 모집·채용 이외의 고용 영역에 대한 연령차별도 금지되므로, 이에 대비한 관행 개선 계획

□ 기대 효과

- O 동법이 시행 예정임을 각 기업에 홍보할 수 있는 기회가 됨.
- O 각 기업에 동법에서 금지하고 있는 차별행위의 구체적 내용을 사전에 인지시킴으로써 차별 관행 개선 및 예방에 기여할 수 있음.
- O 나이차별 사건 조사를 위한 기초 자료로 활용

□ 추진 일정

- O 2008. 4. 관련 경제단체 협조 요청(서면, 방문 등)
- O 2008. 5. 조사공문 발송 및 자료 수집
- O 2008. 7. 조사 결과 분석 및 보고
- ※ 법안이 통과되지 않을 경우 우리 위원회의 나이차별 업무 중심으로 수정, 추진

□ 소요예산

- O 없음
- ※ 담당자: 이 성 택

5. 나이 차별 홍보 및 교육

□ 배경 및 목적

- 연령차별금지법이 시행되면 고용상 나이차별 행위에 대한 우리 위원회 진정이 증가하고 권고 불이행에 대한 노동부의 시정명령제도가 도입될 것임.
- O 이에 동법의 내용과 나이차별 금지에 관한 사회적 인식 확산을 위한 홍보활동이 필요함.

□ 사업 내용

- O 기업 인사 담당자 및 일반인 대상 리플렛 제작 및 배포
- O 채용박람회, 기업 인사관련 세미나, 기업 컨퍼런스 등 참여 및 홍보
 - 채용박람회 등 부스 설치를 통한 홍보 및 안내책자 배부
 - 기업인사 관련 세미나, 기업 컨퍼런스 참여 및 홍보

□ 기대 효과

- 우리 위원회 고용상의 나이 차별 피해 구제 절차 홍보
- O 기업의 모집.채용 등 고용상의 나이 차별 예방

□ 추진 일정

- 2008. 7.~8. 사업계획안 보고 및 고용상의 나이차별 리플렛 제작
- 2008. 9. ~11. 리플렛 제작 및 배포
- ※ 채용박람회, 기업 인사관련 세미나 등 참여는 관련 행사 개최시기에 준함.

□ 소요예산

- 20,000천원 (1011-250-210-01 홍보협력팀 일반수용비)
- ※ 담당자: 신분.나이차별팀 김현정, 윤종훈
- ※ 연령차별금지법이 통과되지 않을 경우 이후 전망을 보아 보류 또는 철회함.

6. 나이 차별 관련 조사 역량 향상

□ 배경 및 목적

O 연령차별금지법이 연내 처리되면 동법에 따른 연령차별 사건의 증가가

예상됨.

○ 동 법률안의 내용 이해, 동 법률안의 의의와 한계, 동법률안의 내용과 위원회의 나이차별 결정례의 비교 분석 등을 통해 나이차별 사건 처 리역량 강화를 도모하고자 함.

□ 사업 내용

- O 부서특화 교육 실시(총 3회 실시)
 - 연령차별금지법 이해와 위원회의 과제, 나이차별 판단지침 이해(고 용 범주별 나이 차별의 양상 및 입증방법, 차별판단의 논리), 위원회 의 나이차별 결정례와 연령차별금지법(조사대상, 해석의 범위와 기 속여부, 나이차별 조사와 판단의 기준)
- 연령차별금지법과 위원회 나이차별 결정례 비교분석 보고
 - 교육내용 및 논의결과, 결정례 분석결과 등 수록

□ 기대 효과

O 나이 차별에 관한 조사 역량 강화

□ 추진 일정

- O 2008. 4. 교육계획 수립 및 강사섭외
- O 2008. 5.~7. 교육 실시(월 1회, 총 3회)
- O 2008. 10. 위원회 나이차별 결정례와 연령차별금지법 비교분석 보고
- □ 소요예산 : 총 1,050천원(교육비 등)
- ※ 담당자: 신분.나이차별팀 윤종훈
- ※ 연령치별금지법이 통과되지 않을 경우 위원회 나이치별 판단논리결정례 분석 중심으로 진행

7. 공무원 신규임용시 신원조회(조사) 과정의 전과차별 개선

□ 배경 및 목적

O 공무원(국가직 및 지방직) 임용과정에서 「국가공무원법」 또는 「지

방공무원법」의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거나 법률의 근거가 명확하지 않음에도 전과를 이유로 탈락시키는 사례가 있어 임용권자가 공무원 신규임용시 전과를 이유로 탈락시키는 경우 그 절차를 명확히하거나 법률에 근거하도록 개선할 필요가 있음.

○ 2005. 2. 24.(제3차 전원위원회) "신원조사 제도 개선 권고" 결정이 있었고, 2007년도에 "공무원 신규임용시 신원조회로 인한 차별" 기획조사를 실시한 바 있어 그 후속조치의 일환으로 추진함.

□ 사업 내용

- O 공무원 신규임용시 실시되는 신원조회, 신원조사의 구체적인 범위, 절차 및 관련 법령 검토
- O 신원조회와 신원조사가 실무 관행상 혼용 또는 중복 여부 검토
- O 신원조회, 신원조사 과정의 전과 차별 규제 방안 마련
 - 정책관계자협의회 개최를 통한 제도 개선 또는 정책권고
 - ※ 유관기관: 행정자치부, 중앙인사위원회, 교육인적자원부 등

□ 기대 효과

○ 공무원 신규임용시 전과를 이유로 한 차별 개선 및 근거 법령의 구체화

□ 추진 일정

- O 2008. 3.~4. 기초조사(관련 법령 연구 및 수집 자료 분석)
- O 2008. 6./9. 정책관계자 협의회 개최(2회) 및 필요시 간담회 개최
- 2008. 10. 조사결과보고서 작성, (정책권고의 경우) 상임위 상정
- □ 소요 예산 : 총 2,500천원(협의회 및 간담회 비용)
- ※ 담당자 : 신분.나이차별팀 김향규

8. 비정규직 차별판단기준 모니터링

□ 배경 및 목적

O 노동위원회 차별시정위원회가 비정규직 차별사건에 대한 심판.조정 등

구제기능을 수행함에 따라 차별시정기구인 우리 위원회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모니터링이 요구됨.

○ 그 중에서도 특히 노동위원회 결정례 분석, 비정규직에 대한 동일가 치노동 동일임금 적용, 외주화된 비정규직 차별사건에 대한 판단 등 쟁점 검토가 필수적임.

□ 사업 내용

- O 노동위원회 결정례 분석
 - 중앙노동위원회 2007. 11. 28. 현재 통계상으로 비정규직 차별사건 중 53건에 대한 시정명령이 이루어졌으며, 2008년에도 시정명령 사건례 가 나올 것이므로 그 결정례를 분석하여 차별판단기준을 분석
- O 비정규직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 원칙 적용에 대한 판단 정립
 - 우리 위원회에 제기되어 있는 '엘지데이콤 비정규직 차별사건(07진 차210)을 중심으로 비정규직에 대한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 적용 여부에 대한 전문가간담회 등을 개최하고 그 결과를 도출
- O 문헌 조사
 - 노동법학계 등을 중심으로 비정규직 차별판단기준에 대한 논쟁점을 모니터링 하여 이를 정리

□ 기대 효과

- O 우리 위원회 비정규직 차별사건에 적용할 구체적인 기준 확보
- 차별시정기구로서 영향력 향상 방안 모색

□ 추진 일정

- 2008. 3.~4. 비정규직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 전문가간담회
- O 2008. 6. 노동위원회 결정례 분석
- 2008. 10. 연구동향 분석 및 결과보고

□ 소요예산

O 약 200만원

※ 담당자 : 신분.나이차별팀 강을영

9. 부당노동행위 관련 차별사건 처리 효율성 제고

□ 배경 및 목적

O 우리 위원회에 접수되는 부당노동행위 관련 차별사건 수가 증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효율적 처리 및 실효성 있는 구제는 미흡함.

○ 동 사건들은 기본적으로 각급 노동위원회의 소관 사안이나 우리 위원회의 조사대상과 중복되는 부분이 있어 이를 구체적으로 특정함으로 써 위원회가 집중 해결해야 할 분야를 명확히 할 필요성이 있음.

□ 사업 내용

- O 사업기획 보고
 - 우리 위원회 부당노동행위 관련 차별사건 처리 현황. 성과 및 문제점
- O 부당노동행위 실무 전문가 간담회
 - 중앙노동위원회 실무자 및 위원 각 1회
 - 부당노동행위 관련 진정 경험이 풍부한 노무사 2회
- O 전문가 초청 토론회
 - 노동법·노동인권 학자·법률가 중심으로 노동위원회와 국가인권위 원회 업무를 법리적 차원에서 비교·검토하는 토론의 장 마련
 - 우리 위원회가 부당노동행위 관련 차별사건을 처리함에 있어서 필요 한 차별판단 논리의 기초 검토
- 최종 보고
 - 노동위원회와 국가인권위원회 업무 비교 검토
 - 우리 위원회가 주력해야 할 분야에 대한 제안

□ 기대 효과

- O 직접적으로는, 우리 위원회의 부당노동행위 관련 차별사건 처리 능력 및 구제의 효율성을 제고함.
- O 간접적으로는, 노동법 이해의 심화를 통해 노동관련 사건을 처리하는 조사관의 전문성을 강화시킴.

□ 추진 일정

- 2008. 2. 사업기획 보고
- O 2008. 5.~6. 자료 수집 및 실무자 간담회
- O 2008. 9.~10 전문가 토론회 및 최종 결과보고
- □ 소요예산 : 10,000천 원(간담회 및 토론회 등)

※ 담당자: 신분·나이차별팀 이 성 택

∨. 연간 추진일정

어디지테	괴하고
연구시애	계외끈

업무진행 계획표													
	월별진행 사업내용	1	2	3	4	5	6	7	8	9	10	11	12
1	청소년새터민		연구용역 공모 및							중간		최종	
	차별실태(PT제안)		기관 선정							발표		발표	
2	사건처리 효율성	연 중 추 진											
	및 효과성 제고	한 중 구 신											
3	항공운항학과	샤요집	결내고										
	나이제한 직권조사	살좌	쇄생										
4	대기업 직원채용			경	세단체	협의		결과					
	나이제한 실태조사			조사	및 자	료수집		보고					
5	나이차별					계획 업체 제작 및 바					$\overline{\Omega}$		
	홍보 및 교육							보고 선정		/11-	게크 첫 베르 		
6	나이차별			계획	수립	교육실시(3회)			법제와 결정례				
U	조사역량 향상			강사	섭외	파크 ə' '(()러)		비교	분석 및	보고			
7	신원조회(조사)와			カラン	z X L		협회			협회	결과		
	전과차별			기초조사			凇			凇	보고		
8	비정규직 차별판단			동노동임		노동위				연구	동향		
	기준 모니터링			础	간함	결정려	분석			분석	보고		
9	부당노동행위 관련		기획안			자료	 수집			전문가	결과		
	사건처리 검토		보고			실무자간담회				토론회	보고		



│. 일반현황

□ 팀구성(총 5명)

- 이석준(팀장), 백미순, 신병곤, 문은현, 김수산

□ 조사대상

- 조사대상사유 : 출신국가, 민족, 인종, 피부색으로 인한 차별 및 외국인에 대한 인권침해

□ 주요기능

- 진정사건의 조사구제, 직권조사 및 실태조사, 이행실태 점검
- 법령, 제도, 정책, 관행의 개선사항 연구, 권고 및 의견의 표명
- 국내외 협력. 교육. 차별행위의 유형원인 및 예방지침 마련
- 외국인에 대한 구금보호시설의 방문조사

Ⅱ. 업무평가

□ 성과

- 2007년 2월에 발생한 여수출입국관리사무소 화재사건에 대해 신속히 직권조사를 통하여 출입국관리 및 소방시설관계법령, 외국인보호시설 운영 전반에 대해 개선할 것을 권고
 - 그동안 법률적 용어에 관계없이 실질적으로 인신의 자유를 제 약하는 체포나 구속과 동일한 효과를 초래하였던 보호절차가 사법절차에 준하는 권리보장 체계를 갖출 것 권고
- 전국 외국인보호 및 교정시설 중 10개 기관을 선정하여 미등록 외 국인의 수용처우 및 소방시설 등에 대한 방문조사 실시
 - 여수출입국관리사무소 화재사건 이후 우리나라 외국인보호시설운 영실태를 국제인권기준에 입각하여 전반적으로 점검하고 심층 설문

조사 및 시설조사에서 드러난 문제점에 대해 법무부 및 각 기관별로 권고

○ 유엔인권고등판무관실(UNHCR)과 양해각서(MOU) 체결 및 국내 이 주인권단체와의 지역 간담회 개최 등 이주인권 관련 국내외 기관 및 단체와의 협력 제도화

□ 문제점 및 개선방안

- 2007. 7.1부터 인종차별팀에서 이주인권팀으로 직제가 개정되었으나 이주민들이 국경을 넘어 이동하면서 발생하는 다양한 인권침해 및 차 별문제에 대한 전문화 및 조직역량 집중이 부족하였음.
 - 이주민 인권에 대한 위원회 차원의 시너지(synergy) 효과 제고를 위하여 프로젝트팀 구성
 - 차별시정본부내 업무분장 조정을 통하여 이주인권 관련 사건전담 및 정책역량 강화
- 미등록외국인에 대한 정부의 합동단속이 강화되고 위원회의 진정사 건 조사중 출입국관리사무소가 보호외국인을 강제로 출국시키는 사 례 발생
 - 법무부, 외국인정책위원회 등 외국인정책 관련 정부부처와 고위급 협의채널 구축 및 제도화

Ⅲ. 외부환경 동향분석

□ 외국인정책의 환경변화

- 국가간 인적교류 활성화
- 급속한 저출산.고령화 진행
- 외국인 체류유형 다양화 및 정주화
- 전문외국인력과 단순노무외국인력 간 양극화 현상

□ 외국인정책 동향

- 법무부가 정부의 외국인정책 총괄부처로 자리매김 (2007. 7 재한외국 인처우기본법 시행)하고 이에 따라 조직을 기존 출입국관리국에서 출 입국.외국인정책본부로 개편
- 결혼이민자 및 외국인노동자의 지속적 유입으로 2007년 외국인 체류인 구가 100만명에 이르는 등 우리사회가 급속하게 다인종 다문화 사회 로 이행함에 따라 중앙 및 지방정부의 이주민 사회 통합을 위한 한국 어 및 다문화교육 관련 사업.예산 증가
- 법무부가 인권국 신설 및 외국인정책을 총괄하는 부처로 조직개편을 완료하였으나 여전히 미등록외국인의 기본적 인권보장 보다는 강 제퇴거를 위한 단속과 보호에 치중

Ⅳ. 2008년 주요업무 추진계획

1. 외국인 권리구제 효과성 강화 (중점사업)

□ 목적 및 취지

- 외국인 체류인구 100만명 시대를 맞이하여 미등록노동자 단속과정 등에서의 인권침해와 인종 등을 이유로 한 다양한 차별행위 증가
- O 외국인 관련 진정사건의 범주가 다원화되고 있으며 강제출국 등에 대비한 권리구제의 실효성 확보 필요

□ 사업내용

- O 법무부, 외국인정책위원회, 청와대 제도개선협의회 등 외국인정책 관련 정부부처(협의체)와 고위급 협의채널 구축 및 제도화
 - 외국인 노동자 강제출국, 의료조치 등 긴급 대응이 필요한 진정사 건에 대한 권리구제의 실효성 제고를 위해 관계부처와의 업무간담회 및 인권정책관계자 협의회 등 협력채널 다변화
- O 외국인노동자, 결혼이민자, 난민 등 이주인권 대상별 권리구제 강화를 위한 방문조사, 실태조사 등 기획조사 활성화
 - 방문조사 : 외국인보호소 및 출입국사무소 (화성, 청주, 대구)
 - 실태조사 : 고용허가제이후 외국인노동자의 인권상황실태
 - 기획조사
 - 영주권자 및 결혼이민자의 사회보장 방안
 - 사업장내 이주노동자의 건강권 보장방안
 - 난민지위인정실태 및 사회보장 방안 등

□ 기대효과

O 외국인 관련 진정사건 처리의 효율성 및 전문성 제고

O 이주인권 관련 주요 이슈에 대한 사회적 관심 제고

□ 추진일정

- O '08. 1 '08. 2 : 2008년도 주요 업무 간담회 개최 (관련 국가기관 및 단체)
- O '08. 1: 제1차 외국인인권전문위원회 개최
- O '08. 3 : 영주권자 및 결혼이민자의 사회보장방안 기획조사
- O '08. 5 : 이주관련 부처 인권정책관계자협의회 개최
- O '08. 6 : 제2차 외국인인권전문위원회 개최 사업장내에서의 이주노동자 건강권 보장방안 기획조사
- O '08. 9 : 난민관련 기획조사
- O '08. 8 : 외국인근로자지원센터, 외국인노동자병원 등 현장방문
- O '08. 9 '08. 10 : 외국인보호소 방문조사 (화성, 청주, 대구)
- '08 . 11 : 제3차 외국인인권전문위원회 개최

□ 소요예산

- O 이주관련 국가기관 및 단체 간담회 : 2.800천원
- 외국인인권전문위원회 : 10,800천원(회의수당 등)
- 영주권자 및 결혼이민자의 사회보장방안 기획조사 : 4,200천원
- 이주관련 부처 인권정책관계자협의회 개최 : 1,100천원(간담회 경비
- 외국인보호소 방문조사 : 16,600천원(회의수당 및 인쇄비 등)
- 사업장내에서의 이주노동자 건강권 보장방안 기획조사 : 3,600천원
- O 난민관련 기획조사 : 3,600천원(회의수장 및 자료집 발간 등)
- 외국인근로자지원센터, 외국인노동자 병원 등 현장방문: 1,000천원

※ 담당자 : 문은현

2. 이주인권 관련 입법 및 정책 모니터링 강화 (중점사업)

□ 목적 및 취지

- 이주인권 관련 진정사건의 대부분이 출입국정책 등 이주정책과 밀접하 게 관련되어 있으므로 이주 관련 부처의 입법계획, 연간 업무계획 등 을 적극적으로 모니터링
- 유엔인권조약감시기구 및 위원회 권고사항, 정부가 마련한 국가인권정 책기본계획(NAP)에 대한 후속 모니터링 강화

□ 사업내용

- O 유엔인종차별철폐위원회 최종견해(final observation) 및 권고이행 모 니터링
 - 외교통상부, 법무부 등 관련 부처의 연간업무 및 입법계획 모니 터링, 유엔인권조약감시기구와의 협력강화
- 출입국관리 및 난민 관련 법령.제도.정책 모니터링
 - 출입국관리법 개정안에 대한 위원회 권고 홍보 및 수용 촉구
- 고용허가제도 등 이주노동자 관련 법령.제도.정책 모니터링
 - 고용허가제 시행 4주년 토론회 개최 등
- O 국제결혼 관련 법령.제도.정책 모니터링
 - 이주인권 및 여성관련 단체와 국제결혼중개업법 시행과정 모니터링

□ 기대효과

- O 국제인권규범 등 국제인권기준에 부합하는 인권친화적 입법.정책기 반 조성
- 이주인권 관련 주요 현안에 대한 신속한 대응 및 중장기 정책의제 발굴
- O 이주인권 관련 주요정책 및 입법과정에 대한 국민 참여와 관심 제고

□ 추진일정

O '08. 1 -2 : 관계부처 연간업무 및 입법계획 모니터링

출입국관리법개정안 위원회 권고후 후속조치

- O '08. 8 : 고용허가제 도입 4주년 토론회 개최
- O '08. 10 : 국제결혼중개업법 시행과정 모니터링 및 관련 인권단체와의 간담회 개최

□ 소요예산

- 고용허가제 도입 4주년 토론회 : 2,400천원(사례비 및 인쇄비)
- 출입국관련 법령 관련 간담회 : 3,300천원(자문료 및 기타경비)
- 국제결혼 법령 관련 간담회 : 3,300천원(자문료 및 수당 등)
- O 이주관련 유엔인권 규약 모니터링을 위한 자문: 3,000천원
 - 전문가 자문료 및 회의수당 등

※ 담당자 : 백미순

3. 이주민 인권보호를 위한 국내외 협력강화 [일반사업]

□ 목적 및 취지

- 주요 이주인권 현안에 대해 UN 등 국제기구, 외국 국가인권기구, 국 내외 인권단체와의 유기적 협력체제 구축
- O 국내거주 이주민 인권보호와 신장을 위한 국제협력 및 사회적 공감대 확산을 위한 국내외 행사 적극 참여

□ 사업내용

- O 이주인권 관련 국내외 기관.단체와의 간담회 개최 (반기 1회)
- O 유엔난민고등판무관실과 체결된 양해각서(MOU) 후속조치
 - 난민 관련 조사관 훈련 워크숍 UNHCR과 공동개최 등
- O 인종차별철폐의 날, 난민의 날, 이주노동자의 날 등 기념행사
 - 외국인근로자지원센터 방문, 워크숍 개최 등

□ 추진일정

- '08. 1 2 : 이주민인권 프로젝트팀 운영회의 개최 이주인권 관련 기관.단체와의 신년 간담회 개최
- O '08. 3. : 세계인종차별철폐의 날 기념행사
- O '08. 6: 세계난민의날 기념 워크숍 개최 (UNHCR과 공동개최)
- O '08. 8: 지역인권단체와의 간담회 개최 (지역사무소 협조)
- O '08. 12 : 이주노동자의 날 기념행사

□ 소요예산

- O 국내외 기관.단체와의 간담회 : 1,500천원(사례비 및 기타경비)
- 난민관련 조사관 훈련 워크숍: 4,650천원(사례비, 임차료 및 인쇄비 등)
- 인종차별철폐의 날, 이주노동자의 날 기념행사 : 7,000천원
- 난민의 날 기념 토론회 : 2,650천원(발제비 및 인쇄비 등)
- ※ 담당자: 김수산

4. 이주민 인권 보호를 위한 다문화 교육 홍보 강화 [일반사업]

□ 목적 및 취지

- O 유엔인종차별철폐위원회(CERD)에서 단일민족 등 혈통주의에 근거한 인종차별적 인식 전환 권고
- O 이주민의 지역사회 통합을 위한 체계적 교육.홍보 기반 조성 필요

□ 사업내용

- O 다문화 관련 인권교육 및 홍보 콘텐츠 개발 (학교교육팀, 홍보협력팀, 시민교육팀 협조)
 - 다문화 인권교육 강의안 마련 및 강사풀 구성
 - 영화, 동화, 애니메이션 등 다문화 인권교육,홍보 콘텐츠 개발
- O 이주 관련 종사자 인권교육 강화 (공공교육팀 협조)
 - 출입국관리공무원, 근로감독관 등 외국인 관련 공무원 인권교육 제도화
- O 지역 순회 이주민 상담 실시 (인권상담센터, 지역사무소 협조)
 - 이주노동자, 결혼이민자, 난민 등 이주민 애로사항 청취 및 진정사건 접수

□ 추진일정

- O '08. 1-2. : 다문화 인권교육 및 홍보 세부사업 계획 수립
- O '08. 3 : 출입국관리공무원 등 외국인관련 공무원 인권교육 실시
- O '08. 6 ~9 : 다문화 박람회 참가(6월) 및 지역순회 상담 실시

□ 소요예산

- 출입국관리공무원 등 외국인관련 공무원 인권교육 실시 : 1,000천원
- 다문화 박람회 참가 : 3,500천원(현수막 및 팜플렛 제작비)
- 지역순회 상담 실시 : 500천원(여비 등)
- ※ 담당자 : 신병곤

5. 이주인권 정책연구 인프라 구축 [특별사업]

□ 목적 및 취지

- O 이주인권 관련 종사자의 인권감수성 제고
- O 이주인권 관련 법령.제도.정책에 대한 조사관 정책연구 역량 및 전문성 강화

□ 사업내용

- 이주인권정책 연구.사례집 발간
- '06년도 발간한 이주정책 매뉴얼(EMM)을 기초로 우리나라 실정에 맞는 이주인권 관련 정책 및 집행 매뉴얼 발간
- 법집행공무원, NGO 활동가 등 이주인권 실무자들을 위한 정책연구 및 사례집으로 기획

○ 조사관 전문화 교육 강화

- 이주인권 관련 판례 결정례 연구모임 운영
- 조사관 전문성 제고를 위한 워크숍 개최

□ 추진 일정

- O '08. 1-2 : 이주인권정책 연구.사례집 발간 기본계획 및 집필진 구성
- O '08. 5 : 이주인권정책 연구.사례집 발간 중간 점검회의 개최
- O '08. 9 : 이주인권정책 연구.사례집 발간
- O '08. 11 : 조사관 훈련 워크숍 개최

□ 소요예산

- O 이주인권 관련 정책 및 집행 매뉴얼 발간 : 9,500천원(사례비 및 인쇄비)
- 조사관 전문화 교육 : 3,250천원(발제비 및 인쇄비)
- ※ 담당자: 백미순